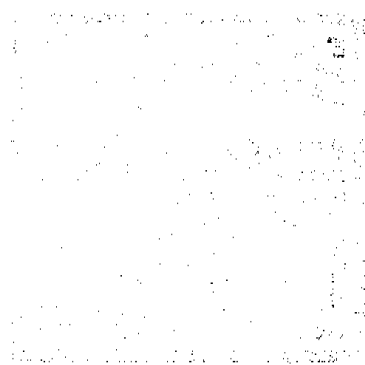


北韓・統一研究論文集 (VI)

— 經濟・社會・人權實態 分野 —

1991



1076

統 一 院

이 논문집은 當院이 年例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北韓 및 統一問題에 관한 新進學者들의 '91年度 研究 結果를 綜合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45個의 課題를 設定하여 研究委囑을 하였는바 便宜上 報告書를 ①南北韓 統合 및 統一政策 ②南北交流 協力 ③北韓의 體制變化 ④北韓의 政策 및 社會變化 趨勢 ⑤韓半島 軍事問題 및 北韓의 行政·法制 ⑥北韓의 經濟·社會·人權實態 分野 등 6卷으로 나누어 發刊하였습니다.

여기에 收錄된 論文들은 嶄新한 아이디어와 銳利한 論證 등 力作들이 많았다고 評價되나 그 內容들이 모두 當院의 見解와 一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冊子가 北韓 및 統一問題를 理解하고 研究하거나 政策을 樹立하는데 參考資料로 널리 活用되기를 바랍니다.

1991年 12月

統一院 情報分析室

目 次

◆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에 관한 研究

安在旭·金容煥

- <要約文> 1
- I. 序 論 5
- II. 傳統的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의 一般的 特徵 6
 - 1. 貨幣의 本質 7
 - 2. 金融의 本質 13
 - 3. 利率과 外換의 役割 15
 - 4. 金融通貨政策 17
- III. 蘇聯의 貨幣金融制度 21
 - 1. 1987-88年 改革前의 貨幣金融制度 21
 - 2. 1987-88年 改革以後의 貨幣金融制度 24
 - 3. 1990年 2次 金融改革 35
 - 4. 展望과 問題點 41
- IV. 中國의 貨幣金融制度 43
 - 1. 改革前의 貨幣金融制度의 變遷 43
 - 2. 貨幣金融制度의 改革 44
 - 3. 改革後의 金融制度 53
 - 4. 展望과 問題點 59
- V. 北韓의 貨幣金融制度 61
 - 1. 貨幣制度 62

2. 金融制度	64
3. 換率制度	70
4. 金融通貨政策	71
5. 展 望	75
VI. 要約 및 結論	76

◆ 南北韓 貿易構造 比較

朴勝俊

<要約文>	83
I. 序 論	86
II. 南北韓 貿易構造	88
1. 規模別 貿易構造	89
2. 國別 貿易構造	92
가. 北韓의 國別·品目別 貿易構造	92
나. 南韓의 國別·品目別 貿易構造	114
3. 圏域別 貿易構造	126
III. 南北韓 貿易政策	136
1. 北韓의 貿易政策	137
2. 南韓의 貿易政策	139
3. 南北韓 貿易의 問題點	141
IV. 南北韓間 經濟協力	144
1. 南北韓 經濟交流 및 推移	144

2. 南北韓 交易可能品目	147
3. 經濟協力の 推進方向	157
V. 結 論	160

◆ 北韓의 工業構造에 관한 研究

徐贊洙

<要約文>	169
I. 序 論	172
II. 北韓의 經濟運用樣式과 基本路線	175
1. 經濟運用樣式	175
2. 政策의 基本路線	177
III. 北韓 工業構造의 段階的 分析	181
1. 社會主義 工業 基盤 建設期(1946-60)	182
2. 社會主義 工業 確立期(1961-70)	183
3. 社會主義 工業 促進期(1971-93)	184
4. 綜合的 評價	187
IV. 工業遲滯의 原因	191
1. 運用方式의 限界	191
2. 開發戰略上的 誤謬	193
3. 社會間接資本의 不備	199
V. 開放과 工業構造의 方向轉換	204

1. 開放展望	204
2. 工業 構造의 方向轉換	207
3. 우리의 對應方案	208
VI. 結 論	211

◆ 北韓에서의 宗教復活이 住民意識構造와 體制變化에 미칠 影響

黃仁浩

I. 논의에 앞서	219
II. 북한사회의 새로운 이해	223
1. 북한의 宗教	223
2. 북한주민의 意識構造	236
3. 북한체제의 特殊性	240
III. 북한에서의 宗教復活	244
1. 宗教復活의 可能性	244
2. 宗教復活의 경로	246
IV. 宗教復活에 다른 意識과 體制의 變化	251
1. 宗教의 意識·體制간의 일반논리	251
2. 구체적인 事例	253
3. 북한의 宗教復活과 意識·體制의 變化	258
V. 맺으며	261

◆ 北韓의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研究
— 所得保障制度和 醫療保障制度 中心으로 —

金淵明

<要約文>	267
I. 序 論	271
1. 研究 目的	271
2. 研究 方法 및 內容	272
II. 北韓社會와 社會福祉	274
1. 北韓에서의 社會保障, 社會保險의 概念	274
2. 北韓 社會福祉制度의 變化에 대한 理論的 接近	278
III. 社會福祉制度의 歷史的 展開過程	288
1. 制度의 形成期: 1945. 8—1956	288
2. 制度의 整備·補完期: 1957—1970	292
3. 制度의 ‘形態的’ 完成期: 1971—1985	294
IV. 所得保障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298
1. 制度의 概要	299
2. 割當 體系	301
3. 財源調達體系	303
4. 財政 運營 體系	307
5. 給與 體系	310
6. 問題點	321
V. 醫療保障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324
1. 制度의 概要	325
2. 割當體系	327

3. 財源 調達과 財政의 規模	327
4. 給與 體系	329
5. 問題點	331
VI. 南韓과 北韓의 比較	332
1. 所得保障制度의 比較	333
2. 醫療保障制度의 比較	338
VII. 結 論	342

◆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국제법 이론을 통한 북한의 인권 연구—

成宰豪

<要約文>	349
I. 머리글	353
II. 인권논의의 발전	354
1. 자연법사상과 인권논의의 발생	354
2. 법실증주의와 인권의 후퇴	356
3. 인권보호의 국제화	358
4. 새로운 인권의식과 국제사회의 요구	362
III. 국제법상의 인권보호	365
1. 국제관습법상의 인도적간섭	365
2. 국제연합내의 메카니즘	367
3. 지역적 인권조약상의 메카니즘	372

IV.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법의 적용	378
1. 북한의 인권실태	378
2. 일반국제법의 적용가능성	383
3. 북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388
V. 맺는 글	391

◆ 北韓의 人權問題에 관한 法的 研究

權五杰

<要約文>	393
I. 序 言	397
II. 北韓刑法의 검토	398
1. 北韓刑法의 제정과 구성	398
2. 北韓刑法의 改正	401
3. 北韓刑法의 本質과 任務	407
4. 北韓刑法上의 犯罪論의 特色	415
5. 北韓형법상의 行爲論	421
6. 犯罪成立條件으로서의 社會的 危險性	427
7. 罪 責	433
8. 위험성의 排除事由	434
9. 예비와 미수	435
10. 共 犯	436
11. 刑罰論	438
12. 반혁명범죄	440
13. 일반범죄의 의의 및 본질	444

Ⅲ. 北韓刑事訴訟法	447
1. 刑事訴訟法の意義	447
2. 刑事節次上人權保障	448
3. 연 혁	449
4. 搜查節次	452
5. 公判準備節次	454
6. 公判節次	455
7. 上訴節次	456
Ⅳ. 結 論	457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에 관한 研究

安 在 旭(경희대)
金 容 煥(경희대)

< 要 約 文 >

이 研究의 目的은 社會主義 국가들의 貨幣制度和 金融制度를 조사 研究하여 社會主義 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의 일반적 특징을 밝혀내고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의 貨幣金融制度를 비교 研究하는 데 있다.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社會主義 경제체제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社會主義 경제체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제, 둘째, 제한적 분권화 계획경제체제, 셋째, 社會主義 시장 경제체제이다.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는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제한적 분권화 계획경제는 전통적 중앙집권 계획경제 체제에 비해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앙집중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는 체제를 말한다. 그리고 社會主義 市場經濟 體制는 경제운영에 시장기능을 대폭 수용한 것을 말한다. 전통적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제는 개혁이전의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이 여기에 속하고 개혁후의 소련과 중국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에 속한다.

社會主義 體制의 貨幣金融制度는 소련의 볼셰비키혁명 이후 전통적 중앙집

권 計劃經濟體制의 路線에 따라 확립되어 그후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改革을 하였다. 社會主義 體制下에서의 화폐의 기능이나 역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와 비슷하다. 즉, 화폐가 교환의 수단, 가치척도의 수단, 그리고 가치보장의 수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은 貨幣의 流通制度가 現金流通과 無現金流通으로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다. 現金流通은 가계부문에서 주로 소비재 유통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그리고 無現金流通은 그외의 기업과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은행예금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貨幣制度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二重構造로 운영하는 이유는 통화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개인이나 기업이 富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으려는 데 있다.

한편, 現金流通은 二重現金流通制度로 되어 있다. 즉 자국민이 사용하는 화폐와 외국인이 사용하는 화폐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가격차별의 형태로서 외국인과 자국민의 서로 다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입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暗市場의 존재로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金融制度 역시 社會主義 體制下의 中央計劃 모형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적 中央計劃 社會主義 體制下에서는 銀行을 통한 신용대부시장이 유일한 금융시장이 된다. 이것은 중앙계획당국이 통제하에 생산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사이의 직접적인 대차관계가 금지되어 있어서 증권시장이나 화폐시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을 통한 신용대부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행조직을 살펴 보아야 한다. 전통적 社會主義 國家들은 中央銀行이 발권업무는 물론 신용자원에 대한 중앙통제를 위해 상업금융업무까지를 수행하는 單一銀行制度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장기투자나 대외결제 등의 특수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가소유의 特殊銀行을 설립운영하였다. 그후 개혁후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상업업무를 분리하여 기타은행에 주는 二元的 銀行制度를 유지하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에서 利子는 勞動搾取의 產物이라고 생각하여 資本에 대해 利子を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生産性 下落과 資本 浪費를 초래하자

1960년 이후 자본을 물질로 표시된 노동으로 보고 합리적 자본 배분을 피하고자 利子 概念을 도입하였다.

傳統的 社會主義 國家의 金融通貨政策은 생산계획에 따라 경제내에 유동성 주입, 즉, 通貨를 供給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계획의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金融通貨政策의 주요 수단은 行政的 措置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은 화폐의 유통과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企業部門의 貨幣流通은 信用計劃에 의해 규제되며, 家計部門의 貨幣流通은 現金計劃에 의해 규제된다. 즉 기업부문의 화폐증가는 은행의 신용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며, 가계부문의 화폐공급인 현금통화의 증가는 정기적인 저축드라이브 정책이나 엄격한 임금통제를 통해서 상쇄시켰다. 개혁후 소련과 중국은 지급준비율제도와 할인율제도 같은 간접조절수단을 도입하였다.

蘇聯은 경제효율성 향상, 독립채산제 확립, 자원절약체제 강화 등 기본경제 목표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조치를 금융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개혁의 목표는 첫째, 모든 상업은행 기능을 중앙은행인 Gosbank로부터 분리되는 二元的 銀行組織을 확립, 둘째, 특수은행의 수를 늘려서 은행들 사이의 競爭을 誘道, 셋째, 신용배분에 있어서 特殊銀行의 獨立性 認定, 넷째, 상세한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신용계획을 없애고 전체의 信用限度制 導入 등이었다. 그러나, 경쟁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 있고 저축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연차계획은 계속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적 기준에 의한 새로운 신용정책은 개혁의 여러부문에서 개혁이 되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改革의 不完全性은 1980년대 후반에 貨幣의 不均衡을 惡化시키는 역할을 했다.

中國 역시 1979년 개혁이전까지 전통적 社會主義체제의 개혁이전의 소련형 金融制度를 따라 單一 銀行制度를 유지하였다. 1979년 이후 경제조정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금동원의 극대화화 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金融制度를 개편하였다. 그 개혁 내용을 보면, 첫째, 종합은행의 역할을 해 온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업무별로 專門化하는 金融制度로 개편하고, 둘째, 상업업무를 중앙은행에서 분리하는 대신 人民銀行의 中央銀行機能을 強

化, 셋째, 행정적 직접금융조절수단을 줄이고 간접적 조절수단인 再割引 制度와 支給準備制度의 導入, 넷째, 기업의 은행 의존도의 증가에 따라 대출채권의 건전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銀行의 指導監督業務를 強化, 다섯째, 자금배분에 金利機能을 強化, 그리고 여섯째, 콜머니 市場과 證券市場 등 金融 및 資本市場의 育成 등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부산물로 중국경제에 나타난 초과수요의 상존, 소비기금의 급속한 증가, 기본 건설 투자 규모의 과다, 통화발행량의 남발 등의 요인에 의해 1984년 부터 통화팽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직 가격체계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자원도 국가에 의해서 배분할당됨으로써 가격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北韓은 아직도 개혁이전의 소련형 金融制度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社會主義체제하의 貨幣金融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이다. 즉 金融制度는 단일金融制度이며, 화폐유통이 철저히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구분되어 있다. 금융통화조절 수단도 계속 행정적 조치인 직접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해방후 지금까지 3차례의 화폐개혁을 하였다. 초기에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건설자금은행 등 2개의 금융기관으로 조직되었던 은행제도가 현재 조선중앙은행, 산업은행, 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조선대외보험회사 등으로 金融機關의 數가 增加하였다. 社會主義 國家들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개혁의 추세를 볼 때, 북한도 곧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개혁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은 것을 채택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中央執權 計劃經濟體制의 特徵에 따라 재정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財政部門에 從屬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의 종속적 위치가 가져다 주는 효과란 자원의 낭비,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중앙계획당국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의 둔화 경제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소련과 중국이 市場經濟의 原理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制度上의 不完全性으로 인하여 通貨膨脹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金融資源의 配分에 있어서도 非效率的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I. 序 論

본 研究의 目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에 따라 社會主義 國家들의 貨幣金融制度가 어떻게 變化되어 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화폐금융제도의 발달을 分析하고 그것의 일반적인 特徵을 밝혀 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蘇聯, 中國, 그리고 北韓의 貨幣金融制度를 比較研究하는 것이다.

최근 社會主義 國家들은 큰 變化를 보이고 있다. 中國에서는 덩소핑 등장 이후 1979년부터 지난 10년 이상 經濟개혁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蘇聯에서는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 과감한 정치 經濟 개혁과 開放化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國家의 목표와 발전 방향 그리고 기본경제구조 측면에 급속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國家의 목표는 더 이상 高度의 工業化와 社會主義化가 아니라 經濟의 效率性和 보다 높은 生活水準을 추구하는 데 두고 있다. 發展 方向 역시 不均衡的이기 보다는 均衡的인 成長으로 轉換하고 있으며, 孤立보다는 國際的 協力을 摸索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重工業에서 輕工業과 農業으로 投資의 比重이 증가하고 있으며 經濟적 自給自足を 강조하기 보다는 정부는 經濟 발전을 위하여 外國과의 貿易과 外國投資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經濟構造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식 計劃經濟를 止揚하고 市場을 이용한 價格機能을 經濟활동에 도입하고 있다. 농부, 노동자, 그리고 기업과 같은 생산단위에게 보다 많은 自律權이 주어졌고 보너스와 이윤형태의 화폐적 動機가 제도화되어 있다. 制限的이긴 하지만 經濟에 競爭이 도입되었으며 직접적이고 행정적인 통제에 간접적인 經濟 통제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요컨대 經濟가 보다 分權化되고 價格, 市場, 利潤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폐와 금융의 역할이 영향을 받아 貨幣金融制度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貨幣金融은 經濟의 安定과 發展 그리고 厚生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貨幣金融制度의 變遷을 研究 分析하고자 한다.

傳統的인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중앙집권 計劃模型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맨 처음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확립되었다. 그 후 모든 社會主義國家들이 이 모형을 그대로 따라 실시하였다가 經濟 改革의 趨勢에 따라 市場經濟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變化를 보였다. 중국은 1979년 경제조정조치에 따라 화폐금융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그 제도를 변화시켰으며, 소련은 1987년에 획기적인 화폐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1984년 9월에 合營法을 공포하고 獨立採算制度를 도입하고 聯合企業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分權的 體制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화폐금융제도는 전통적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합영법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소련과 중국과 같이 화폐금융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래에 북한 역시 화폐금융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序論에 뒤이어 제2장에서 전통적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의 일반적 특징을 記述하였다. 제3장은 蘇聯의 貨幣金融制度에 관한 것으로 그것의 변천과정과 개혁 내용, 개혁후의 현존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 제도의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中國의 貨幣金融制度로서 역시 그것의 변천과정, 개혁 내용, 개혁의 결과, 그리고 전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5장은 北韓의 貨幣金融制度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6장에서 要約과 結論을 다루고 있다.

II . 傳統的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의 一般的 特徵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특징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①傳統的 中央集權計劃經濟體制, ②制限的 分權化計劃經濟體制, ③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體制는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貨幣金融制度의 變遷을 研究 分析하고자 한다.

傳統的인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중앙집권 計劃模型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맨 처음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확립되었다. 그 후 모든 社會主義國家들이 이 모형을 그대로 따라 실시하였다가 經濟 改革의 趨勢에 따라 市場經濟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變化를 보였다. 중국은 1979년 경제조정조치에 따라 화폐금융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그 제도를 변화시켰으며, 소련은 1987년에 획기적인 화폐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1984년 9월에 合營法을 공포하고 獨立採算制度를 도입하고 聯合企業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分權的 體制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화폐금융제도는 전통적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합영법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소련과 중국과 같이 화폐금융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래에 북한 역시 화폐금융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序論에 뒤이어 제2장에서 전통적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의 일반적 특징을 記述하였다. 제3장은 蘇聯의 貨幣金融制度에 관한 것으로 그것의 변천과정과 개혁 내용, 개혁후의 현존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 제도의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中國의 貨幣金融制度로서 역시 그것의 변천과정, 개혁 내용, 개혁의 결과, 그리고 전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5장은 北韓의 貨幣金融制度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6장에서 要約과 結論을 다루고 있다.

Ⅱ . 傳統的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貨幣金融制度의 一般的 特徵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특징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①傳統的 中央集權計劃經濟體制, ②制限的 分權化計劃經濟體制, ③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體制는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下部組織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改革以前の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 알바니아, 쿠바 등이 이 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制限的 分權化 計劃經濟는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體制에 비해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앙집중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는 체제를 말한다. 현재 유고, 헝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구국가들이 이 체제에 속한다.

한편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는 經濟運營에 시장기능을 대폭 받아들여, 국가 계획은 巨視的이고 생산부문간의 기본적 조정이나 주요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기업의 경영이나 일반상품의 가격결정, 무역 등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에는 유고가 여기에 속하며, 중국, 소련, 헝가리 등이 여기에 접근해 가고 있다.

이 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주로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體制下的 制度의 개혁이전의 소련의 模型으로서 대부분의 社會主義 국가들이 자신의 경제개혁이전에 추종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통적 中央執權計劃體制의 전형적인 貨幣金融制度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1. 貨幣의 本質

가. 貨幣存在의 必然性

마르크스는 資本論에서 社會主義 社會에 도달하게 되면 生産手段의 全社會的 共有制가 지배적 형태가 되어 貨幣가 점차 소멸되어 社會主義는 화폐와 관계없이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¹⁾ 일부 마르크스 후계자들은 이 이론을 바

1) 이것은 K. Marx의 화폐이론과 구별된다. 그의 화폐이론은 상품생산이 일반화되는 자본주의 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그의 화폐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본다. 즉 화폐가 가치가 없고 단순히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노동의 體現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상품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특수한 상품이다. 자세한 것은 Marx(1989, 김수행역)의 『자본론』 I(상)을 참조할 것.

탕으로 社會主義 社會에서 상품교환을 할 필요가 없으며 노동자에게 그가 제공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소비재를 직접 分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재정 수입 支出의 통일적 운용, 생산수단의 統一的 分配, 모든 소비재의 販賣와 購買에 대해서 국가 統制를 實行하였다. 실제로 볼셰비키혁명 직후 러시아에서 貨幣를 단계적으로 물물교환 방식으로 바꾸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1920년에 국영기업들 사이에 貨幣에 의한 결제방식이 폐지되었고, 그리고 貨金 역시 物品으로 支給되었다. 그러나 貨幣가 없는 物物交換 方式은 초기의 소련 경제를 크게 혼란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볼셰비키정권은 社會主義 경제에서도 貨幣機能은 계속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특히 제2차 대전이후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經濟開發의 擴大와 더불어 貨幣의 機能도 더욱 擴大되어 갔다. 사실 社會主義 國家들을 보면 여러가지 형태의 貨幣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貨幣가 경제조직에서 생성 발전하게 된 동기는 물물교환의 불편함과 非能率性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貨幣는 상품교환을 하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주면서 그 교환을 容易하게 해준다. 따라서 貨幣는 상품교환의 발전에 따른 產物이며, 비교적 발전된 단계의 상품교환은 貨幣의 媒介作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교환이 存在하는 곳이면 어느 사회이든지 貨幣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예외없이 社會主義 社會에서도 교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貨幣의 存在는 필수 불가결하다. 社會主義 經濟에서 貨幣는 상품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일반적 等價物의 役割을 가진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된다.²⁾

왜 社會主義 사회에서도 Marx의 社會主義 理論과는 달리 상품의 생산과 交換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가?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자원의 稀少性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산이란 회소성의 존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순간에 바라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면 생산은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회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분업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이것은 곧 경제적 분업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

2) Marx(1989, 김수행역)의 「자본론」I(상).

이 서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생산을 지시하거나 자유시장의 수요가 생산을 지시하든 간에 노동의 전문화와 그에 따른 교환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회소성은 社會主義者들과 마르크스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畸形的 社會制度」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條件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⁴⁾ 또한, 소비재는 그 종류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需要 選好가 多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가 직접 소비재를 분배한다는 것은 매우 費用이 많이 드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구매 선택 또는 制約하게 된다.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상품을 구매시키려면 서로 교환토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가격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貨幣를 이용하여야 한다. 사실 社會主義 社會에서 국가와 협동체 사이, 협동체들 사이, 협동체들과 개인 사이에 생산물이 서로 유통 교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貨幣가 社會主義 社會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나. 貨幣의 機能 및 役割

資本主義 社會에서 貨幣는 本質적으로 價値尺度의 수단, 交換의 媒介手段 또는 支拂手段, 그리고 價値寶藏(蓄積)手段의 機能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社會主義 社會에서도 여전히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貨幣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위의 세가지 기능을 수행한다.⁵⁾

(1) 價値尺度의 手段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국가의 계획부문, 재정경제부문, 그리고 각 상공업기업 등도 모두 생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 貨幣를 사용한다. 국민경제계획의

3) 마르크스에게는 분업이 세상의 모든 악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에 대한 열망이 분업을 유도했으며 분업은 계급차별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Struik, Dirk(ed.) "Estranged Labor,"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64), p.136.

4) Mises, Ludwig von, 『Socialism,』 New Haven : Yale, [1922] 1951 : London : Jonathan Cape, 1969, p.164.

5) 웨무차오(오진용역), 『중국 사회주의경제론』, 한국경제신문사, 1990, p.136~138.

종합균형은 실무 지표뿐만 아니라 貨幣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표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생산분야에서 貨幣는 생산물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를 재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은 가치척도로서의 貨幣의 役割을 보여준다.

(2) 交換의 媒介手段

이 기능은 주로 소매상품 유통 방면에서 나타나고, 국영기업들 사이에서 팔고 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원료, 자재의 공급을 매개하는 기능이다. 지불수단의 기능은 기업이 재정부문에 넘겨주는 납세와 이윤, 재정부문이 기업, 機關 그리고 기타 사업단위에 배분하는 자금, 은행이 국영기업과 집체경제단위에 대부하고 상환받는 자금 등에서 볼 수 있다.

(3) 價値保障의 手段

국영기업, 집체경제단위와 노동자들은 일정량의 貨幣를 은행에 예금하거나 자기 수중에 축적함으로써 貨幣를 가치보장(축적)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인 수중에 있는 貨幣 中 일부는 지불 및 구매 수단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한다. 근본적으로 私有財産制度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하거나 축적하기보다는 사고 싶은 물건이 부족하여 소비할 수 없어서 남은 貨幣를 저장하는 것이다.

다. 貨幣流通制度

貨幣는 보통 貨幣의 機能에 따라서 정의된다. 따라서, 社會主義 체제하의 貨幣의 정의, 즉 어떤 금융자산을 貨幣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貨幣의 기능을 기초로 하여 社會主義 체제에서 貨幣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二重制度(Dual System)이다. 즉 貨幣流通이 現金流通과 無現金流通(예금유통 또는 예금결제)으로 나뉘어 부문별로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⁶⁾

6) 니콜라이 슈멜레프, 블라디미르 포포프 공저(이익진역), 『소련경제의 대변혁』, 한국경제신문사, 1990, p.231.

現金流通은 가계부문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재 유통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다. 주민들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주로 현금으로 한다. 현금 유통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非商品的 實現量(여러가지 사용료 지불, 보험료와 저금의 입금 및 지불 등), 國民의 貨幣所得을 형성하는 現金去來量(생활비 지불, 연금 및 보조금 지불,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현금 분배등), 부분적으로 銀行機關과 企業, 機關 사이의 現金去來(銀行에서의 機關, 기업에 대한 경상비용 현금지불, 상업기관들에 의한 상품판매 대금의 은행입금 등)들이 있다.⁷⁾ 貨幣로 된 소득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현금을 자유롭게 은행당좌예금(저금소에 저축)으로 보유할 수 있고 또 그 예금을 어느 때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가계는 저축예금을 보유할 수 있지만 현금만이 지불수단의 역할을 한다. 정부가 현금공급의 규제를 통하여 가능한 한 가계의 현금보유를 제한하려고 하였지만 가계의 현금과 예금사이의 교체는 엄밀하게 제한될 수는 없었다.

無現金流通은 기업과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기업과 재정당국(정부)간의 모든 거래는 은행예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기업간 거래는 주로 중앙은행의 구좌를 통해 청산된다. 즉 국영기업과 집체경제단위의 상품교환은 대체로 비현금결산(은행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현금보유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현금은 거의 임금지급을 위해서만 기업의 예금에서 인출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여분의 자금이 있을 경우 이들 전부를 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지 노동보수에 필요한 현금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기타소비는 현금없는 계산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제품의 판매에서 얻은 수익금의 이용정도를 제외하고는 극히 적은 자금만이 현금으로 남을 수 있다. 나머지 소득은 현금형태가 아닌 계산만으로 지출된다. 그것도 지정된 용도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무현금 유통과 현금 유통간의 상호 작용은 단지 計劃機關들의 「허가」가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무현금 결제에 들어 있는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

7) 리원경, 『사회주의 화폐제도』, 사회과학출판사 : 평양, 1986, p.31.

할 때는 아주 엄격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무현금 유통과 현금 유통을 완전 분리시킬 수는 없다.⁸⁾ 이러한 貨幣流通構造와 貨幣의 기능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社會主義 사회에서 貨幣로 간주될 수 있는 金融資產은 現金通貨, 豫金通貨, 貯蓄豫金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M1(현금통화+예금통화)과 M2(M1+저축예금)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現金流通은 다시 자국민이 사용하는 貨幣와 외국인이 사용하는 貨幣로 구별된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貨幣를 외화태환권이라 한다. 이것은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만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현금유통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서로 다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바탕으로 가격차별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⁹⁾ 그러나, 이러한 外國貨幣輸入을 올리기 위한 가격차별정책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二重貨幣流通制度의 결과로서 정부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外國貨幣에 대한 암시장의 발달로 外國貨幣가 정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수중에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암시장에서 일어난 거래액이 정부의 수입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법집행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¹⁰⁾

8) 기업체들은 금융기관에 과잉 축적된 예금의 일부를 장려금, 임금인상, 월급에 대한 여러가지 가급금 등 현금으로 전환시키면 무현금 자금이 현금유통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니콜라이 슈멜레프·블라디미르 포포프 공저(1990), 전계서, p.232.

9) 자국민에 비해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자국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10) Yahalom, Shmuel Z., 'The dual Currency System in China : Cost and Benefit,' *Chinese Economic Studies*, Spring 1991, p.73~81을 참조할 것.

2. 金融의 本質

가. 金融의 機能

金融의 役割과 機能은 社會主義體制의 중앙계획모형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모형안에서는 모든 실물자원은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배분되며, 金融은 단지 기업의 투입과 산출의 상세한 생산계획을 반영하는 데 불과하다. 이것은 金融이 재정 생산계획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融이란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유통이 잉여자금을 갖고 있는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적자지출단위에게로 金融市場과 金融機關을 통해서, 즉 직접金融과 간접金融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社會主義 사회에서는 자금의 유통이 중앙계획당국의 통제하에 金融機關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간접金融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社會主義의 計劃經濟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은 物量的 均衡 (material balance) 방식에 입각한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金融機關을 통하여 자금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모든 생산수단이 社會主義的 所有로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 經濟體制인 社會主義 體制에서는 財政計劃과 豫算制度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자원배분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이자율과 수익율을 매개로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하의 金融機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 金融制度

전통적 中央計劃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본질적으로 은행을 통한 신용대부시장이 유일한 金融市場이다. 이것은 첫째, 기업과 가게 사이에 직접적인 대차관계가 금지되어 있어서 가게는 기업의 증권을 구매할 수 없고 소비자 신용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증권시장이나 貨幣市場이 존재하지 않고, 둘째, 중앙계획당국의 통제하에 생산계획에 따라 金融機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社會主義 사회에서 유일한 금융기관인 은행은 중앙계획당국의 통제하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결정된 계획에 따라 신용자원을 배분한다. 재정자금에 의한 중장기 기업자금

과 기업이나 가게의 일시적인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한 短期運轉資金을 공급하는 한편, 자금공급시 이자납부 또는 여타의 부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金融機關은 제반 金融去來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은행신용의 공여와 회수를 통하여 통화의 유통량을 조절한다. 넷째, 회계감사를 통하여 개별기업들의 계획된 범위내에서 자산의 축적과 투자, 물자와 임금의 지급 등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다.

이러한 은행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개혁이전의 모든 社會主義 국가들은 單一銀行制度(monobank system)을 채택하였다. 單一銀行制度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권업무는 물론 신용자원에 대한 중앙통제를 위해 商業 金融業務까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기투자나 대외결제 등의 特殊 金融業務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가소유의 특수은행을 설립운영하였다. 전체 은행조직은 하나의 중앙은행과 소수의 특수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中央銀行은 현금, 신용, 그리고 결제의 중심이었다. 중앙은행이 발권을 맡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국가 기업이 현재의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모든 현금은 중앙은행에 예금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현금의 중심이 되었다. 국가 기업들 사이에 부채관계가 금지되어 있어서 정부기관에 대한 대부는 은행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신용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공공 분야안에서 최저 금액이상의 모든 지불은 은행구좌 이체를 통해서 청산되기 때문에 결제의 중심이었다.

1979년 중국이 개혁을 단행하였고 1987년을 전후하여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이 金融改革을 통하여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기능의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종래의 單一銀行制度는 二元的 銀行制度(two-tier banking system)로 점차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은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①발권은행으로서 국가에서 통용되는 貨幣를 발행하며, ②정부은행으로서 국가의 金融政策을 수행하고, 국고금의 출납 등 국가재정에 봉사하며, 은행회계 및 통계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신하여 금과 외국환을 보유하고 그것을 결제하

며, ③은행의 은행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각 은행들에 대해 再金融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④金融統制機關으로서 은행예금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고 신용을 통제하며 이자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일반기업에 대한 金融業務인 상업은행기능을 다른 은행으로 이관하였다.

3. 利率와 外換의 役割

가. 利率의 役割

마르크스는 利率가 오직 勞動을 착취해야 추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론에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이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자본에 대해서 수수료만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1960년대초까지 기업들은 국가예산으로 부터 無利率 資金配當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성하락과 자본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1960년 중반이후 자본을 물질로 표시된 노동으로 파악하고 자본의 합리적 배분을 꾀하고자 자본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자개념을 도입하였다. 소련 연 1~2%, 동독, 체코, 헝가리 연 5~7%, 폴란드, 루마니아 연 8~9% 등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나. 外換의 役割

市場經濟에서 換率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즉 한 국가의 국제수지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환율은 관련 경제의 물가수준, 즉 국제무역의 시각에서 보면 通貨의 購買力을 반영한다.¹¹⁾ 그러나, 社會主義 計劃經濟에서는 환율을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수출입은 계획과 여러가지의 효율성 계산척도에 의해 결정되고, 공식적인 환율은 통계적 추계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전에 공식환율은 단지 회계단위로서만 사용되었지 자원의 배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

11) Wilczynski, j., *Comparative Monetary Economics*, London : Macmillan, 1978, p.175.

다. 이와 같은 것은 소위 가격균등제라고 불리우는 ‘변동 조세 및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국내와 국외 가격을 분리하는 中央計劃制度에서의 전통적인 기능이였다.¹²⁾ 이 기구하에서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의 외환가격의 상승은 조세나 보조금의 변동으로 상쇄되었으며 그리하여 예산적인 효과는 있지만, 국내 가격 생산과 소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환율은 장기간 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외환시장의 개입이 아니라 단순히 공식적인 선언과 비공식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무거운 벌과금의 부과에 의해 유지된다.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社會主義 經濟의 공정한환율은 일반적으로 對西方通貨에 대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것은 社會主義 通貨의 公信力 問題와 國家財政 수입문제에 기인한다.

社會主義 國家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간의 협정에 의거 환율을 규정하는 固定換率制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國家는 사실상 複數 換率制를 채택하고 있다.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기본환율 이외에 외국여행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非商業用 換率이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에 적용된다. 이러한 二元的 換率制度는 본질적으로 社會主義 經濟의 이원적 가격체제에 기인한다. 기본상업용 환율은 여행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소매가격수준을 반영한다. 다른 社會主義 通貨에 적용될 수 있는 비상업용 환율은 양국간에 쌍무적인 협상대상이 되지만, 서방 통화에 대한 환율은 社會主義 國家에 의해 일방적으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社會主義 各국이 자국통화의 金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諸外國通貨에 대한 환율이 일치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교차환율도 상호 모순된다.¹³⁾

특정 외국통화에 적용되는 공정한환율이 명목상으로는 단일환율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실제환율은 무역공단이 정한 보조금 및 과세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社會主義 經濟는 무역거래에서조차 복수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12) Wilczynski, J., 전제서, p.176.

13) Wilczynski, J., 전제서, p.176~177.

4. 金融通貨政策

가. 貨幣의 需要

社會主義 體制에서 貨幣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처럼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그리고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수요된다. 그러나, 이자율의 개념이 없으며, 사유재산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유동성있는 金融資産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적 동기는 거의 무시될 수 있다. 한편, Baumol과 Laidler의 거래적 또는 예비적 동기 보다는 단순히 소득에 따른 Keynes의 거래적 및 예비적 동기에 의해서 보유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⁴⁾ 그러므로, 社會主義 體制下의 貨幣需要는 교환방정식을 사용한 고전학파의 貨幣수요함수로 설명될 수 있다.

$$M_d = \frac{P \cdot Q}{V}$$

단, M_d 는 貨幣需要, P 는 價格, Q 는 財貨의 量, 그리고 V 는 유통속도이다. 이 식으로부터 유통 및 지불수단으로 쓰이는 貨幣의 수요량은 현금통화를 수반하는 재화의 매출액과 재화의 移轉이 없는 기타 거래에서 지불된 貨幣額의 합계를 貨幣의 平均 流通速度로 나눈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위 식에서 상품 거래 이외의 總貨幣支拂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업에 의한 자금수요가 포함된다. 그 가운데서 기업에 의한 자금수요는 기업이 비용의 지출과 매상금의 수령시까지의 시간 간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의 수요이다.¹⁵⁾

이러한 貨幣需要는 제1절에서 설명한 각각의 貨幣流通에 따라 다르다. 金融資産이 현금, 요구불예금, 그리고 저축예금 등으로 그 범위가 극히 좁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계는 원하는 대로 金融資産을 보유할 수 있다. 실물자산의 소

14) Baumol, W.J., 'The Transaction Demand for Cash: An Inventory Theoretic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6(Nov. 1952), p. 545~556. Laidler, David E., *The Demand for Money: Theories and Evidence*, 2nd ed. Harper & Row, 1977, p.81~88.'

15) 리원경, 전계서, p.86.

유는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저축은 金融資産의 형태, 즉 거의 전부가 貨幣의 형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短期金融資産의 유동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金融資産의 유동성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첫째, 국영기업의 은행구좌는 기업과 해당정부부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그 자금의 용도는 지정되어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貨幣保有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중요 사항이 아니다. 金融資産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①생산계획의 내용 ②예금의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③재고량으로 환산한 貨幣보유의 기회비용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위의 이유들과 함께 金融資産이 매력적인 실질수익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 貨幣保有를 극소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 通貨의 供給과 金融通貨政策의 役割

貨幣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貨幣가 공급되어야만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마르크스는 V 가 일정하다고 할 때 상품의 거래량(Q)과 상품가격(P)의 결정이 선행되고 이에 따라서 유통에 필요한 貨幣量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의 金融통화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金融이 社會主義의 중앙계획모형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의 공급 역시 그 모형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업의 투입과 산출의 상세한 생산계획에 따라 중앙계획의 생산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된다. 社會主義體制에서 金融通貨政策의 역할은 생산계획에 따라 경제내에 유동성 주입, 즉 통화를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金融通貨政策의 중점을 통화가치의 안정에 두고 통화관리와 동시에 임금관리, 물자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합재정계획과 물자생산계

16) Marx(1989, 김수행역)의 『자본론』을 참조할 것. 그리고, 이와는 달리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교환방정식($MV=PQ$)에서 유통속도(V)와 거래량(Q)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품가격(P)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화폐량(M)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획을 결합시켜 경제전체의 실물 흐름과 貨幣 흐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金融政策은 전적으로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金融通貨政策이 재정정책의 종속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은 중앙은행이 행정기구의 하나이며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과 수입계획을 수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수입과 감가상각 기금을 정부의 예산부처와 해당부처로 이전하며 모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기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기업활동을 감독받고 있다. 중앙은행은 또한 경제의 행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은 계획목표가 빗나가거나 계획 목표가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며, 이러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의 金融流通을 가계의 金融流通과 엄격하게 분리하여 기업자금의 용도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다. 金融通貨政策의 手段

改革 以前の 金融通貨政策의 주요 수단은 行政的 措置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수요를 초과하는 통화량의 증가는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대차관계의 악화를 초래한다. 이와는 달리 가격이 통제되고 외환작용이 제한되어 있는 社會主義 사회에서는 과잉 통화증가가 그러한 효과가 아닌 상품부족이라는 경제의 초과수요를 낳는다.¹⁷⁾ 그러므로 社會主義에서 이러한 과잉통화에 의한 초과수요 문제를 행정적인 조치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金融通貨政策의 그러한 수단은 貨幣流通過程에 따라 달랐다. 기업부문의 貨幣流通은 신용계획을 통해 규제되었으며, 그리고 가계부문의 貨幣流通은 現金計劃에 의해 규제되었다. 신용계획은 완전히 생산계획에 의존하였다. 신용계획은 각 기업의 신용에 대한 계획된 수요를 기초로 하고, 기업의 신용에 대한 계획된 수요는 전체 분기별 신용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집계되었다. 실질적

17) 그러나, 이러한 초과수요를 암묵적 인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다.

으로 모든 투자는 정부 예산에서 기업에 융통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은 주로 단기이고 운영자본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발생한 기업의 이윤은 예산당국에 귀속되었으며, 기업이 목표이윤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부족은 정부의 이전지출이나 은행신용으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신용과 정부 보조간의 차이는 사실상 모호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이 사실상 엄격한 예산제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계획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金融流通을 포함한다. 정부가 현금정책에 특히 중점을 두고 기업부문에서 일어나는 貨幣創造에는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 가계부문의 貨幣創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현금만이 자유롭게 이용되는 구매력의 원천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또한 행정적인 조치가 기업부문보다는 가계부문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현금계획을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통화의 증가 요인과 현금통화가 銀行制度로 흘러 들어가는 요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통되는 현금통화의 증가는 임금과 봉급 지급, 집단농장 농부들의 사적 농지의 수확물에 대한 국가 구매, 그리고 가계예금의 인출로부터 발생한다. 현금통화가 시중유통에서 銀行制度로 유입되는 경우는 주로 가계부문에서 국가 또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입, 저축예금의 증가, 그리고 정부채권의 구입의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요인들은 金融制度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通貨金融政策은 주로 현금정책의 효과를 조사하고 계획과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에 경계하도록 경보해주는 데 초점을 둔다. 가계부문이 貨幣供給인 현금통화의 증가는 정기적인 저축드라이브 정책이나 엄격한 임금통제를 통해서 상쇄된다.

Ⅲ . 蘇聯의 貨幣金融制度

1. 1987~88年 改革前의 貨幣金融制度

가. 貨幣金融制度의 設立 背景 및 變遷

소련의 改革前의 貨幣金融制度의 특징은 제1장에서 논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소련의 금융제도는 1987년 개혁이전까지 연방국립은행(Gosbank)을 통해 중앙에서 통제되는 單一銀行制度였다. 이 체제의 主目的은 중앙계획당국이 기업이윤 및 가계저축을 중앙계획메카니즘을 통해 재투자하는 데에 있었다. 이 單一銀行制度의 基礎는 1917년 社會主義 혁명직후 소련공산정권이 신용자원을 장악함으로써 신생정권의 권력기반을 다지고 중앙집권적 경제관리 체제 확립하기 위해 창설되었다.¹⁸⁾ 이것을 위하여 제정러시아의 중앙은행이었던 러시아국립은행을 접수하여 인민은행(People's of the Soviet Federal Socialist Republic of Russia)으로 개칭하고, 1919년에는 제정러시아의 모든 국영 및 민간은행과 기타 금융·신용기관을 인민은행에 통합시켰다.

1921년의 新經濟政策(new economic policy)의 實施, 즉 시장지향적 관리체제로의 부분적 이행은 소련내에서의 은행활동의 재개와 통화개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상공은행(1922년), 전화신용은행(1923년), 중앙산업은행(1924년)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재차 중앙집권화된 경제관리체제로의 이행은 1923년 인민은행을 개칭한 연방국립은행(Gosbank : the State Bank of the USSR)으로 하여금 국가신용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등 국립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수의 금융, 신용기관의 철폐를 가져왔으며 상업신용 및 증권시장 활동을 일소하였

18) Condoido, Mikhail V., *The soviet Financial System : Its Development and Relations with the Western Worle*, Ohio State University, 1986, p.24.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경제의 국유화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1957년에 이르러 금융제도를 재정비하였다. 개인자영 또는 협동조합형태의 상업협동조합은행을 폐지하고 연방국립은행의 지점을 연방 각지에 설치하여 소련내의 모든 기업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토록 조치하였다.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단기대출은 국립은행으로 집중되었다. 일체의 기업간 거래는 국립은행 계좌를 통해 대체결제되었고 결제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립은행이면서도 상업은행업무도 겸하게 된 것이다. 한편, 투자은행, 대외무역은행 및 소련연방국가노동저축금고 등을 정비하여 연방국립은행과 함께 국가소유의 4대은행을 근간으로 하는 銀行制度를 구축하였다.

1961년에는 국립은행에 통합되었던 대외무역은행(the Bank for Foreign Trade of the USSR, Vneshtorgbank)을 분리 독립하였다. 한편 재정을 재원으로 한 장기 투융자업무는 정부개발기관인 연방투자은행(the All-Union Bank for the Financing of Capital Investments, Stroibank)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貯蓄銀行制度는 1963년까지 국립은행의 일부분이었던 국가노동 저축금고로 대표되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소련의 대외경제정책이 변화됨으로써 소련과 서방국간의 금융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소련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보다는 소련계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을 적극 장려해 왔었다. 1919년 런던에 설립된 소련의 최초의 해외현지은행인 Moscow Narodny Bank, 1966년 쥘리히에 설립된 Wozchod Handelsbank와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된 Ost-West Handelsbank는 국제채권시장에서 서방의 수출업자가 소련의 무역공단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거나 무역공단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취급하였다.

이와 같이 1987년 개혁이전에 중앙계획과 관리에 따라 모든 중앙 및 상업적 은행 활동은 Gosbank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수의 국가소유전문은행들은 명확히 규정된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특정 기업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못했다. 더구나, 각 은행은 Gosbank

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었다.

나. 金融通貨政策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987~88년의 개혁이전의 通貨金融政策의 역할과 수단은 1930년초부터 실시한 소련의 중앙계획모형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모형안에서는 모든 실물자원은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배분되며, 통화금융정책은 단지 기업의 투입과 산출의 상세한 생산계획을 반영하는 데 불과하였다. 이것은 통화금융정책이 생산계획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의 규모가 통화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중앙계획에는 생산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이 사적소비, 공적소비, 그리고 투자로 배분된다. 실제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가치분소득의 저축성향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경제내의 필요한 통화량이 결정될 수 있다. 이처럼 소련에서의 통화금융정책의 역할은 생산계획에 따라 경제내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전형적인 중앙계획 경제체제하의 金融通貨政策의 주요 수단이 행정적인 조치였듯이 개혁이전의 소련에서 사용되었던 주요 수단 역시 행정적인 조치였다. 1981~1985년동안 경제에 대한 신용은 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약 3%포인트를 초과한 연평균 8.7%로 증가하였다(〈표 3-1〉 참조).

한편 기업의 예금도 역시 이 기간동안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주로 건설부문에 대한 신용확대와 이로 인한 건설 부문의 기업들의 예금이 증가한 결과이었다.

그래서 1986년 말에 건설산업에 지정된 화폐중에 대부분의 자금이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제거되었으며, 건설부문의 신용도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예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러한 사실

19) 통화량이 생산(또는 불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화폐수량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이러한 통화의 피드백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화폐의 유통을 현금유통과 부현금유통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분화된 통화공급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특정산업에 기업의 과잉유동성이 존재할 경우 그것은 그 재화시장만 계속 고립되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즉, 어느 특정산업의 과잉유동성이 다른 상품 혹은 요소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표 3-1〉

蘇聯의 通貨 및 信用

(단위 : 연평균 증가율, %)

구 분	1981~85	1986	1987	1988	1989	1990(추정치)
M ₁	6.8	7.6	15.7	15.4	14.3	13.4
M ₂	7.5	8.5	14.7	14.1	14.8	15.3
- 가 계	7.2	9.4	9.8	11.3	15.0	13.5
- 기 업	8.7	5.5	32.6	22.5	14.5	20.0
총 신용	8.7	4.2	6.6	11.3	11.2	10.9
- 기 업	8.7	-13.3	-5.0	-6.8	-3.8	-4.3
- 가 계	8.7	18.8	40.3	46.0	30.0	17.2

출처 : IMF, IBRD, OECD, EBRD,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February 1991.

2. 1987~88年 改革以後의 貨幣金融制度

가. 金融制度의 再構成

1987년 소련 정부는 경제효율성 향상, 독립체산제 확립, 자원절약체제 강화 등을 기본경제목표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조치를 금융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²⁰⁾ 처음에 이 금융개혁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다.

① 모든 상업은행기능이 Gosbank로부터 분리되는 이원적 은행조직을 확립

20) 1987년 제27차 소련 공산당위원회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관료회의의 포고령(No. 821) 「소련은행체제의 개선과 경제효율의 향상을 위한 은행체제의 작용강화에 대하여」에 의함.

- ② 특수은행의 수를 늘려서 그 은행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
- ③ 신용 배분에 있어서 특수은행의 독립성 인정 : 위험율, 이윤성, 신용도를 바탕으로 일정한 이자율 규제 안에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④ 새로운 통제 수단의 도입 : 상세한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 신용 계획을 없애고 전체의 신용한도제 도입.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방국립은행(Gosbank)은 발권, 결제 등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에 특화하고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서도 종전의 동행지점을 통한 직접 통제로부터 특수은행에 대한 여신할당방식으로 전환토록 조정하였다. 종래의 투자은행을 산업별로 분할하여 공업건설은행(Promstroybank), 사회개발은행(Zhilsotsbank), 농공은행(Agroprombank)의 3개 특수은행을 신설하는 한편 대외무역은행과 소련연방국가노동저축금고를 대외경제은행(Vneshekonombank)과 저축은행(Sberbank)으로 각각 확대 개편하였다. 은행 국유제를 완화하여 국영기업 및 협동조합에 은행신설을 허용하고 대출실행 여부를 은행이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협동조합 및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은행을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1990년말 현재 250개의 상업은행 및 협동조합은행이 있게 되었다.²¹⁾

나. 金融機關의 種類

(1) 蘇聯聯邦國家銀行(the State Bank of the USSR, Gosbank)

1921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Gosbank는 소련의 중앙은행으로서 유일한 발권은행이며 통화·신용의 관리 및 규제자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서방측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통화유통 및 신용체제의 중앙계획관리를 감독하고 통화금융정책의 규제, 결제, 및 현금운용을 제공한다. 또한 Gosbank는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운용조건과 경제적 제수단을 결정한다. 다만 국립은행은 소련각료회의의 직속으로 되어 있어 신용계획, 현

21) OECD, 'The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Situation of Eastern Europe in 1988 ~89,' *Financial Market Trends*, No.45, Feb. 1990, p.60.

금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나 예금이나 대출금리의 변경 등에 있어서도 소련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경제적 측면에서 국립은행은 국가의 통합적인 외환정책을 추구하고, 루블화 대 외국통화에 대한 공식환율을 결정하고 소련내 외국은행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타 그의 권한내에서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국립은행은 현재 소련내에 15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2) 聯邦特殊銀行

주요과업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특정산업과 활동에 대출 및 투자자본을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계획의 실행을 돕는 것이다. 전문은행은 원래 특정산업을 위해 설정되었지만 1989년 3월이래 고객의 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① 對外經濟銀行(th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BFEA, Vneshekonombank)

대외경제은행은 1987년 10월 6일의 소련정부 결정에 의하여 이전의 소련대외무역은행(Vneshtorgbank)을 기초로 성립된, 소련 은행체계에서 국제경제관계를 전담하는 은행으로서 Gosbank에 의해 감독되는 주식회사이다. 1988년 1월 1일에 소련대외무역은행의 채무를 완전히 인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독립채산제, 외화자기보전제, 자기자금조달제로 운영된다.

특히 소련의 수출입동 대외거래와 관련된 태환결제업무를 수행하고 국제외환 및 신용시장에 참여하여 통화재원에 있어 국가의 필요를 충당하며,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joint venture)의 창설 등도 지원한다. 동은행은 또한 대외지불업무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활동에 관여하는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신용제공을 자기지원(self-support) 및 자체자금조달(self-financing)원칙하에 수행한다.

② 工業建設銀行(Industrial Construction Bank of the USSR, Promstroybank)

공업건설은행은 중공업, 건설, 수송 및 통신과 관련된 산업 및 국가공급배분위원회(the State Committee for Supply and Distribution—원재료 및 기타 투

입요소를 국영기업에 할당하는 정부기구(임)산하의 그룹을 지원한다. 동은행은 재정자금의 교부창구역할과 더불어 자체적으로도 대부를 행한다. 현재 소련내에 약 6000개의 지점을 거느리고 있다.

③ 農工銀行(the Bank for Agricultural Industries of the USSR, Agroprombank)

농공은행은 자본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자금의 용자와 대부) 및 신용을 제공하고 농공콤플렉스의 기업과 조직체, 소비자협동조합체제를 위한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동은행의 활동은 농공콤플렉스의 기업과 조직체의 발전을 위해 할당된 재원의 효과적 이용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약 3,300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④ 社會開發銀行(the Bank for Housing, Communal Services and Social Development, Zhilsotsbank)

사회개발은행은 지방자치주의 서비스, 경공업, 국가소매무역, 주택, 공공 및 개인서비스의 영역에 있어서 신용, 자금지원 및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개인노동활동의 개발, 협동조합네트워크의 개발 및 그들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출도 동은행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다. 현재 44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⑤ 貯蓄銀行(Personal Saving and Credit Bank, Sberbank)

저축은행은 발달된 저축사무소 조직망에 기초를 두고 일반인을 위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국가내의 소매은행조직을 운영하면서 일반 개인 고객을 위한(필요한 경우 조직 및 기관에 대해서도) 비현금거래, 현금결제 및 회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액저축 및 국내신용을 담당한다. 동은행은 또한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조장하며, 아울러 소비자대출도 실행하고 있다. 전국에 4,100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3) 商業 및 協同組合銀行

1988년 개혁 이후 소규모의 협동조합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되어 은행업무를 해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극히 소규모로서 전체 신용발행의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은 국가은행의 통제를 받으며 은행경영진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다.

그러나 상업 및 협동조합은행은 경쟁과 자기충당(Self-sufficiency)원칙하에

설립되어 銀行制度 개편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새로운 형태의 은행설립이 인가됨으로써 대고객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상업 및 협동조합은행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금융지원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부과될 상업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상업의 형태 및 크기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그들 업무는 리스크와 수익성에 기초하여 수행되며 정부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은행은 그들 母組織 (parent organization)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들은 산업의 특정분야에, 특정기업과 특정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상업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소련내에 지점과 방계획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그들의 활동은 여전히 지역적인 데서 그치고 있다.

협동조합은행이 주로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의 느슨한 연합형식으로 최소 자본금 50만루블로 결성되는 반면 상업은행은 보통 部處나 部級機關에 의해 적어도 500만루블이상의 資本金으로 설비된다.²²⁾ 비록 양자가 모두 순수사업적 베이스로 운영되지만 상업은행은 관계부처와의 연관 등으로 주로 부처의 프로젝트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에 통과된 新銀行法은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聯邦銀行制度를 국가은행과 상업은행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4) 國際的 銀行

① IBEC(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1963년에 설립된 IBEC는 COMECON구성원 국가간의 다각적 경제업무, 무역촉진, 일반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② IIB(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1970년 COMECON 회원국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IIB는 社會主義 국가만을 위한 집합적 신용기구로서 가맹국의 자원개발 및 공동프로젝트의 투융자를 촉진하며 나아가 社會主義 경제이상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IMF, IBRD, OECD, EBRD,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Feb. 1991, vol. 2, p.114.

(5) 西方進出 蘇聯銀行

현재 서방에는 소련은행 및 기구(주로 대외무역기구(FTO)의 자본참여에 의한 7개의 소비에트 소유 은행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서유럽국가와 소련과의 대외무역금융에 참여하고 국제지불업무를 취급하는 서방은행에 의해 통상 제공되는 여러가지 상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자본스톡은 소련기구에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원천의 대부분은 소련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진출지역의 법령하에 완전히 공인된 예금 및 신용기관으로서 이들 은행들은 수년동안 여러가지 통화형태의 예금을 수취하여 왔다.

대외경제은행을 중심으로 소련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소재은행은 다음과 같다.

- BFEA 지점(Zurich)
- Moscow Narodny Bank(London)
 - MNB 지점(Singapore)
- Eurobank(Paris)
- Ost-West Handelsbank AG(Frankfurt)
- Donau Bank(Vienna)
- East-West United Bank SA(Luxembourg)
- Bulgarsovinvest(Sofia)

이들 은행은 주재국 법률에 의하여 상업금융 취급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지대출, 서방정부발행의 우량증권 및 지방채 매입이외에 소련의 금매각을 담당하는 대리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중 Moscow Narodny Bank와 Ost-West Handelsbank는 국제통화, 외환, 채권시장 특히 Euro-currency시장에서 주요한 딜러로 활약하고 있다.

(6) 蘇聯內 西方銀行

소련에는 현재 대부분 유럽계를 중심으로 한 약 40개의 서방은행이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진출 외국은행의 대출, 예금수취 및 지급 등 정상적인 상업업무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외국은행대표사무소의 주업무는 자국 기업가의 소련관사 면담주선, 회의 개최 및 시장정보 제공에 국한되고 있으나 서방기업에 의한 소련내 최종 소비자와의 제한된 접촉기회와 소련내 특정기업의 수입필요성 및 수출능력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외국은행사무소가 수집, 제공하는 정보는 본국 은행 및 고객에 유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1989년 10월경에 모스크바에 서방 5개 은행이 참여한 최초의 합작은행인 『국제모스크바은행(International Moscow Bank, Intermoscobank)』이 설립되었다.

자본금 1억루블로 운영되는 동은행의 출자비율을 보면, 서방은행인 Banca Commerciale Italiana(이태리), Credit Lyonnais(프랑스), Creditanstalt(오스트리아), Bayerische Vereinsbank(서독), Kansallis Osake Pankky(핀란드)등이 각각 12%씩 총주식의 60%를, 소련의 Vnesheconombank(대외경제은행), Promstroibank(공업건설은행), Sberbank(저축은행)등 3개 은행이 40%를 출자하고 있다.

다. 金融改革의 主要 結果

金融改革 過程을 두 국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1987년 중반에서 1988년 8월까지를 1차 국면, 2차 국면은 그 이후로 정할 수 있다. 1차 국면동안 5개 특수은행이 Gosbank의 모든 상업적 은행 업무를 이양받고 정부의 출납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목적이 개혁의 1차 국면동안 모든 점에서 거의 실행되지 않은 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상업적 은행업무가 Gosbank로부터 특수은행으로 이양되고 그것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강화되지 않은 점이다. 이것은 엄격한 부문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은행조직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신용 배분은 앞에 언급한 은행간의 취약한 경쟁과 각 특수은행의 각 해당 정부부처에의 종속성 때문에 이윤성과 신용도를 거의 강조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끝으로 전체개혁과정의 일관성 결여는 신용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켰다. 특히 가격 개혁의 지연은 금융 기준에 따른 대부를 제

공하는 업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2차 국면에서는 협동조합에게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었다. 그리고, 국영기업 역시 그들 자신의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가계예금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빠져나와 새로 생겨난 상업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후에 상업 및 협동조합은행이 가계예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저축은행의 이자율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이자율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²³⁾ 한편, 정부가 저축은행의 저축예금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장을 해주지만 상업 및 협동은행의 예금은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문의 금융적 영역에서 은행간 경쟁을 감소시켰다.²⁴⁾

이러한 개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競 爭

개혁은 주로 상업은행의 생성의 결과로서 기업과 가계부문의 금융유통에 경쟁의 요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경쟁은 상업은행이 가계예금에 지불할 수 있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인 특수은행의 부문별 조직 때문에 계속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특수은행의 신용활동이 계속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2) 金融資産의 流動性

개혁기간동안 금융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기업의 자금이 代用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데 있었다. 게다가, 상업은행이 가계 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계 역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상업은행 또는 私的 협동조합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서 두개의 화폐유통

23) 그러나, 상업은행은 이자율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즉 예금에 특별프리미엄을 제공했다던가, 추천을 해서 추천에 당선된 예금에는 최고 25% 이자율을 지급하였다.

24) 예금액을 상업은행의 자본금에 국한시키는 다른 조치도 있다. 박제훈과 신영재, 「최근소련경제개혁관련법령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년의 은행관리법령을 참조할 것.

사이의 인위적인 방해요소가 감소되었기 때문이었다.

(3) 金融機關

은행부문에 자원 배분의 보다 활발한 역할이 주어졌다. 국가특수은행은 신용도내에서 계획목표에 따르기 보다는 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은행들은 주로 수익성과 신용도에 기초를 두고 대부를 하게 되었으며,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상업은행들도 가계 부문의 금융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4) 金融市場

은행간의 화폐시장이 설립되었다. 국가 특수은행은 적어도 원리상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서로 빌려주고 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증권에 대한 시장은 계속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쟁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이고 저축은행의 독점 지위가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게다가, 연차계획은 계속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다 상업적 기준에 의한 새로운 신용정책은 개혁의 여러부문에서 아직 개혁이 되고 있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가격개혁이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어서 통화신용정책의 간접적 수단인 이자율의 효과를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불완전성은 1980년 후반에 화폐적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라. 金融通貨政策의 修正

改革以前에는 信用의 目標가 초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대부의 총액이 신용계획과 차이를 보일 때 이것이 담지할 수 있는 정확한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신용이 계획된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계획이윤과 실현이윤의 차이가 자동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보전되고, 또 주요 기업이 보다 많은 신용을 은행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데 원인이 있었다. 달리 말하면, 다른 기업의 신용배분을 감소시켜서 전체신용과잉을 상쇄시키는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計劃目標以上の 貨幣創造가 초래되었다.

개혁후 각 시장의 상호 연계성이 개선되어 한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이 쉽게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에서의 금융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활동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에 재정정책의 종속적인 역할로서 생산 계획에 필요한 통화량을 공급하는 역할에서 金融政策의 역할이 첫째, 巨視經濟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과, 둘째 실질적이기 보다는 아직도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效率的인 資源配分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특수은행은 위험성과 수익성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정책의 역할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신용계획의 성격 역시 변화하였다. 개혁이전과는 달리 신용계획은 기업의 대출수요와 공공부문의 적자를 경제의 나머지 부문의 저축으로 균형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信用計劃은 巨視的인 經濟均衡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금융통화조절수단 역시 변화하였다. 개혁전에는 행정적인 조치에 의한 신용정책의 수량적 관리가 주요 수단이었던 반면, 개혁후 새로운 직접수단들이 도입되었다. 그것의 적용은 은행형태에 따라 달랐다. 국가소유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두가지 통제수단이 사용되었다.²⁵⁾

① 각 은행의 신용한도는 총 신용계획안에서 경제부문들의 신용 수요를 추정한 후 결정된다. 그러나, 은행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무한정 한 신용공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이 계획보다 많은 예금을 확보했을 경우 은행의 신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것은 계획된 것보다 적은 예금을 확보한 은행도 여전히 원래의 신용한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원을 모은 은행은 신용을 공급함에 따라 전체신용창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② Gosbank의 재금융 쿼타는 각 은행 자원의 예상되는 증가, 은행 총 신용공급의 증가목표, 그리고 예금과 대출의 만기결합도(maturity match)에 따라 결정된다. 재금융 이자율은 은행에 따라 다르다. 재금융 액수가 증가할 수

25) 소련의 은행관리법, 박제훈과 신영재, 전계서를 참조할 것.

록 그것의 이자율은 높아진다.

특수은행에 대해 이같이 직접수단이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상업은행에 대한 금융통제는 간접 수단에 보다 의존한다.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가 없었다. 나중에 5%의 법정지급준비금제가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1990년 10월에는 10%로 올랐다. Gosbank에 의한 재금융은 극히 제한된 액수일지라도 역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자본과 부채비율규정, 최저자본금제, 고객 1인에 대한 최고대출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되었다.²⁶⁾

마. 改革後의 通貨膨脹 問題

불완전한 연속적 개혁이 1980년대 후반에 화폐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기업부문에 주어진 자율성으로 인하여 자원이 정부당국으로 귀속되지 않고 기업으로 돌아갔다. 특히, 기업은 많은 자기 소유 자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기업의 투자에 자금조달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적 분권화 과정으로 말미암아 기업소유자금의 代用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서 자원의 실질적 화폐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충격을 상쇄하고 정부자금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1980년 후반에 기업에 대해 보다 전반적인 금융조치로서 긴축신용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내 순신용은 계속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주로 적자 재정이 화폐화된 것에 원인이 있다. 또한 기업의 내부에 생성된 자금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에 의한 신용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아서 기업사이에 과잉 유동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 소비의 증가율 이상으로 자율기업들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게 됨에 따라 가계부문에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표 3-1〉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1986~87년동안 정부의 은행자금 조달은 연평균 40.3%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 신용은 5.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에 이미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M2)의 증가율은

26) IMF, IBRD, OECD, EBRD, 전게서, vol. 2, p.117~119.

연 14.7%(가계에 대해서는 9.8%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32.6%)까지 가속화되었다.

1988~89년에는 정부의 은행자금 조달의 증가와 더불어 대기업부문 신용에 대한 억제는 총 통화공급의 증가율의 가속화를 막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대정부신용은 연 30.0%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대기업 신용은 3.8%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로서 총은행신용의 증가율은 연 11.2%까지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가계의 화폐잔고는 연 15%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융자산 만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기업의 유동성은 연 14.5%로 증가하였으며, 이 자금의 유동성 역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화폐과잉 현상이 가계와 기업 부문 모두에서 나타났다.

1990년에는 대정부 신용의 증가율이 예산적자가 줄어들어 따라 반이상 줄어들어 한편, 대기업 신용이 1986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리하여 전체신용의 증가는 10%이상의 수준에서 거의 변함이 없었다. 가계의 M2의 증가율은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기업의 화폐 증가율은 부분적으로 은행신용의 증가와 소비재의 재고 감소를 반영하면서 확대되었다. 그 결과로서 전체 통화(M2)의 증가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3. 1990年 2次 金融改革

가. 中央銀行法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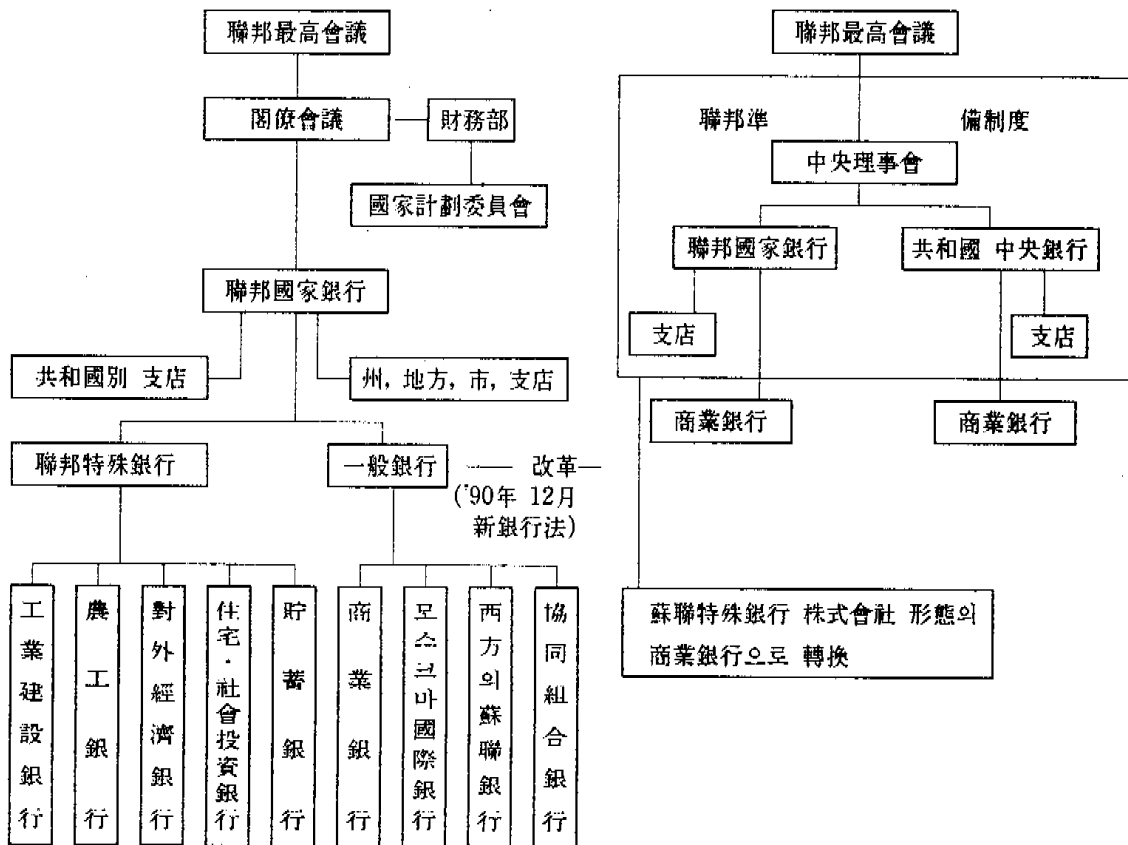
1990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승인된 중앙은행법은 조직면을 포함하는 통화금융제도의 구조와 국제지급준비 운영은 물론, 통화, 환율, 은행감독 등의 정책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리 수단의 문제, 허용되는 상업은행 형태, 감독, 그리고 은행조직에서의 경쟁 등이 새로운 법과 銀行制度의 지침에서 결정된다.

27) 박제훈과 신영제, 전제서, p.51~81.

(1) 금융통화제도의 구조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법은 Gosbank와 공화국 중앙은행으로 구성하는 연방준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제도는 단일 화폐단위에 기초하고, 중앙 이사회라고 불리우는 총재회의는 단일화된 통화 및 신용정책을 수행하며 전체은행조직에 대한 단일은행활동의 준칙과 규제를 정한다. 공화국은 연방준비제도(Union Reserve System)의 법에 따라서 독자적인 은행법을 채택한다. 중앙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된다.

〈그림 3-1〉 蘇聯의 銀行制度의 改革



출처 : 박제훈,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4. p.83.

Gosbank의 총재와 부총재(임기 6년, 소련의 최고회의에서 임명된다) 각각 1명씩과, 소련 대통령에 의해서 중앙은행의 총재들 혹은 공화국의 지도자들중

에서 순번식으로 임명되는 10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이사회는 통화 및 신용 이사회이다. 공화국 국립은행의 활동은 연방준비제도에 종속되어 있다. 통화와 신용정책에 있어서는 그들의 역할은 중앙이사회에서 결정된대로 정책을 이행하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2) 中央銀行의 獨立性

중앙은행은 통화와 환율 정책, 은행활동의 감독규제, 그리고 금융관계의 측면에서 정부당국과 독립되어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와 신용의 주요 지침과 목표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최고회의에 그것을 제출한다. 법은 金融通貨政策과 換率政策의 융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일찌기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동연방공화국외환자금이 연방준비제도의 영역 밖에서 설립된 상황에서 통화와 외환 정책이 어떻게 융합될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한편, 새로운 법은 연방과 공화국 정부의 은행자금조달을 최고회의가 승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안에서 Gosbank와 공화국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증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최고회의에서 결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일정금액의 단기 신용을 할 수 있다.

(3) 通貨調達 手段

직접 및 간접 수단의 사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제 재금융 쿼타와 필요자금 준비금과 중앙은행들에 의해 부과되는 이자율의 변동을 통한 이자율 정책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양적신용한도와 이자율의 규제가 허용되지만 이것은 통화공급과잉과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한 잠정적인 조치는 최고회의에의 통화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는 중앙이사회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다. 잠정적 조치의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며, 그것도 중앙이사회에의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 소련의 대통령에 의해 그것은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

(4) 競爭과 銀行間 貨幣市場

銀行制度안에서의 경쟁은 대형 국립특수은행을 독립합작회사로 분할하거나 새로운 상업은행의 설립으로 되고 있다. 대부분 은행의 업무영역은 보편적(universal)이고 경쟁적 기초위에서 고객을 고를 수 있다. 몇 개의 특수은행은

주요 연방 혹은 공화국 투자계획에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있다. 은행소유에 외국인 참여는 허용되어 있다. 지급 및 결제 방법의 개선은 화폐자원의 움직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제거할 것이다. 은행의 등록과 감독은 공화국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銀行法은 특수은행에 상업은행업무를 허용하면서 다른 상업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주고 있다. ①Gosbank는 저축은행에 있는 가계예금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다른 은행의 예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②저축은행을 제외하고 가계예금을 유인하는 모든 상업은행은 특별 지급준비금을 보유한다. 그 자금의 크기는 개별 공화국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규정은 예산의 금융에 대한 가계저축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예금에 대한 경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나. 利率率 措置

최근까지 이자율정책이 특수은행과 상업은행에 적용되었다. 특수은행은 기업예금에 평균 0.5% 이상, 가계예금에는 2~4% 이상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수은행의 대출이자율은 차입자의 금융조건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Gosbank에 의해 부과되는 재금융율 이하이다. 한편,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허락되어져 있다. 가계예금의 이자율은 약 6%, 대출이자율은 9%이다. 60%의 이자율이 초단기 대출에 적용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 4월 이후 상업은행의 가계예금이자율은 저축은행의 예금이자율에 한정시켰다. 그리고, 1990년 11월 1일부로 다른 이자율과 함께 행정적으로 가계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만기에 따라 5~9%까지 올렸다. 1~3년 만기에 5%, 3~5년 만기에 7%, 5년이상에 9%까지 인상하였다. 대출이자율도 최고 15%까지 증가하였다. 정부는 가계의 저축예금을 가격수준에 연동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에는 기업의 예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표 3-2 참조〉).

〈표 3-2〉

蘇聯의 利率率 推移

(단위 : %)

구 분	1981~85	1986~87	1988~89	1990(추정치)
명목이자율				
요구불 예금	2.0	2.0	2.0	2.0
저축예금	3.0	3.0	3.0	4.0
은행대출(평균)	2.4	2.4	2.5	2.8
실질이자율				
요구불예금	0.9	0.3	0.7	-1.6
저축예금	2.0	1.3	1.7	0.3
은행대출(평균)	1.4	0.6	1.2	-0.9

출처 : IMF, WB, OECD, EBRD,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February 1991.*

다. 換率 措置

1990년 11월 1일에 상업환율은 공식환율에 비해 외국 화폐의 견지에서 2/3가 절하되었다.²⁸⁾ 이것은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를 기도하며 소련의 외화사정을 개선하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이 환율 조치의 또 다른 내용은 루블환율을 공식환율, 상업환율, 특별(여행자)환율 및 외환경매환율등 네가지로 하되, 환산계수는 철폐하여 단일환율제로의 이행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²⁹⁾ 90년 11월 1일부로 각 환율은 다음과 같다.

공식환율 : 1US\$ = 0.5542루블(〈표 3-3〉 참조)

28) 「외자에 대한 상업환율 도입과 연방외환시장 창설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한 것임.

29) 환산계수는 대외무역가격을 국내가격과 균등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계수로서(대내환율-대내도매가격과 대외무역가격의 비율)로 계산된다. 이것은 정부재정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세금 등에 의한 가격균등화 메카니즘에 의한 수출입관리 방식 대신에 개별기업의 권한이 강화된 조건하에서 국내가격의 국제가격으로부터의 괴리를 어떤 면에서 대외무역의 국가관리체제를 존속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상업환율 : 1US \$ = 1.6626루블³⁰⁾

특별환율 : 1US \$ = 5.542루블³¹⁾

공식환율은 그 용도가 현재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제분석 및 국제통계비교, 제3세계 채권회수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³²⁾ 무역결제 및 소련에 대한 외국투자 등 주요 경제활동에는 모두 상업환율이 적용된다. 상업환율은 통화바스켓의 환율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외환시장은 기업보유외환과 국가보유외환의 공급으로 확립될 것 같다. 은행과 브로커들이 자유외환시장에의 직접적 참여자가 될 것이다. 특별환율이 여행자들의 거래를

〈표 3-3〉 US\$당 루블의 공식환율추이

연 도	루블/US \$	연 도	루블/US \$
1971	0.90001	1981	0.72212
1972	0.82900	1982	0.72615
1973	0.73625	1983	0.74215
1974	0.75672	1984	0.81094
1975	0.72140	1985	0.83381
1976	0.75392	1986	0.70321
1977	0.73688	1988	0.60711
1979	0.65542	1989	0.63000
1980	0.64906	1990*	0.60000

* 1990년 11월 1일 부터 상업환율은 1US\$당 1.8루블임.

출처 : WIIW Data Bank. 박제훈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1991. 4. p. 97에서 재인용.

30) 대통령령에서는 상업환율이 1US\$ = 1.8루블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업환율이다.

31) 소련은 1991년 4월 특별환율인 여행자 환율을 1US\$당 27.6루블로 5배 가까이 평가 절하하였다.

32) 박제훈,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4. p. 92.

위해 강제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상업은행과 자유시장환율은 태환통화에 대한 주요 환율이다. 상업환율이 어떻게 자유시장환율과 연계되어 관리될 것인가는 분명치 않다.

4. 展望과 問題點

현재 소련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통화와 외환 장치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특히 현재의 통화과잉의 문제에 비추어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그리고 화폐유통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일 것이다. 막대한 통화공급과잉은 상품부족과 전형적인 환율 프리미엄의 상승을 초래한다.³³⁾ 프리미엄이 증가할수록 몇 가지 중요한 비용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자유환율이 상업환율보다 더 낮게 된다면 이 환율의 차이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정부규제를 우회하거나 재정거래를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수출회피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는 수출을 암묵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이 통화바스켓을 이용하여 상업환율의 수준을 안정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상업환율이 시장청산환율과 관계된 통화바스켓과 연계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외국의 무역 상대국 및 경쟁국의 인플레이션율과 거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가격 자유화 이후 즉각 나타나지 않으므로, 탄력적인 환율제도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複數換率制는 정책 목표사이의 근본적인 부조화와 비일관성에 대한 장기적 치유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수의 환율로 얻어지는 탄력성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커다란 환율 차이가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단일환율제로의 급속한 수렴이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利率이 최근에 조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장래에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이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재정적자와 같은 다른 근본적인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

33) 환율 프리미엄이란 자유시장환율간의 차이를 말한다.

고, 이자율정책으로 상업환율과 국내가격수준사이의 부조화를 시정할 수 없다. 이자율은 외국자산에 대한 국내금융자산의 매력을 높여서 자유시장 프리미엄을 낮추면서 자유시장환율과 상업환율 사이의 차이의 잠정적인 확대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항구적 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면 이자율 증가로 그것을 줄이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金融制度의 現 改革은 산업화된 市場經濟의 金融制度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제도는 정치적 압력이 통화 금융 정책의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보다 경쟁적인 상황하에서는 通貨政策의 효과적인 수행은 정책공시의 신뢰성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안은 정책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은행에 의 외부압력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장래, 정책을 변화시킬 외부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신용정책과 通貨政策이 연차연방예산과 함께 소련의 최고회의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³⁴⁾

현재 소련의 貨幣金融制度는 經濟體制가 그러하듯이 전통적 중앙계획 모형에서 市場基調 貨幣金融制度로 이양해 가는 과도기적 체제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체제 때문에 과잉유동성 발생과 통일되지 않은 은행감독규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결정활동과 시장기구와 금융제도에 맡겨 놓기에 가장 좋은 활동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중복될 경우 두 개의 의사 결정은 매우 혼란스러워져서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34) 사실 정치권력으로 부터 중앙은행의 완전 독립성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의 분시되고 있다.

IV. 中國의 貨幣金融制度

1. 改革前의 貨幣金融制度의 變遷

中國도 1979년 經濟改革政策을 실시하기 以前까지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형태를 따른 單一銀行制度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中國의 金融制度는 1950년초에 생성되었는데, 그것은 1949년 공산화 이후 中國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에 따라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의 實施에 따른 것이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國有化가 추진되었고, 金融產業에 있어서도 기존의 金融機關이 모두 國有化되어 統廢合되었다.³⁵⁾

1977년 以前까지 中國은 中國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특수업무를 관장하는 中國은행과 中國인민건설은행 등으로 그것을 支援케 함으로서 3개 은행만을 설립 운영하였다. 中國인민은행은 1948년 12월에 國營은행으로 설립되었다가 문화혁명을 맞아 1969년~1977년 동안 정부에 흡수되었다. 그후 〈그림 4-1〉에서 보듯이 1978년 3월 國務院의 部에 準하는 지위로 승격되어 國무원 구성기관이 되었다.³⁶⁾ 1983년 9월 이전까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및 저축금융기관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기관과 國營기업에 대한 예금과 대출업무를 취급하였다. 또 國營경제부문의 구조개설을 하고 이를 통한 대체결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983년 9월부터 중앙은행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中國銀行은 1912년 2월 戶部銀行을 개편하여 정부, 민간합작으로 발족하여 1949년 인민은행의 통제하에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외국환전문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3월에 國무원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었다. 中國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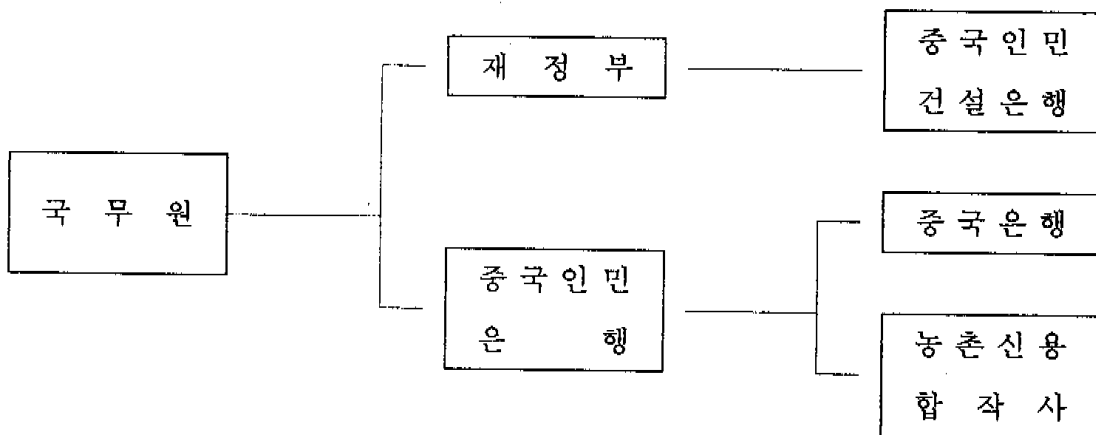
35) 예를 들면, 1950년 초에 상해에 약 100여개의 은행이 있었는데, 그 중 소수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남아있던 소수의 은행들도 全產業의 사회주의 개조 원칙에 따라 公私合營方式으로 公私合營銀行에 합병되었다가 1952년에 이것마저 中國인민은행에 합병되었다. 그 후 30여년동안 中國인민은행 하나만이 단일은행제도가 실시되었다.

36) Hsiao, Kathari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ommunist Chin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p.23~24.

민건설은행은 1954년 10월에 개발금융 專業은행으로 설립된 것으로 설립당시 재정부 산하의 기관이었다. 동은행은 기업투자 재원을 공급하고 투자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79년 8월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 기간동안의 은행의 역할이란 주로 국가경제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때 재정자금은 기업에 無利子로 배분되고 기업의 이윤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다. 화폐제도 역시 소련의 모형을 그대로 본딴 것으로서 제1장에서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림 4-1〉 改革以前の 金融制度



주: _____는 직속관계를 표시.

2. 貨幣金融制度의 改革

가. 改革의 背景 및 目標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련의 경제개혁조치와 그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는 금융제도의 조직과 은행의 역할에 개혁을 요구하였다. 과거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는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指令性 計劃과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각 개별 개체의 경제행위를 간섭함으로써 국가전반의

37) Wilson, Dick, 'How Banks Work in China,' *The Banker*, Jan. 1980, p.19.

경제활동을 조절 통제한 방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은 위축시키고 사회 경제운용을 경직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效率性 低下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貨幣金融制度 역시 개혁되어야만 했다.

經濟體制 調整措置에 따라 개인의 영농 및 기업설립이 허용되어 가계의 현금수입이 늘어나고 기업자주권 확대 등으로 기업이윤 상납금의 축소와 유보금의 증대 등 자금흐름의 변동을 가져왔으며 더우기 외국인의 대중국합작투자의 촉진등 대외개방정책 운용으로 국제금융부문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통제경제체제는 점차 축소되고 시장경제 영역이 확충되면서 경제개발추진에 따라 경제건설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조정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만 했다.

經濟改革 政策을 지원하기 위한 金融改革은 첫째, 자금동원의 극대화과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둘째, 거시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금융제도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나. 改革의 主要內容³⁸⁾

이러한 목표하에 금융개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이 과거의 정부의 無償貸與에서 銀行을 통한 有償 貸出로 전환한다.

둘째, 자금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이자율을 현실화시키고 각 경제단위간의 清算制度를 개혁한다.

셋째, 거시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中央銀行의 機能을 強化한다.

넷째, 專門銀行에 대하여는 경영자주권, 대출자금의 조달 및 운용권, 허용범위내에서의 이자율 결정권, 기구 내의 조직 설치권, 이윤 유보권, 獨立採算制 등의 自主權이 부여되어 銀行의 企業化를 촉진한다.

38) Chiia, Pei-hsin, 'Some Proposals on the Reforms of Bank Works,' *Chinese Finance*, V.3, 1980, p.15.

다섯째, 종전의 수직적 자금분배구조를 개선하여 각 지역간, 각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는 수평적 분배체제를 확립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업종간 金融市場을 건립한다.

다. 改革의 結果

1979년 金融改革 以後에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央銀行의 機能強化, 둘째, 一般銀行의 機能強化와 企業化, 셋째, 金利機能의 強化, 넷째, 金融 및 資本市場의 발달 등이다.

(1) 中央銀行 中心의 金融制度와 그 機能強化

1986년 銀行管理暫定條例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예금이자율의 상한 및 대출이자율의 결정, 예금지급준비율의 조작, 人民幣의 외환시세 결정, 국가 종합 신용대부계획의 편성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역할을 보다 강화되었다.³⁹⁾ 中國人民銀行은 1984년 1월 상업금융업무를 분리하고 중앙은행으로서 거시적 통제기능과 각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관리 금융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4-2>와 같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각 특수분야 금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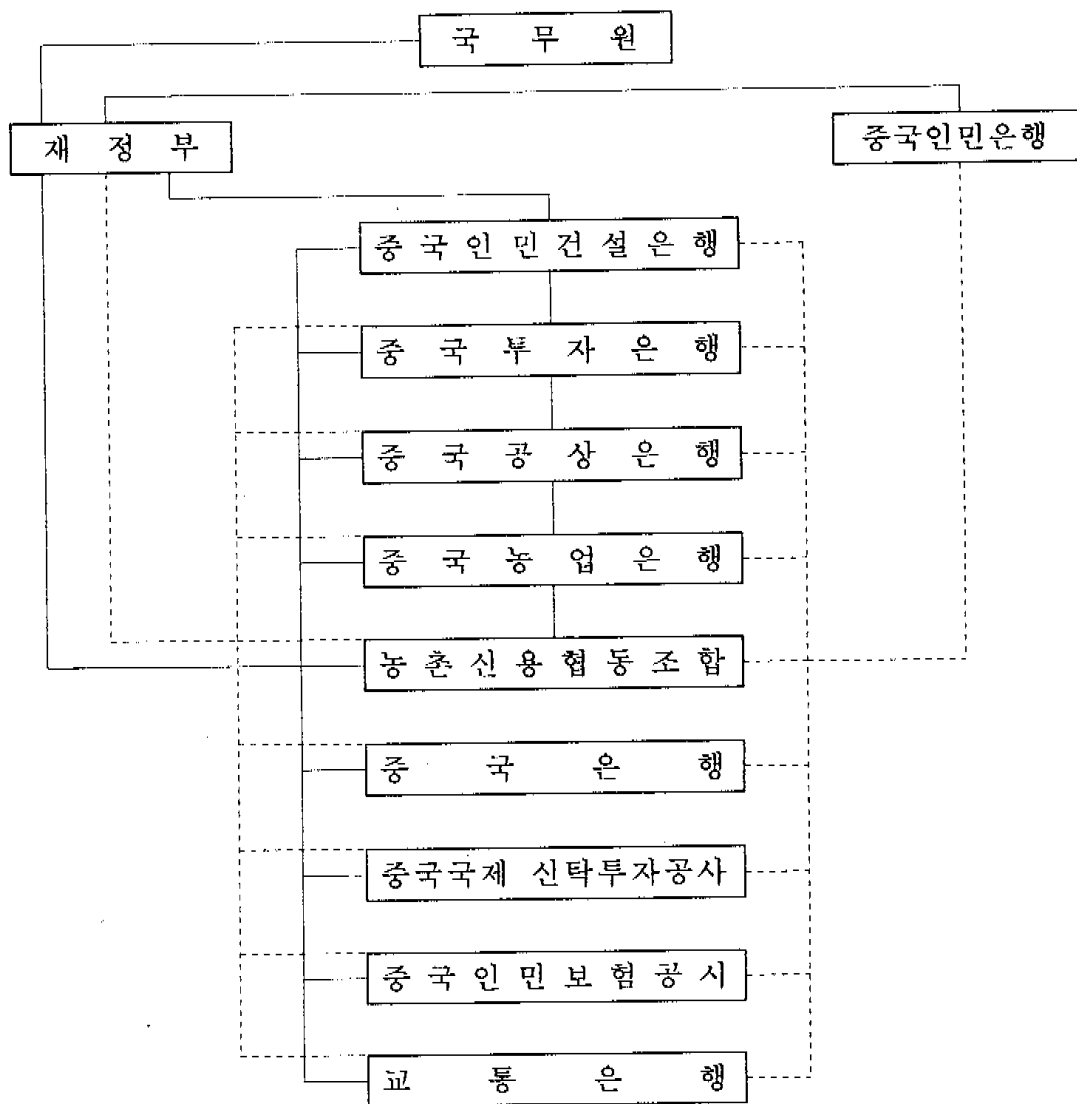
中國人民銀行으로부터 工商信用部를 분리하여 상업은행인 中國工商銀行을 별도로 설립(1984.1)하였고 농업금융업무를 독립시켜 中國農業銀行을 신설(1979.3)하였다.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中長期 借款을 도입하여 국가기본건설에 필요한 비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1979.10) 및 中國投資銀行(1981.12)을 설립하였다.

中央銀行은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정책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 여러가지 금융조절수단을 사용하였다. 과거 직접적인 행정적 금융조절수단을 줄이고 간접적 조절수단의 하나인 再割引 制度를 1979년에 도입했고 경제여건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변경함으로써 通貨金融을 조절하는 支

39) 산업연구원, 『북방지역국가총람』, 1991, p.74.

給準備金制度를 1986년에 도입하였다.

〈그림 4-2〉 中國의 現行 金融機關 組織



주 : _____ 종속관계
 - - - - - 업무협조관계

출처 : 산업연구원, 『북방지역국가총람』, 1991.

(2) 一般銀行의 企業化와 機能 強化

은행의 기업화를 위해 은행에게 경영의 자주권, 대출 자금의 조달과 운영권, 이자율의 허용 범위내에서의 결정권, 간부의 임명권, 직원의 고용과 상벌권, 기구내의 조직 설치권, 이윤 유보권 등을 갖는 경영책임제를 도입하여 정부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고 있다.⁴⁰⁾

은행은 기업에 대해 자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원리금 상환조건을 부과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원동력 확대를 위하여 1979년 이후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저축중대를 위하여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외자도입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79년 이후 기업의 은행의존도가 높아지자 은행은 대출채권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하였다.

〈표 4-1〉

中國의 각 부문별 銀行貸出 推移

(단위 : 億元)

구 분	1979	1980	1983	1985	1987	1989
공업생산기업	363	432	597	1,165	2,043	2,724
공업구판물자부문	242	236	268	380	494	582
상업기업	1,232	1,437	1,979	2,649	3,506	4,100
건축기업				267	467	601
도시집단 및 개인기업	58	78	159	321	550	708
농업대출	137	168	231	417	686	895
고정자산대출	8	6	196	705	1,287	1,776
기 타						346
대출총액	2,040	2,357	3,430	5,904	9,033	11,732

출처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중국경제통계』, 1990.12.

40) 산업연구원, 전제서, p.74.

〈표 4-1〉에서 보는 바와 은행의 대출규모를 보면 1979년에 2040억 원이 1989년 1조 1,732억 원으로 약 6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固定資産 대출규모를 보면 1979년에 8억 원이었던 것이 1989년에 1,776억 원으로 222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혁후 은행의 활동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金利機能의 強化

「利潤=搾取」라는 사회주의적 관념때문에 預貸金利가 상대적을 낮게 책정되는 등 금리의 기능이 미약하였으나 1979년 이후의 改革政策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였다. 1953년과 1979년 사이에 대출과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매우 낮았다. 1979년초에는 은행예금에 단지 3개의 이자율만이 있었다. 요구불예금의 2.16%, 정기예금의 3.24%, 해외거주 중국인에 대한 영구정기예금의 3.96%가 그것이었다.⁴¹⁾ 대출이자는 1959년에 연 7.2%로 단일화되어 있었고 그 후 工商業 企業에 대해서는 5.04%까지 하락하였으며 農業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문화혁명때 이자율은 자본주의적 유산과 착취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이자율의 폐지론이 나온 적이 있다.⁴²⁾

1979년 이후 이자율이 인상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4월 국무원이 주민저축예금 金利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7차례나 금리수준이 인상되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1980년 9월에 중국인민은행은 기업이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7.92%, 대출금리가 5.96%였고 1989년에는 정기예금의 금리가 13.14%, 대출금리가 12.78%였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비교해 볼 때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금리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높여 생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였다.

41) Hsiao, Katharine, *Money and Banking in the Chinese Mainland*,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Taipei, Taiwan, Republic of China, June 1984, p.56~57.

42) Liu, Hung-Ju, *Issues of Socialist Money and Banking*, Peking : Chinese Financial and Economic Press, 1980, p.222.

〈표 4-2〉

中國의 金利變動 推移

(단위 : 년리 %)

구 분	'79.4	'82.4	'85.4	'87.4	'89.4	'90.1
〈수신금리〉						
1. 요구불예금(기업단위)		1.80	1.80	1.80	2.88	2.88
2. 정기예금 1년		3.60	4.32	5.04	11.34	11.34
(기업단체) 2년		4.32	5.04	5.76	12.24	12.24
3년		5.04	5.76	6.48	13.14	14.04
5년	(88년 신설)				14.94	15.84
8년	(88년 신설)				17.64	18.54
3. 주민저축예금						
요구불예금	2.16	2.88	2.88	2.88	2.88	2.88
정기예금 반년		4.32	5.40	6.12	9.0	9.0
1년	3.96	5.76	6.84	7.20	11.34	11.34
2년	(88년 신설)				12.24	12.24
3년	4.50	6.84	7.92	8.28	13.14	14.04
5년	5.04	7.92	8.28	9.36	14.94	15.84
8년		9.0	10.44	12.42	17.64	18.54
〈여신금리〉						
1. 유동자금대부		7.20	7.92	7.92	11.34	
2. 결산용대부		3.60	3.60	3.60	3.60	
3. 고정자산대출						
1년이하		5.04	5.04	7.92	9.0	
1~3년		5.76	5.76	8.64	12.78	
3~5년		6.48	6.48	9.36	14.40	
5~10년			10.08	10.08	19.26	
10년이상			10.80	*기간별 금리결정		
4. 기본건설투자대부	*업종, 프로젝트 별로 상이					
1년이하					11.34	
1~3년					12.78	
3~5년					14.40	
5~10년					19.60	
11년					20.7	
12년 이상	*기간별로 금리결정					
5. 도시개이공상, 운수, 서비스					11.34	내외

출처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중국경제통계』, 1990.12.

(4) 金融 및 資本市場의 育成

신탁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조합회사 등 非銀行 金融機關들을 설립하였고 금융개혁에 따라 중앙은행에 집중되었던 신용자원의 관리가 각 금융기관에 분산됨으로써 이들 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餘力이 생기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자금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콜시장을 창설하였다. 콜시장에는 都市信用組合을 중심으로 한 콜머니시장과 農村信用組合을 중심으로 한 농촌 콜시장이 있다. 1989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콜거래된 금액이 3,100億元 정도인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은행간 이루어진 콜거래액이 2,332億元을 기록 전체거래액의 87%를 차지하여 중국의 콜거래는 주로 은행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³⁾

1984년 이후 주식회사제도가 試驗的으로 도입되면서 주식발행이 개시되었으며 1981년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대함에 따라 유통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6년 8월 瀋陽에 최초의 채권시장을 개설한데 이어 동년 9월에는 上海에 주식거래소를 개설하였다. 이후 북경, 서안, 광주, 번양 등지에 증권거래소를 차례로 설립하여 店頭去來 형식으로 증권거래를 확대하였다. 또한 1990년 12월 최초의 회원제 증권거래소를 상해에 설립함으로써 상장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증권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Computer-Network를 이용한 증권자동거래시스템(Securities Trading Automated Quotation System : STAQS)을 개설(1990.12)하였다. 이에 따라 北京, 上海, 廣州, 武漢 등 7개도시에 20여개의 증권회사가 참가하는 전국적인 전산거래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라. 改革後의 通貨膨脹 問題

改革의 부산물로 중국경제에 나타난 超過 需要의 상존, 소비기금의 급속한 증가, 기본 건설투자 규모의 과다, 通貨發行量의 남발 등의 요인에 의해 1984

43) 이민형, '중국금융제도의 개혁', 『중국연구』 제8집(별책),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89, p.13.

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通貨膨脹이다. 중국에서의 초과수요와 소비기금의 급속한 증가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기업부문에 주어진 자율성 증가로 인한 자기 소유자금의 화폐화의 증가에 기인하며, 건설투자 규모의 과다는 財政赤字를 유발하여 정부가 이 재정적자를 貨幣化함으로써 通貨膨脹이 야기되었다.

〈표 4-3〉 中國의 通貨供給, 價格指數, 인플레이션, 그리고 GNP

(단위 : 10億元, %)

년	현금통화	M1	M2	OPI(%)	MPI(%)	GNP	inf.
1979	26.77	129.17	145.81	124.0	211.6	399.8	2.0
1980	34.62	153.80	184.29	131.1	215.8	447.0	6.0
1981	39.63	183.81	223.45	134.6	228.3	477.3	2.4
1982	43.91	207.05	258.05	137.2	235.8	519.3	1.9
1983	52.98	239.27	307.50	139.3	245.7	580.9	1.5
1984	79.21	324.54	414.63	143.2	244.7	696.2	2.8
1985	98.78	365.91	488.43	155.8	286.8	856.8	8.8
1986	121.84	435.24	626.16	165.1	310.0	972.6	6.0
1987	145.45	530.82	766.45	177.2	360.5	1135.1	7.3
1988	213.40	645.22	928.89	210.0	469.7	1401.5	18.5

출처 : 『중국통계연감』, 1989, 북경, 중국.

주 : OPI=공식소비자물가지수(official general retail price index : 1952=100). MPI=소비재의 자유시장가격지수(free market price index of consumer good : 1952=100). GNP=국민총생산량(명목).

inf.=공식소비자물가로 계산된 물가상승율.

〈표 4-3〉이 보여주듯이 1985년 이전까지는 물가상승율이 평균 3%미만으로 경제가 안정되어 있었으나, 1985년에 물가상승율이 8.8%였고 1988년에는 물가상승율이 18.5%까지 되는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3. 改革後의 金融制度

가. 金融機關의 種類

(1) 中國人民銀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人民銀行은 1983년 9월부터 中央銀行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그 기능을 보면 먼저 거시적 通貨信用政策의 수립·시행기능으로는 인민폐의 발행 및 유통통화의 조절, 국가의 수신·여신계획의 수립, 신용자금의 집중관리 및 국영기업 운영자금의 통일관리와 함께 예금·대출금리 및 지급준비율의 조정, 외국통화에 대한 인민폐의 환율결정 등이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설치 및 통폐합에 대하여 심사, 인가하고 전문은행 및 기타금융기관의 업무감독,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고를 관리하고 국채를 발행하며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금융활동을 수행한다.

이것의 이사회는 행장, 부행장 1명, 재정부 부부장, 각 專業銀行長 5명, 인민보험공사사장, 국계획위 부주석 1명, 국가 경제 계획위 부주임 1명, 고문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약 15,000개의 사무실이 있고 직원수가 약 330,000명이 된다.⁴⁴⁾

(2) 中國銀行

중국은행은 인민은행과 같이 국무원의 직속기관이다. 그러나, 국무원은 그 관리를 인민은행에 위임하여 사실상 인민은행의 감독하에 운영한다.⁴⁵⁾ 1950년에 중국은행이公私合營會社였으나 1980년 국무원에 의한 중국은행 규정의 수정에 따라 국영기업이 되었다.

주요업무로는 외국환관련업무로 대외무역 및 무역거래의 결제업무, 외국은행과의 예금 및 대출업무, 외국환매매업무, 국제금거래업무 등이 있다. 또한 외화예금 및 대출업무와 함께 중국인민은행의 허가에 따라 人民幣豫金을 수취하고 수출금융 등의 人民幣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런던 및 홍콩분

44) Wilson, Dick, 전게서.

45) Wilson, Dick, 전게서.

점 등은 국제신디케이트론의 조성 및 참가업무를 수행하며 자회사인 중국은행신탁자순공사, 중국유한리스공사 등이 경영자문업무 및 리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中國人民建設銀行

중국인민건설은행은 1954년에 설립된 이래 국가기본건설계획에 의거한 대규모투자계획사업에 대하여 재정자금을 교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79년 이후에는 재정자금의 공급방식이 점차 융자로 전환되고 예금, 채권, 외자 도입 등 자체재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⁴⁶⁾

同行은 국가계획에 따른 기본건설사업 및 기술개조사업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금과 정부 및 기업의 위탁대출기금을 대출하며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한 예금과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외자를 도입하여 계획사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4) 中國工商銀行

중국공상은행은 1984년 1월에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분리 설립되었다. 同行은 인민은행의 일반은행업무를 승계하여 도시지역의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예금을 수취하고 금융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며 주로 국영·집단소유제기업 등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국영기업의 운영자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 개량기금을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 개량 자금을 대출하며 중국인민은행의 위임에 따라 국고출납업무 등을 대행하는 한편 최근에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5) 중국농업은행

중국농업은행은 1951년에 중국농민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인민은행에 흡수·합병되었으며 1979년에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분리

46) 1979년 8월에 북경, 상해, 광둥에서 건설사업에 대해 이자와 상환조건이 붙은 융자를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성공하였다. Chou, Chi-fu, 'A Complete Reform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Basic Constructions in Our Country-An Interview with Liu Li-hsin, Vice President of People's Bank of Construction of China,' *Economic Reporter*, Hong Kong, December 3, 1980, p.4~5.

되어 국무원의 직속기관으로 재설립되었다. 주요업무로는 농촌의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대출업무, 농촌부문에 대한 재정자금의 심사 및 배분, 농촌의 기업·단체 등의 현금관리, 결제 및 회계지도, 농촌신용협작사와의 예금·대출 및 이들에 대한 업무지도 등이 있다.

(6) 中國投資銀行

1981년에 중국인민건설은행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재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주로 국제금융기구(IMF, IBRD)로부터 중장기차관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시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참가를 실시한다.

(7) 交通銀行

교통은행은 1908년에 설립되어 1957년에 업무를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은행 등에 이관하고 폐지되었다가 1986년에 중국 최초로 全人民所有制를 원칙으로 한 株式制度를 도입하여 재설립되었는데 주식의 50%를 국가가 보유하고 50%는 지방정부, 기업, 개인에 공개 배각되었다. 同行은 당초 수송, 통신업에 대한 장기대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확충하였는데 주요업무로는 인민원 및 외화의 與受信業務, 국제 채권발행 및 외국환업무, 투자업무, 리스업무 등이 있다.

(8)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는 1979년에 대외차관 및 외국인투자 등 외자도입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신속성있는 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는데 중국인민은행과 같이 국무원의 部級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동공사는 1987년에 생산 기술, 금융, 무역, 서비스, 투자 등 6개업무부문을 자회사화하였는데 현재는 중신실업은행 등 직속자회사, 지방직속자회사, 해외자회사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기업 그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長短期 對外借款의 도입 및 外貨債券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投融資를 실시한다. 또한 子會社인 중신실업은행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예금 및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중국국제경제자순공사를 통하여 외국인투자 합자당사자의 선정, 타당성검토, 법률 및 재무회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자회사인 중국조임유한공사 및 2개 외

국인 합자리스회사를 통하여 리스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9) 中國人民保險公司

중국인민보험공사는 1949년에 설립되어 1958년 국내보험업무의 중지로 해산되었다가 1979년에 재설립되었으며 1984년에 국가보험기관이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국내업무로 각종 기관 및 기업의 재산, 화물 등에 대한 보험과 개인의 생명, 재산에 대한 보험이 있으며 국제보험으로는 운수, 선박, 항공 등의 보험업무를 취급한다.

나. 外國金融機關 進出 現況⁴⁷⁾

중국인민은행은 외국은행지점 및 외국인합자은행, 재무공사 등의 설치를 경제적 필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가하고 있다. 외국은행지점 및 합자은행·재무공사의 업무는 「經濟特區所在 外國銀行 및 外國人合資銀行 규정」에 따르면 중국국내은행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범위의 업무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급업무의 범위가 人民元の 예금·대출 등의 업무는 제외되고 외국기업 및 중국기업에 대한 외화연관업무로 제한되고 있는데 외국금융기관들은 주로 외자도입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은행지점 및 합자은행·재무공사의 소재지도 상해를 제외하고는 경제특별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88년말 현재 심천에 외은행지점 13, 합자재무공사 1, 하문에 외은행지점 6, 합자은행 1, 상해에 외은행지점 4, 합자재무공사 2, 주해에 합자은행 1, 사구에 합자은행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심천에 동경은행(1986), 삼화은행(1986), 북해도척식은행(1986), 부사은행(1987)등이 지점을 설치하고 주우은행이 심천에 1986년중 중국국제재무유한공사(20% 출자)를 설립하였으며 이밖에 부사은행, 동해은행, 삼정은행, 태양신호은행, 삼화은행, 기옥은행 등이 합자리스회사(조임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외국금융기관은 1980년 이후 북경, 상해, 대연, 광주 등의 대도시와 경

47) Business Guide : China, Longman, Hong Kong, Nov. 1986, p.62.

제특구에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1984~85년중 가장 활발한 진출 양상을 보였는데 1986년이후부터는 사무소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현재 외국금융기관의 주재원사무소는 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북경이 90여개로 가장 많은데 주재원사무소의 업무는 「외국금융기관 주재원사무소 설치에 관한 중국인민은행규정」에 의하면 상담, 업무연락, 금융거래의 주선 및 자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 金融市場의 現況

중국의 金融市場은 80년대초에 기업의 주식 및 채권이 발행되기 시작하고 국채의 발행이 재개되면서 증권발행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86년에 들어서 증권유통시장, 단기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지역별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금융시장들은 개설역사가 짧은 데다 정부 및 중앙은행의 관리·통제가 심하여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단기금융시장, 외환시장, 증권시장의 순으로 강한 통제·관리를 하고 있다.

(1) 證券市場

① 發行市場

중국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국채, 증점건설채, 금융채, 증점기업채, 지방기업채 등의 채권과 주식이 있는데 이 중 국채가 발행규모가 가장 크고 향후에도 대량발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기업채, 금융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國債은 1981년이후 발행이 재개되어 1981~84년중에는 연간 4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1985년이후 발행규모가 확대되어 1988년중에는 90.7억원에 달하였다. 한편 1988년이전까지는 국채의 만기가 5년으로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1988년에 국채의 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유통이 허용되었다. 이율은 1988년 이전에는 정기에금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1988년 하반기에 정기에금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3년이상 정기에금금리에 불가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에금금리보다 낮은 수준이 되었다.

金融債는 1985년 이후 중국농업은행 및 중국공상은행 등이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기업체의 발행은 1985년 이후 농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주식발행은 1982년경에 사영기업에 의하여 발생이 시작된 이래 1985년 이후에는 구영기업도 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중국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수익은 이자 또는 배당으로 지급되고 1~5년의 만기가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식발행은 실험단계에 있어 발행단위가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② 流通市場

각종 채권 및 주식의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1986년 심양에 증권시장이 개설된 이래 상해, 태원, 하얼빈, 천진, 광주 등에 계속 증권시장이 설립되었는데 소규모의 시장을 포함하면 60개 이상의 도시에 증권유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신탁투자공사,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지방의 공상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에 의하여 주로 점두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증권유통규모가 발행규모에 비하여 크게 작은 데다 유통에 관한 규모가 정비되지 않고 최근 격심한 인플레이가 진행됨에 따라 증권유통시장들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심천증권교역소 유한공사)가 10여개의 지방증권회사가 자본금을 불입하는 주식회사형태로 심천경제특구에서 개설될 예정이라 하며 또한 상해에서도 국채의 거래를 주로 하는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短期 金融市場

1986년에 27개 도시, 1개 성을 시범지구로 하여 은행간 콜거래시장(금융동업절차시장)과 어음할인시장이 개설된 이후 지역적 단기금융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중 콜시장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성에 형성되어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는 처음에는 중국인민은행 지점을 중심으로 한 어음할인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콜거래규모가 증가하여 현재는 은행간 콜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단기금융시장에는 주로 중국인민은행과 전

문은행, 신용협작사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일반기업도 참가하여 어음 및 CD 매매거래 등을 하는 소규모의 공개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이 중 콜거래서 금리는 쌍방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며 무담보에 의한 신용거래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기금융자산의 부족, 금리기능의 제약, 비은행금융기관의 미발달, 관계규정 등 제도정비의 미흡 등으로 중국의 단기금융시장은 초보적 형성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단기금융시장간의 연결관계가 미흡하고 특히 콜시장을 제외하면 지방자금시장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점차 상해경제권, 북경·천진지구, 무한지구, 서남지구, 공동성 등 광역화된 지역내의 시장이 형성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 外換市場

1986년에 심천, 상해 등 7개 지역에 부문간 외환사용의 효율성 제고,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인민원에 대한 평가절하압력의 간접적 해결, 외환압시장의 양성화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외환조절센터(외안조제중심)가 설치되었다. 취급외화는 미달러, 일본엔, DM, 파운드, 홍콩달러 등으로 기준통화는 미달러이며 거래환율은 외환수요초과상태를 반영하여 공정환율(1989년말 3.72원/달러)의 2배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외환조절센터의 기능은 형식상 시장가격기능을 이용하여 외환수급을 조절하는 것이지만 외환의 대부분이 국가계획에 의하여 배분되는 데다 외국인합자호텔 등을 제외하고는 여유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드물어 거래액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4. 展望과 問題點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각 특수분야의 금융을 관리하는 은행의 설립과 운영으로 금융제도가 보다 전문화되었다. 한편 은행이 기업화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은행은 보다 자유로운 대출의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자율

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가 자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역할이 감소하면서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산재된 자원을 투자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의 중앙 통제는 보다 간접적이 되었으며, 이자율이라는 가격이 규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요약하면, 경제개혁의 결과로서 중국에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하게 되었다. 첫째, 저축을 투자로 인도하는 중개기능, 둘째, 신용배분과 기업 감독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미시적 금융기능, 셋째, 통화공급을 조절하고 화폐균형을 유지하는 거시경제적 기능 등이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貨幣金融制度의 改革은 은행이 이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왔다. 현재의 경제개혁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경제내에서의 은행의 역할과 비중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왜냐하면, 첫째,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조치보다는 은행의 감독역할이 강조될 것이고, 둘째, 중국은 국가가 계획에 의해 경제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은행으로 하여금 그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금융제도가 경제발전과 안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은행제도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에는 몇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첫째, 국가와 은행조직간의 관계이다. 금융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모든 업무에 정부나 당의 간섭과 압력을 받고 있다. 通貨政策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자주적 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출정책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기관이 경제원리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현행의 금리체계에서 금융기관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사이의 역금리 상황은 기업 스스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정부의 보조없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렵다.

셋째, 가격체계가 계속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자원도 국가에 의해서 배분, 할당됨으로써 가격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經濟統合의 유지강화를 위해 권위적인 社會主義體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금융제도는 중앙계획에 따른 縱的인 자금배분체계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금융기관간의 縱的인 교류는 활발하나 橫的인 교류는 미흡하여 금융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저해되고 있다.

다섯째, 금융전문가의 부족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려면 중국의 금융기관도 금융중개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서방국가의 선진금융기술을 도입하고 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外國銀行의 자유로운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선진 금융 know-how 및 첨단시스템을 전수받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은행의 민영화를 실시하는 등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통일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V. 北韓의 貨幣金融制度

北韓의 經濟體制는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體制로서 제1장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貨幣의 기능, 貨幣의 流通制度, 金融의 機能, 金融制度, 그리고 金融通貨政策의 手段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貨幣의 種類와 金融機關의 種類 등 특징적인 것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셋째, 가격체계가 계속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자원도 국가에 의해서 배분, 할당됨으로써 가격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經濟統合의 유지강화를 위해 권위적인 社會主義體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금융제도는 중앙계획에 따른 縱的인 자금배분체계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금융기관간의 縱的인 교류는 활발하나 橫的인 교류는 미흡하여 금융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저해되고 있다.

다섯째, 금융전문가의 부족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려면 중국의 금융기관도 금융중개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서방국가의 선진금융기술을 도입하고 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外國銀行의 자유로운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선진 금융 know-how 및 첨단시스템을 전수받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은행의 민영화를 실시하는 등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통일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V . 北韓의 貨幣金融制度

北韓의 經濟體制는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體制로서 제1장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貨幣의 기능, 貨幣의 流通制度, 金融의 機能, 金融制度, 그리고 金融通貨政策의 手段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貨幣의 種類와 金融機關의 種類 등 특징적인 것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貨幣制度⁴⁸⁾

가. 貨幣制度的 變遷

북한은 1947년 12월 1일 「社會主義 경제여건 조성」이란 명목하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에 의거 제1차 貨幣改革을 實施하였다. 貨幣改革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첫째,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자주적인 유일한 貨幣制度를 확립하고, 둘째, 日帝의 잔재를 제거시켜 자주적이며 財政 金融土臺를 마련하며, 셋째, 한국으로부터의 貨幣流入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교환기간을 1947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로 설정하여 그 당시까지 流通되고 있던 貨幣 中 보조화폐를 제외한 모든 貨幣를 新貨幣와 1:1의 비율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조화폐도 1949년 5월 14일부터 새로운 보조화폐인 15전, 20전, 50전을 소액지폐로 신규발행함으로써 동년 8월 15일부터는 日帝時代 발행된 모든 보조화폐를 무효화시킴으로써 1949년 8월 15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에서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한 貨幣만이 통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1959년 2월 13일 「신화폐 발행에 대하여」라는 내각결정 11호를 공포하여 제2차 貨幣改革을 단행하였다. 2차 貨幣改革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6.25동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누증을 방지하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협동화가 완료됨으로써 이에 맞는 새로운 재정 金融土臺의 創設과 더불어 1960년대의 새로운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投資財源을 確保하는 데 있었다. 2차 화폐교환은 1959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구 화폐 100원에 대하여 신화폐 1원의 비율로 교환해 주었다. 또한 교환방법은 각 金融機關 및 기업소 등 5,200개소에서 개인은 1회에 한하여 공민증 제시와 함께 교환해 주었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각 단위별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북한은 1979년 4월 6일에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다시 제3차 貨

4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p.640~641.

幣改革이 실시되었다. 貨幣流通의 원활화를 기하고 개인은 물론 기관·기업소·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티화폐를 강력하게 회수하기 위함이었다. 북한이 제3차 화폐개혁을 통해 유티화폐를 회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1973년 세계적인 자원파동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인상 압력 때문이었다. 이러한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증가 책정되는 생산목표 때문에 각 공장 기업소는 중간재 및 원료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현금 보유 외에도 비공식적인 현금을 보유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계획적인 貨幣流通 과정에 왜곡이 초래되고 상환불능으로 인한 국제신용 추락으로 외자조달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예산제와 金融機能 強化, 경공업제품의 생산확대 등 내자조달에 주력하였으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고갈된 자원조달의 한계를 해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貨幣改革을 통해 주민 및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流通貨幣를 동원하여 산업자금화를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3차 貨幣改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화폐교환을 금액에 제한없이 구화폐 1원에 대하여 신화폐 1원의 비율로 실시하였다. 둘째,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교환할 때 일부 및 전부를 저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1979년 4월 6일 현재 가지고 있는 구화폐를 79년 4월 8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킨 다음 필요한 만큼 새 돈을 찾아 써야 하였다. 셋째, 교환범위는 100원, 50원, 10원, 5원, 50전 등 지폐에 한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貨幣의 種類

〈표 5-1〉에 해방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貨幣改革을 실시한 후 현재 이용되고 있는 貨幣의 종류들이 나타나 있다. 현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권종별 구성은 액면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의 중앙은행권과 1원, 50전, 10전, 5전, 1전의 소액 주화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만이 사용하도록 만든 특수 貨幣가 있는데 종류는 8종이다.

貨幣單位가 ‘원’인 만큼 1원권은 기본권으로 역할하며, 50전은 본질적으로

10전권, 5전권, 1전권과 마찬가지로 補助貨幣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50원권, 100원권은 고액권으로서 기능하며, 10원권, 5원권은 기본권과 고액권의 중간위치에서 기본권의 유통을 보완해 준다. 실제유통에서 거래의 대부분은 1원권, 5원권, 10원권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권종별 구성의 움직임에 특징적인 것은 기본권의 비중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반면에 소액권의 유통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⁴⁹⁾

〈표 5-1〉 北韓貨幣의 種類

구 분		종 류	비 고
일반貨幣	지 폐 (5종)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1979년 4월 제3차 貨幣改革에 의 한 지폐 : 녹색
	주 화 (5종)	1원, 5전, 10전, 50전, 1원	50전 주화는 1979년 4월, 1원 주 화는 1987년 10월부터 流通
특수貨幣	외화와 바꾼 돈 표(8종)	2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社會主義국가 貨幣와의 교환 : 적 색 서방세계 貨幣와의 교환 : 녹색

자료 : 통일원, 『북한개요』, 1990.12.

2. 金融制度

가. 金融制度의 特徵 및 變遷⁵⁰⁾

모든 生産手段이 社會主義的 所有로 되어 있고 社會主義的 擴大再生産에 의해 지속적인 축적을 높이려 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축적과 배분의 기능을

49) 리원경, 전계서, pp.75~76.

50) 북한연구소, 전계서, p.643~644.

재정부문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金融의 機能은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모든 기업소와 협동관리가 국가자금 또는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金融은 다만 기업소들에서 우연적인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동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단기대부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 북한의 金融은 자금이 어떠한 경제부문에 투입되는가에 따라 산업금융, 농업금융 및 상업금융으로 구분되며 자금소비의 성격에 따라 소비금융과 기업금융으로, 자금유통기간에 따라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그리고 지역적 분류에 따라 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되고 있다.

북한은 소련의 모형을 따라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임과 동시에 社會主義的인 商業銀行 業務도 같이 취급하는 單一銀行制度를 확립하였다.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專門銀行을 설립하였다.

해방이후 북한은 소련군의 명령에 의해 1945년 12월에 조선은행평양지점에 임시로 「계산소」를 설치하여 은행을 운영하였다. 그후 1946년 1월 9일에 종래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북한지역 소재 조선은행지점망을 토대로 하여 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하고, 1946년 4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포고 8호」에 의거 농민은행을 설립하였다. 10월에는 소련군으로부터 인계받은 북조선 중앙은행과 서울에 본점을 둔 상업은행, 조흥은행, 저축은행, 안전은행 등과 지점망 58개를 기초로 하여 재정성 직속으로 새로운 북조선은행을 창설하였다.

공산정권이 수립(1948년 9월 9일)된 후에는 중앙은행에 소속되어 있던 자금관리국을 재정성 직속으로 이전시키는 등 은행제도를 개편하였다. 그후 기본건설자금의 분산성을 방지하고 집중적 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은행으로서의 건설자금은행을 설립하였다. 1959년 11월 3일에는 중앙은행내에 무역은행을 신설하여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농업은행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은행에 통합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은 건설부문을 제외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신용사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어서 북한은 1964년에는 경제건설을 가일층 제고시킨다는 명목하에 은행체계를 대폭 개편, 국립건설자금은행을 폐지하고 새로이 산업은행을 창설하였으며 은행기관들의 임무와 기능을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대

외무역증대방안의 하나로 금강은행과 대성은행을 설립하여 무역결제업무를 전담케 하였으며, 수출입 화물의 보험업무를 위해 조선대외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1987년에 합영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보 및 자금의 제공과 이들 기업의 수출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銀行의 機能

북한에서 은행은 경제 모든 부문에 대해 대부를 통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기관 및 기업소의 경제계획 수행정도에 따라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며 예산에 대한 납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받아들이고 기업 간의 거래자금을 결제하면서 생산 판매계획, 원가계획 등 양적 및 질적 지표의 수행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기업소들이 예산납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하여 경제활동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및 기업소의 재정 담당부서에서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검토·분석하여 물자와 자금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기업소와 기관간에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무통제도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제 전반에 걸친 통제를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데 이는 자원과 노동과의 합리적 이용에 의해 절약을 도모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분기별, 월별, 지표별 계획 목표를 어김없이 달성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⁵¹⁾

다. 金融機關의 種類⁵²⁾

(1) 朝鮮中央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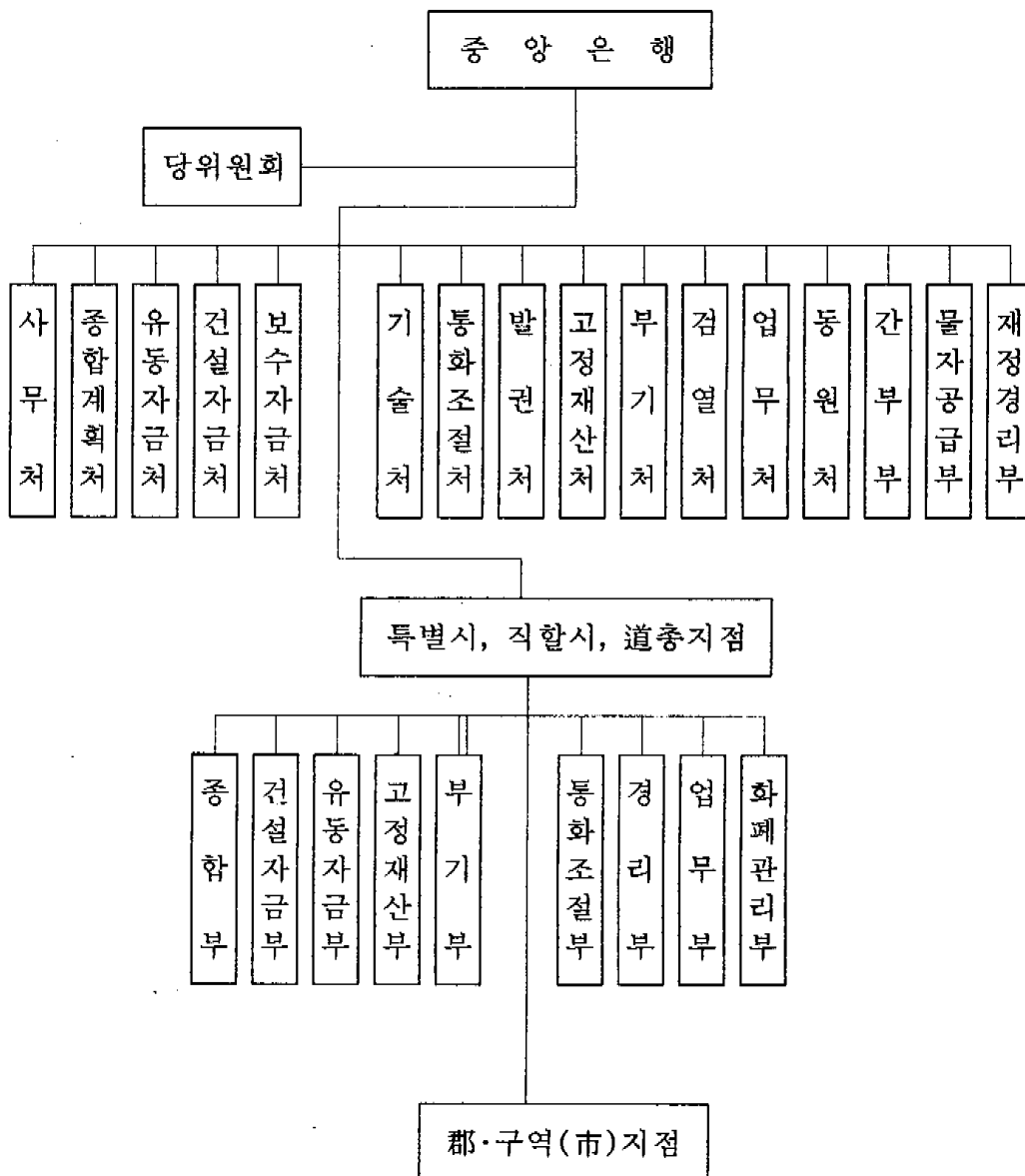
북한의 中央銀行은 발권은행으로서 타 은행을 지도 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발행 및 현금유통조절, 둘째, 현금출납 업무 담당, 셋째, 무현금결제 조직, 넷째, 예산의 출납업무 담당, 다섯째, 기관·기업소에 유통자금공급 및 조절 업무 수행, 여섯째, 기본건설 및

51)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경제개관』, 1989, p.27.

52) 북한연구소, 전게서, p.644~646과 국토통일원, 전게서, p.27~28.

對보수자금 공급, 일급제, 북한의 모든 고정재산을 화폐액으로 등록하고 그 이용상태를 통제, 여덟제, 금·은 등 귀금속의 수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社會主義諸國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협정에 의한 무역결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림 5-1〉 中央銀行 構成表



출처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p.644.

· 이같은 중앙은행의 조직을 살펴보면 평양에 중앙은행본점이 있으며 산하에 도·직할시에는 각 도·시 총지점이 있고 군·구역에는 지점이 있다.

(〈그림 5-1〉참조)

(2) 産業銀行

산업은행은 1964년 은행체계의 개편에 따라 국립건설자금은행을 모체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주요기능은 종래 중앙은행이 담당하던 대부 및 저금업무와 재정기관이 담당하던 보험업무이다. 즉, 산업은행은 대부·저금·보험 등의 사업과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방조사업을 주로 담당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산업은행의 기능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각 부문의 기관·기업소에 대한 단기 대부업무 수행, 둘째, 보험사업의 수행, 셋째, 저금사업 취급, 넷째, 개인 송금사업 취급, 다섯째,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대부업무는 국영기업소에 대한 할당자금에 일시적 부족이 생길 경우 이를 보충하는 단기대부를 말하며 저금업무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 및 저금소, 출장소의 영업을 통해 협동농장의 결제와 현금출납업무를 실시하고 부기계산, 재정계획의 작성과 집행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보험의 종류에는 재산보험, 인체보험, 대외보험(화물운수보험, 선박보험) 등이 있다. 또한 산업은행의 조직망을 살펴 보면 중앙에 산업은행본점이 있으며 각 도 및 직할시에는 도·시 총지점이 있고 산하에 시·군·구역지점이 있다.

(3) 貿易銀行

貿易銀行은 중앙은행의 산하 기구로 1959년 11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중앙은행의 지도 하에 외국과의 무역 및 무역 외 거래에 따른 결제사업을 담당한다. 즉, 무역은행은 대외결제, 외국환업무, 여행수표 발행, 대외송금사업 및 무역기관들의 수출입계획 수행과 모든 기관·기업소들에 대해서 외화지불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무역은행은 중앙은행의 대외무역에 대한 국제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성은행

대성은행은 1978년 11월에 설립되어 무역거래에 대한 대외결제와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대성무역상사, 동해선박, 만경무역상사 등의 대외 결제업

무를 취급하고 있다.

(5) 금강은행

금강은행은 1978년 설립되었으며 무역은행의 지휘감독 하에 대외결제업무를 담당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세부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6) 조선낙원 금융합영회사

조선낙원 무역회사와 일본 Palace사간 자본금 1천만불로 1987년 5월설립하여 평양에 본사를 두고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것은 합영회사, 무역회사, 기타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대출업무, 저축, 송금 등 국제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 조선대외보험회사

항해, 연안선박, 수출입 화물의 보험 및 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파리, 동베를린, 스위스 바젤에 지사를 두고 있다.

라. 利率率과 預金制度

북한에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대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다. 그러나 이자율 수준은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획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며, 그 율이 매우 낮다.

북한에서의 저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달리 재산증식을 위한 자발적 저축이라기보다는 주로 재정계획상의 자금동원 목표달성을 위한 강제저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축의 종류로는 보통저금, 준비저금, 정액저금 및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저금 등 4종류가 있다.

보통저금은 수시로 저금하고 찾을 수 있는 저금으로 이자율은 연 3%이며 준비저금은 20원 이상과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미리 예약하고 수시로 저금하였다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차면 찾는 저금으로서 그 이자는 연 3%이다. 정액저금은 이자율은 연 4%이다. 추첨제 보통저금은 보통저금의 일종으로서 그와 유사하나 이자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분기마다 실시하는 추첨에

위하여 당첨금을 주는 저금형태이다.⁵³⁾ 일반주민들은 저금 또는 저금인출시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점이나 지점 이외엔 우편, 전화업무를 취급하는 체신소를 이용한다.

3. 換率制度⁵⁴⁾

북한에도 기능상으로는 외환과 국내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상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계획 즉 외환계획에 따라 계획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북한의 환율제도는 공정환율, 무역환율, 비상업환율(여행자환율) 등으로 구성되는 복식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가. 공정환율

공정환율은 기본환율이라고도 하는데,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환율로서 대체로 소련 루블화의 대서방화폐 공정환율을 매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정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의 고정환율은 다른 환율에 비하여 북한 원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2배에 달한다. 북한이 국민소득을 대외적으로 발표할때는 공정환율이 적용된다.

나. 무역환율

무역환율(trade rate)은 외국과의 무역이나 무역외거래 등을 할 때 사용된다. 이론상 무역환율의 결정은 질이 같은 교역상품의 집합을 선택하여 이들의 북한과 상대국에서 도매가격을 총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

53) 『백과전서』 제4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246.

54) 국토통일원, 전계서, p.33-34.

나, 이와 같은 방법은 해당나라의 가격체계가 다를 경우 동등한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 무역환율도 북한환율도 북한 원화를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역환율은 북한의 무역은행에 의해서 수시로 발표된다.

다. 비상업환율

비상업환율은 이론상 주어진 기간에 가계가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의 집합에 대한 화폐지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무역환율을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해 결정된다. 비상업환율은 주로 무역의 거래, 자본거래에 적용되었으나, 1972년 상업환율 폐지와 함께 무역환율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표 5-2〉 북한 원화의 대미달러의 환율

(북한원/미달러)

구 분	198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공정환율	0.87	0.97	1.02	—	1.07	1.02	—	—
무역환율	1.79	2.12	2.18	2.36	2.43	2.23	2.14	2.10

출처 : 북한무역은행 발표(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9, p34. 재인용)

4. 金融通貨政策⁵⁵⁾

가. 特徵

기본적으로 제1장에서 언급한 金融政策의 특징과 비슷하다. 金融政策의 중점을 통화가치의 안정에 두고 통화관리와 동시에 임금관리, 물자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종합재정계획과 물자생산계획을 결합시켜 경제전

55) Hiao(1984) 전계서를 바탕으로 리원경의 「사회주의 화폐제도」의 내용을 유추 해석한 것임.

체의 실물 흐름과 화폐 흐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金融政策은 전적으로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 재정 금융의 기본은 자금계획이며 이것은 재정, 신용계획, 현금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기능은 이러한 신용계획과 현금계획에 기초하여 움직인다.

나. 信用의 原理

화폐공급 증가가 은행 신용으로 부터 연유하기 때문에 은행대부가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의 신용에는 세가지 기본원리가 있다. 상환능력, 국가계획과의 연계, 그리고 상품에 의한 보증이 그것이다.

은행대부가 만기에 상환해야만 한다는 첫번째 원리는 국가예산의 자금과 은행의 자금이 모두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 두 자금은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재정은 여러 국영기업에게 고정자본과 정기적으로 필요한 운영자본(할당자본)을 제공하는 한편 은행은 추가운영자본(초과할당자본)에 대한 이 기업들의 일시적 또는 계절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은 정부로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은행의 용자는 은행대출의 자금원천이 현재의 예금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은행에 남아 있는 유희잔액 또는 가계와 집체단위의 저축예금이기 때문에 만기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대부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이 국가 기업이 생산자금의 단기 비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전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의 잠정적인 유희자금을 모아 둔다. 자금이 단기간에 회전되기 위해서 대부의 상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 대부는 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장기 대부가 되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원리는 은행대부의 사용과 분배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유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매년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서 운영계획이 실질적 투입과 산출량 그리고 총화폐 단위로 세워지며,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각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은 다음 해의 현금과 신용의 요구를 나타내는 계획을 국가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각 개인의 요구를 모아 국가은행은 국가의 현금과

신용의 계획을 수립한다. 신용계획이 중앙당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전체 은행으로 하달되어 이행된다. 그리하여 은행 대부는 신용계획에 의해 지침된다.

계획이 제 시간에 이행될 만큼 충분히 일찍 세워지고,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신용계획은 은행 대부의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첫째, 신용계획이 세워지는 시점과 실지로 생산계획이 하달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 각 기업의 생산계획이 사실은 국가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파생되어 세워지는데 실제로 그 계획이 계획기간의 중간쯤 가서야 완성되어 계획기간의 출발점에서 기업에게 하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계획은 현실적일 수 없다. 그리하여 기업은 신용계획을 항상 생산계획을 하달받기 전에 세우게 된다. 그결과로 신용계획은 정확하지 못하며 생산계획에 맞추기 위해 재조정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신용계획은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둘째, 경제상황의 변화로 계획하지 않은 신용대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기업이 그의 실질 생산 할달량을 초과 달성한다면 보다 더 많은 생산에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비효율성때문에 그 제품의 보완재와 잘 맞지 않는 부적격 재화를 생산할 수도 있다. 혹은 계획자의 조절능력을 벗어나는 기상조건때문에 풍작을 이룰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관련된 기업은 계획 이상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되지 않은 추가 생산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자금이 공급되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나타나 생산이 방해될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은 때때로 계획되지 않은 대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세번째 원리는 은행대부가 서구사회의 진성어음원리(Real Bill Doctrine)를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진성어음원리란 상품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한 진성어음을 제시하면 고정된 이자율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인하여 대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원칙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가 축적이 되고 판매할 수 없는 재화의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많은 국영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다.

다. 貨幣의 創造

화폐의 창조는 국영기업에 주는 은행 대부로 부터 시작된다. 그 대부금은 곧 기업의 예금이 되고 비현금유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형태의 화폐가 다른 국영기업에 지불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 이것은 공공부문의 유통에 남아 있어, 증가된 대부는 곧 바로 증가한 예금에 의해서 균형이 된다.

그러나, 이 예금액이 임금지급, 농업생산물 구입 혹은 사적인 경제단위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될 경우 예금은 은행으로부터 인출되고 현금형태로 바뀐다. 그리하여, 공공부문에서 은행 대부와 은행 예금사이의 불균형이 현금유통의 현금공급의 변화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은행 대부가 은행 예금 증가를 초과하면 그 차이는 자동적으로 동일액만큼 현금 공급의 증가를 초래한다. 예금이 국가 부문에서 은행 대부보다 빨리 증가하면 그 반대로 현금 공급이 감소한다.

현금이 소비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구매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그것이 소비재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국민이 느끼는 인플레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조선중앙은행은 생산단위 기업소, 학교 등 모든 경제부문에 관계되는 일체의 화폐유통을 규제하고 생산된 재화의 가격까지도 소위 공정가격이란 명목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상점이나 식당에서 판매되는 매상금이나 일부 편의시설에서 벌어들이는 그날 그날의 수입까지를 해당 중앙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와 같이 저축의 원천으로서 貨幣가 유보되는 일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라. 金融政策의 手段

북한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金融政策 手段을 사용한다.

첫째, 주로 국가부문의 화폐공급인 예금유통의 증가를 국가예산으로부터 中央銀行으로 가는 信用資金에 의하여 상쇄시킨다. 둘째, 비국가부문의 화폐공급인 현금통화의 증가는 정기적인 저축드라이브 정책으로 상쇄시킨다.

화폐공급의 증가가 은행의 신용에 의해 생성될 경우 중앙은행은 화폐균형

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화폐의 왕복 유통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貨幣流通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저축 드라이브를 통하여 현금통화를 예금으로 전환시키므로써 화폐유통을 축소시키든가 혹은 재정적 상쇄를 통하여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예금화폐 유통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은행의 신용을 후에 재정적 조치 또는 개인 저축에 의해 상쇄시키는 것이다.

5. 展 望

북한은 아직도 전통적 중앙집권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貨幣金融制度 역시 전통적 蘇聯模型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와 대내외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북한 역시 개방화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貨幣金融制度 역시 改革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 金融改革을 할 경우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될 수 있는 한 개혁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北韓 金融改革을 할 경우, 첫째, 현재의 단일은행제도를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의 업무를 분리하고 화폐발행과 거시경제적 균형을 위한 금융통화조절에 중점을 두게 하는 이원적은행제도로 개혁을 할 것이다. 둘째, 금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을 기업화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통제가 아닌 금리와 은행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자금을 배분할 것이다. 끝으로 소련과 중국이 개혁후 겪고 있는 통화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화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VI. 要約 및 結論

傳統的 社會主義體制의 貨幣金融制度는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社會主義 體制下에서의 貨幣의 機能이나 役割은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와 비슷하다. 즉, 貨幣가 交換의 手段, 價値尺度의 手段, 그리고 價値保障의 手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은 貨幣의 流通制度가 現金流通과 無現金流通으로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現金流通은 가계부문에서 주로 소비재 유통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그리고 無現金流通은 그 외의 기업과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은행예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貨幣制度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二重構造로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은행을 통한 신용으로 충분하고, 한편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하는데 있어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활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통화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개인 또는 기업이 富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現金流通은 二重 現金流通制度로 되어 있다. 즉 자국민이 사용하는 화폐와 외국인이 사용하는 화폐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가격차별의 형태로서 외국인과 자국민의 서로 다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입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암시장의 존재로 의도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中央計劃模型의 金融制度의 特徵은 單一銀行制度로서 중앙은행이 발권업무는 물론 신용자원에 대한 중앙통제를 위해 상업금융업무까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은행을 통해 중앙계획당국이 생산계획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전통적 中央計劃社會主義 體制下에서는 은행을 통한 신용대부시장이 유일한 금융시장이 되었다. 한편, 이자는 노동착취의 산물이라고 간주하여 자본에 1960년초까지 이자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성하락과 자본 낭비를 초래하자 1960년 이후 자본을 물질로 표시된 노동으로 보고 합리적 자본 배분을 피하고자 이자 개념을 도

입하였다.

傳統的 社會主義 國家의 金融通貨政策은 생산계획에 따라 경제내에 유동성 주입, 즉 통화를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계획의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의 주요 수단은 행정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은 화폐의 유통과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기업부문의 화폐유통은 신용계획에 의해 규제되며, 가계부문의 화폐유통은 현금계획에 의해 규제된다. 즉 기업부문의 화폐증가는 은행의 신용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며, 가계부문의 화폐공급인 현금통화의 증가는 정기적인 저축드라이브 정책이나 엄격한 임금통제를 통해서 상쇄시켰다. 개혁후 소련과 중국은 어음할인 제도와 지급 준비율과 같은 간접조달수단을 도입하였다.

蘇聯은 경제효율성 향상, 독립채산제 확립, 자원절약체제 강화 등 기본경제 목표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조치를 금융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전면적인 金融改革을 단행하였다. 그 개혁의 목표는 첫째, 모든 상업은행 기능을 중앙은행인 Gosbank로부터 분리되는 이원적은행조직을 확립, 둘째, 특수은행의 수를 늘려서 은행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 셋째, 신용배분에 있어서 특수은행의 독립성인정, 넷째, 상세한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신용계획을 없애고 전체의 신용한도제 도입 등이었다. 그러나, 경쟁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 있고 저축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연차계획은 계속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업적 기준에 의한 새로운 신용정책은 기타 여러 부문에서 아직 개혁이 되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불완전성은 1980년대 후반에 화폐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할 일과 사적 부문에서 할 일을 확실히 구분하여 사적인 의사 결정은 시장기구와 이에 따른 金融制度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國 역시 1979년 개혁이전까지 전통적 社會主義體制의 改革以前の 蘇聯型 金融制度를 따라 單一銀行制度를 유지하였다. 1979년 이후 경제조정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금동원의 극대화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金融制度를 개편하였다. 그 개혁 내용을 보면, 첫째, 종합은행의 역할을 해

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업무별로 전문화하는 金融制度로 개편하고, 둘째, 상업업무를 중앙은행에서 분리하는 대신 인민은행의 중앙은행기능을 강화, 셋째, 행정적 직접금융조절수단을 줄이고 간접적 조절수단인 재할인 제도와 지급준비제도의 도입, 넷째, 기업의 은행 의존도의 증가에 따라 대출채권의 건전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도감독업무를 강화, 다섯째, 자금배분에 금리기능을 강화, 그리고 여섯째, 콜머니 시장과 증권시장 등 금융 및 자본시장의 육성 등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부산물로 중국경제에 나타난 초과수요의 상존, 소비기금의 급속한 증가, 기본 건설투자 규모의 과다, 통화발행량의 남발등의 요인에 의해 1984년 부터 통화팽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가격체계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자원도 국가에 의해서 배분할당됨으로써 가격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중국역시 경제 발전과 경제 안정의 경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개혁이전의 蘇聯型 金融制度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社會主義體制下의 貨幣金融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이다. 즉 金融制度는 單一金融制度이며, 화폐유통이 철저히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구분되어 있다. 금융통화조절 수단도 계속 행정적 조치인 직접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해방후 지금까지 3차례의 화폐개혁을 하였다. 초기에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건설자금은행 등 2개의 금융기관으로 조직되었던 은행제도가 현재 조선중앙은행, 산업은행, 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조선대외보험회사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가 증가 하였다. 社會主義 국가들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개혁의 추세를 볼 때, 북한도 곧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개혁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은 것을 채택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社會主義 貨幣金融制度는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의 특징에 따라 재정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財政部門에 從屬的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재정의 종속적 위치가 가져다 주는 효과란 자원의 낭비, 자금흐름의 왜곡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중앙계획당국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제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蘇聯과 中國이 市場經濟의 原理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制度上의 不完全性으로 인하여 通貨膨脹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社會主義 國家들이 추구해야 할 貨幣金融制度의 改革 方向은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금융기관 및 개인의 활동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중복된 규제를 제거해야 하며, 둘째, 아직도 국가가 결정하고 있는 가격체계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중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개방화에 따른 외국은행의 진출과 관련하여 서방국가의 선진 금융기술을 도입하고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중국경제통계』, 1990.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4권, 평양, 1983.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경제개관』, 1989.
 니콜라이 슈멜레프, 블라드미르 포포프 공저(이익진역), 『소련경제의 대변혁』
 한국경제신문사, 1990.
 리원경, 『사회주의 화폐제도』, 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86.
 마르크스(김수행역), 『자본론』 I (상), 1989.
 박제훈,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4.
 박제훈·신영재, 『최근소련경제관련법령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산업연구원, 『북방지역국가총람』, 1991.

쉐무차오(오진용역), 『중국 사회주의경제론』, 한국경제신문사, 1990.

이민형, “중국금융제도의 개혁”, 『중국연구』 제8집(별책),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89.

통일원, 『북한개요』, 1990.12.

Baumol, W.J., ‘The Transaction Demand for Cash : An Inventory Theoretic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6, Nov.1952, p.545—556.

Business Guide : China, Longman, Hong Kong, Nov. 1986.

Chou Chi-fu, ‘A complete Reform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Basic Constructios in Our Country-An Interview with Liu Li-hsin, Vice President of People’s Bank of Construction of China,’

*Economic Reporter, Hong Kong, Dec.3, 1980*p.4—5.

Condoido, Mikhail V., *The Soviet Financial System : Its Development and Relations with the Western World*, Ohio State University, 1986.

Hsiao, Katharine., *Money and Banking in the Chinese Mainland*,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Taipei, Taiwan, Republic of China), June 1984.

Hsiao, Kathari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ommunist Chin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Liu Hung-Ju, *Issues of Socialist Money and Banking*,

Peking : Chinese Financial and Economic Press, 1980.

IMF, IBRD, OECD, EBRD,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Feb.1991.

Laidler, David E., *The Demand for Money : Theories and Evidence*, 2nd ed. Harper & Row, 1977.

Mises, Ludwing von., *Socialism*, New Haven : Yale,(1922)

1951 : London : Jonathan Cape, 1969.

OECD, ‘The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Situation of Eastern Europe in 1988—89’, *Financial Market Trends*, No.45, Feb.1990.

Chiigo Pei-hsin, Some Proposals on the Reforms of Bank Works,

Chinese Finance, V.3, 1980.

Struik, Dirk (ed.), 'Estranged Labor',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64.

Wilczynski, J., *Comparative Monetary Economics*, Macmillan, 1978.

Wilson, Dick., 'How banks Work in China', *The Banker*, Jan.1980.

Yahaom, Shmuel Z., 'The dual Currency System in China :

Cost and Benefit', *Chinese Economic Studies*, Spring 1991, p.73--81.

南北韓 貿易構造 比較

朴 勝 俊 (단국대)

< 要 約 文 >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개방의 물결이 흐르게 하였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소련공산당이 해체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북한도 전세계 추세에 따라 여태까지의 고립된 폐쇄정책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본 研究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北韓의 貿易構造를 최신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北韓은 自力更生을 目標로 自給自足 經濟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北韓의 貿易에 있어서 輸出의 역할은 이러한 목표수행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南韓이 輸出入을 통해 比較優位에 입각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南北 經濟比較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輸出과 輸入을 합한 貿易規模를 비교하면 1970년에 北韓은 南韓의 貿易規模 28억 2천만 달러의 28.6%인 8억 1천만 달러였으나, 1989년에는 南韓이 기록한 1,239억 1천만 달러의 3.5%에 지나지 않는 43억 6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北韓의 國別 貿易을 살펴보면 1970년 北韓의 전체 貿易量에서 蘇聯이 47.6%, 中國이 14.4%, 日本이 7.1%를 차지하므로써 이들 세나라의 比重은 69.1%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 세나라가 北韓의 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기복을 보이기는 하나 1989년에는 蘇聯이 54.1%, 中國이 12.9%, 日本이 11.6%를 차지하므로써 이들 세나라의 비중은 무려 78.1%에 이르고 있다.

北韓의 輸出品目은 材料別 製造製品, 非金屬鑛物, 非철금석(鉛, 亞鉛, 金, 마그네사이트, 분말 등), 鐵 및 銅, 非식용원재료, 잡제품, 機械 및 輸送裝備 등이 총수출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輸入品目은 광물성연료 및 제품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石油 및 石油製品, 코크스, 역청탄 등을 주로 輸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南韓의 國別 貿易을 살펴보면 南韓의 貿易 相對國으로 美國, 日本, 홍콩, 독일, 英國 등이 비중이 큰 나라들이며 이중 美國과 日本은 南韓의 輸出과 輸入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南韓의 輸出品目은 전자 및 전기, 섬유류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높고, 輸入品目은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화학공업 생산품, 전자 및 전기제품 등이 높은편이다.

北韓은 貿易政策의 基調를 國家獨占의 原則, 互惠 平等의 原則, 自立的 民族經濟 原則으로써 경제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중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輸入하고 이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輸出을 한다는 것이 무역계획 수립의 기본전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획일적 경제체제만으로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외 무역 확대정책과 함께 서방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부분적인 對서방 개방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1984년에는 合營法을 제정하고 1987-1993년 간에 추진되는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는 貿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총련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外國資本의 유치에서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점에서 볼 때 南韓이 北韓에 資本과 技術을 제공하는 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南北韓間에는 매우 오랫동안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대화를 해온 셈이다. 그러므로 1984년 11월 15일 제1차에서 1985년 11월 20일 제5차까지의 남북경제회담은 남북한간에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兩側의 희망과 주장을 밝혀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다 北方政策 推進의 바탕이 된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의 7.7선언은 南北韓間의 문호를 개방하고 南北韓 交易을 民族 内部交易으로 간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같은 해의 10.7 조치는 民間商社들의 북한 물자교역 뿐만 아니라 南北 經濟人의 相互交流까지도 허용했다. 이 결과 북한 물자들이 남한 시장에서 팔리고 있고, 現代의 鄭周永회장이 북한을 방

문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논의했으며, 남북연예인의 교환방문이 있었으며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기까지 한 것이다.

이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면 南北韓 經濟交流와 經濟協力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한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추진에서의 전제조건은 민족적 숙원인 통일과 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한간의 정치적 통합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와 協力은 兩側의 合意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I. 序 論

세계경제는 1970년대 이후 兩極體制가 붕괴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 및 개방정책이 진행됨과 더불어 東西間의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경제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같은 경제권내 국가간에 다양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를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4대강국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였다. 중국은 1978년 개방화 정책 이후 한국의 간접교류를 묵인하여 오다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직접교류 허용, 직접투자 유치, 상호 인적교류 확대 등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1990년 10월 무역사무소 개설에 합의하였으며 북한과는 전통적인 정치 및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방화 및 남북대화를 권유하고 있다. 소련은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며 한국과 직접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추진하여 시베리아의 개발과 연결시키고 1990년 10월 양국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對中國, 對蘇聯 및 對東歐 접근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한 직접 대화와 남북 교차승인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對北韓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두개의 한국정책을 표방하고 한국의 남북 교차승인 정책을 지원하면서 日·北韓間의 큰 상호 인식 차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북한의 對日 修交提議를 계기로 對北韓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社會主義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으로 상징되는 脫共產主義化의 물결은 북한의 집권층에 위기의식을 갖게하여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을 더욱 확립시키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화를 통한 경제건설 정책의 영향을 받아들여 合營法을 공포하고 獨立採算制度를 도입하는 등 개방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최근 남북한 UN 동시가입은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 보완관계를 통한 경제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신 자료를 통해 남북한 무역구조를 규모별, 국가별, 권역별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남북경제협력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남북한 무역구조를 규모별, 국별, 권역별로 나누어 알아본 다음 제4장에서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제5장에서는 이 글의 결론으로서 요약 및 맺음말을 다루고 있다.

II. 南北韓 貿易構造

北韓은 自力更生을 목표로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해 왔다.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의 수출의 역할은 이러한 목표수행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남한이 수출입을 통해 비교우위에 입각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다. 즉 북한의 헌법(1972.12.27 개정)은 제34조에서 “對外貿易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위에서 對外貿易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라고 대외무역의 기본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대로 북한의 무역정책의 기초는 국가독점의 원칙, 호혜 평등의 원칙, 자립적 민족경제 원칙으로 정리된다.¹⁾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경제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중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수입하고 이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을 한다는 것이 무역계획 수립의 기본 전제가 되어 왔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 무역은 국가 계획위원회의 사전 계획에 기초하여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품목별 쿼터를 책정하는 雙務的 性格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무역기조를 바탕으로한 남북한의 무역에 대하여 規模別, 國別, 圈域別로 알아 보기로 하자.

1)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12, P.74.

1. 規模別 貿易構造

(표 2-1)은 1970-1989년 간의 남북한 수출입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그리고 무역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표에서 사용된 자료는 세가지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다른 지표와 비교할 때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임을 밝혀둔다. 이점을 감안하면서, (표2-1)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무역규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수출규모는 1970년에는 남한의 39.9%인 3억3천만 달러였으나 1989년에는 남한의 2.7%에 지나지 않는 16억 6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불과 20여년 동안 남북한 간의 수출규모의 격차가 대비율에서 이토록 심화된 이유는 이 기간동안 남한의 수출은 명목치로 연평균 2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북한은 남한의 3분의 1 수준인 8.8%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 이후 남한의 수출에 대한 북한의 수출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온 것이다.

둘째, 북한의 수입규모는 1970년에는 남한의 23.8%인 4억 7천만 달러였으나 1989년에는 남한의 4.4%에 지나지 않는 27억 1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20여년 동안 남북한 간의 수입규모의 격차가 대비율에서 이토록 심화된 이유 역시 남한의 수입은 명목치로 연평균 19.9%의 증가율은 기록했는데 비하여 북한은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6%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 이후 남한의 수입에 대한 북한의 수입규모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해 온 것이다.

셋째, 1970년 이후로 북한은 한해도 어김없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나, 남한은 1986년 이후부터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남한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증가율(25.5%)이 수입증가율(19.9%)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연평균 수출증

가율(8.8%)이 수입증가율(9.6%)보다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의 심화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외채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경제 비교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를 비교하면 1970년에 북한은 남한의 무역규모 28억 2천만 달러의 28.6%인 8억 1천만 달러였으나, 1989년에는 남한이 기록한 1,239억 1천만 달러의 3.5%에 지나지 않는 43억 6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 무역의 규모별 비교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남북한 경제 비교에서 무역규모 만큼이나 격차를 심하게 나타내는 지표도 없을 것이며, 북한은 당분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비록 1984년에 중국의 개혁정책을 모방하여 순환法을 마련하고 제3차 7개년 계획에서²⁾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 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은 수입하고 이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한다는 기존의 무역정책은 이제 검토될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은 곧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내적인 개혁정책과 함께 대외적인 개방정책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줄 수도 있다.

2) 북한은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에서 1987-1993년 기간 중에 추진될 제3차 7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 3차 7개년 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기본건설, 소매상품 유통액, 무역액을 제외하고는 종전보다 계획목표를 낮게 책정한 점을 들 수 있는데, 다른 공산권 국가와 비교할 때 이 목표 또한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12, PP.14-17 참조.

(표2-1) 남북한 수출입 규모 비교

(단위: US百萬\$, %)

연도	구분	수출(A)		수입(B)		무역수지	수출입(A+B)	
		금액	대비율	금액	대비율		금액	대비율
1970	남북	835	100.0	1,984	100.0	- 1,149	2,819	100.0
		333	39.9	472	23.8	- 139	806	28.6
1975	남북	5,081	100.0	7,274	100.0	- 2,193	12,355	100.0
		767	15.1	1,311	18.0	- 543	2,078	16.8
1980	남북	17,505	100.0	22,292	100.0	- 4,787	39,797	100.0
		1,595	9.1	1,836	8.2	- 242	3,431	8.6
1981	남북	21,254	100.0	26,131	100.0	- 4,877	47,385	100.0
		1,072	5.0	1,554	5.9	- 482	2,626	5.5
1982	남북	21,853	100.0	24,251	100.0	- 2,398	46,104	100.0
		1,259	5.8	1,577	6.5	- 318	2,835	6.1
1983	남북	24,460	100.0	26,196	100.0	- 1,736	50,656	100.0
		1,117	4.6	1,438	5.5	- 321	2,555	5.0
1984	남북	29,259	100.0	30,628	100.0	- 1,369	59,887	100.0
		1,202	4.1	1,398	4.6	- 196	2,600	4.3
1985	남북	30,289	100.0	31,058	100.0	- 769	61,347	100.0
		1,172	3.9	1,770	5.7	- 599	2,942	4.8
1986	남북	34,792	100.0	31,734	100.0	3,058	66,526	100.0
		1,357	3.9	2,092	6.6	- 735	3,449	5.2
1987	남북	47,301	100.0	41,025	100.0	6,276	88,326	100.0
		1,476	3.1	2,437	5.9	- 961	3,913	4.4
1988	남북	60,679	100.0	51,872	100.0	8,807	112,551	100.0
		1,762	2.9	2,920	5.6	- 1,158	4,682	4.2
1989	남북	62,371	100.0	61,556	100.0	815	123,927	100.0
		1,655	2.7	2,708	4.4	- 1,054	4,363	3.5
연평균	남북	25.5		19.9			22.1	
증가율	남북	8.8		9.6			9.3	

資料: 朴東雲·朴勝俊, 「북한의 무역구조」, 『産業研究』(제14집), 단국대학교
부설 산업연구소, P.86에서 재인용.

2. 國別 貿易構造

북한의 지속적인 무역상대국은 蘇聯, 中國, 日本을 포함한 소수국가에 한정되고 있다. 그외에 대부분의 국가와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교역량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총무역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이 중 몇몇 국가와의 교역량 변화가 북한 무역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³⁾

물론 남한도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에,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점차로 수출 및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과 남한의 순서로 國別 및 品目別 貿易構造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北韓의 國別·品目別 貿易構造

먼저 北韓의 國別 貿易構造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2-2)는 북한의 주요 교역대상국 및 권역별 무역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1970년 북한의 전체 무역량에서 蘇聯이 47.6%, 中國이 14.4%, 日本이 7.1%를 차지하므로써 이들 세나라의 비중은 69.1%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 세나라가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기복을 보이기는 하나 1989년에는 소련이 54.1%, 중국이 12.9%, 일본이 11.1%를 차지하므로써 이들 세나라의 비중은 무려 78.1%에

3) 한예로 그전까지 미미하였던 對서독 수출이 1980년의 경우 1억 7천 2백만 달러(對西方 수출의 22.3%)로 對일본 수출규모를 능가하고 있으며 1982-1984년 기간에는 1.3억-1.4억 달러에 달해 對西方 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2-2) 북한의 주요 교역대상국 및 권역별 무역추이

(單位: US百萬元%)

區分 年度	總計		蘇聯		中國		日本		西方國		開發國		社會主義國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1970	333.2 (100.0)	472.4 (100.0)	130.2 (39.1)	253.0 (53.6)	68.9 (14.9)	116.4 (14.4)	31.3 (9.4)	25.7 (5.4)	98.3 (29.5)	51.8 (11.0)	150.1 (18.6)	10.3 (3.1)	8.6 (1.9)	221.6 (67.4)	411.8 (87.1)
1975	767.3 (100.0)	1,310.6 (100.0)	190.6 (24.8)	475.3 (27.1)	312.5 (23.4)	492.3 (21.7)	58.9 (7.7)	199.8 (15.2)	161.2 (21.0)	474.6 (96.2)	635.8 (30.6)	162.2 (21.1)	45.8 (3.5)	208.0 (57.9)	790.2 (60.3)
1980	1,591.5 (100.0)	1,876.2 (100.0)	397.5 (24.9)	881.9 (25.8)	411.6 (17.3)	687.3 (20.0)	165.1 (10.4)	414.0 (22.5)	419.2 (26.3)	551.5 (30.0)	970.8 (28.3)	357.7 (22.4)	221.5 (12.1)	579.2 (16.9)	1,063.1 (57.9)
1981	1,071.9 (100.0)	1,554.1 (100.0)	320.5 (29.9)	752.6 (27.8)	210.5 (19.6)	540.4 (20.6)	127.0 (11.8)	319.2 (20.5)	189.6 (17.7)	491.5 (31.6)	681.1 (25.9)	232.3 (21.7)	152.5 (9.8)	381.8 (60.6)	910.1 (59.4)
1982	1,258.5 (100.0)	1,576.7 (100.0)	451.1 (35.8)	479.4 (30.4)	276.6 (22.0)	586.1 (20.7)	137.1 (10.9)	344.5 (21.8)	281.8 (22.4)	505.3 (32.0)	787.1 (27.8)	132.9 (10.6)	153.8 (9.8)	843.8 (67.0)	917.6 (58.2)
1983	1,116.9 (100.0)	1,437.6 (100.0)	396.5 (35.5)	387.4 (26.9)	231.1 (20.7)	531.8 (20.8)	115.8 (10.4)	360.1 (25.0)	255.2 (22.8)	507.6 (35.3)	762.8 (29.9)	121.0 (10.8)	121.7 (8.5)	740.7 (66.3)	808.3 (56.2)
1984	1,202.4 (100.0)	1,397.9 (100.0)	423.9 (35.3)	487.2 (34.9)	217.7 (29.6)	496.5 (19.1)	131.1 (10.9)	279.5 (20.0)	278.3 (23.1)	385.1 (27.6)	663.4 (25.5)	126.2 (10.5)	146.0 (10.4)	779.9 (66.4)	866.8 (64.0)
1985	1,171.6 (100.0)	1,770.3 (100.0)	423.3 (36.1)	824.5 (46.6)	222.5 (19.0)	485.4 (16.5)	160.9 (13.7)	274.4 (15.5)	229.2 (19.6)	375.1 (21.2)	604.3 (20.6)	147.6 (12.6)	144.2 (8.1)	794.8 (67.8)	1,251.0 (70.7)
1986	1,356.9 (100.0)	2,092.3 (100.0)	583.6 (43.0)	1,186.5 (56.7)	255.1 (18.8)	536.0 (13.4)	154.3 (11.4)	203.9 (9.7)	235.9 (17.4)	331.1 (15.8)	567.0 (16.4)	149.6 (11.0)	158.1 (7.6)	307.7 (8.9)	1,603.1 (78.6)
1987	1,476.3 (100.0)	2,437.0 (100.0)	717.4 (48.6)	1,329.2 (54.5)	214.7 (14.8)	304.8 (12.5)	519.5 (13.0)	237.6 (9.7)	237.6 (11.6)	455.3 (26.7)	555.9 (11.9)	267.2 (11.9)	267.5 (11.9)	483.3 (11.1)	
1988	1,762.1 (100.0)	2,919.7 (100.0)	881.5 (50.0)	1,735.6 (59.4)	212.3 (12.0)	379.7 (13.0)	293.2 (16.6)	262.7 (9.0)	262.7 (15.8)	555.9 (26.7)	555.9 (11.9)	267.2 (11.9)	267.5 (11.9)	483.3 (11.1)	
1989	1,654.7 (100.0)	2,708.4 (100.0)	822.3 (50.0)	1,477.2 (54.5)	166.7 (10.1)	398.5 (14.7)	562.7 (12.9)	215.8 (8.0)	215.8 (13.1)	483.3 (11.1)	483.3 (11.1)	166.7 (10.1)	166.7 (10.1)	483.3 (11.1)	

註: 1) '총계'와 '소련'의 1987~1989년 자료는 IMF의 1990년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포스트를 이용하여 먼저 북한의 외환 수출입 역수를 추계한 다음에 이를 다시 IMF의 '총계'에 대하여 표에 있는 총계치를 구했음.

여기에서 사용된 자료는,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経済と貿易の展望』 1989와 Business International, USSR Country Profile 1990-91 양.

2) 서방권, 개도국, 사회주의권과의 무역통계는 1970~1986과 1987~1989년에 國別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치의 추계가 거의 불가능함.

資料: 1) 1970~1986년까지는 통일관, 『북한 경제 개관』, 1988, PP. 88~89에서 인용하였음. 이는 본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7, 1979, 1987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임.

2) 1987~1989년까지는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0을 바탕으로 필자들이 정리한 것임.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70년 이후 북한의 주요 무역 대상국은 소련, 중국, 일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의 주요 국별 무역추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련과 북한과의 무역은 해방후 1960년대까지는 북한의 무역총액의 절반가까이 차지 했었으나, 1970년대는 북한의 對서방 교역이 증대되면서 한때 23-25% 수준까지 감소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쌍방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북한 무역 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對外貿易은 국제정치적 상황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 추세를 살펴보면, 양국간 무역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증대되어오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中·蘇 理念紛爭의 여파로 北·蘇關係가 冷却되면서 급증하였으나, 1966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홍위병들이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나서자 다시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1975년의 김일성의 중국방문과 1978년 華國錄의 북한방문으로 쌍방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무역규모도 증대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중국의 對西方 무역이 활발해지고 북·소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감소되어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의 경우 12.9%에 이르고 있어서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많은 기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北韓간의 무역은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조금씩 그 기운이 일기 시작해서 1955년 10월에 북한과 일본의 貿易商社間에 貿易協定書가 체결되고, 1956년 3월에는 일본에서 「日朝貿易會」가 결성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東西冷戰의 국제적 분위기와 일본의 대외관계 등으로 일본·북한 무역은 많은 제약을 받아 그 규모는 미미했다. 그러다가 일본·북한간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2

월 일본의 일조무역회와 북한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간에 「商品去來에 관한 協定」과 「一般條件」이 체결되면서부터였다. 특히 1970년대 초에 북한이 對西方 무역을 크게 증대시키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협정을 바탕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에 5,776만달러에 불과하던 쌍방간 무역은 1974년에는 3억 6,074만달러로 6.2배 증대되었으며,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18.2%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때 북한의 외채문제가 발생하면서 쌍방간 무역규모는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후 3-4년간의 침체기를 거쳐 1979년에 對日本 외채상환연기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증대되어 1980년대에는 4-5억달러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1980년대에는 외채문제외에도 1983년의 버마랑군 폭탄 테러사건,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쌍방간의 무역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규모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북한간 무역의 대부분이 日本內 조총련계 기업과 북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7년부터는 在日 조총련계 商社와 북한과의 合營企業 설립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기계·설비 도입과 합영기업 생산품의 對日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에 일본이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였는데 1989년에는 11.1%로 1980년대 초보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소련,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입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1983년 對蘇, 1988년과 1989년 對日 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의 경우 북한은 소련과의 무역에서 5억 9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해 북한이 기록한 총무역수지 적자 10억 5천만달러의 56.5%에 이르는 규모로서 소련이 북한의 무역에서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품목별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이들 세나라와의 무역에 대해

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그런데 이들 국가에 대한 북한의 품목별 무역구조는 1980년대 중반기 이전과 이후에 약간의 기복이 있으나, 후반에는 여러 해에 걸쳐서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품목별 무역구조 분석에서는 어느 한 해만을 대상으로 삼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 對蘇 貿易

(표2-3), (표2-4)는 1987-1989년도 북한의 對소련 주요 수출입 품목을 나타내고 있다. (표2-3)에 따르면 북한의 對소 수출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였고 1989년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압연강재, 마그네사이트 분말,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 전기기술 설비, 축전지, 금속 절삭기계, 비금속광물 점토 및 광토, 선박 및 선박설비, 시멘트 등이다. 이들 품목 중 의류는 가장 비중(52.5%)이 높을 뿐만아니라 최근 수출이 급속히 늘어난 품목인데 반하여 화학제품을 제외한 위에 열거한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소련이 북한에 공장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相計貿易이 활발하게 되었는데 소련의 소비재 부족으로 소련의 의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相計買入(Product Buy-Back)이 중공업뿐만아니라 경공업제품으로 확대되어 소련의 對북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對소련 수입은 (표2-4)에 따르면 1989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1983년 이후 1988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품목들은 기계설비 및 운송수단, 봉제공업제품용 재료 및 부품, 원유 및 석유제품, 석탄 및 코크스, 면직물 및 모직물, 동력설비, 섬유공업설비, 화물자동차, 압연강재, 면화사 등으로 이는 주로 중화학 공업용품으로 공장설비의

(표2-3) 북한의 對蘇 수출

분류번호	상 품 명	단위	1987		1988		1989	
			수량	금액 (천루블)	수량	금액 (천루블)	수량	금액 (천루블)
	총 액		-	431.9	-	539.5	-	561.5
10-19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	-	-	69327	-	65224	-	50228
100	금속질삭기계	대	1652	154155	2284	20736	1552	13736
111	전기기술설비	-	41576	-	31664	-	25153	-
11167, 11168	축전지	-	-	37480	-	25868	-	20776
11172	고압절연애자	천대	20	170	-	-	-	-
174	공 구	-	-	929	-	881	-	874
192	선박, 선박설비	-	-	11395	-	11832	-	6848
25	비금속광물, 점토, 광토	-	-	10172	-	11092	-	6875
26001	선 철	톤	29574	2572	28550	2492	-	-
26102	규소철	톤	3800	856	3433	774	3029	684
264	압연연강재	천톤	215	89005	187	73306	230	71709
30	화학제품	-	-	3613	-	6310	-	5599
30237	염화석회	-	-	1150	-	-	-	-
3042106	폴리염화수지	-	-	1052	-	1513	-	858
30924	탄칼슘	-	-	1168	-	4797	-	4741
4001	시멘트	천톤	247	6740	328	8552	220	5461
40301	외장용관(천연석, 인조트크리트)	-	25	64	-	-	-	-
4040401	마그네사이트분말	천톤	456	75333	471	70237	362	52292
560	휘발성천연향료	톤	32	534	62	1005	9	155
72302	전 분	톤	8680	1855	12187	2602	8370	1788
82005	쌀	톤	153738	29887	198673	30625	1431	221
8300101	산선한 토마토	톤	662	342	594	333	498	299
8300201								
832	산선한 과실	톤	10259	3259	6707	2227	5951	1940
83210	사 과	톤	5669	1787	2554	789	3035	979
8510302	담 배		60	282	-	-	-	-
8510303								
910, 913	외투, 의복(속옷, 모피류는 제외)	-	-	94789	-	213091	-	291886
914	상하예리아스제품	-	-	3296	-	4085	-	2717
91504	수 건	천장	8147	3103	8761	3594	6123	2664
93904	운동화		160	336	-	-	-	-
941	도자기	-	-	4079	-	2008	-	1522
97401-97404	인쇄물	-	-	77	-	57	-	41
97405	우표, 지폐수집	-	-	342	-	113	-	139

資料: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1991.2, P.38에서 재인용.

(표 2-4) 북한의 對蘇 수입

분류번호	상 품 명	단위	1987		1988		1989	
			수량	금액 (천루블)	수량	금액 (천루블)	수량	금액 (천루블)
	총 액		-	800.2	-	1062.2	-	945.5
10-19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	-	-	96014	-	156355	-	121814
100-103	금속절삭기계, 단조·스레스기	대	5	451	9	1301	-	2200
10502	금속절삭기계설비, 공구, 제조공장시설	-	-	954	-	991	-	-
110	동력설비	-	-	1300	-	21507	-	23168
11017, 11018	대형기관	-	-	646	-	498	-	1275
11098	동력설비의 부품, 공구	-	-	212	-	756	-	215
111	전기기술설비	-	-	1783	-	552	-	1696
11123	융접설비	-	-	86	-	-	-	-
11163	제전기(전화용 제외)	대	253	10	565	37	-	-
11186	생선(자동동기장치)	대	320	81	-	-	-	1495
113	케이블선	-	-	667	-	4046	-	26
11309, 11312	고주파용케이블	KM	106	63	21	19	7	183
11320	공중설치전력망용 나전선	톤	355	410	233	271	155	3490
120	유용광물 지하·노천개발용 설비	-	-	5277	-	4154	-	5768
12390	철강, 철, 압연품생산 공장설비	-	-	16768	-	6588	-	1507
128	지질탐사및천공용굴삭기계, 설치, 장치	-	-	1482	-	320	-	-
144	섬유공업 설비	-	-	11611	-	9851	-	18644
145	봉제공업 설비	-	-	5011	-	5023	-	5366
150	화학공업 설비	-	-	9993	-	1617	-	198
15501	펌 프	대	114	83	17	61	38	79
15502	컴프레셔	대	15	173	20	348	20	404
15970,	영화촬영장비 및 부품	-	-	111	-	64	-	54
1599870								
170, 171,	제죽기기, 실험설비	-	-	2935	-	3517	-	2861
178, 179								
172	의료설비 및 기구- (화학·제약공업용설비제외)	-	470	-	485	-	624	
17301	진동베어링	-	-	1262	-	655	-	1056
174	공 구	-	-	275	-	289	-	56
190	철도차량용 보조설비	-	-	223	-	200	-	3454
19101	화물자동차	대	505	12737	1744	48753	2103	15578

분류번호	상 품 명	단위	1987		1988		1989	
			수량	금액 (천루블)	수량	금액 (천루블)	수량	금액 (천루블)
19111,19198	차동자동차부품 및 수리용공부품 (발동기포함)	-	-	1897	-	2843	-	2557
192	선박, 선박설비	-	-	602	-	200	-	340
193	항공장비	-	-	3784	-	22744	-	5392
19501	승용차	대	116	640	198	919	159	795
200	석탄(유연탄, 무연탄포함)	천톤	790	34650	800	35082	749	32507
201	코르크스	천톤	231	21515	237	22047	190	17694
21	원 유	천톤	800	124738	640	85858	506	58097
22	식유제품, 합성액체연료	천톤	146	37926	128	30151	104	22355
24002	망 간	천톤	29	590	31	597	29	588
24004	크롬강	천톤	24	2186	21	1880	18	1700
25	비금속광물, 점토, 광토	-	-	2514	-	2607	-	2954
261	합금철	톤	7942	3856	7185	3577	6340	2909
26101	망간철	-	-	1744	-	1567	-	1449
26103	크롬철	-	-	1501	-	1399	-	1022
264	압연강재	톤	7414	3692	43994	9384	79668	14655
26058	냉압연강	-	-	61	-	31	-	3
26058	냉압연강	-	-	61	-	31	-	3
266	파이프	톤	3761	2381	4128	2453	720	350
268	금속제품	-	-	263	-	295	-	203
26801-26804	각종선재(철사)	-	-	37	-	40	-	25
2681301	강철로프	-	-	196	-	212	-	155
273	비철금속제품	-	-	378	-	283	-	175
30	화학제품	-	-	1318	-	1031	-	3256
30255	시안나트륨	톤	95	77	293	236	209	168
304	가소성물질 및 제조재료	-	-	502	-	635	-	640
3042108,	폴리에틸렌	톤	391	232	350	208	550	364
3042132								
309950	유압계동용액	톤	20	12	-	-	-	-
31001	유기합성염료	-	2432	2022	120	952	168	1552

분류번호	상 품 명	단위	1987		1988		1989	
			수량	금액 (천원)	수량	금액 (천원)	수량	금액 (천원)
331	영화·사진필름	-	-	298	-	198	-	46
33101	영화필름	-	-	230	-	173	-	-
341	칼륨비료	천톤	11	622	32	2552	-	-
405	단열재료	-	-	261	-	167	-	165
50502	셀룰로스 아류산염	톤	8162	2155	5592	1476	4025	1187
506	종 이	톤	8453	2773	8720	2961	7204	2513
5063302	[Kraft] 종이제품	톤	5135	1815	5009	1788	5000	1785
51001	면화사	톤	12527	17221	12000	15821	8596	11920
5140101	선방사	톤	690	1487	639	1373	841	2419
51406	인조섬유사	톤	2008	5642	2472	7060	-	-
59917	봉제공업제품용 재료 및 부품	-	-	106419	-	116545	-	116545
7000	소 배	천톤	293	25974	360	25032	-	-
900	면직물 및 면직물류	천톤	18081	93399	19158	9248	27672	14300
901	모직물 및 모직물류	천톤	1502	6883	5726	25646	6281	28001
960-962	의약품	-	-	437	-	392	-	404
9650102	세탁비누	톤	6893	3107	4895	2272	771	349
967	비타민영양소	-	-	162	-	153	-	182
97	일용문화용품	-	-	3174	-	1574	-	2305
970	가정용기계 및 기구	-	-	2423	-	1139	-	1953
97005	냉장고	대	9694	1126	3826	672	8080	1417
97011.	시계(기계장치포함)	개	113890	1088	32170	264	10000	107
97046.								
97061.								
97062								
97401-97404	인쇄물	-	-	537	-	219	-	215
97405	우표·지폐수집	-	-	3	-	2	-	5
976	스포츠용품, 수렵용품, 캠핑 및 여행용품	-	-	122	-	80	-	66
97801	영 화	-	-	89	-	114	-	60
98501	TV	대	57658	5884	41420	4704	13959	1396
05193	항공기정비	-	-	3566	-	1575	-	2989

資料: 姜正模, 전계서, PP.39-41에서 재인용.

對蘇 의존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무역에서 전체수입액의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어서 북한의 對蘇 무역에서 무역수지 적자의 주 요인이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입비중이 10%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압연강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원조의 성격을 띤 소련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對북한 공급이 정치적 및 경제적 요인으로 감소하였고 압연강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연유하고 있다.

북한과 소련간의 무역은 소련이 북한에 제공하는 공장설비와 기술의 댓가로 소련의 상계매입이 최근 활발하였고 이후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확대되는 정도와 최근의 한·소 관계 정상화에 따른 북한과 소련의 정치적 문제가 주는 영향에 따라 크게 변할수 있으나 북한이 對소련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단기간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현 수준의 무역이 당분간 하강곡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므로 1990년의 교역규모는 1989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최근 양국의 무역 부진은 장기무역협정에 의한 해당년도 무역협정의 세부계획을 집행하는 소련의 개별기업이 경제개혁 정책에 의해 獨立採算制가 실시되고 북한과 소련의 무역협정에 의한 수출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낮은 우호가격이기 때문에 소련기업에 實益이 없고 북한의 생산부진으로 인한 수출여력 부족으로 협정이 이행되지 못하는 데 연유하고 있으며 한·소 무역의 급속한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1991년 1월1일부터는 루블貨로 결제되던 북한과 소련의 교역이 국제통화(경화)로 결제할 것을 소련이 요구함에 따라 1991년의 양국간의 총교역은 더욱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石油價 상승,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불경기, 최대 교역상대국인 소련에서의 경제혼란으로 1991년 1월1자로 소련이 동유럽에 취한 석유보조를 중지한 결정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북한의 對蘇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크게 악화될 것이며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추가적인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므로 북한경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

(2) 對中 貿易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정치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1950년대 이후 증대되었고 1950년대 말 中·蘇 이념분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66년 중국의 文化革命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1970년대에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로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1980년대 전반에 중국의 개방화로 對西方 무역이 증대되고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가 밀접해져 다시 감소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증가하여 1988년 5.8억달러에 달했다가 다시 약간 감소하여 1989년에는 5.6억달러에 이르고있다. 북한과 중국간의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신장되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관계가 저조한 것은 양국무역이 중국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대체로 북한이 적자였으나 1984, 1986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1987년 이후 다시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2-5) 및 (표2-6)은 북한의 對中國 수출입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표2-6)를 보면 북한의 對中國 주요 수출품목은 1988년 鋼材, 厚鋼板, 優質鋼 등 철강제품이 약 9천만달러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糖이 16.8백만달러, 아연이 8.2백만달러, 쌀이 6.3백만달러, 목재6.1백만달러, 요소비료가 4.7백만달러의 순이다. 한편 (표2-6)을 보면 對中國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 원유, 콩, 옥수수, 사료, 석유제품, 타이어, 선박 등의 순서로 석탄, 원유 및 석유제품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였고 곡물이 약 16%

(표2-5) 북한의 對中國 수출

(單位: 1986~87; 中國萬元, 1988~90; US萬\$)

品名 ¹⁾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1-6月)
總計	96,963	89,010	23,367	18,535	6,166
第0類 食料品 및 動物	13,252	7,717	3,834	2,873	979
00 動物(살아있는 것, 주로 食用)	0	0	0
01 鳥獸肉類 및 그 調整品	1	5	0	0	0
02 酪農品 및 鳥卵	1	...	0	0	0
03 魚介類 및 그 調整品	12,438	6,735	3,193	1,677	330
04 穀物 및 그 調整品	788	955	632	1,168	623
05 野菜 및 果實	12	19	46	29	18
06 糖類 및 그 調整品 또는 벌꿀	63	0	0
07 커피, 茶, 코코아, 香辛料, 同製品	0	0	0
08 飼料(粉碎하지 않은 穀物 除外)	11	2	0	0	8
09 其他 食用 生産品 및 同製品	0	0	0
第1類 飲料 및 담배	834	1,859	17	10	0
11 飲料	0	0	0
12 담배	834	1,859	17	10	0
第2類 食用에 適合치 않은 原材料(鑛物性 燃料 除外)	10,454	10,214	3,666	3,503	588
21 原皮 및 毛皮(마무리하지 않은 것)	344	276	69	0	0
22 採油用的 땅콩 및 核	0	0	0
23 생 고무	434	17
24 코르크와 목재	913	124
26 織物用纖維 및 그 조각	25	17	0
27 肥料 및 粗鑛物	...	62	86	50	40
28 金屬鑛 및 金屬 조각	8,558	8,552	2,886	1,219	272
29 其他 動物性 또는 植物性的 원료	1,551	1,139	243	870	134
第3類 鑛物性 燃料, 潤滑油, 이들 類似品	20,286	22,037	5,779	5,149	1,574
32 石炭, 코크스 및 煉炭	20,248	21,937	5,708	4,852	1,547
33 石油, 石油製品 및 關聯原料	38	53	14	255	4
第4類 動物性 또는 植物性 油脂와 밀납	0	0	0
41 動物性 油脂	0	0	0
42 植物性 油脂	0	0	0

品名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1-6月)
第5類 化學工業生產品	2,931	3,523	1,151	691	275
51 有機化合物	27	228	45	40	2
52 無機化合物	27	195	22	17	4
53 染料, 皮革劑, 顏料, 塗料 및 充填劑	8	...	0	0	0
54 醫藥品	...	43	0	0	0
55 精油, 香料, 化粧品, 洗劑 및 光澤料	0	0	0
56 肥料	2,868	2,892	906	546	141
57 火藥類	0	0	0
58 人造 플라스틱	1	164	178	88	128
59 其他 化學工業生產品	0	0	0
第6類 原料別製品	48,587	42,622	8,856	5,986	2,680
61 革, 革製品 및 마무리된 毛皮	...	63	0	1	31
62 고무製品	0	0	0
63 코르크製品 및 木製品(家具 除外)	10	...	100	0	0
64 紙, 板紙 및 이슬製品	48	...	0	0	0
65 織物用纖維絲, 織物 및 纖維製品	439	396	54	89	17
66 其他 非金屬織物製品	15,851	16,921	2,789	1,933	483
67 鐵 鑄	26,256	22,002	3,912	2,951	1,864
68 非鐵金屬	5,979	3,237	2,001	1,010	285
69 其他 金屬製品	3	2	0	1	0
第7類 機械 및 輸送用 機械	557	15	31	62	49
71 原動機와 그 部品	...	17	1	0	0
72 特定產業用機械	...	2	2	3	0
74 一般產業用器機와 그 部品	...	3	8	2	32
75 事務用器機와 自動式 데이터處理機	0	0	0
76 通信機器, 放送受信機, 音聲錄音, 再生器機	548	...	1	0	0
77 其他 電氣器機	6	56	2
78 道路走行車輛	9	3	13	0	15
79 其他 輸送用器機	0	0	0
第8類 雜製品	40	42	23	24	20
82 家具	...	1	0	0	0
84 衣類 및 그 附屬品	2	0	0
85 신발	0	0	0
87 光學器機類, 醫療用機械, 精密器機類	28	15	0	1	20
88 寫真用裝置 및 器機, 光學用器機, 時計	...	4	4	8	0
89 其他 雜製品	12	17	16	14	0
第9類 特殊取扱品	24	972	9	238	1

註: 1) 1986~90년 기간에 品名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무시할 만한 것임.

資料: 中國海關統計, 1986~87년 자료는 통일원, 「북한경제 개관」(1988. 12)에서 재인용 했고, 1988~90년 자료는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8, 89, 90년에서 얻었음.

(표2-6) 북한의 對中國 수입

(單位: 1986~87; 中國萬元, 1988~90; US萬\$)

品名 ¹⁾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1-6月)
總計	87,608	104,204	34,535	37,737	16,083
第0類 食料品 및 動物	6,525	7,426	3,435	7,576	2,996
00 動物(살아있는 것, 主로 食用)	8	18	10	0	0
01 鳥獸肉類 및 그 調整品	...	117	123	827	202
02 酪農品 및 鳥卵	3	46	1
03 魚介類 및 그 調整品	1	0	0
04 穀物 및 그 調整品	4,792	5,530	2,267	4,459	2,209
05 野菜 및 果實	16	41	107	1,095	27
06 糖類 및 그 調整品 또는 벌꿀	...	26	16	137	264
07 커피, 茶, 코코아, 香辛料, 同製品	5	17	4	23	0
08 飼料(粉碎하지 않은 穀物 제외)	1,702	1,672	913	984	292
09 其他 食用의 生産品 및 調整品	2	7	0	4	1
第1類 飲料 및 담배	2	36	34	123	33
11 飲料	2	36	34	117	24
12 담배	...	1	0	6	10
第2類 食用에 適合치 않은 原材料(鑛物性 燃料 包含)	9,699	15,931	5,987	4,787	2,413
21 原皮 및 毛皮(마무리하지 않은 것)	0	0	0
22 採油用的 땅콩	4,930	8,171	1,978	2,727	991
26 織物用纖維 및 그 조각	2,127	3,842	1,689	1,263	1,079
27 肥料 및 粗鑛物	1,975	2,223	462	364	292
28 金屬鑛 및 金屬저거기	325	1,487	1,534	290	32
29 其他 動物性 또는 植物性的 原料	341	70	216	143	4
第3類 鑛物性燃料, 潤滑油, 이물 類似品	59,889	65,421	17,449	14,476	6,040
32 石炭, 코우크스 및 煉炭	23,477	32,776	9,093	7,284	2,971
33 石油, 石油製品 및 關聯燃料	36,412	32,645	8,355	7,192	3,069
第4類 動物性 또는 植物性 油脂와 밀납	1,000	420	83	27	6
41 動物性油脂	...	34	4	0	0
42 植物性油脂	1,000	363	78	27	6

品名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1-6月)
第5類 化學工業生產品	2,429	4,565	1,499	2,868	1,769
51 有機化合物	21	566	353	272	118
52 無機化合物	252	1,689	344	310	324
53 染料, 柔皮劑, 顏料, 塗料 및 充填劑	395	642	180	392	187
54 醫藥品	5	90	12	22	28
55 精油, 香料, 化粧品, 洗劑 및 光澤料	168	296	185	965	312
56 肥料	0	0	396
57 火藥類	1,253	1,050	343	315	73
58 人造 플라스틱	207	34	60	213	52
59 其他 化學工業生產品	126	198	118	381	281
第6類 原料別製品	5,776	5,258	2,809	3,300	1,250
61 革, 革製品 및 마무리된 毛皮	16	13	4	3	0
62 고무製品	961	1,291	1,010	1,549	522
63 코르크製品 및 木製品(家具 除外)	1	0	8
64 紙, 板紙 및 이물 製品	110	117	145	131	137
65 織物用纖維絲, 織物 및 纖維製品	3,976	3,020	334	505	226
66 其他 非金屬礦物製品	10	24	71	338	39
67 鐵 鑛	37	24	389	190	164
68 非鐵金屬	612	637	682	211	58
69 其他 金屬製品	43	131	193	374	96
第7類 機械 및 輸送用 機械	1,799	3,560	2,587	3,036	1,214
71 原動機와 그 部品	35	117	26	53	74
72 特定產業用機械	548	617	191	527	567
74 一般產業用機械와 그 部品	736	849	296	447	187
75 事務用機械와 自動式 데이터處理機	13	22	157	124	1
76 通信器機, 放送受信機, 音聲錄音, 再生器機	15	829	322	851	162
77 其他 電氣器機	231	417	97	194	86
78 道路走行車輛	179	535	1,475	772	119
79 其他 輸送用器機	42	169	2	14	10
第8類 雜製品	490	824	526	883	232
82 家 具	...	35	44	10	4
84 衣類 및 그 附屬品	235	250	221	314	119
85 신 발	4	164	166	102	30
87 光學器機類, 醫療用器機, 精密器機類	70	237	25	110	22
88 寫真用 裝置 및 器機, 光學用器機, 時計	42	19	7	15	3
89 其他 雜製品	140	110	45	296	47
第9類 特殊取扱品	9	761	127	659	129

註: 1) 1986~90년 기간에 品名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무시할 만한 것임.

資料: (표2-5)와 같음.

를 점하였다. 1989년도의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은 부진한 경제실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한국과 소련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옴에 따라 이미 고립된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것 같으며 양국간의 무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1989년의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은 중국의 對北韓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9.3% 증가하여 377백만달러였으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20.7% 하락하여 180백만달러를 기록하여 무역규모는 2.8%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1989년에 대외무역이 10.1% 감소하였으며 이는 1984년 이후 처음있는 현상이다. 북한과 소련과의 무역이 9.6% 감소하였고 북한과 일본과의 무역이 12.3% 감소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이 2.8% 감소한 것은 아주 적게 감소한 것이다. 1989년도에 중국은 북한의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북한의 총무역의 13.8%를 점하여 58.4%를 점유하고 있는 소련의 뒤를 잇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 중국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0.5%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그런데 중국의 對북한 수입이 감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對북한 수출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3) 對日 貿易

일본과 북한의 무역은 1970년대 초에 북한이 對西方國과의 무역을 늘리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약 5.8백만달러에서 1974년에는 3.6억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여 북한의 총 교역량의 비중도 7.2%에서 18.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후 북한의 외채문제로 무역대금 지불이 어렵게 되어 양국간에 무역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1979년에 양국간에 외채상환의 연장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회복되었다. 1980-1986년 간에는 매년 감소하다가 그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1989년에 일본이 북한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이다. 무역수지는 1974년 이후 1986년

까지 계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여 외채문제를 야기 시켰으나, 1987년 이후 작으나마 對日 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북한의 무역이 대부분 재일 조총련계 기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7년부터 재일 조총련계 기업들이 북한에서 합영기업의 설립이 활발하여 설비재의 도입이 증대되고 합영기업제품의 對日 수출이 증대되어 무역규모가 증대하였고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래서 1989년의 對日수출은 3.0억달러이고 對日 수입은 2.0억달러로 1억달러의 흑자를 이루었으며 총고역량은 약 5억 달러에 달했다.

(표2-7)과 (표2-8)은 북한의 對일본 주요 수출입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표2-7)을 보면 북한의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1989년 비철금속 및 동제품이 약 122백만달러로 약 41%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액수가 1987년 이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식물성 생산품, 광물성 생산품, 방직용 섬유 및 동제품, 調製食料品 및 음료, 寶石, 귀금속 및 동제품의 순으로 귀금속류는 변동이 심한 반면 재일 조총련 기업의 합영사업이 증가하여 섬유제품과 같은 공산품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2-8)을 보면 북한의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은 1989년 기계류, 전기기기, 운송기기, 방직용 섬유 및 동제품,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 및 동제품의 순으로 주로 중화학공업제품이었으며 방직용 섬유 및 동제품은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7) 북한의 對日 수출

(單位 : 千*)

構成 및 主要品目	1982年	1983年	1984年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動物性生産品	9,897,275	7,890,772	6,137,332	6,125,555	6,215,725	7,597,635	7,622,484
갯지렁이	173,100	191,854	194,500	229,191	209,690	206,173	300,957
청어(冷凍)	107,120	159,218	46,681	12,070	-	9,802	-
대구(冷凍)	96,211	44,598	-	19,337	14,830	-	-
대구알(冷凍)	1,913,919	1,276,133	360,283	284,257	201,790	53,059	253,122
대구알(鹽藏)	3,546,700	2,612,550	1,539,193	1,612,718	1,282,250	1,516,520	447,961
연어 및 송어	649,001	453,526	515,123	240,646	250,623	113,086	-
게(活, 新鮮, 冷蔵, 冷凍)	263,491	108,103	72,226	143,310	489,852	2,287,674	2,769,538
대합(活, 新鮮, 冷蔵, 冷凍)	808,619	1,495,929	1,709,593	1,909,348	1,447,826	1,520,037	882,856
其他 甲殼類 및 軟體動物	48,411	53,205	95,499	226,302	188,842	339,781	-
성 게	551,363	335,913	503,519	413,711	331,437	339,781	668,900
羽毛	1,241,189	445,441	197,322	49,332	182,654	29,790	-
植物性生産品	3,731,095	2,911,036	4,041,623	4,635,893	3,158,593	3,776,639	2,872,662
송이버섯(新鮮, 冷蔵)	1,383,436	917,631	1,269,955	2,476,881	1,872,711	2,730,827	1,645,704
冷凍野菜	283,214	537,596	1,141,611	578,083	325,634	28,048	123,821
野菜(鹽水等으로 貯藏)	1,057,546	1,756,458	995,787	1,030,124	517,883	482,961	533,946
고 추	102,475	79,654	11,333	15,194	10,694	1,037	-
藥用植物	596,489	403,104	399,166	387,830	245,296	312,468	300,120
調整食料品, 飲料	884,601	1,675,001	2,452,754	1,194,881	709,662	1,277,726	1,402,311
청어 또는 대구알 調整品	444,136	1,259,119	1,826,244	515,787	289,673	674,401	647,912
甲殼類 및 軟體動物의 調整品	272,424	211,120	417,682	420,334	288,238	458,526	332,019
鑛物性生産品	6,900,692	4,403,820	5,399,632	5,559,966	4,683,028	3,343,440	4,261,010
天然土狀黑鉛	142,549	28,647	219,747	109,605	72,087	99,478	99,728
石英 및 규암(內張石)	78,581	27,005	53,884	35,180	47,106	42,480	-
카오린	98,626	81,386	94,238	109,903	93,288	22,695	67,092
花崗岩 等	149,648	154,959	160,284	101,689	139,761	123,489	193,412
마그네슘사크링카	2,474,771	2,468,616	2,217,042	1,635,155	685,850	648,786	465,335
滑石	534,140	318,731	350,095	204,548	194,422	102,547	22,457
亞鉛鑛	2,497,667	735,311	1,060,670	502,624	298,902	-	73,060
焦煙炭	578,313	367,800	978,651	2,742,606	2,997,412	1,604,353	2,611,572

構成 및 主要品目	1982年	1983年	1984年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化學工業生産品	382,325	980,198	618,619	268,524	69,277	224,637	128,396
尿 素	154,551	745,437	232,798	83,034	-	63,313	14,829
페퍼민트油	217,981	209,639	349,976	161,638	62,787	102,552	90,004
木材 및 그 製品	74,687	103,406	117,444	75,418	54,540	346,371	691,749
木材(製材用, 베니야板用)	74,687	80,052	65,237	75,418	54,540	268,859	373,178
紡織用纖維 및 그 製品	3,143,227	2,335,305	1,937,275	1,571,251	1,289,086	986,958	2,035,817
누에고치(조絲用)	488,335	595,237	379,956	-	68,266	6,364	91,292
生 絲	281,678	78,400	55,462	131,907	76,335	8,683	144,225
허드렛 고치	1,418,413	748,303	212,004	263,060	181,570	58,259	158,678
副 蠶 絲	380,802	358,181	744,563	554,976	346,217	302,001	694,796
羊 毛	28,188	42,528	107,791	51,460	16,709	-	15,467
케시미어염소털	110,549	85,673	99,793	81,652	-	-	-
綿裂타올	286,339	259,183	242,814	323,290	275,617	243,502	170,623
貴石, 貴金屬 및 이들 製品	532,409	3,908	228,555	7,804,636	1,693,375	5,708,712	9,413,527
銀	330,244	3,908	21,821	24,293	-	185,781	650,696
金	202,165	-	206,734	7,778,445	1,693,375	5,522,021	8,761,323
卑金屬 및 그 製品	11,819,272	8,457,803	13,164,539	15,645,791	11,166,387	11,495,924	12,977,416
鉄 鐵	1,314,070	856,366	2,002,324	2,098,296	1,200,091	1,112,230	495,853
鐵鋼찌꺼기	208,913	94,208	-	55,830	414,182	249,502	291,128
鐵鋼코일	36,393	653,960	1,051,846	3,109,674	2,111,302	2,895,714	3,324,356
鐵鋼鋼板	2,527,404	2,139,421	1,877,694	590,784	606,224	727,260	
알루미늄塊		-	52,044	2,080,550	622,194	700,181	1,218,299
鉛 塊	2,640,993	1,087,986	3,517,422	1,411,662	976,794	1,418,473	1,239,766
亞鉛塊	5,042,557	3,576,348	4,110,553	6,055,078	4,767,758	4,070,157	5,779,202
其 他	144,914	294,200	201,999	425,845	124,053	137,956	183,365
檢 入 合 計	37,510,497	29,955,452	34,299,772	43,200,874	29,272,806	34,885,998	41,588,737

資料: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의 經濟と 貿易의 展望」, 1989. 8. 1982~87年 資料는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에서 재인용한 것임.

(표2-8) 북한의 對日 수입

(單位 : 千₩)

構成 및 主要品目	1982年	1983年	1984年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動植物性 油脂類 ¹⁾	1,015,949	511,625	119,887	112,317	106,067	114,604	
大豆油	236,248	244,662	20,997	52,573	80,320	68,181	
글리세린	621,872	163,882	30,909	5,426	-	-	
鐵物性生産品	4,215,824	2,518,797	1,928,232	1,338,993	577,940	435,998	350,041
鉛 鐵	684,047	522,380	230,413	241,534	-	-	-
코우크스	3,133,003	1,591,839	1,481,310	860,387	286,783	184,228	308,783
化學工業生産品	7,383,774	6,484,547	4,284,926	4,918,412	2,471,754	2,120,377	1,904,568
酸化알루미늄		984,793	1,164,848	1,180,546	244,583	268,600	487,568
合成樹脂를 含有한 와니스, 페인트 ²⁾	308,433	358,939	272,967	472,866	207,120	172,244	281,514
三元環 또는 四元環 에폭신 等	8,378	216,272	8,448	414,078	582,187	107,715	-
푸탈酸 디옥신	606,432	452,476	93,397	174,557	44,056	8,930	-
殺 蟲 劑	658,089	383,272	150,981	146,543	1,025	6,946	-
除 草 劑	1,719,958	781,410	386,545	285,842	1,380	478	127,300
樹脂, 플라스틱, 고무 및 그 製品 ³⁾	4,654,165	5,129,745	4,236,601	4,977,305	2,179,363	2,610,143	1,936,658
프라스틱제품 ²⁾							532,501
폴리에틸렌	252,731	148,606	72,937	158,393	135,539	51,601	
고무제품 ²⁾							235,314
鹽化비닐 樹脂	330,084	422,724	290,782	171,675	160,081	221,275	-
運搬用 또는 包裝用 容器	277,989	248,217	104,372	116,624	118,691	146,673	-
고무製 벨트, 벨팅	449,936	782,664	522,137	679,015	209,149	451,472	-
타이어, 튜브	1,081,991	1,204,909	1,898,803	1,836,274	757,025	609,197	252,151
板紙 및 그 製品 ⁴⁾	3,622,554	2,354,209	2,485,604	2,145,043	946,097	812,135	566,850
종이 및 종이상자 ²⁾							97,629
新聞用紙	349,298	667,843	514,953	276,031	49,438	28,280	-

構成 및 主要品目	1982年	1983年	1984年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印刷用紙(표백化學 필프製) ^o	377,273	363,398	623,144	452,525	109,215	96,086	121,074
크라프트紙, 크라프트板紙	1,369,926	490,604	402,526	578,951	234,167	161,111	-
紡織用纖維 및 그 製品	9,480,681	3,861,396	2,609,314	3,189,516	2,170,910	1,938,565	2,843,019
毛織物 ^o							253,731
人造纖維의 長纖維, 그 織物 실, 망, 케블 ^o	715,140	493,772	417,408	623,142	359,967	248,614	234,428
人造纖維의 短纖維, 그 織物 진주, 보석, 귀금속 등 ^o	1,197,470	476,606	338,376	899,012	223,819	181,947	2,844,019
용단, 其他 갈 것	573,898	565,653	367,903	445,802	221,147	115,310	
漁 網	261,851	196,178	254,215	171,472	371,195	376,747	270,310 ^o
금(비활제용, 1차 제품) ^o							2,825,353
卑金屬 및 그 製品	10,504,210	12,210,252	8,258,842	8,721,778	4,420,529	5,330,334	2,902,343
스테인레스등의 프라토록제품 ^o							792,562
鐵鋼 및 그 製品	7,846,050	8,497,135	5,848,025	5,542,259	2,649,243	3,424,471	916,490 ^o
銅 및 그 製品	526,820	1,058,590	212,481	373,869	259,623	183,390	-
알루미늄 및 그 製品 ^o	754,853	1,375,511	1,200,252	1,065,491	332,524	428,429	78,345
機 械 類	14,399,334	17,590,823	15,273,388	13,299,293	6,302,339	7,336,913	6,766,732
內燃機關	1,782,645	884,891	2,303,696	442,371	535,486	466,474	491,453
液體펌프	539,493	1,143,776	479,736	384,424	333,015	289,842	238,334
氣體펌프, 氣體壓縮機	838,429	1,388,637	475,621	690,746	138,651	132,975	202,996
에어콘디셔너	437,213	593,962	216,275	207,546	298,999	126,325	231,575
冷藏庫, 冷凍機器	787,578	1,552,059	1,179,308	1,138,343	641,376	588,804	686,932
원심분리기, 여과기, 청정기 ^o							175,364
溫度變化의 方法으로 材料를 處理하는 機器 건설용 기계 ^o	1,004,227	703,085	1,316,586	947,070	391,437	314,487	340,589
荷投用機械	304,289	800,128	492,687	1,135,530	218,373	205,002	168,708
장적준비기계, 실감는기계 ^o							665,091
鑛業·土木用機械	3,609,910	1,920,987	3,986,697	1,659,799	1,461,888	1,487,604	
고무 또는 프라스틱의 가공기계 ^o							665,091
工作機械	933,686	2,240,906	859,696	426,218	258,635	484,548	781,882

機械 및 主要品目	1982年	1983年	1984年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육크·조립판 등 ¹⁾	362,284	1,053,231	415,870	356,477	345,016	271,265	358,983
메아링	266,836	257,408	180,077	207,982	140,439	91,315	-
電機機器 ²⁾	4,901,501	7,575,840	5,579,778	5,282,085	3,322,696	3,622,743	3,297,933
電氣爐 ²⁾							131,105
發電機, 電動機, 變壓機 等	584,916	838,952	511,731	378,252	487,740	319,999	455,154 ³⁾
마이크로폰, 보청기, 헤드폰, 오디오류 ²⁾							101,227
有線通信機器	269,652	550,394	345,024	177,096	136,599	205,034	
T.V 수상기 ²⁾							380,250
無線通信機器, 라디오, TV 等	1,451,631	923,723	966,051	1,290,918	770,689	916,326	
전기회로의 개폐, 접속, 보호용기기 ²⁾							318,605
配電盤, 制御盤	444,087	818,157	549,757	446,005	287,005	238,601	319,523
電力·通信케이블 等	389,163	1,502,373	955,315	435,112	364,160	575,528	186,857
탄소전극, 탄소브러시 ²⁾							162,178
人造黑鉛電極(丸形)	63,369	1,911	18,632	333,653	305,695	132,358	-
輸送機器	9,991,945	10,074,483	6,822,264	6,868,666	3,872,667	2,253,858	2,486,383
乘用車	526,727	371,492	388,229	1,492,942	983,740	635,575	1,033,378
비 스	354,528	807,353	1,264,596	667,129	237,118	191,035	346,571
貨物自動車	2,118,374	2,135,477	3,162,601	3,453,201	1,532,040	661,309	691,904
運轉室·엔진附着 트럭	5,824,289	5,120,999	1,149,826	36,829	375,246	305,528	-
特殊用途用 自動車	456,079	686,823	343,711	350,889	217,477	128,483	148,411
中古 貨物船	38,887	161,321	152,026	83,167	-	-	103,044 ⁴⁾
中古 漁船	99,007	-	10,000	-	182,437	-	
其他 機器(光學, 寫眞, 精密計測, 醫療, 藥品, 錄音, 錄運機 等)	1,025,356	3,968,054	3,847,656	1,802,732	1,580,111	1,412,358	1,176,702
其他	6,876,217	5,340,884	4,873,868	6,505,728	3,088,889	2,854,475	3,417,587
輸 出 合 計	78,071,510	77,620,655	50,317,360	59,049,551	31,039,362	30,084,493	30,593,201

註: 1) 분류상 1988년에는 기타로 포함되었음.

2) 1988년 자료에서만 나타난 품목임.

3) 1988년의 경우에 이전 자료의 비교하기 위해 품목을 합친것임.

4) 1988년과 그 이전 연도의 분류상 약간 차이가 있음.

資料: (표2-7)과 같음.

나. 南韓의 國別·品目別 貿易構造

(1) 國別 貿易構造

(표2-9)는 남한의 주요국별 수출입 시장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남한의 수출가운데서 미국은 1970년에 47.3%, 1989년에는 33.1%에 이르고 있어서 1970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일본, 홍콩, 서독, 영국의 순으로 주요 수출 상대국들이다.

한편 남한의 수입 가운데서 일본은 2년(1982, 1983)을 제외하고는 1970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는데 그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40.8%였다가 점점 감소하여 1989년에는 28.4%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미국이며 그 다음으로 서독, 인도네시아, 영국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같은 무역추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남한에서 주요 무역상대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표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남한은 수출 및 수입에 있어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남한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표2-9) 韓國의 主要國別 輸出·入市場 構成 (단위: %)

연도	합계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70	100.0	100.0	47.3	29.5	28.1	40.8	3.3	1.0	0.9	1.7
1971	100.0	100.0	49.8	27.5	24.5	39.8	3.9	0.8	1.1	1.7
1972	100.0	100.0	47.1	25.7	25.2	40.9	4.5	1.4	1.0	1.9
1973	100.0	100.0	20.9	28.3	36.3	40.7	3.4	0.7	1.2	1.3
1974	100.0	100.0	33.5	24.8	30.9	38.2	3.4	0.4	1.2	1.6
1975	100.0	100.0	30.2	25.9	25.4	33.5	3.6	0.3	1.3	2.3
1976	100.0	100.0	32.3	22.4	23.4	35.3	4.2	0.4	1.1	0.9
1977	100.0	100.0	31.0	22.6	21.4	36.3	3.4	0.3	1.0	1.0
1978	100.0	100.0	31.0	20.3	20.7	40.0	3.0	0.3	1.1	1.0
1979	100.0	100.0	29.1	22.8	22.3	32.7	3.5	0.4	1.1	1.0
1980	100.0	100.0	26.3	21.9	17.4	26.3	4.7	0.4	1.2	1.4
1981	100.0	100.0	26.6	23.2	16.5	24.4	5.4	0.8	1.2	1.4
1982	100.0	100.0	28.6	24.6	15.5	21.9	4.1	1.0	0.9	1.2
1983	100.0	100.0	33.7	24.0	13.9	23.8	3.3	0.8	0.6	1.1
1984	100.0	100.0	35.8	22.4	15.7	24.9	4.4	1.5	0.9	1.1
1985	100.0	100.0	35.5	20.8	15.0	24.3	5.2	1.6	0.6	1.1
1986	100.0	100.0	40.0	20.7	15.6	34.4	4.9	1.3	1.0	1.4
1987	100.0	100.0	38.7	21.4	17.8	33.3	4.7	1.0	1.2	1.9
1988	100.0	100.0	35.3	24.6	19.8	30.7	5.9	1.1	1.6	2.1
1989	100.0	100.0	33.1	25.9	21.6	28.4	5.4	0.9	2.1	2.2

연도	인도네시아		영국		서독		기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70	0.3	1.0	1.6	1.7	3.3	3.4	15.3	21.0
1971	0.8	1.7	1.3	1.9	2.9	3.1	15.6	23.4
1972	1.3	2.5	1.8	2.9	3.2	2.7	15.9	21.9
1973	0.9	3.6	2.2	1.6	3.4	3.1	22.8	20.5
1974	1.2	2.4	2.4	1.3	5.4	2.0	22.0	29.1
1975	1.0	2.0	3.2	1.7	6.1	2.6	29.1	31.8
1976	0.6	2.7	3.3	2.0	5.2	2.7	29.9	33.6
1977	0.7	3.3	3.0	1.4	4.8	3.2	34.7	31.9
1978	0.8	2.7	3.1	1.4	5.2	3.3	34.2	31.0
1979	1.3	2.9	3.6	2.5	5.6	4.1	33.6	33.7
1980	2.1	2.2	3.3	1.4	5.0	2.9	40.0	43.5
1981	1.7	1.5	3.3	1.5	3.8	2.6	41.4	44.8
1982	1.8	2.8	5.0	1.7	3.5	2.8	40.6	44.1
1983	1.0	1.5	4.1	1.8	3.2	2.5	40.1	44.5
1984	0.9	2.1	3.3	1.8	3.2	2.6	35.9	43.4
1985	0.6	2.1	3.0	1.8	3.2	3.1	36.8	45.1
1986	0.5	1.4	3.0	1.4	3.6	3.8	31.5	35.6
1987	0.5	2.0	3.2	1.8	4.2	4.4	29.6	34.4
1988	0.7	1.7	3.2	1.8	3.9	4.0	29.7	34.0
1989	1.1	1.8	3.0	1.5	3.4	4.3	30.4	35.0

資料：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主要經濟指標』, 1990, pp.222-223.

(2) 品目別 貿易構造

남한의 무역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고 있기는 하나(1989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남한무역의 54.5%를 차지) 북한에 비해 훨씬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상품의 수출입 품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표2-10) 및 (표2-11)은 한국의 주요 상품별 수출입을 나타낸 것으로서 (표2-10)에 따르면 한국은 SITC大本류에서는 전자 및 전기(26.8%), 섬유류(23.2%)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단연코 높은 편이다. 또 SITC2-Digit 에서는 섬유제품, 신발, 산업용 전자,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표2-11)을 보면 한국의 수입은 SITC大本류에서는 기계류 및 은반용 기계(21.4%), 화학공업생산품(19.2%), 전자 및 전기제품(17.8%) 등이 높은 편이다. 또 SITC2-Digit 에서는 일반기계(11.4%), 농산물(11.0%), 전자부품(10.4%), 원유 등의 연료(9.4%), 유기화학제품(8.8%)의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가운데 주종을 이루고 있는 품목은 남한의 경우에도 거의 모두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북한의 품목별 무역구조를 비교한 결과 북한은 대부분 1차 상품을 수출하는 대신 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계류 등 중공업 제품을 수입하고, 남한은 대부분 섬유, 전자, 신발 등 경공업 제품과 수송수단 등 중공업 제품도 수출하는 대신 농산물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부품 등을 주로 수입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한은 출발부터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펴온 결과 현재 무역규모가 세계 10위 정도에 이른 반면, 북한은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펴

(正2-10) 韓國의 主要 商品別 輸出*
(단위: US百萬\$, %)

		1980	1985	1988
輸 出 總 額		17,505 (100.0)	30,283 (100.0)	60,696 (100.0)
(01) 農 產 物		628.5 (3.6)	444.6 (1.5)	759.8 (1.3)
(03) 水 產 物		738.2 (4.2)	869.3 (2.9)	1,911.1 (3.1)
(032) 活 鮮 魚		154.8 (0.9)	239.5 (0.8)	601.3 (1.0)
(1) 化 學 工 業 製 品		776.2 (4.4)	896.5 (3.0)	1,631.3 (2.7)
(11) 有 機 化 學 製 品		327.9 (1.9)	510.0 (1.7)	1,052.9 (1.7)
(111) 石 油 化 學 製 品		203.4 (1.2)	372.8 (1.2)	648.2 (1.1)
(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製品		1,013.0 (5.8)	1,200.6 (4.0)	2,798.0 (4.6)
(21) 플 라 스 틱 製 品		351.6 (2.0)	417.8 (1.4)	1,281.9 (2.1)
(22) 고 무 製 品		496.6 (2.8)	494.7 (1.6)	862.7 (1.4)
(222) 타 이 어 및 투 브		477.1 (2.7)	440.3 (1.5)	780.9 (1.3)
(23) 가 죽 및 毛 皮 製 品		164.8 (0.9)	288.1 (1.0)	653.4 (1.1)
(3) 非 金 屬 礦 物 製 品		527.2 (3.0)	1,291.9 (4.3)	1,423.0 (2.3)

	1980	1985	1988
(4) 織 維 類	5,040.8 (28.8)	7,078.7 (23.4)	14,111.3 (23.2)
(42) 織 維 絲	582.4 (3.3)	595.4 (2.0)	830.4 (1.4)
(43) 織 物	1,275.4 (7.3)	1,613.7 (5.3)	3,400.5 (5.6)
(434) 人 造 長 織 維 織 物	563.9 (3.2)	853.9 (2.8)	1,755.8 (2.9)
(49) 織 維 製 品	3,140.1 (17.9)	4,792.5 (15.5)	9,695.3 (16.0)
(491) 衣 類	2,788.0 (15.9)	4,259.4 (14.1)	8,448.5 (13.9)
(4911) 編 織 製 衣 類	846.8 (4.8)	1,448.9 (4.8)	3,061.0 (5.0)
(4912) 織 物 製 衣 類	1,608.6 (9.2)	2,232.9 (7.4)	3,746.7 (6.2)
(4913) 革 製 衣 類	332.6 (1.9)	577.5 (1.9)	1,640.9 (2.8)
(491310) 革 製 衣 類	240.7 (1.4)	416.2 (1.4)	1,418.5 (2.3)
(5) 生 活 用 品	1,456.3 (8.3)	2,581.0 (8.5)	6,311.8 (10.4)
(51) 什 貨	908.0 (5.2)	1,572.6 (5.2)	3,800.7 (6.3)
(512) 革 靴	106.4 (0.6)	1,020.0 (3.4)	2,489.5 (4.1)
(58) 玩 具 喫 人 形	203.7 (1.2)	470.1 (1.6)	974.4 (1.6)

	1980	1985	1988
(6) 鐵鋼 · 金屬製品	2,481.5 (14.2)	3,558.7 (11.8)	6,058.4 (10.0)
(61) 鐵鋼製品	1,799.1 (10.3)	2,691.7 (8.9)	3,921.5 (6.5)
(613) 鐵鋼의 版	716.9 (4.1)	872.6 (2.9)	1,865.1 (3.1)
(62) 金屬製品	400.5 (2.3)	509.9 (1.7)	1,047.6 (1.8)
(69) 킨 테 이 너	223.6 (1.3)	279.8 (0.9)	751.9 (1.2)
(7) 電子 및 電氣	2,115.9 (12.1)	4,878.3 (16.1)	16,254.7 (26.8)
(71) 産業用電子	199.1 (1.1)	980.5 (3.2)	3,552.0 (5.9)
(714) 킨 컴퓨터	3.2 (0.02)	400.4 (1.3)	1,878.1 (3.1)
(7141) 킨 컴퓨터 本體	1.1 (0.006)	148.8 (0.5)	940.9 (1.6)
(7142) 킨 컴퓨터 周邊機器	0.5 (0.003)	247.8 (0.8)	923.4 (1.5)
(72) 電子製品	760.6 (4.3)	1,759.9 (5.8)	5,824.3 (9.6)
(721) 半導體	433.8 (2.5)	963.7 (3.2)	3,178.6 (5.2)
(7211) I C	339.7 (1.9)	760.2 (2.5)	2,741.7 (4.5)
(7221) 陰極線管	30.0 (0.2)	162.3 (0.5)	637.4 (1.0)

	1980	1985	1988
(7252) 磁器 테이프 및 部分品	34.4 (0.2)	231.9 (0.8)	683.6 (1.1)
(73) 家庭用 電子	1,020.9 (5.8)	1,890.3 (6.2)	6,308.4 (10.4)
(7311) 칼라 T V	130.6 (0.7)	373.7 (1.2)	1,173.9 (1.9)
(7319) V T R	(0.001)	206.6 (0.7)	1,321.6 (2.2)
(7322) 라디오 카세트	210.9 (1.2)	446.4 (1.5)	1,362.2 (2.2)
(733230) 電子 레인지		212.3 (0.7)	843.5 (1.4)
(8) 機械類 및 運搬用 機械	1,508.3 (8.6)	6,904.6 (22.8)	8,190.6 (13.5)
(81) 一般 機械	241.8 (1.4)	428.5 (1.4)	1,203.8 (2.0)
(84) 輸送 機械	162.5 (0.9)	770.3 (2.5)	4,141.5 (6.8)
(8411) 乘用 車	50.2 (0.3)	524.4 (1.7)	3,336.2 (5.5)
(851) 船	610.3 (3.5)	5,012.6 (16.6)	1,758.5 (2.9)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89.

註 : * 表에 나와 있는 商品은 일반적으로 1988년에 輸出비중이 輸出總額가운데서 1%가 넘는 경우에 해당됨.

(표2-11) 韓國의 主要 商品別 輸入* (단위: 百萬US\$, %)

	1980	1985	1988
輸 入 總 額	22,291.7 (100.0)	31,135.7 (100.0)	51,811.0 (100.0)
(1) 農 林 水 産 品	4,382.1 (19.7)	4,024.8 (12.9)	7,326.7 (14.1)
(11) 農 産 物	3,432.8 (15.4)	3,317.8 (10.7)	5,714.8 (11.0)
(1111-30) 밀	366.6 (1.6)	441.6 (1.4)	542.5 (1.0)
(1111-40) 옥수수	354.1 (1.6)	385.5 (1.2)	579.6 (1.1)
(1136) 原 皮	128.7 (0.6)	311.0 (1.0)	976.5 (1.9)
(119400) 原 線	604.1 (2.7)	531.3 (0.2)	718.5 (1.4)
(12) 林 産 物	911.7 (4.1)	614.5 (2.0)	1,293.7 (2.5)
(1211) 木 材	877.2 (3.9)	540.7 (1.7)	1,039.8 (2.0)
(121110) 原 木	863.3 (3.9)	489.3 (1.6)	900.0 (1.7)
(2) 礦 山 物	6,728.1 (30.2)	7,505.0 (24.1)	6,409.8 (12.4)
(23) 礦 物 性 原 料	6,089.9 (27.3)	6,614.6 (21.2)	4,860.5 (9.4)
(231) 石 炭 煤 油 煤 土	448.1 (2.0)	1,038.8 (3.3)	1,164.2 (2.2)

	1980	1985	1988
(2320) 原油	5,663.1 (25.3)	5,572.1 (17.9)	3,687.7 (7.1)
(3) 化學工業生產品	3,101.5 (13.9)	4,760.5 (15.3)	9,962.7 (19.2)
(31) 有機化學品	1,280.9 (5.7)	1,892.4 (6.1)	4,543.7 (8.8)
(311) 石油化學製品	899.3 (4.0)	1,290.3 (4.1)	3,271.7 (6.3)
(34) 플라스틱	187.0 (0.8)	384.7 (1.2)	588.6 (1.1)
(361100) 珪	225.8 (1.0)	237.9 (0.8)	578.4 (1.1)
(37) 非金屬礦物製品	110.6 (0.5)	262.8 (0.8)	519.7 (1.0)
(39) 유류製品	527.3 (2.4)	681.6 (2.2)	1,057.6 (2.0)
(4) 纖維類	451.4 (2.0)	709.0 (2.3)	1,710.6 (3.3)
(42) 織維	108.3 (0.5)	188.1 (0.6)	548.9 (1.1)
(43) 織物	264.7 (1.1)	380.3 (1.2)	835.9 (1.6)
(5) 鐵鋼金屬製品	1,550.8 (7.0)	2,294.1 (7.4)	5,301.2 (10.2)
(51) 鐵鋼製品	1,112.3 (5.0)	1,572.8 (5.0)	3,065.3 (5.9)
(513) 鐵鋼의 版	544.1 (2.4)	769.0 (2.5)	1,418.4 (2.7)

	1980	1985	1988
(5173) 古 鐵	286.2 (1.3)	279.2 (0.9)	580.2 (1.1)
(52) 金 屬 製 品	226.2 (1.0)	416.0 (1.3)	1,071.9 (2.1)
(531) 鋼 製 同 製 品	104.5 (0.5)	186.3 (0.6)	873.3 (1.7)
(6) 機 械 類 與 運 搬 用 機 械	3,458.3 (15.5)	7,775.6 (25.0)	11,104.3 (21.4)
(61) 一 般 機 械	1,804.6 (8.1)	2,521.2 (8.1)	5,927.1 (11.4)
(611) 織 維 皮 革 加 工 機 械	197.9 (0.9)	262.5 (0.8)	738.5 (1.4)
(614) 金 屬 工 作 機 械	197.6 (0.9)	306.9 (1.0)	655.0 (1.3)
(617) 原 動 機	269.0 (1.2)	503.6 (1.6)	800.6 (1.5)
(62) 精 密 機 械	355.8 (1.6)	618.0 (2.0)	1,513.3 (2.9)
(623) 計 測 機 與 同 部 品	156.4 (0.7)	325.1 (1.0)	893.5 (1.7)
(631) 機 械 要 素	141.6 (0.6)	357.8 (1.1)	736.1 (1.4)
(64) 輸 送 機 械	231.6 (1.0)	313.7 (1.0)	948.6 (1.8)
(649000) 自 動 車 部 品	135.4 (0.6)	226.7 (0.7)	724.9 (1.4)
(69) 航 空 機 與 同 部 品	355.5 (1.6)	343.2 (1.1)	1,461.1 (2.8)

	1980	1985	1988
(7) 電子 및 電氣	1,649.8 (7.4)	3,614.8 (11.6)	9,288.7 (17.9)
(71) 産業用電子	365.6 (1.6)	1,010.6 (3.2)	2,240.8 (4.3)
(714) 컴퓨터	41.6 (0.2)	295.5 (0.9)	834.6 (1.6)
(72) 電子製品	757.8 (3.4)	1,737.0 (5.6)	5,413.8 (10.4)
(721) 半導體	434.9 (2.0)	1,011.5 (3.3)	3,152.1 (6.1)
(7215) 집적회로의 部分品	158.6 (0.7)	274.5 (0.9)	1,070.6 (2.1)
(73) 家庭用電子	176.7 (0.8)	228.1 (0.7)	509.8 (1.0)
(74) 重電機器	319.9 (1.4)	591.0 (1.9)	1,038.5 (2.0)
(742) 靜止機器	177.1 (0.8)	294.0 (0.9)	591.0 (1.1)
(8) 其他製品	192.0 (0.9)	345.1 (1.1)	660.7 (1.3)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89.

註 : * 表에 나와 있는 商品은 일반적으로 1988년에 輸出비중이 輸出總額 가운데서 1%가

넘는 경우에 해당됨.

은 결과 무역구조가 매우 취약한 편이어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서는 북한의 수출입 구조에 맞춰 경제교류 정책을 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3. 圈域別 貿易構造

(표2-12)는 북한의 국가별 및 권역별 무역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선진공업국들과는 전체의 20-30% 정도에 이르는 교역을 해왔으나, 최근에 이를수록 그 비중은 점점 감소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발도상국들과는 약 10% 정도의 교역을 해오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전체의 60-80% 정도에 이르는 교역을 해오고 있다. 1986년의 경우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소련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6.8%로 이는 사회주의권이 차지하는 비중 74.7% 가운데서 거의 90%가 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 가운데서도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교역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2-13)은 남한의 국가별 및 권역별 무역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1983년 부터 1989년까지 남한의 전체 수출이나 수입가운데서 선진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75%와 20-25% 정도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약 5% 정도는 사회주의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볼 때 남한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선진공업국임을 알 수 있다.

(표2-14)는 남북한의 권역별 수출입의 연평균 변화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표를 보면 남북한의 권역별 수출입의 증감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표2-12) 북한의 국가별 및 권역별 무역추이

(단위 : US 百萬 \$)

국가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總 計 ²⁾	1,036.0	1,353.9	1,094.8	1,296.0	1,044.2	1,655.5	1,233.5	2,016.0	1,476.3	2,437.0	1,762.1	2,919.7	1,654.7	2,708.4		
선진공업국	256.3	507.9	282.3	385.3	229.1	375.5	233.4	330.8	331.3	503.2	374.0	466.9	322.2	419.7		
미국1	.5	...		
캐나다	...	1.1	.3	2.2	.3	1.1	.4	1.0	1.2	5.8	.7	8.1	.2	1.7		
오스트레일리아	.2	12.3	.1	23.8	.2	24.5	.9	30.5	.2	40.1	.2	47.7	.4	36.2		
일본	115.7	360.3	131.1	279.4	161.0	274.3	154.3	203.7	217.7	237.6	293.3	262.7	267.5	215.8		
뉴질랜드16		
오스트리아	.2	6.1	3.1	6.5	.1	9.6	...	3.7	.5	5.5	11.1	20.7	1.1	9.9		
벨기-룩스	.1	2.6	.3	2.2	...	1.1	.1	1.0	.1	2.2	1.0	4.5	...	3.6		
덴마크	.1	.7	.1	.7	.4	2.0	.3	2.0	.3	1.7	.5	1.1	.3	.8		
핀란드	.1	.21	.2	...	2.1	.6	5.7	.2	1.7		
프랑스	3.5	50.7	3.5	14.6	4.0	8.6	7.5	10.5	8.6	29.7	9.4	16.7	9.5	19.0		
서독	130.8	25.2	135.1	24.9	56.0	27.0	64.1	42.7	94.5	139.7	41.0	44.1	25.5	81.4		
그리스	.1	...	4.2143	.2	.68	.2		
아이슬란드8	...		
아일랜드1	...		
이탈리아	2.1	12.2	1.5	9.9	1.0	14.4	2.0	18.4	1.6	17.5	2.5	20.6	1.9	21.9		
네덜란드	.2	2.2	.2	3.1	.3	.7	...	4.1	.1	1.5	.3	12.3	.9	4.4		
노르웨이	.1	1.6	...	1.8	.1	1.4	.3	3.2	.1	2.6	5.0	3.7	.8	3.6		
포르투갈	1.5	.22	.4	.1	.2	.2	.1	.1	.3	.1		
스페인	1.1	.1	1.8	.3	2.2	2.7	2.1	1.5	3.4	4.8	3.9	4.1	7.3	1.7		
스웨덴	.3	19.5	.4	3.4	.4	1.3	.5	2.5	.7	5.0	1.0	2.5	1.4	3.9		
스위스	...	8.6	...	8.0	.2	3.0	.1	5.7	.5	3.5	1.4	5.7	.9	7.5		
영국	.4	4.3	.8	4.5	2.6	3.7	1.0	3.4	1.4	6.3	1.8	5.6		

연도 국가 수출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개발도상국	383.3	458.6	388.6	423.4	391.9	455.5	416.5	498.8	427.6	604.6	506.6	717.2	450.2	811.5
아프리카	19.3	.3	3.0	1.8	4.9	1.3	7.6	2.3	6.3	3.5	6.6	6.3	6.6	15.9
알제리아	8.6
부룬디	.5687465	...
카메룬	.41	1.311	...
카포베르데11112	...
콩고	.3211112	...
이디오피아	2.63	.5	.77789	...
가봉	.11111	...
가나	.1
모리타니아1	.1	...	1.2	.212	...
모리셔스1
루완다44111	...
세네갈	.19	.1	.4	.2	.5	.2	.6	.3	.7
세이셸	.51222	...
소말리아	.6511111	...
탄자니아	.2	.3	.2	.9	1.3	...	1.2	...	1.2	...	1.28	...
토고245678	...
튀니지4	...	1.8	...	2.1	...	1.9	1.7	1.9	10.6
자이르	.1122112	...
잠비아	.2122222	...
짐바브웨	5.04	.4	.1	.3	.1	.7	.1	3.0	.1	4.0	.1	4.5
아시아	291.9	392.3	328.0	375.8	320.0	385.6	351.6	419.8	340.8	490.6	403.3	615.3	341.7	667.5
방글라데시	5.0	.3	10.6	.3	19.7	5.1	19.2	.1	11.1	2.8	17.4	2.8	12.1	.2
중국	231.2	300.7	247.5	248.8	222.5	263.0	255.2	280.8	214.7	304.8	212.3	379.7	166.7	398.5
피지	1.15	...	1.5	...	1.8	...	1.3	...	1.6	...	2.1	...
홍콩	11.5	35.3	21.2	52.7	18.3	55.4	20.0	82.1	28.9	117.0	28.0	128.9	34.3	146.8
인도	23.8	6.0	24.3	6.5	27.2	6.0	26.1	6.2	28.3	7.4	32.5	8.7	33.6	10.1
인도네시아	6.7	4.4	11.0	17.7	6.6	14.6	3.8	4.1	16.0	5.2	8.5	14.6	15.4	31.4
마카오12322	...
말레이시아	1.3	19.0	.7	12.9	.4	1.4	1.8	1.4	.1	3.2	16.0	5.9	2.6	1.5
미얀마	4.1	5.3	3.7	4.2	4.4	4.3	4.7	4.0	4.2	3.1	3.8	2.1	2.8	2.7
파키스탄	.8	1.3	.1	3.73	.12	.1	.1	1.7
파푸아뉴기니아	.1111	3.0	.1	2.8
필리핀	...	2.3	1.0	2.9	.9	1.0	1.7	...	4.8	10.3	4.36	13.2
싱가포르	4.3	16.8	4.5	26.0	6.1	24.9	7.5	26.7	21.5	31.3	49.7	63.8	48.1	49.6
스리랑카	2.0	...	2.11
타이	6.9	.9	2.7	.2	10.3	9.8	7.3	14.2	9.4	4.8	28.8	5.8	23.1	8.9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유 럽	47.7	50.8	41.4	41.7	41.7	51.0	44.5	49.3	56.3	75.8	78.0	77.3	82.1	104.1
키 프 로 스359	...	2.0	.1	1.8	.1	1.1	...
헝 가 리	5.5	6.2	4.3	4.1	5.4	5.4	5.1	4.3	12.6	26.2	21.1	5.4	23.3	22.1
말 타	.62
폴 란 드	19.5	30.6	18.4	23.2	15.6	24.3	19.3	23.8	18.6	24.0	23.8	32.8	18.3	32.2
루 마 니 아	22.1	14.0	18.2	14.4	18.2	20.2	19.1	21.2	23.0	25.5	28.7	31.8	33.0	36.6
터 키1	.1	...	6.3	...	10.2
유고슬라비아	2.0	1.0	2.5	.9	1.3	3.0
소 련 ²⁾	396.5	387.4	421.9	487.2	423.3	824.5	583.6	1,186.5	717.4	1,329.2	881.5	1,735.6	882.3	1,477.2
중 동	14.0	10.9	14.1	2.5	23.7	.7	8.7	19.2	9.2	30.1	11.4	15.7	13.1	19.4
이 집 트	5.1	10.9	.1	1.6	13.3	.7	.1	13.9	.2	28.1	.1	13.7	.1	17.0
요 르 단1222	...
사우디아라비아	2.8	...	7.3	.9	3.3	...	1.2	.2	.1	2.0	.1	2.0	.1	2.4
아랍에미리트연방1
예멘아랍공화국	6.1	...	1.7	...	7.0	...	7.4	...	8.8	...	11.0	...	12.7	...
서 구	5.5	4.4	2.1	1.7	1.7	17.0	4.1	8.1	14.9	5.3	7.3	2.6	6.7	4.7
아르헨티나	2.4	...	1.544
바 하 마11111	...
비 유 다	.2	.1	.11	.1	.1	.1	.1	.1	.1	.1	.1	.1
볼 리 비 아	1.1
브 라 질	...	3.0	516	...	2.4
콜 롬 비 아	.7315334	...
코스타리카3	1.1	.2	.151	.5	.41	...
도미니카섬34	...
도미니카1	.1	.788	...	1.0	...
과 테 말 라2	1.1	5	1.4	.9	1.5	1.0	1.7	1.1
기 이 아 나	.2	1.3	.6679	...	1.1	...
온 두 라 스1111	...
자 메 이 카11445	...
니 카 라 과	.1111122	...
세 루	.2	1.01	5.1	.1	4.2	9.8	2.1	1.09	...
수 리 남	3.0
트리니다드토바고	1.04212
우 루 과 이	11.7	.12	.147

註: 1) 특정 수치에 대한 원 자료의 표시 (X, Y)는 생략했음.

2) (註-1)의 정리에 사용된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0*은 북한의 對蘇 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IMF의 1987년 자료와 日本貿易振興會의 『北朝鮮の 經濟と 貿易の 展望』 1989, 그리고 *Business International*의 *USSR Country Profile 1990~91*을 사용하여 북한의 對蘇 무역액을 추계한 다음 이북 개발도상국의 아시아 지역 끝에 '소련'으로 나타나고 또한 IMF의 '총계'에 대하여 (註-1)의 총계치를 구한것임.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0*, PP. 304~305.

연도 국가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앙아프리카	3	...	6	...	1	2
콩고	1	...	1	...	1	...	1	1	3	1	2	22	3	2
코트디부아르	5	1	5	11	6	2	11	1	16	1	19	1	21	4
지부티	9	...	7	...	10	...	15	...	15	...	14	...	17	...
이디오피아	21	2	13	2	20	1	18	1	22	1	20	2	19	1
가봉	13	3	3	19	2	55	7	59	1	2	9	25	1	20
가나	1	...	1	...	1	...	4	...	7	2	4	...	1	...
기니	10	4	10	6	9	4	10	3	16	5	17	4	20	5
케냐	...	2	1	1	4	...	3	...	3	...	3	...	2	...
케냐	21	1	18	1	22	1	22	1	16	4	20	2	23	2
라이베리아	231	151	241	107	450	227	134	30	168	8	401	22	589	92
마라키스키르	1	3	...	4	...
말라위	1	...	1	...
말리	1	...	1	1	...	2	1	3	...	2
모리타니아	3	...	1	...	1	...	16	...	25	...	5	...	4	...
모리셔스	3	...	5	...	7	...	15	...	17	...	17	...	15	1
모로코	8	1	7	...	13	...	20	2	19	3	23	2	23	1
모잠비크	1	1	1	...	1	...	1	...	1	...	2	...	2	...
나미비아	...	1	...	2
니제르	1	1	2	...	1	...
나이지리아	70	...	40	...	39	68	45	...	59	1	72	1	62	1
리유니온	1
루완다	1	...	1
세네갈	6	...	3	...	3	2	6	1	7	1	9	1	7	2
세이셸	1
시에라리온	2	...	3	...	5	...	4	...
소말리아	7	3	1	...	1	...	3	...	2	...	2	...	2	...
남아프리카	1	1
수단	30	27	17	16	18	2	22	...	24	15	35	20	24	7
스와질랜드	...	9	...	13	...	11	1	10	1	15	2	15	2	16
탄자니아	1	...	2	...	2	...	3	...	7	1	7	...	6	...
토고	2	...	2	...	4	...	7	...	8	...	10	...	14	...
튀니지	1	...	2	...	3	...	8	...	8	...	7	1	9	...
우간다	3	...	8	2	2	...	2	1	5	2	2	...	3	1

연도 국가 輸出入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자 이 르	6	3	9	5	4	3	17	9	7	7	8	13	10	13
잠 비 아	...	1	...	13	1	4	1	7	1	17	3	9	2	18
짐 바 브 웨	...	2	1	5	1	2	1	5	1	8	2	9	2	9
구분안된 아프리카 국가들	5
아 시 아	3,271	2,990	4,308	3,781	4,167	3,876	4,357	3,275	5,783	4,563	8,748	5,537	9,837	1,784
아프가니스탄	19	...	15	...	29	...	65	...	73	...	50	...	26	...
방글라데시	74	...	106	...	134	7	145	1	163	6	168	7	204	2
브 루 나 이	3	226	4	160	5	224	3	121	7	202	6	178	5	233
피 지	8	...	9	...	6	2	8	...	9	...	14	1	22	3
프렌치폴리네시아	1	...	1	...	1	...	1	...
팜	15	...	2	...	3	...	7	...	19	...	35	1	43	1
홍 콩	817	221	1,281	468	1,565	446	1,691	401	2,204	396	3,561	569	3,458	584
인 도	557	301	1,449	381	467	220	512	127	404	202	465	170	470	254
인도네시아	252	387	254	653	196	669	179	428	241	825	402	905	627	1,252
카 리 바 시	1
마 카 오	1	1	...	2	...	7	...	16	...	11	...
말레이시아	226	777	253	1,004	449	1,235	219	902	300	1,086	410	1,324	516	1,522
멜 다이브	5	...	2
미 안 마	12	6	12	13	15	10	26	5	14	6	21	4	17	...
나 우 루	...	4	...	2	...	1	...	2	...	3	1	3
네 팔	19	...	13	...	22	...	16	...	23	...	20	1	14	...
뉴칼레도니아	1	...	1	...	1	...	3	32
파 키 스 탄	126	38	87	30	99	54	127	104	210	111	238	140	245	176
파푸아뉴기니아	4	49	4	72	3	65	9	83	18	203	18	146	19	179
필 리 핀	180	178	165	114	241	151	186	122	220	124	338	181	469	210
사모아아메리칸	20	...	14	...	13	...	15	...	8	...	11	...	12	...
싱 가 포 르	537	401	497	390	491	267	532	215	928	432	1,355	563	1,542	645
솔로몬제도	1	5	...	9	1	4	1	4	1	4	1	6	3	4
스 리 랑 카	44	6	46	13	81	36	74	12	88	12	96	10	94	16
타 이	213	96	223	133	143	153	192	277	272	191	537	263	719	422
바 뉴 이 루	1	1	1
베 트 남	...	3
서 사 모 아	1	...	2	...	2	...	1	...	2	...	2	1	2	...
구분안된 아시아 국가들	2	...	7	...	15	...	26	...	32	...

인도 국가 輸出入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유	대 만	139	289	259	339	196	334	342	471	556	759	954	1,066	1,283	1,337
	러	38	14	46	5	188	135	101	13	159	9	213	42	202	38
	키 프 로 스	20	6	28	2	78	54	39	5	79	1	106	4	65	1
	말 타	1	2	2	1	3	...	5	...	7	...	10	...
	터 키	17	8	15	2	108	80	57	8	72	8	96	37	124	37
	구분안된유류국가들	1	...	1	1	...	2	...	3	...	2	...
	중 동	2,739	3,975	2,016	3,561	1,947	2,889	1,753	1,936	2,037	2,522	2,549	2,783	2,033	3,616
	바 레 인	15	27	27	33	21	35	20	26	18	31	19	51	17	53
	이 집 트	132	104	221	98	133	131	120	44	124	70	111	150	115	118
	이 란	2
중	요 르 단	56	2	41	8	38	13	40	11	55	10	66	17	59	24
	쿠 웨 이 트	567	692	257	483	206	525	212	216	188	160	342	206	227	325
	레 바논	18	...	13	...	8	...	15	...	30	1	53	3	36	1
	리 비 아	132	291	252	261	349	129	212	83	220	112	274	48	160	31
	오 만	13	483	16	808	25	661	23	440	17	472	25	648	23	1,094
	카 타 르	13	88	6	89	12	17	11	65	14	70	17	48	14	102
	사우디아라비아	1,434	2,033	991	1,420	969	719	855	691	1,031	1,117	1,130	831	866	1,051
	시 리 아	8	...	9	1	13	1	7	3	7	...	7	...	10	...
	아랍에미리트연방	280	247	157	351	123	158	192	357	301	502	454	141	464	796
	예멘아랍공화국	55	4	58	3	46	1	48	2	32	3	48	136	39	...
	예멘인민민주공화국	17	...	1	7	2	1	1	...	2	4	3	...	3	...
	서 구	509	981	1,037	1,417	1,041	1,861	868	1,255	1,156	1,182	1,531	1,438	1,677	...
	아르헨티나	18	60	14	64	12	32	36	87	52	56	70	78	59	...
	안타과외바부다	1	1	...
	바 하 마	...	1	43	1	1	1	7	...	6	...	74	...	9	...
	바 베이 도즈	1	...	2	...	2	...	5	...	7	...	5	...	6	...
	벨 리 세	1	...	1	...	1	...
	버 뮤 다	22	...	38	1	...	1	...	6	...	6	...
	볼 리 비 아	1	...	114	...	4	...	4	...	6	...	7	...	4	...
	브 라 질	37	211	4	241	15	219	25	184	27	306	32	437	83	...
칠 레	41	99	47	104	63	149	67	129	115	169	154	208	190	324	
콜 롬 비 아	30	26	63	69	6	13	12	12	21	12	29	7	45	13	
코스타리카	5	2	10	1	10	...	18	3	34	4	29	11	43	5	
도미니카섬	5	...	11	3	8	...	1	...	1	1	11	2	51	5	

연도 국가 輸出入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도미니카	4	...	8	...	5	...	19	1	43	...	42	...	22	34
에콰도르	3	237	36	378	52	653	13	299	12	116	10	255	14	86
엘살바도르	5	...	7	...	7	1	8	1	11	...	13	...	10	...
포크랜드	1
그레나다	1	...	1	...	1	...
과테말라	3	...	6	5	6	1	12	5	27	1	29	3	34	4
가이아나	1	...	1	1	2	1	1	1	2
아이티	5	...	5	...	8	...	7	...	11	...	14	...	10	...
온두라스	4	1	5	...	8	1	8	5	11	3	15	12	20	20
자메이카	6	...	4	...	4	...	7	...	13	...	18	...	23	...
멕시코	51	201	20	213	26	140	51	175	133	181	280	219	453	175
네덜란드안티에즈	1	...	1	...	4	...	1	...	2	...	4	...	6	...
니카라과	2	...	4	1	2	1	2	1	4	...	1	...
파나마	227	74	540	255	746	525	494	226	517	225	567	87	494	55
파라과이	1	3	1	2	2	4	7	4	11	5	14	12	22	9
페루	5	53	6	63	7	108	16	112	24	91	10	90	4	94
세인트루시아	1	...	3	...	3	...	3	...
세인트빈센트	1	1	1
수리남	3	...	2	...	2	...	2	...	4	...	5	...	3	...
트리니다드토바고	10	...	8	3	7	...	7	...	6	...	4	...	4	2
우루과이	1	5	1	8	2	6	3	3	7	5	9	9	11	9
베네수엘라	18	12	38	7	32	10	34	7	43	4	65	7	41	7
구분안됨서구국가들	2	1	5	...	9	...	2	...

註: 특정 수치에 대한 원 자료의 표시(X, Y)는 생략했음.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0, PP. 247~248.

(표 2-14)

南北韓의 區域別 輸出入의 年平均 變化率

(단위 : %)

년 도	전 세 계		선 일 국		개 발 도 상 국 진 체						발 도 상 국						시 구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아 프 리 카		아 시 아		유 럽		중 동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83	12.1	8.0	16.1	12.7	5.4	-0.1	-35.4	-25.8	4.0	12.8	45.3	513.0	31.5	-6.4	-25.6	-1.5		
	-11.7	-3.5	-9.1	0.6	-13.3	-7.8	55.5	70.3	-15.2	-8.5	2.8	-	-47.9	-29.1	-12.3	68.3		
1984	19.6	16.9	24.8	18.8	11.9	9.6	-10.3	-5.7	31.7	26.5	21.3	-62.3	-25.2	-10.3	103.9	44.1		
	4.9	-16.2	10.2	-24.0	1.4	-7.6	-84.2	488.6	10.5	-4.1	-13.0	-17.9	1.1	-77.3	-61.5	-61.9		
1985	3.5	1.4	3.3	-0.3	1.9	2.3	58.7	101.6	-3.2	2.5	312.3	-	-4.7	-18.8	0.3	31.3		
	-7.4	2.7	-18.8	-2.4	0.8	7.6	61.6	-29.6	-2.3	2.6	0.7	22.4	67.7	-72.7	-21.6	905.5		
1986	14.9	2.2	24.6	17.6	-5.5	-27.4	-27.7	-57.6	4.6	-15.4	-46.2	-90.6	-9.9	-32.9	-16.5	-32.4		
	4.7	-0.1	1.9	-11.8	6.3	9.5	54.9	83.6	9.9	8.9	6.6	-3.2	-63.1	-	49.4	-51.9		
1987	36.0	29.3	39.5	29.7	28.2	28.0	15.4	19.4	32.7	39.3	58.1	-27.1	16.2	31.8	33.2	-5.8		
	16.8	33.5	41.9	52.1	2.7	21.2	-17.3	49.4	-3.0	16.7	26.7	53.7	6.2	56.9	261.5	-35.4		
1988	28.3	26.3	24.3	28.1	43.0	18.0	46.7	18.8	51.3	21.4	33.5	357.1	25.1	9.1	32.4	21.7		
	16.0	6.9	12.9	-7.1	18.5	18.6	4.6	79.9	18.3	25.6	38.4	2.0	23.7	-47.8	-51.2	-51.0		
1989	2.8	18.8	1.1	17.1	6.2	23.1	17.7	51.0	12.7	22.5	-4.9	-7.4	-20.2	29.9	9.6	8.3		
	-12.2	4.0	-13.8	-10.0	-11.0	13.1	1.0	151.2	-15.2	8.5	5.3	34.6	14.8	23.6	-7.9	83.0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0, P. 305와 P. 542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Ⅲ. 南北韓 貿易政策

남북한은 개발 초기부터 경제체제를 달리하여 남한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계획경제를 도입하였다. 남북한 모두 경제 개발 초기에는 외연적 성장 전략을⁴⁾ 도입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대외개방과 시장경제 제도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고, 북한은 폐쇄경제와 계획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력갱생적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남한경제는 外資導入을 통해 경공업에 우선 육성하여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므로써 외연적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와 대외경쟁의 장점을 활용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에서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방침으로 무역의 증가목표를 사회총생산의 증가목표(1.8배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3.2배로 설정하여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을 통해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對內指向的 공업화정책을 취해온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대내지향적 공업화는 對外部門의 역할을 한정하여 무역은 단지 원활한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4)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이란 노동, 자본 및 토지 등 생산요소의 순전한 量的인 증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비하여 內包的 成長(intensive growth)이란 이들 생산요소의 일반적인 생산력의 상승, 즉 노동생산성의 상승, 자본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 및 토지생산력의 증가 등에 의하여 실현되는 경제의 質的 증대를 의미한다.

있다. 따라서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국내수요에 부족한 상품에 한정시키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만 추진되었다. 이러한 대내 지향적 공업화정책이 지니는 커다란 문제점은 기술지보 및 생산증대를 위해 외화 수요가 필요불가결할 때 수출 이외에는 외환조달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이 낙후되고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자본, 시설재 수입 및 투자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으로서는 현재 수입대금의 마련 및 그동안 누적된 채무변제를 위해 수출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다음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순서로 무역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 北韓의 貿易政策

북한의 對外協力 政策은 고전적 마르크스 - 레닌류의 사회주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완전한 공산주의화로 이행하는데 따른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산적 발전이 요구되어 지며, 이에따른 충동 내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르크스가 제시한 하나의 조직에 의해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시장, 가격, 화폐 등을 대체할 획일화 된 자금자족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對外經濟部門은 국내균형을 위한 종속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憲法(1972.12.27 개정)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34조에 “외국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 위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라고 대외무역의 기본 방침을 규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대로 북한의 무역정책의 基調는 국가독점의 원칙, 호혜 평등의 원칙, 자립적 민족경제 원칙으로 정리된다. 이와함께 북한에서는 경제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설비와자재

중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수입하고 이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을 한다는 것이 무역계획 수립의 기본 전제가 되어 왔다. 즉 북한은 대외무역에서 다른 社會主義諸國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우선이며 수출은 수입에 요하는 외화조달의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副次的 의미를 가진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 무역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사전 계획에 기초하여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품목별 쿼터를 책정하는 雙務的 性格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것은 호혜 평등의 원칙으로 무역을 하겠다는 동기 외에 다른 이유는 외화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외무역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을 기점으로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1970년대 이전 1950년대에는 북한에서의 무역은 자급자족 경제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아 무역상대국들도 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으며 그것도 대부분 북한에 원조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⁵⁾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中·蘇 분쟁의 여파로 중국,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일시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들고 또한 북한 자체로도 대내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외무역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무역상대국도 다양화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은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에 착수하면서 경제건설에 소요되는 자본 및 설비의 도입선을 서방 선진국으로 적극 전환했다. 즉 신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진기술의 도입 및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서방측으로부터 대규모의 자본 장비를 수입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71년에는 15%에 불과하던 對西方 무역이 1974년에는 對社會主義圈 무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⁶⁾

그러나 수출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자본 및 설비 도입은 무역적자

5)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75. 북한의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현황은 P.99 <표-40> 참조.

6) 延河淸,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韓國開發研究院, 1986, PP.175-176.

를 누증시켜 북한은 1974년부터 외채문제가 대두되어 외채상환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서 부터 對西方 무역은 위축되었다.

이후 북한은 개발도상국들의 기술수준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이들과의 무역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1978-1980년 간 북한의 對開途國 무역은 크게 증대되어 다른 지역과의 무역적자를 상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1년 이란 -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이 이란 支持를 표명한 반면 북한이 최대 수출국이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지지를 나타내자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에 들어와 1980년 10월에는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천명함으로써 대외경제 정책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다. 또한 1984년에는 合營法을 제정, 공포하여 대외개방 방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였으며 1987년 4월에 채택된 제3차 7개년계획안에서는 기간 중 무역을 3.2배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무역 및 대외경제 협력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별 진전이 없으며, 또한 북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2. 南韓의 貿易政策

남한은 경제개발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도입하여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제도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외자도입을 통해 경공업을 우선 육성하여 경공업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자본재를 수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공업도 발전시키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성장을 계속하였다.⁷⁾

7) 朴東雲·朴勝俊, 「한국의 북방경제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 『安保學術

즉 남한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전략으로 輸出第一主義를 표방하고 금융 및 稅制 지원과 환율 등의 수출지원책을 강화하여 온 결과 수출을 포함한 무역규모가 큰 폭으로 증대하였다.

수출은 공업화 추진을 통한 고도성장 과정에 있어서 협소한 국내시장을 보완하여 적정규모의 생산시설유지를 가능케하고 투자 재원의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다. 또한 수입은 국내산업과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었지만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자본재 도입으로 공업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쟁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면 1960년대 초 이래로 정부가 실시한 각종 무역정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출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지원으로써 남한은 최고권력자가 수출증대를 독려하기 위해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것을 매월 직접 주관하면서 수출업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수출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었다.⁸⁾ 둘째는 합리적인 환율 유지로써 정부는 품목별, 용도별로 모두 다른 複數換率制度를 單一換率制度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원貨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환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셋째로 金融, 稅制상의 수출지원을 보면 수출에 관련된 생산과 거래에 대해 모든 간접세를 면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 및 개인 소득세도 감면해 주었다. 또한 수출기업에 短期輸出金融을 수출실적의 일정비율로 지급해 주었고, 수출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長期金融支援을 零에 가까운 혹은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로 최우선적으로 대량 공급해 주었다. 넷째로는 輸入代替偏向的인 수입규제 장벽의 완화로써 정부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해왔지만 수출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는 자유롭게 수입되도록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지원정책으로 남한은 1986년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

論集』,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0, P.500.

8) 洪元卓, 「輸出主導型 成長과 開放」,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214.

특하게 되어 그에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었지만 남한의 경제성장에는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3. 南北韓 貿易의 問題點

가. 北韓의 問題點

북한경제에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그중 근본적이고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산업부문간 불균형으로써, 북한의 경우 모든 長·短期 경제계획은 중앙(국가계획위원회)에서 총괄 작성후 하달하는 指令的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입안되기 쉽고, 정치적 목적이 강조되는 반면 경제적 합리성은 輕視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부문의 계획목표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부문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되므로 북한의 경제계획은 균형보다는 과도한 성장위주였다. 한 예로 북한은 근수산업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한 결과 경공업 및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에너지, 운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만성적인 애로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시설, 장비의 老朽와 기술낙후로써, 북한의 산업시설 및 기계들은 6개년 계획기(1971-1976)에 서방측으로부터 도입한 몇몇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소련 및 중공 등의 경제협력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서 낡거나 舊型인 것이 대부분이고 규모면에서도 국제경제 단위에 비해 영세하여 생산성이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기술면에서도 자력갱생의 원칙을 내세워 선진기술의 도입보다 자체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둬으로써 기술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출상품의 제품이 조잡하고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것이 많아 세계시장 진출에 곤란하다. 셋째로는 에너지부족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북한은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수력 및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의존하여 (석유가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5-6%에 불과), 석탄생산의 애로, 가뭄 등 기상조건의 악화는 전력생산에 차질을 가져와 공업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¹⁰⁾

넷째로는 대외부채 및 외환부족으로써,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채무 문제로 인해 先進諸國의 對북한 後拂輸出은 억제되고 신규차관이 중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한의 경제계획 수행과 무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의 1987년도 총외채는 52.1억달러로 그중 54%는 일본, 서독, 프랑스 등 10여국의 서방국가들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다).¹¹⁾

이외에도 무역방식 및 구조적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무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이들 문제의 정책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나. 南韓의 問題點

1960년대 이후 본격화 된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은 수출의 급격한 증대와 함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무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 있어서 무역구조의 문제점은 첫째로,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물론 1982년 이후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나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중공, 파키스탄, 인도네

9) 통일원이 발표한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에서 발전량은 북한이 277.4억 Kwh, 남한이 1,076.7억 Kwh로서 이는 남한의 약 25% 수준이다.

10) 延河濤,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P64.

11) 박동은·박승준, 『한국의 북방경제 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 『안보학술논집』, 1990, P.548.

시아 등의 후발개도국이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류 등의 경공업 제품에 특화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점차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수출지역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정도는 차츰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수출구조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특정지역의 정책변화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지역, 국가의 수입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통상마찰압력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셋째로 수입구조가 경직화되어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생산기반이 빈약한 실정에서 수출증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산업구조의 개편과 정비에 뒤따르지 않는 수출제일주의는 자본재의 수입비중을 계속 증가시킨다. 자본재의 수입증가는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원유의 급격한 수입증가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고있어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넷째로 수입지역의 편중으로써, 수출지역과 유사하게 미국, 일본과 소수의 자원보유국에 편중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원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의한 충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 이와함께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이행받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정국가의 경제정책의 변경시 수입계획에 차질을 가져와 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부족한 부존자원 국내시장규모의 협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南北韓間 經濟協力

여태까지 우리는 남북한 무역구조 및 무역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 및 추이와 남북한 교역가능품목, 경제협력의 추진방향 등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의 定意에 관해서 정창영 교수는 “經濟交流란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과 남북한간의 직접교역 등 물자교류 이외의 경제인 및 과학기술자의 교류 등 인적교류도 포함된다. 한편 經濟協力이란 자본 및 기술협력 이외에도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뜻한다. 끝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은 최종단계로서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통합이므로 구주공동체(EC)와는 그 속성이 판이하게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¹²⁾ 라고 쓰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이같은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南北韓 經濟交流 및 推移

지금까지의 남북한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은 미미하기는 하나 약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이후 1949년 4월까지 남북한 간에는 소위 “38밀무역”과 “근정무역”의 형태로 물자교류가 있었고 인적교류도 다소는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경제교류는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12) 정창영,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0.5, P.81.

그 후 1978년 말 영국의 한 상사를 통해서 중계무역의 형태로 석탄 1만톤이 북한의 남포항에서 부산으로 직송된 적이 있다. 남한은 북한의 석탄을 계속 구입할 의사도 있었으나 北韓産석탄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에 교섭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그런데 1984년 여름 水産가 남한을 할퀴고 가자 같은 해 9월 8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남한의 수재민들에게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수재구호물자를 제공할 뜻을 비쳤는데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9월 14일 이를 수락하므로써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이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 등에서 인도·인수되었다.

그 후 6공에 들어와 본격적인 北方政策 推進의 바탕이 된 盧泰愚 대통령의 7.7 선언은 남북한간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같은 해의 10.7 조치는 민간상사들의 북한 물자교역 뿐만 아니라 南北經濟人의 상호교류까지도 허용했다.

이에 힘입어 現代는 같은해 12월 北韓産 모시조개 40kg을 간접무역 형태로 국내에 반입했으며 1989년 1월에는 鄭周永 현대그룹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원산 조선소, 철도차량합작 생산, 시베리아 개발 공동 참여, 금강산 공동개발 등에 관해 북한측과 논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2월에는 효성물산이 南北直航路를 이용하여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무연탄을 반입했고 현대종합상사는 북한과 첫 구상 무역을 실시했다. 이어 6월에는 코오롱이 북한의 대성은행과 처음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한 무역은 1989년 3월 文益煥 목사의 북한 방문 사건으로 중단된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나 최근 상공부의 자료는 1988년 11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승인한 남북한 물자교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4-1)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남한의 100개 상사는 143개 품목에 걸쳐 40만달러 어치의 북한 물자의 남한 반입을 승인 받고 있다. 이들 품목을 금액의 비중이 큰 순서대로 열거하면 아연괴(22.7%), 철강재(20.7%), 시멘트(9.7%), 감자(8.7%), 무연

(표4-1) 남북한 품목별 물자교류 승인 搬出·入 현황(1990.10)

(단위 : US千\$, %)

搬 入 승 인		搬 出 승 인	
품 목	금 액 (%)	품 목	금 액 (%)
철 강 재	8,415 (20.7)	잠 바	69(42.6)
아 연 피	9,217 (22.7)	담 배 필 터	83(51.2)
무 연 탄	2,940 (7.2)	설 탕	10(6.2)
전 기 등	2,550 (6.3)		
한 약 재	1,824 (4.5)		
생 사	1,581 (3.9)		
감 자	3,533 (8.7)		
수 산 물	2,220 (5.5)		
(냉 동 영 태)	(1,581)(3.9)		
시 멘 트	3,946 (9.7)		
니켈과, 연피	727 (1.8)		
고 사 리	631 (1.6)		
인삼제품	515 (1.3)		
(인삼주)	(424)(1.0)		
원 목	588 (1.4)		
우 표	278 (0.7)		
기 타	996 (2.5)		
계	40,616(100.0)	계	162(100.0)

資料 : 商 工 部

탄(7.2%), 전기등(6.3%), 수산물(5.5%) 등이다. 한편 남한의 3개 상사는 3개 품목에 걸쳐 16만달러 어치의 남한 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받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잠바(43.6%), 담배 필터(51.2%), 그리고 설탕(6.2%)이다.

해방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실적을 알아본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첫째,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물자교류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 경제협력은 성사된 것이 없었고, 둘째, 한국에 반입된 북한 물자는 사실상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셋째, 그동안 반입된 품목을 보면 상당한 경우 대기업들의 선전효과에 그치는 측면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물자교류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북한산 감자가 남한의 식탁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교역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2. 南北韓 貿易可能品目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은 1984년 11월 15일의 제1차부터 1985년 11월 20일 제5차까지 열린 南北經濟會談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¹³⁾

(표4-2)는 南北經濟會談에서 남북한이 제의한 교역 대상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이표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한 품목은 무연탄, 아연괴 등 공업제품과 멧테, 누에고치 등 농수산물, 그리고 기타 한약재이며 남한이 북한에 판매하고자 한 품목은 철강 및 그제품, 가정용 및 공업용 기계류, 전기 전자 제품, 섬유제품, 의약품 등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철강재, 섬유 등 공업제품과 한정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대신 남한에 철강

13) 남북경제회담에서 주요 제의 내용은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12.

(표4-2) 남북한이 제의한 교역 대상 품목

韓 國 側		北 韓 側	
구입희망품목	판매가능품목	구입희망품목	판매가능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피, 아연피, 유사, 고철등 공업제품 • 명태, 누에고치, 팔,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 • 기타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및 제품, 등 및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금속제품 • 가정용·공업용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2륜 자동차 등 기계류 • 시계, 천연색 TV,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 석유 원료, 석유 직물, 담요 등 석유류, 기타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글리세린 및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재, 중석광(重石鑛), 납사, 섬유등 공업제품 • 남해 어족(魚族) 소금, 감귤등 농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석, 석탄, 마그네샤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 설비등 공업제품 •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

資料 : 극토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12, p.165.

석, 석탄, 마그네슘크링커 등 공업제품과 명태, 쌀 등 농수산물의 판매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표4-3) 및 (표4-4)는 남북한 搬出入 유망품목을 나타낸 것으로서 무역특화지수, 輸入結合度, 顯示比較優位指數 등을 고려하여 교역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text{특화지수}(R_i) = \frac{X_i - M_i}{X_i + M_i}$$

R_i : i 상품의 특화지수

X_i : i 상품의 수출액

M_i : i 상품의 수입액

을 나타낸 것으로서 특화지수의 값은 -1에서 1까지 취하는데, -1은 수입만 발생하는 완전 수입특화분야이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수입특화분야이다. 이와 반대로 특화지수가 1인것은 수출만 발생하는 완전 수출특화분야이고 1에 가까울수록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수출특화분야를 뜻하는 것이다.

한편 현시적으로 나타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¹⁴⁾는 각국의 상품별 실제무역의 결과와 수출입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 생산비만이 아니라 품질의 차이 鑿價(good will), 애프터 서비스 등 非價格 요인까지도 반영된 것이다. 결국 비교우위에 의해 상품별 수출구조가 결정된다고 하면 실제 나타난 상품별 수출구조는 그 경제의 잠재적인 비교우위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우위지수는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며 수입결합도는 수입수요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14) B. Balassa,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New York,

McGraw Hill, 1967.

(표4-3)

對北韓 搬出有望品目

1987년의 兩國 輸出入額, 무역투자지수, 수입결합도, 원서비교우위지수 등을 考慮하여 交易可能性이 큰 순서대로 1 그룹, 2 그룹, 3 그룹으로 區分하여 示正하였음.

單位: 千달러

SITC	品 目 名	北韓의 輸入			韓國의 輸出		
		輸入額	輸 入 結 合 度	貿易特化 指數	輸出額	比較優位 指數	貿易特化 指數
65315	합성장섬유직물 (합성장섬유 85% 이상)	1,273	169.2	-0.8707	124,629	364.9	0.306
65751	섬유제 선, 케이בל, 로프	1,870	2,771.1	-0.9979	13,931	195.8	0.514
65752	섬유제 이방, 방, 망지	2,608	6,619.3	-0.9521	15,706	587.0	0.969
67494	其他 합금강의 판	1,087	1,787.7	-1.0000	3,871	102.8	0.892
69311	철강제 선, 케이בל, 로프	1,656	667.0	-0.9609	128,136	570.3	0.845
69979	달리 分類되지 않은 철강제 제품	1,774	212.7	-0.9832	78,081	111.7	0.417
77886	달리 分類되지 않은 電氣式 機器 및 裝置	1,232	152.9	-0.9919	109,650	156.5	0.092

單位: 千달러

SITC	品 目 名	北韓의 輸入			韓國의 輸出		
		輸入額	輸 入 結 合 度	貿易特化 指數	輸出額	比較優位 指數	貿易特化 指數
58343	인화플로리비닐판, 필름, 박 및 스트립	882	183.7	-1.0000	24,921	70.7	0.3764
62599	分類되지 않은 타이어, 타이어 케이스 등	575	153.9	-1.0000	15,974	60.3	0.7691
67453	스테인리스 또는 내인강의 철강인 중후판	1,187	1,074.6	-1.0000	15,931	156.1	-0.3664
67601	철강의 캐조 (체크레인 및 레크레인 제외)	690	627.6	-1.0000	3,341	86.5	0.0483
74411	단거리 화물운반 및 하이용트럭, 트레터	577	92.9	-1.0000	84,714	192.5	0.8787

S.I.T.C	品 目		北 韓 的 輸 入		韓 國 的 輸 出		
	品 目	名 目	輸 入 額	輸 入 結 合 度	輸 出 額	比 較 優 位 指 數	貿 易 特 化 指 數
77121	정전변환기 정유기 및 제유장치		708	185.0	27,734	65.4	0.0992
77884	축 전 지		1,685	283.2	71,082	186.1	-0.2227
81242	스위치, 전등출터, 차량용진동, 전기 또는 마그네트 동		1,600	298.7	34,516	80.0	0.5281
82191	달리 分類되지 않은 금속제의 가구		532	162.1	6,842	28.8	0.7725
85102	고무제 또는 인조클라스티케이트의 외창신발		424	21.2	2,335,897	767.7	0.9974
87489	分類되지 않은 전기식 (비전지식) 測定檢査 分析 裝置		812	241.4	47,184	83.5	0.4010
89831	소리 또는 유사기록용 가공메체		513	43.7	334,497	391.1	0.7974

<그림 3>

S.I.T.C	品 目		北 韓 的 輸 入		韓 國 的 輸 出		
	品 目	名 目	輸 入 額	輸 入 結 合 度	輸 出 額	比 較 優 位 指 數	貿 易 特 化 指 數
32321	식탄의 코크스 및 반성코크스		1,242	440.8	1,760	9.5	-0.66666
51139	기타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617	165.6	6,306	27.0	-0.6835
51213	부틸알콜		666	1,740.1	1,949	45.7	-0.5467
58432	인화플리비닐 모노퀸 부계복합물 또는 프로페일		289	180.8	2,415	20.7	-0.2458
64121	도포하지 않은 인쇄지 (신문지 제외) 및 권기용지		650	63.8	4,396	4.6	-0.1081
65771	달리 分類되지 않은 위닝 및 위딩제품, 섬유용, 투스트		973	1,031.7	2,771	45.8	-0.4655
67463	스테일리스 또는 내열강의 압연박판		1,333	321.5	19,397	98.1	-0.2468
67464	기타 합금강의 압연박판		373	386.8	3,264	196.1	-0.8001
67491	보통 합금강, 가공한 것		329	23.8	131,536	148.5	0.1151

品 目			北韓의 輸入			韓國의 輸出		
SITC	品 目 名	輸入額	輸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數	輸出額	比較優位 指數	貿易特化 指數	
68423	두께 0.2 mm 이하의 알루미늄박	942	204.9	-1.0000	3,236	11.2	-0.8653	
68512	연합금을 제외한 정제연, 미가공연 및 연합금	4,692	6,645.0	-1.0000	1,057	16.2	-0.5982	
68999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가공 비금속, 미가공시미르, 그 부스러기	253	323.4	-1.0000	2,025	15.5	0.2228	
69313	달리 分類되지 않은 알루미늄의 선, 케이블	335	1,710.0	-1.0000	746	66.7	0.7678	
69965	합속분무용 용접 비금속분의 선 및 봉	1,096	869.4	-1.0000	3,921	55.4	-0.6120	
72342	가게식 산 및 자체추진의 관화기	8,891	997.5	-1.0000	3,559	6.9	-0.6151	
72431	제 봉 기	1,938	464.5	-0.0990	7,219	28.7	-0.6070	
72452	핀 직 기	1,615	542.8	-1.0000	5,546	40.0	-0.7428	
72832	파레기 및 분쇄기	1,181	1,584.6	-1.0000	932	31.4	-0.6783	
73613	금속공작용 신반	562	140.5	-1.0000	21,703	85.1	-0.3808	
74221	원차 및 호이스트 인치 및 캐스틴	536	444.5	-1.0000	1,489	20.3	-0.8626	
74428	分類되지 않은 인양, 취압, 적하 및 하역기계류	1,699	199.5	-1.0000	4,502	10.7	-0.8899	
75381	텔레비전영상 및 음성의 자기의 녹음기와 재생기	500	25.6	0.2302	668,448	457.0	0.9725	
76388	구슬기 및 달리 分類되지 않은 기타 녹음기 및 재생기	424	56.1	-0.9813	350,904	595.7	0.5603	
76493	달리 分類되지 않은 봉선, 녹음, 재생기기 부분품	401	22.8	-0.7982	480,027	292.1	0.1093	
77521	가정형 냉장고 (냉동실 부착부분)	285	78.5	-1.0000	66,797	263.8	0.9749	
77822	병진진구 (지외선 등 제외)	373	167.4	-1.0000	6,787	40.9	0.2073	
77832	자진기 또는 자동차용 진기조명 및 인드스크린 와이프	535	122.1	-1.0000	7,002	20.9	-0.1953	
79199	달리 分類되지 않은 킨도기관차 및 차량의 부분품	977	331.4	-1.0000	2,375	9.3	-0.6541	
82192	달리 分類되지 않은 목재의 가구	563	37.8	-0.9720	23,778	22.6	0.8781	

SITC	品 目 名		北韓의 輸入		韓國의 輸出		
	品 目	名	輸入額	輸入結合度	輸出額	比較優位指數	貿易特化指數
87483	기타 전자측정, 검사 분석 또는 지동조절 기구 및 장치		3,454	176.8	23,846	16.6	-0.8198
89391	마루깅개용으로 사용되는 形態의 판, 티일 임화판 리바닐		297	143.8	8,045	62.3	0.7415
89399	分類되지 않은 중분류 58에 속한 材料의 其他製 品		721	41.4	221,192	144.0	0.5913
89832	속음기판, 녹음테이프 및 기타 녹음매체		3,388	464.2	9,866	17.5	-0.4013

資料: 産業研究院, 『共産圈經濟』, 1990.9, PP.17-20에서 재인용.

(표 4-4)

對北韓 搬入有望 品目

單位: 千달러

SITC	品 目	北韓의 輸出			韓國의 輸入		
		輸出 額	比較優位 指數	貿易特化 指數	輸入 額	輸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數
21201	멍크 생모피	478	355.1	1.0000	83,488	470.4	-0.9944
21209	기타 생모피	312	244.1	0.5639	88,546	650.0	-0.9961
26142	견 부스러기	2,663	23,001.0	1.0000	1,196	370.7	-0.2986
28201	신철 부스러기	1,161	10,134.0	1.0000	4,644	405.5	-1.0000
28209	기타 鐵網부스러기	584	250.3	0.4384	64,173	292.5	-0.9670
28793	폴리브테늄, 니오븀, 탄타늄, 티타늄, 鐵石 및 精 광	173	126.3	0.5446	10,401	120.4	-0.9055
29196	새끼철, 깃털, 솜털	1,300	1,978.5	1.0000	16,060	769.9	-0.7843
67251	고탄소강 또는 合金鋼이 아닌 鐵鋼의 片, 棒, 管, 線, 索, 鋼 絲	512	223.8	1.0000	120,057	480.3	-0.6348
68511	미정제鉛	12,705	36,913.0	1.0000	24,501	613.5	-0.9991

<그림 2>

SITC	品 目	北韓의 輸出			韓國의 輸入		
		輸出 額	比較優位 指數	貿易特化 指數	輸入 額	輸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數
08111	짚 및 왕겨 (加工하지 않은 것)	229	2,143.2	1.0000	837	117.0	0.6915
24721	재제용 및 베니어용 풍나무 (환입수)	1,843	370.1	1.0000	1,057	22.6	-0.8271
27821	전토, 남정석, 홍주석 및 규선석	154	91.1	1.0000	23,752	199.9	-0.7470
27822	친연 흑연	761	5,244.1	1.0000	2,518	547.6	0.4153
27824	마그네사이트	18,236	25,703.1	1.0000	8,629	83.3	-0.9515
65352	제생 장선유리물	4,528	60,198.0	0.9895	47	10.7	-0.0682

品 目		北 韓 的 輸 出			韓 國 的 輸 入		
SITC	品 目 名	輸 出 額	比 較 優 位 指 數	貿 易 特 化 指 數	輸 入 額	輸 入 結 合 度	貿 易 特 化 指 數
67271	고탄소강 또는 합금鋼이 아닌 제임인용 철강코일	20,149	3,651.8	1.0000	150,439	235.2	0.3320
67441	普通鐵鋼의 압연후판 (두께 4.75mm 이상)	5,022	1,573.3	1.0000	133,714	373.4	0.1037
68915	마그네슘 (未加工)	317	826.5	1.0000	2,190	43.2	-0.9589

<그림 3>

品 目		北 韓 的 輸 出			韓 國 的 輸 入		
SITC	品 目 名	輸 出 額	比 較 優 位 指 數	貿 易 特 化 指 數	輸 入 額	輸 入 結 合 度	貿 易 特 化 指 數
05461	야채 (冷凍해서 저장한 것)	198	104.5	1.0000	225	1.3	0.6160
09809	달리 分類되지 않은 食品 調製品	624	142.1	0.3580	7,085	11.3	0.7121
11249	달리 分類되지 않은 주정 및 증류알콜	204	106.1	0.7215	502	2.8	0.7469
27851	식염, 규암	295	2,371.1	1.0000	410	58.4	0.0012
27861	鐵鋼製造의 슬래그 등 찌꺼기	205	921.7	1.0000	165	16.0	0.8490
27893	친인 동식, 환석	704	3,105.3	1.0000	1,095	54.9	0.2097
65223	민폐인 직물 및 서넛직물	333	603.3	0.9249	3,849	60.8	0.3564
67169	기타 페로 알로이	781	252.8	-0.6139	9,300	81.3	-0.9998
68212	정제鋼	592	88.9	0.8272	23,459	88.2	-0.6807

자료: 産業研究院, 年報, PP.21-22에서 재인용.

$$\begin{aligned} \text{비교우위지수} &= \frac{X_s^h}{X_s} / \frac{M_o^h}{M_o} * 100 = \frac{X_s^h}{M_o^h} / \frac{X_s}{M_o} * 100 \\ &= \frac{\text{남한(북한)의 h상품 수출집중도}}{\text{OECD의 h상품 수입집중도}} * 100 \end{aligned}$$

X_s : 남한(북한)의 對 OECD 수출총액

X_s^h : 남한(북한)의 對 OECD h상품 수출액

M_o : OECD의 수입총액

M_o^h : OECD의 h상품 수입액

$$\begin{aligned} \text{수입결합도} &= \frac{M_s^h}{M_s} / \frac{X_o^h}{X_o} * 100 = \frac{M_s^h}{X_o^h} / \frac{M_s}{X_o} * 100 \\ &= \frac{\text{남한(북한)의 h상품 수입집중도}}{\text{OECD의 h상품 수출집중도}} * 100 \end{aligned}$$

M_s : 남한(북한)의 對 OECD 수입총액

M_s^h : 남한(북한)의 對 OECD h상품 수입액

X_o : OECD의 수출총액

X_o^h : OECD의 h상품 수출액

위의 두식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비교우위지수의 경우 수출국의 특정 수출상품의 비교우위지수가 110이라고 할 때 이 수출상품의 그 나라에서의 비중이 세계수출에서 그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10% 더 높다는 것과 같으며 그만큼 비교우위 내지는 수출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결합도의 경우 특정상품의 수입결합도가 100보다 큰 경우 수입국의 평균 수입보다 그 상품의 수입비중이 큰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서 표를 보면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역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經濟協力の 推進方向

남북한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성과 중요성만 무성하게 거론되어 왔을 뿐 그 성과는 아직 보잘 것이 없는 남북한 경제교류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이같은 질문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남북한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에서는 첫째, 남북한이 경제적 이익의 추구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통일의 길로 인도해야 하며 둘째, 남북한 간의 경제관계 개선은 정치적 통합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¹⁵⁾

이제 이같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이 추진된다면 그 접근방법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몇몇 기존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연하청 박사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증진에 관해서 다섯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¹⁶⁾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경제교류는 우선 부분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경제통합의 목표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초기단계의 남북한 경제교류에서는 남한이 경제적 우위가 드러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공업제품을 판매하려는 “수직적”교류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원자재는 원자재와 공업제품은 공업제품과 교환되는 “수평

15) Ha-Cheong Yeon, "The Barriers To Economic Exchange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 Paper Presented at KDI-IEWSS Conference held on Dec. 10-11, 1990, Seoul Korea, on The Environ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1990s*, P.2.

16) Ha-Cheong Yeon, *ibid*, PP.13-15.

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경제교류에서는 직접교류 이외에도 경제교류관계를 쉽게 맺게하고 합작투자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제 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적용될 수도 있다. 넷째, 북한은 외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남한은 북한의 경제적 침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자본재 그리고 기타 생산요소를 북한에 제공하여 상품을 생산한 다음 생산된 상품의 일부는 북한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남한으로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남한은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합작투자를 추진해가야 하므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차관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창영 교수는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경제회담의 결과로 드러난 쌍방간의 판매와 구매품목이 서로 일치하는 것부터 교역을 시작하되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비슷한 것끼리 교역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둘째, 북한은 수출할 수 있는 재화의 수와 양이 적고 생산기술면에서도 수출능력이 제약되어 있어서 남북한간에 물자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은 수입초과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남북한 경제협력기금의 비축을 통해 북한에 신용을 공여할 준비를 해야하며 셋째,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업계의 과다경쟁을 피하는 대신 南北經濟共同體의 구축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⁷⁾

이와같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경제협력 추진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타당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남북한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의 추진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이 서로 입장을 점진적으로 좁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볼 때 1990년 12월의 3차까지 진전되어온 南北總理會談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지난 1,2차 總理會談에서는 남북한이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서로가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남한측이 기초연설을 통해 밝힌 경제협력방안은 물자교류, 자원개발 및 대외 공동진출,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관광

17) 정창영, 전계서, PP.100-101.

사업 공동추진, 철도·도로 복원 및 해로·공로 개설, 우편·전신·전화 개통 및 3통 협정체결, 경제협력공동기구설치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대체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앞으로 총리회담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거나 이전과 같은 형태의 南北經濟會談을 속개함으로써 경제교류의 증진이나 경제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발판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V. 結 論

北韓은 自力更生을 目標로 自給自足 經濟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北韓의 貿易에 있어서 輸出의 역할은 이러한 목표수행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南韓이 輸出入을 통해 比較優位에 입각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南北 經濟比較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輸出과 輸入을 합한 貿易規模를 비교하면 1970년에 北韓은 南韓의 貿易規模 28억 2천만 달러의 28.6%인 8억 1천만 달러였으나, 1989년에는 南韓이 기록한 1,239억 1천만 달러의 3.5%에 지나지 않는 43억 6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北韓의 國別 貿易을 살펴보면 1970년 北韓의 전체 貿易量에서 蘇聯이 47.6%, 中國이 14.4%, 日本이 7.1%를 차지하므로써 이들 세나라의 比重은 69.1%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 세나라가 北韓의 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회복을 보이기는 하나 1989년에는 蘇聯이 54.1%, 中國이 12.9%, 日本이 11.6%를 차지하므로써 이들 세나라의 비중은 무려 78.1%에 이르고 있다.

北韓의 輸出品目은 材料別 製造製品, 非金屬鑛物, 非철금석(鉛, 亞鉛, 金, 마그네사이트 분말 등), 鐵 및 銅, 非식용원재료, 잡제품, 機械 및 輸送裝備 등이 총수출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輸入品目은 광물성언료 및 제품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石油 및 石油製品, 코크

스, 석청탄 등을 주로 輸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南韓의 國別 貿易을 살펴보면 南韓의 貿易 相對國으로 美國, 日本, 홍콩, 西獨, 英國 등이 비중이 큰 나라들이며 이중 美國과 日本은 南韓의 輸出과 輸入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南韓의 輸出品目은 전자 및 전기, 섬유류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높고, 輸入品目은 기계류 및 은반용 기계, 화학공업 생산품, 전자 및 전기 제품 등이 높은 편이다.

北韓은 貿易政策의 基調를 國家獨占의 原則, 互惠 平等의 原則, 自立的 民族經濟 原則으로써 경제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중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輸入하고 이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輸出을 한다는 것이 무역계획 수립의 기본전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1950년대에 북한의 교역상대국은 거의 모두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으며 주로 북한에 대한 원조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中蘇分爭으로 양국의 원조가 크게 감소하여 교역상대국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도상국들과의 교역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1980년대에는 획일적 경제체제만으로는 경제발전을 이룰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외 무역확대정책과 함께 서방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부분적인 對서방 개방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1984년에는 合營法을 제정하고 1987-1993년 간에 추진되는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는 貿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총련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外國資本의 유치에서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면에서 볼 때 南韓이 北韓에 資本과 技術을 제공하는 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南北韓間에는 매우 오랫동안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대화를 해온 셈이다. 그러나 1984년 11월 15일 제1차에서 1985년 11월 20일 제5차까지의 남북경제회담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兩側의 희망과 주장을 밝혀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다 北方政策 推進의 바탕이 된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의 7.7 선언은 南北韓間의 문호를 개방하고 南北韓 交易을 民族 內部交易으로 간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같은 해의 10.7 조치는 民間商社들의 북한 물자교역 뿐만아니라 南北 經濟人의 相互交流까지도 허용했다. 이결과 북한 물자들이 남한 시장에서 팔리고 있고, 현대 鄭周永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논의했으며, 남북언예인의 교환방문이 있었으며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기까지 한 것이다.

이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면 南北韓 經濟交流와 經濟協力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추진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이 서로 입장을 점진적으로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부분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경제통합의 목표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북한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역과 對外經濟協力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 주체사상, 국내생산능력의 제한, 부족한 외환사정,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등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할 일은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슬기

롭게 극복하고 남북경제교류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접근방법으로 폭넓고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남한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추진에서의 전제조건은 민족적 숙원인 통일과 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한간의 정치적 통합 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와 協力은 兩側의 合意를 바탕으로 추진 되어야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國內文獻>

-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2.
-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北韓經濟의 展開過程』, 1990.2.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주요경제지표』, 1989.
- _____ , 『경제백서』, 1989,1990.
- _____ , 『한국경제주요정책과제』, 1988.10.
- 김성훈·윤병수,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중국연구소, 1988.12.
- 金勝鎭, 『제조업부문 비교우위구조의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6.5.
- _____ , 『한국무역구조의 결정요인과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85.9.
- 김애실,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북한의 여성』,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0.3.
- 金行權·申東洙, 『貿易學概論』, 貿易經營社, 1988.
- 노희목, 「남북한 산업구조분석에 따른 경제교류 전망」, 산업연구원, 1989.3.
- 대륙연구소, 『北韓研究』, 1991년 봄호.
- _____ , 『전망』, 1990.3.
-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對 北한수출입』, 1990.6.
- 동아일보사,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 신동아, 1991.1, 별책부록.
- 馬在信, 『한국무역수지와 주요산업 수출구조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88.7.
- 박성조·최남용, 『북방무역전략』, 전예원, 1989.3.

- 朴東雲·朴勝俊, 「한국의 북방경제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 『안보학술논집』,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0.
- , 「북한의 무역구조」, 『産業연구』(제14집), 단국대학교부설 산업연구소, 1991.
- 朴勝俊,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동태적 거시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국민경제제도 연구원, 1990.
- 박창희, 『신북한 정치론』, 일신사, 1988.1.
- 박철언, 「한국 북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민족지성』, 1990.11.
- 북한연구소, 『북한』, 1988.12.
- , 『북한』, 1990.4.
- 산업연구원, 『2000년 한국무역전망과 장기정책방향』, 1989.9.
- , 『북한』, 1989.
- 申龍鶴,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 『經院論叢』(제9집),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9.
- , 「흑자경제시대의 무역정책 방향」, 『제4기 최고경영자과정(I)』,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9.
- 양호민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한울, 1987.1.
- 延河淸,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12.
- 오관치, 『소련경제의 장기발전전망』, 산업연구원, 1988.9.
- 을유문화사, 『북한 40년』, 1989.1.
-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1.
- 林陽澤, 『남북한 산업 및 기술협력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9.4.
- , 『소련·동구제국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 변화와 산업 및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9.9.
- 장의태, 「수출의 양적 극대화정책과 무역자유하에서 중간재 수입의존도」, 『경제학연구』(제38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0.6.

- 정창영, 「북한경제의 분석 및 유형화 시도」, 『공산권국가 경제체제의 비교연구 - 북한경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73.4.
- _____,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0.5.
- 정창영·전철환,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과 체제정비」,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1990.11.
-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 살아본 사람과 가본사람들의 이야기』, 월간조선, 1991., 별책부록.
- 최신림, 「북한의 1987년도 수출입 상품구조」, 『공산권 경제』, 산업연구원, 1989.3.
-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48호, 1989.12.
- 통일원, 『남북대화 관련 주요일지』, 1990.10.
- _____, 『남북대화백서』, 1988.12.
- _____,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Ⅰ), (Ⅱ)』, 1990.3.
- _____, 『북한 경제 개관』, 1988.12.
- _____,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2집.
- 한광수,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공산권 경제』, 산업연구원, 1990.9.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무역발전과 종합상사의 역할』, 1984.
-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한국의 극동·시베리아 투자진출에 대한 미·일·중·소의 시각과 그 대응방안 연구』, 1989.12.
- 한반상, 『소련·동구의 대외개방과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산업연구원, 1989.12.
- 洪元卓, 「수출주도형 성장과 개방」, 『한국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1.

黃南逸, 「한미·한일간 무역불균형과 대일수입선 전환방향」, 『경원논총』(제9집),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9.

황남일·김홍영, 「한국의 요소부존과 무역구조의 변화」, 『산업연구』(제13집), 단
국대학교부설 산업연구소, 1990.

<外國文獻>

Balassa.B,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New York,
McGraw Hill, 1967.

Ernest Mandel, *Beyond Perestroika ; The Future of Gorbachev's USSR*, Verso,
1990.

Nikolai Shmelev and Vladimir Popov, *The Turning Point ;
Revitalizing The Soviet Economy*, Double Day, 1989.

Park Dong Un and Park Seung Jun, "Problem of Korean Soviet Economic
Cooperation", 단국대학교 미소연구소, 1991.

Vasily Mikheev 외, "The Environment fi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199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0.11.

Yeon Ha-Cheong, "The Barriers To Economic Exchange and Prospects fi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 Paper Presented
at KDI-IEWSS Conference held on Dec. 10-11,1990, Seoul Korea, on
The Environ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1990s.*

北韓의 工業構造에 관한 研究

서 찬 수 (영남대)

< 要 約 文 >

本 論文은 北韓의 工業構造를 經濟發展論의 觀點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北韓의 經濟構造는 民族共同體의 일부로서 당연히 규명되어야 할 명제이며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와는 상이한 길을 걸어온 그들의 경제정책방향, 현황과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분단이 가져다준 이질감과 벽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명함으로써 研究의 意義를 찾고자한다.

첫째, 현재 北韓의 工業構造를 가져온 政策基調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성과와 파생된 제문제점, 限界는 어떠한 것인가

둘째, 현재의 공업구조가 있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구조면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현재의 공업구조, 생산을 결과한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北韓의 개방에 따른 공업구조 전환가능성과 통합의 초석으로 경제적 접근, 추진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장에서 北韓 경제의 운용방식을 정리하고 이 방식의 귀결에 따른 자립적 민족경제와 실현방법으로서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北韓의 공업구조단계를 사회주의 기반건설기(1946-60), 사회주의 공업진보기(1961-70), 사회주의 공업확장기(1971-93)로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

에서의 계획과 운용실적을 분석하고 공업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工業成長이 점차 지체되는 原因으로 계획경제가 안고있는 運用方式의 限界와 인구과다 소규모 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와 제반여건을 무시하고 내부지향적 자립경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할 개발전략상의 오류를 논증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계획경제의 한계와 대내외적 영향에 따른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개방과 개혁이 전제될 때의 공업구조전환의 경우를 상정하여 우리의 접근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은 소련의 모형을 모방,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경제운용체계에다 북한 특유의 교리적 경향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해결의 중심고리로써 중공업 우선적 성장을 꾀하였다.
- (2) 북한 경제는 공업, 그 중에서도 중공업이 선도하였으며 그 연평균 성장속도는 37.0%(1946-60), 12.5%(1961-70), 10.3%(1971-77), 12.2%(1978-84), 10%(1987-93)로 사회주의 국가 중에는 양호한 편이나 시장경제 국가에 비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계획경제운용양식의 한계, 개발전략상의 오류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 (3) 투자비중과 계획기간별 목표에서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은 배급제와 절약에 의한 소비억제로 생산활동이 지연되고 제약을 받아왔다. 최근 생필품 증산과 다양화, 질적 제고를 모색하고 있으나 생산설비의 영세성, 공정의 전근대성, 계획당국의 의지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애로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 (4) 중공업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보면 고급중화학 공업과 그 이상의 공업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중화학 공업 중에서도 공작기계, 농기계 등 몇몇 기계부문에서만 우위를 보일 뿐 수송용기계, 전자, 전기, 금속, 석유화학 등에서는 생산능력, 기술수준 등에서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또한 무역구조에서도 성장정책과는 반대로 서방 및 사회주의 선진국에 광물자원, 농산물, 원료가공제품을 수출하고 기계, 수송기기, 고급기술의 경공업제품을 수입하는 파행적 면을 보여주고 있다.
- (5) 개방 개혁과 관련하여 경제운용방식의 한계, 남북 경제력 격차 등을 인식하

여 대외교역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주체사상을 기초한 독재체제의 붕괴 등 내부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 구조적 개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개방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북한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사회주의적 장점을 보유하면서 시장경제조직의 운용을 도입하는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는 중국을 본뜬 합영법, 경제특구 등에서 보듯 중국의 모형을 따른 계획상품경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6) 점진적, 대외적, 경제적 개혁과 개방으로 소비패턴과 해외수요가 변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규모, 공업구조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NP가 우리의 1977, 1978년 수준으로 그후의 우리 소비패턴으로 미루어 체제개편적 개혁이 전제될 때 가공식품, TV,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교통 등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며 왜곡된 산업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기계, 운송설비 등의 내구생산재와 사회간접자본설비 투자수요가 증가되어 이 부문에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해외경험, 해외수요로 공업구조를 고도화 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 (7) 목전의 단기적 이익보다 경제교류가 신뢰구축의 바탕 위에 통합을 가져올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남북경제교류 협력은 의미가 크다. 한국의 지금까지의 KNOW-HOW, 기술 해외시장 기반, 설비제작, 운영능력과 북한의 입지, 인력 등이 합치될 때 그 힘은 SYNERGY EFFECT로 배가될 수 있다.

공업구조면에서 상호보완적 면이 있다고 공산품 수출과 원료수입의 종속적 무역관계로 결정짓기보다 입지, 인력을 이용 직접투자로 해외수출하는 방안과 경영 KNOW-HOW와 기술이전 등으로 점차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I. 序 論

1. 研究目的 및 範圍

지난 40여년간 북한은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의 정치이념 아래 생산수단의 국공유권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로서 대내 지향적인 폐쇄된 경제로 발전하여 왔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北韓은 日帝의 南農北工 정책에 의한 공업설비의 유산과 지하자원 등의 여건, 공산권과의 경제협력 등에 의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지나친 중공업 우선정책과 소련, 중국 등으로부터 경제 기술원조의 중단, 기술도입부진, 과도한 군사비 부담 등으로 1970년들어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경제계획은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에, 해방이후 얼마의 경공업 시설에다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은 원조에 의해 겨우 전후 복구사업을 단행한 후, 1960년 이후 官主導 外向的 성장전략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면서 중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고도성장과 정치적 발전의 괴리와 마찰, 경제발전에 따른 부문간 불균형과 분배의 왜곡등의 갈등 속에서도 경공업부문을 다양화 시킨다음, 중공업과 첨단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 하나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같이 남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로 경제체제를 달리 하면서 거의 경제교류도 없이 경쟁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우리는 북한을 민족공동체로서 다른 체제하에서 발전하여온 경제제도, 과정과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40여년간을 달리하여 온 북한의 경제정

책 방향, 발전방향 및 현황과 우리나라 경제와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장기적 분단에 의한 이질감을 극복할 수 없으며,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기가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구조, 특히 공업구조를 비교경제발전론적 입장에서 다음의 몇가지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북한의 공업구조를 가져온 정책기조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성과와 파생된 제문제점, 限界性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경제운용의 논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개혁 개방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논리의 실질적 변화의 내용을 전망 해보고자 한다.

둘째, 현재의 공업구조가 있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구조면에서 불매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그러한 공업구조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경제가 통합의 점진적 실현의 초석이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에 따른 공업구조전환을 전망하고, 경제적 협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2. 研究의 限界

경제발전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코자 할때는 이론적 精緻함과 함께 이를 적용, 실증 할수 있는 자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경제가 안고있는 특수 구체적 여건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들과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자료의 이용이 연구의 성과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5년 이후 북한은 거의 모든 경제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는 상하간 정확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전제로 되며, 따라서 경제통계 작성이 필수적이나 체제 자체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는 특정년도 기준의 指倍數형태로만 간간히 발표될 뿐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마저도 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개념의 차이, 紛飾會計(dressing accounts)에 따른 은폐, 과장발표, 質개념을 무시한 量的자료¹⁾의 발표등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統一院을 위시한 각 정부기관에서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분석한 추정치와 북한의 발표치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2차자료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원용하여 북한의 공업구조를 분석코자 한다. 이는 이러한 제한된 자료속에서나마 어떤 일정한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 예를 들어 마력표시를 하지 않은 트랙터 25만대 등이다.

II. 北韓의 經濟運用樣式과 基本路線

1. 經濟運用樣式

경제운용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소련의 모형을 모방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이데올로기적 주의와 북한 특유의 敎理的 경향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다. 북한의 경제운영체제는 막스, 레닌공산주의 정치이념 아래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명령체제이다.

소련의 점령과 함께 스탈린에 의해 발전된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모방하여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각종 산업의 국유화, 경제발전계획의 도입, 무역의 국가독점등 1930년대초 스탈린이 시행했던 방식 그대로를 채용하였다.

이러한 몇가지 이데올로기적인 主義와 함께 1970년대 이후의 敎理的경향, 이를테면 主體哲學이 경제운용을 결정짓는 중요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특징으로 들수 있는 것은 강제적 계획경제운영 방식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채용하고 있는 지시적계획(indicative plan)과는 달리 북한의 계획은 중앙계획위원회의 계획작성을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법으로 확정되는 강제적계획(imperative plan)이다. 모든 계획사항은 각생산단위에게 생산목표, 자원투입량, 투자재원, 비용, 새로운 기술활용 등 세부적인 지시를 전달하고 이의 수행을 의무화 시킨다.

이러한 계획명령체제는 긴장된 계획목표(taut planning)를 추구하여 주어진 자원에서부터 최대의 산출물을 얻어내는 動員效果(mobilizing effect)를 가지려고 하나, 한번 계획된 계획은 여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여건변화에 따라 適期에 수

정을 할 수 없는 경직성(rigidity)이 시장경제체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²⁾

그리고 경제운용주체가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이다. 북한은 情報 및 의 사결정에 있어 절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黨이 모든 결정을 하는 거의 完全集中체제를 갖고 있다. 중앙집권화를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메카니즘이 곧 黨組織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운용의 동기구조가 도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 위주로 되어 있다. 즉, 메달 훈장 등의 상징으로 개인의 동기를 유인하고, 도덕적 유인과 교육 선전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당국이 설정한 집단적 가치, 교리적 경향 이를테면 주체성 등에 동조하게 하는 규범적 가치가 지배적 동기로 되어 있다.

이때 체제는 단일의 이념으로 지탱되어야 하며, 이 이념은 끊임없이 재해석과정을 밟아야 되고, 모든 국민은 유일체제의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를 벗어난 모든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국민은 감시대상이 되어야 되므로 教育, 査察, 行政등 보다 많은 體制유지비용이 소모되는 그러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이 경제운용 등 모든 문제해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운용방식을 갖고 있다.

56年 스탈린 격하에서 독자적인 이데올로기 개발 필요성 절감하고, 中蘇국경분쟁 등에 의해 中蘇 일방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수 없게 된 북한은 1970년대 독자적인 새 이데올로기를 정립해 나가다가 당규약 전문과 사회주의 헌법³⁾에 까지 이를 규정

2) 李泰旭, 李相禹, “南北韓經濟의 相克性과 相補性 研究”, 東亞研究 16, 1988. pp. 6~7.

3) 제4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1인독재형 전체주의를 완성하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지침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구현하는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되었다. 특히 경제에서 자립의 목표는 自力更生의 원칙을, 국방에서의 자위목표는 군수산업육성과 관련 重工業優先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같이 북한의 경제운영체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지도자 개인의 명령의 역할이 강조되는 모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운영방식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기로 한다.

2. 政策의 基本路線

북한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은 지난 40여년 동안 自力更生의 원칙에 의한 民族經濟 건설에 있었다. 이것은 앞절에서 살펴본 경제운영방식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초기에는 중공업 우선으로 하고 경공업, 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진 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으로 자급자족 경제체제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왔다. 이러한 경제정책노선은 북한경제규모,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본절에서는 북한경제의 기본정책노선인 민족적 자립경제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인 중공업우선정책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自立的 民族經濟

폐쇄적인 自力更生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는 북한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自主的 民族經濟”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

아 다양하고 부단히 成長하여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최신키술로 정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나라의 자연자원과 원료 기계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⁴⁾를 말한다.

經濟에서 自立은 1956年 12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어 그후 북한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함과 함께 경제자립의 목표아래 「자력갱생」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自立經濟는 한나라의 국민경제가 대내적으로는 투자재원을 자체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실질국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경제를 말하는데, 北韓은 이를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자금자족체제 구축으로 이해하고 자체의 힘에 의해 새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다.⁵⁾

이러한 정책노선하에서는 대외거래는 자연히 종속적이고 소극적일수 밖에 없게 된다.

자력갱생원칙하에서 북한경제는 폐쇄경제로 이끌어 왔고 자금자족경제를 지향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수입은 경제계획상 필수불가결한 물자에 한하고 수출은 이 수입代錢을 확보하거나, 또는 국민경제에서의 잉여부문 처분수단⁶⁾으로 이용될 뿐이다.

정치적, 경제적 대외의존을 배제하고 국제교류에 따른 文化的 변화를 예방하기

4) 노동당 출판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경험」1983. 8(李浩, 「북한의 경제체제와 정책」,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p.83에서 재인용.)

5) 日帝가 大恐慌직후 피폐한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실시한 自力更生運動과 유사한 느낌 성격인듯 하다.(權丙卓, 자력갱생운동의 正體, 사회과학연구(3-1), 영남대, 1983참조)

6) 국내잉여 재화를 단순히 처분하는 수단으로 무역을 이용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이 M. Mynt의 잉여몰 처분론(Vent for surplus theory)이다.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소련, 중공, 동구사회주의제국과 교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폐쇄적 대내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대외경협을 통한 기술이전,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효과의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북한을 外延的, 重工業 우선정책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2) 중공업 우선정책

북한은 생산재(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력 증대를 급속히 실현하고 이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국방자위를 위한 군수산업육성을 위해 중공업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왔다.

북한의 공업정책에서는 항상 농업과 경공업도 균등발전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80年代에 들어서 비로소 소비재공업육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나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위한 중심고리로서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기본노선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공업우선 공업화전략은 내부지향적 자립경제정책노선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 이 노선은 마르크스의 理論정립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기본전략으로 되어 있다. 이 정책은 1930년대 당시 소련이 안보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그리고 농업의 집단화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농촌실업을 단시간에 수많은 산업노동자로 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신속히 건설한다는 이데올로기적 목표에서 받아들여진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주체적 공업화의 일환으로,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군사력 증강 유지를 위해 중공업우선 정책을 채용하게 된 것이다.

언뜻 한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새로운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자급자족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 중화학공업

이 다른 부문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수요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소규모 폐쇄경제하에서는 생산시설의 유향라는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었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른 한계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北韓 工業構造의 段階的 分析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사회주의의 物質的, 技術的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식민지시대의 낙후된 경제상태를 사회주의로 이행시키는데 있어 工業化는 각별한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농업보다는 공업,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소비재 생산보다는 자본재 생산 우선적인 육성책을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연유에서 북한 경제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계획과 관련된 공업구조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경제 계획과 그 성과를 각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북한에서의 社會主義로의 이행과 그 직접적인 건설을 위한 經濟計劃은 다음 3단계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1960년대까지 생산수단의 국유화, 농업의 협동화, 상업의 집단화 그리고 전쟁복구 등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하는 이행기, 1961년 이후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성장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기간, 70년대 이후 나타난 부문간의 불균형, 자원배분 왜곡, 수입대금지불지연 등 체제적 모순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을 기술개조와 현대화로 전환하는 사회주의 공업화기가 그것이다.

각각의 단계에 대하여 그 계획과 운용실적을 알아본다.

7) 論者에 따라 각자의 기준에 의해 상이한 4,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오관치, 경제계획의 전개과정과 성과, 「북한의 인식」, 을유문화사, 1990. p. 133의 4단계 분류와 신승철, 개혁개방 그리고 합영법, 위의 책 p.215의 5단계, 그리고 李泰旭,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p.145 2단계 분류참조.)

1. 社會主義 工業 基盤 建設期(1946—60)

이 기간동안 시행된 경제계획으로는 제1차 1개년계획(1947), 제2차 1개년계획(1948), 제1차 2개년계획(1949—1950),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 제1차 5개년계획(1957—1960)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 北韓은 토지개혁 및 주요산업시설의 국유화조치를 단행하여 사회주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전 후에는 복구와 함께 농업, 개인상공업의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공업기반을 강화하였다.

제1, 2차 1개년계획과 2개년계획(1947—1950)사이에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일제의 시설의 복구, 그리고 계획경제실현으로 공업성장율은 연평균 49.9%에 달했으며,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 기간에는 사회주의 제국의 원조와 중공업 우선과 경공업 긴급복구로 1953년에 비해 공업총생산이 2.6배, 국민소득은 75% 증가계획이 초과달성 되었다.

그리고 5개년계획기(1957—1960)에는 국민소득 2.2배, 공업총생산 2.6배로 책정되었으나 중공업 부문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등에 힘입어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보다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이 기간의 생산수단은 1950년이 1946년에 비해 3.3배, 56년은 53년 對比 4.1배 1960년은 56년 對比 3.0배의 생산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 농업기계 등의 기계공업과 선철, 철강등의 야금공업, 화학비료등의 중화학공업의 빠른 성장이 국민경제를 선도하였다. 반면, 이기간 동안 소비재생산은 2.54배, 2.1배, 3.3배로 중공업생산 증가에 뒤지고 있다.

2. 社會主義 工業 確立期(1961-70)

북한은 1961년 부터 사회주의농업경제로부터 사회주의공업경제로 지향하는 1차 7개년계획(1961-1967)을 시행하였다.

목표는 앞서의 1차 5개년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하여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완성시키고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두고 국민소득 2.7배, 공업총생산 3.2배, 양곡수확 600-700만t을 기도하였다.

이를위해 1차 5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이 추구되었으며, 전면적인 기술혁신과 문화혁명이 기본과제로 되었다. 이같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기 3년에는 기존 중공업기지를 정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후반기 4년에는 중공업기지를 한층 더 확장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중공업 경공업에 대한 투자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방력 강화정책에 의한 자원낭비와 생산의욕감퇴 그리고 중·소 이념분쟁에 따른 원조중단으로 자본 기술이 부족, 당초보다 3년간 연장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적발표는 없으나 추정에 의하면, 연평균 공업성장율은 목표 14%에서 12%, 공업목표는 72%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문별로 볼때, 공업기반 건설기 때와 같이 중화학 공업부분의 건설로 철강과 공장기계 생산량이 1960년 각각 64만t, 2904대에서 1970년 220만t, 7500대로 증가하였으며, 그의 합성수지, 화학비료등의 화학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표 III-1참조)

이러한 중공업발전 속도와는 달리 주민소비 수준을 대표하는 직물생산량의 경우

1960년 1.9억m에서 70.49억m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3. 社會主義 工業 促進期(1971-93)

북한은 1971년 이후를 기술개조와 人民經濟의 현대화 시기로 설정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제로서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물질적 기술적 토대의 조성, 인민생활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의 현격한 고양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의 집약적 발전방식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금까지 6개년계획(1971-1976)⁸⁾,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그리고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수행해 오고 있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1차 7개년계획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대기술혁명 즉, 노동자를 힘든 일에서 해방시킬 것과 관련하여 重勞動과 輕勞動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축소시키며,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의 해방에 두고 공업설비의 근대화를 강화발전시켜 나갔다.

2년의 완충기를 두고 1978년부터 실시한 2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쳐 한단계 높이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하였다.

경제주체화는 경제에서의 자립을, 현대화하는 생산시설의 교체 및 개선을, 그리고 과학화는 산업기술개발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급자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덧붙여 이 기간에 나라의 자원을 적극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국민자원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8) 1975년 8월 조기완성하였으나 미완성 부문(철강, 시멘트) 완성과 차기계획 준비로 1년을 조정기로 들으로써 사실상 6개년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1976년까지 이어진 점이다.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을 내세웠는데,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은 산업부문간의 균형발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화학 우선정책의 일대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7년부터 착수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과업은 앞서 2차 7개년계획에서 추진되어왔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추진하여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두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두었다.

계획의 목표는 6개년계획, 2·3차 7개년계획 각기간이 국민소득 1.8배, 1.9배, 1.7배, 공업총생산이 2.2배, 2.2배, 1.9배이었다.

북한당국은 그 목표를 초과하거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6개년 계획후의 2년간의 완충기, 2차 7개년계획후의 3년간의 조정기간등에서 보아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달성치 못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공업부문 성장율은 1978-1984년 4.5~7.8%로 추정). 지금까지의 성장의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북한의 주요공업생산능력

		1960	1970	1989
1. 총량부문	사회총생산액(만원)	668,200	1,048,120	
	연평균공업 성장율(%)	37.0	12.5	
2. 광업 및 에너지	총 발전 능력(만KW)	176	339	690
	전력생산량(억Kwh)	92	165	1000('93)
	석탄생산량(만t)	1062	2750	4330
	정유능력(만BPSD)			7.0
3. 야금공업	선철·입철(천t)	853	1984	5170
	철강(천t)	641	2200	940
	압연강재(천t)	474	1042	4040
	아연(천t)	60	130	295
4. 기계공업	공작기계(천대)	3	7.5	30('87)
	농업기계(천대)	1.2		32('87)
	조선(만 G/L)			21.4
	TV수상기(만대)			24
	자동차(만대)			3.3
5. 화학공업	화학비료(천t)	561	1500	3514
	화학섬유(천t)	13	53	177
	합성수지(천t)		40('69)	100('86)
6. 건재공업	시멘트(천t)	2285	4000	11775
	판유리(천m ²)	5070	9000	23225('87)
7. 경 공 업	직물(억m)	1.9	4	6.4
	신발(천족)	23297		
	식료품 및 기호품	'56대비 4.2배		

자료: 통일원

4. 綜合的 評價

지금까지의 공업성장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는 공업 그중에서도 중공업이 선도하였으며, 그 성장속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표 <Ⅲ-2>은 목표성장율은 일단 높게 잡고 이

표 <Ⅲ-2>

年平均 成長率

단위: %

기간	분류	社 會 總 生 產		工 業
		목 표	실 적	
1946~60				37.0
1961~70		14.6	8.6	12.5
1971~77		10.3	6.0	16.3
1978~84		9.6	4.5	12.2
1987~93		7.9		10.0

자료: 통일원

를 완성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공업이 총생산의 성장을 보다 높은 율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통제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제소국과 경제빈국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력갱생에 의한 대내지향적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을 채택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둘째, 투자배분과 계획에서 중공업과 생산재부문에 우선이 주어진 결과로 농업, 경공업, 소비재부문이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중공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비중과 기획기간별 목표는 표 <Ⅲ-3>, 표<Ⅲ-4>에서 보는 것처럼 중공업에 치중되어 있다.

표 <Ⅲ-3> 重工業 對 輕工業의 投資比率 推移 單位: 北韓元貨, %

	總投資額(億원)	工業投資比率	工業投資中	
			重工業	輕工業
3個年計劃(1954~56)	8.1	49.6	81	19
5個年計劃(1957~60)	11.7	55.0	83	17
7個年計劃(1961~70)	107.2	56.1	79	21
6個年計劃(1971~76)	166.6	18.7	83	17

資料: 國土統一院, 「南·北韓經濟交流推進方案에 관한 第2次研究」, 1982, p.10.

표 <Ⅲ-4> 公업성장목표 單位: 배

기간	분류	중공업	경공업
1차 1개년계획(1947)		1.76	1.3
2차 1개년계획(1948)		2.5	1.8
1차 2개년계획(1949~1950)		3.3	2.54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		4.1	2.1
1차 5개년계획(1957~1960)		3.6	3.3
1차 7개년 계획(1961~1970)		3.7	2.8
6개년계획(1971~1976)		2.3	2.1
2차 7개년계획(1978~1984)		2.2	2.1
3차 7개년계획(1987~1993)		1.9	1.8

자료: 국토통일원

그동안 북한은 自己完結的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해 중공업을 우선한 반면, 배급제에 의한 소비수요억제로 소비생활과 관련되는 경공업은 지연되고, 생산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 경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필수품의 증산과 제품의 다양화, 질적제고에 역점을 두고 인민소비품 수요충족에 혁명적 전진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경공업 자체가 안고 있는 생산시설의 노후, 영세성, 공정 경영의 전근대성 그리고 경공업혁명의 구호와는 달리 제3차 7개년계획중 소비재공업생산증대목표를 생산재 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의 계획당국의 의지부족으로 양산화와 질적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부문간의 왜곡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지체시키는 애로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중공업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중공업부문간에도 심한 불균형상태에 있다. 부품의 수에 의한 공업의 분류에서 보면⁹⁾ 고급중화학공업과 그 이상의 공업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하며, 기초중화학공업중에서도 수치제어선반, 터닝반 등의 공작기계, 농기계를 위시한 몇몇 기계부문에서만 우위를 보일뿐 그의 수송용기계, 전자전기, 금속, 석유화학등 나머지 대부분의 공업은 생산능력, 기술, 설비등에서 초기단계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왜곡은 지금까지의 성장정책결과와는 반대로 서방 및 사회주의 선진국에 광물자원과 농산물, 원료가공제품 등을

9) 부품의 수로 공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0¹ 단순노동소비재(잡화, 완구)

10² 일반소비재(직물, 시멘트, 통조림, 석탄, 자전거, 도기, 식료품, 펌프, 전선)

10³ 내구소비재(라디오, TV, 카메라, 시계, 비철금속, 미싱, 농기계)

10⁴ 기초중화학공업(철강, 자동차, 비료, 철도, 선박, 산업기계)

10⁵ 고급중화학공업(항공기, 고급특수강, 대형중기, 대형발전기, 전파병기, 고급전자계산기)

10⁶ 첨단우주항공산업(원자력, 우주선)

수출하고 기계, 수송기기, 고급기술의 경공업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넷째, 동유럽을 위시한 중국 소련등의 개방, 개혁,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경제운동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3차 7개년계획에 대외교역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재체제의 붕괴 등의 내부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이고 구조적개혁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요인에 의해 1987, 1988의 성장율이 목표(7.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에 머무르고 있어 체제개변적 개혁과 개방이 없는 한 기술개발을 통한 공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工業遲滯의 原因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年代 이후 북한의 공업성장속도는 다른 후발국에 비해, 또 자신의 앞 10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업성장의 지체를 야기한 원인으로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체제내부에 내재해 있는 통제계획경제운용방식의 한계성, 현실을 무시하고 자력갱생원칙의 내부지향적 개발전략을 채택한 정책적 오류, 정치우선에 의해 한정된 자원을 국방에 지나치게 집중한 반면 수송, 통신 등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社會間接資本은 소홀히 하는 등의 資源配分방식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1. 運用方式의 限界

북한의 경제정책 운용방식과 기본노선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성장의 잠재력을 몇몇 주요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어느정도 북한의 경제발전에 공헌해 왔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는 오히려 북한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낙후된 농업사회에서 산업화하는 1단계에서는 낮은 기술수준의 단순노동을 철저히 대중동원체제로 하여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은 동유럽의 2차대전후의 성장속도와 기타 공산권 국가의 초기성장에도 잘 나타나며, 이 요인으로 제3세계가 식민모국에서 독립후 자신의 경제체제를 결정하려 할 때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계획경제는 거대한 산업 잠재력을 신속하게 구축하는데는 강점이 있기는 하나 그 산업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限界性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건설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경제성

장의 템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성장을 제약하는 예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¹⁰⁾ 경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창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는 창의·자발적 참여 등을 통한 내포적 성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계획수립에서 情報는 불완전하며, 개인적 선호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하게 되고, 테크노크라트의 실용성이나 전문성보다 黨性, 革命性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다. 行政과 計劃이 市場機能들 대신할 때 경제는 質보다 量이 기준이 되고, 창의와 책임이 퇴색하며 경제활동은 안정을 잃게 된다.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을 필요로 하며 생산의 내용과 노동의 질보다 생산량, 노동시간 등 외형적 지표가 그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자발적 참여·창의성과 품질향상은 희생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와 같은 강제적 계획은 그 계획이 불합리적일 때 거시부문에서의 효율적 운영과 배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경제여건변화와 상황변화에 따른 기능적 조정이 약한 경직적 면을 갖게 되며, 조정시에도 강제적 조절을 통한 악순환만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경제활동에서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복잡성을 더해가며, 강제적 계획만으로는 경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 이는 동유럽에서 소득 및 기술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시장메카니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역사적 경험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0)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진전될수록 성장템포가 빨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1969. 3; 신동아 1989. 1 별책부록. pp.248~252.)

물론 북한도 이를 인식하여, 1985년부터 농민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도시지역에 확대하여 상설자유시장으로 일부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재 생산부문에 능력별 임금제 실시, 공장 기업소 경영의 독자성부여, 물질적 유인제도 실시, 가격체계의 변화 등 일련의 체제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요인의 도입은 북한의 정치적 입장과의 상충으로 근본적 개혁에까지는 제약될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2. 開發戰略上的 誤謬

1) 폐쇄적 자립경제정책의 오류

모든 국민경제는 경제계획을 세울때 주어진 자원, 人力, 産業構造, 역사적 유산, 사회제도, 종교, 자연조건 등 경제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전략을 세우게 된다.

대개의 경우 노동잉여국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을, 국내시장이 좁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소규모경제(small economy)는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효과를 얻기 위해 外向的 經濟開發戰略(outward looking policy)을 택하게 된다. 반대로 자원잉여 대규모경제는 자기의 자원을 특화하여 국내시장을 상대로 하는 내부지향적 전략(inward looking policy)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이행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우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생산적 기반을 마련한 후 수출시장정보, 기술도입, 대외경제협력 등의 축적을 바탕으로 중공업, 나아가 자본집약,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다. 이러한 흐름을 강조하여 호프만(W. Hoffman)은 생산재 공업 1단위에 대한 소비재 공업의 비율 여하로 한나라의

공업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¹¹⁾

한국은 경제조건에서 볼 때 인구과잉 소규모경제로서 다른 선발 개발도상국과 함께 1960년 이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해외시장확대, 개발수입의 증대, 선진기술의 모방 등의 국제교류이익을 통하여 60년대 섬유, 신발, 가발, 합판 등의 노동집약 산업에서 70년대 조선, 전자산업으로, 그리고 80년대이후에는 컴퓨터 등의 첨단산업으로 그 先導産業(leading sector)을 교체하면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한국과 같이 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같은 식민지적 경제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民族自立經濟를 수립한다는 이유로 폐쇄적, 중공업 우선 정책노선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스스로의 정책노선과 한국전쟁 도발, 각종 테러수출에 의한 좌경이미지와 서방제국에 의한 경제봉쇄로 소련과 중공 등 사회주의 국가와 제한적인 교류만 해 왔을 뿐이다. 대외무역은 특화 산업생산물을 교류하여 효용증대를 꾀하는 무역방식보다는 국내잉여재화를 처분하는 수단으로 또는 국내필요자원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한정된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같은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필요한 자본, 기술도입을 제때에 하지 못함으로써 전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낙후와 산업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하였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한 제3세계국가가 폐쇄적 자립경제를 추구하면, 생산성의 高低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을 전부 개발해야 하므로 사회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제환경변화에 산업을 동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잉여 소규모 후진국은 노동이 자원보다 국제적 이동성(mobility)이 작아 국제

11) 호프만은 $\frac{\text{소비재 공업생산량}}{\text{생산재 공업생산량}}$ 의 비율(Hoffman Ratio)을 기준으로, 1단계는

소비재 비율의 압도적 우위단계(호프만비율이 5 ± 1.5), 2단계 생산재 비율이 급격히 확대되는 단계 (2.5 ± 1), 3단계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단계 (1 ± 0.5), 4단계 생산재가 우위인단계(1이하)로 구분하였다.

시장에서 비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산업에 특화하여 수출시장확대를 꾀하는 개방정책이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은 합영법제정, 경제특구 등으로 사실상 자력갱생원칙을 포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역확대를 위한 전면개방체제로 가기까지는 정치적으로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다.

2) 重工業優先政策의 誤謬

자립적 민족경제의 의한 폐쇄경제는 자본의 조달, 기술습득, 투자관리 등을 순국내자원으로만 해야하며, 당연히 폐쇄에 따른 자본적 조달의 제약으로 자본재부터 우선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기술은 국내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저축강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目標投資率과 저축율이 높을수록 자본집약적 산업에 중점투자하게 되고, 外資導入에 의한 자본재 조달이 어려울수록, 즉 경제가 봉쇄적 일수록 생산재개발에 역점을 두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중공업우선정책은 그들 정책기조의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前·後方連關效果와 높은 기술진보율 등 경제성장과 공업화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어떤 형태의 공업화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릇되게 추진된 공업화는 향후 전체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重化學工業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며 개발후기산업(late industry)으로서 그만큼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¹²⁾

12) Dobb과 Robinson등은 시장경제측면에서 보면 逆理的이기는 하지만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진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계획방식으로 불로소득계급을 일소하여 얻어진 소득과 생활수준을 일시적으로 낮춤으로써 조달가능한 재원을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소비재 산업을 장래에 더욱 비약적으로 증대시킬수도 있다고 보고있다(邊衡尹외, 한국경제론, 裕豐出版社 p.48.)

북한은 經濟小國, 經濟貧國으로서 중공업발전기반이 없고, 또 중공업을 위한 여건(경공업 생산적 기반, 수출시장정보, 기술도입과 축적)이 갖추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공업우선정책을 시행하였다.

1959년까지 비록 기술자부족의 애로가 있긴 하였으나 日帝에 의해 상속된 중화학공업자산과 풍부한 전력, 지하자원, 중공업우선정책에 의해 공업생산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성장은 곧 각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사회간접자본과 그리고 중공업과 순환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공업이 충분히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편향된, 구조적으로 왜곡된 발전이었다. 그 결과 북한의 1960년도의 공업화율은 57.1%, 중공업화 비율은 55%로 표 <IV-1>에서 보듯 서방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하였다.(한국은 그해 각각 8.3% 29.6%였다)

표 <IV-1>

세계의 工業 比率

단위: %

	중화학 공업화율		공업화율(GNP대비)	
	1960	1970	1960	1970
美 國	51.2	57.8	28.4	26.2
獨 逸	58.6	59.4	41.2	40.7
日 本	58.6	59.9	34.2	36.0

자료: UN, The Growth of World Industry Statistisches Jahrbueh: OECD National Accounts,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60년대 이후에는 군수생산을 중공업 정책과 병진시킴으로써 제2부문(소비재 생산부문)은 더욱 왜곡되었다.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에서 중화학공업의 선행적 확대는 제2부문에 보다 큰 자본재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일반의 발전을 조건짓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키며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면 증공업, 일면 국방의 병진전략은 소비재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2부문에 유입되어야 할 자본재를 군수생산의 비생산적 용도에 투입함으로써 제1부문에 균형있는 확대재생산의 고리를 부숴버리고 만 것이다¹³⁾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저축공급을 확대시켜야 되나 자력갱생 정책에 의해 그 길마저 차단되고 만 것이다.

북한은 70년대이후 서방으로부터 차관에 의해 해외저축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외채지불연기사태와 무역수지적자의 결과, 다른 접근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外延的 成長戰略의 오류

폐쇄적 경제정책은 그 자체가 새자본, 기술도입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전략은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의 길밖에 없게 된다. 이 전략은 정치적 합목적성을 내세워 黨性和 革命性を 강조하며, 선동을 통한 국민동원 등의 생산요소의 量的 動員을 통해 생산의 증대를 꾀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내포적 성장(intensive growth)은 생산요소의 일반적 생산성의 상승에 의해 실현되는 경제의 양적 증대로서 주로 기술진보를 통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內生的으로도 가능하나 주로 외국경제와의 접촉, 이윤제도 도입, 의사결정의 분권화, 체제의 효율상승에 의하게 된다.

外延的·內包的 성장전략은 각 국민경제가 갖는 여건과 개발정책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나, 외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개발방식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여기서 소외된 국민생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가능한

13)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9, p.606.

것이다.

1960년대초까지 사회주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이 정책이 중요시 되었는데 주로 노동력의 공급증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첫째, 生産力 勞動人口比率, 특히 여성노동인구비율의 향상과 노동의무제, 직업선택의 자유박탈, 집단농장, 거주지 이동자유 박탈 등의 노동의 조직화를 통하는 방법과 둘째, 공덕심, 애당심 등의 이데올로기와 물질적 유인에 의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자본의 공급증대는 소비되고 남은 것을 저축하기 보다는 사회적 총생산물 중 투자수요, 공공지출수요를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일반국민소비를 분배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개간을 통하거나 제조업에 과도하게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절대적 공급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생산요소 특히 노동, 토지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자본은 비록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기타 요소와의 결합이 최적에서 벗어날수록 한계생산력은 체감하는 애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에서는 품질보다는 수량이 노동의 성과와 기업의 성취기준으로 항상 이용되는 만큼 품질과 내용은 희생되게 된다.

북한 역시 스타하노프主義(Stakhanovism)에 입각하여 기술진보 등으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보다는 노동투입 증대를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증대를 추구하였다. 그 동안 천리마운동, 붉은기 쟁취운동,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 이데올로기 및 대중동원수단에 의한 외연적 성장전략으로 초기에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 주었으나,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오히려 능률증대, 기술진보 등의 수단개발에 역기능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넓은 기계에 보다 많은 노동력

투입으로는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는 없으며, 경제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계획경제가 갖는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무시하고 도발적, 전시적 과시성 사업을 남발함으로써 자원배분은 더욱 왜곡되고 그 만큼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1978년부터 실시된 2차, 그이후의 3차 7개년계획에서 북한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생산시설의 교체 개선, 산업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내적 개혁이 전제될 때 정상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社會間接資本의 不備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전력, 철도, 항만, 통신 시설물과 그 이용으로 주로,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자본설비를 이른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경제의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을 부족케 하여 생산요소의 가용성을 제약하고 공급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성장에 따라 전력, 철도, 항만, 통신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후진국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에 어느정도 투자해야 하는가가 개발 전략상 주요하며, 그 성공여부는 直接生産活動(directly productive activity)을 얼마나 유도하고 촉진하느냐에 달려있다. 허쉬만(Hirshman)은 SOC와 DPA가 장기적으로는 균형확장경로의 길을 밟게되나,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과부족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 SOC부족→DPA, SOC균형→SOC부족으로 이어지는 社會間接資本不足型 不均衡成長(unbalanced development via shortage of

SOC)를 선택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¹⁴⁾

사회간접자본 부족형성장이 경제개발초기에 보다 효과적 일 수 있으나 그 부족이 어느 정도인가가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을 비생산적 투자로 간주,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산업간의 유기적 연결이 큰 애로에 부딪히고 있다.

1) 電力

1960년대까지 日帝때 건설된 水力依存的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강수량변화에 의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送配電의 편리를 위해 1970년대부터 화력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87년 발전 설비용량은 水力과 火力이 367.7만 KVA, 270만 KVA로 근접하였고 연간 발전구성비에서는 49.3對 50.7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시간대에 따라 공장별, 기계별로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중소도시 농촌가정에 40W 전등을 1개만 켜게 하거나 동네별, 시간별로 정전하는 순번정전제 실시 등 전력수급사정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주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전력난은 동력의 90%를 電力에 의존하는 철도의 소통부진을 가져오며, 이는 또 主電力源인 석탄의 수송부진, 채탄장비의 부진, 석탄공급부진, 제조업 가동을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2) 交通시스템

국민경제의 동맥으로서 수송시스템은 工業化, 통상증대, 관광개발, 농촌근대화 등의 국민경제발전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14) A. O. Hirs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1958, pp.83~97.

북한의 교통시스템과 수송체계는 일본이 남겨놓은 철도,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공장시설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로를 확장하거나 철도를 廣軌化, 電鐵化, 複線化를 하는 정도이다. 주로 산악지대인 관계로 도로와 철도망은 주로 서해안과 동해 해안선을 따라 발달되어 있으며, 수송수단의 주축은 표 <IV-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철도이다. 철도는 대량, 장거리 수송과 안전도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도로에 비해 목적지까지(from door to door) 신속히 수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며 그 만큼 가격, 適期의 필요제품과 생산요소의 전달에서 뒤지게 된다. 더구나 북한의 도로는 95%가 비포장으로써 그 만큼 수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한정된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표 <IV-2> 수송수단별 부담율 단위: %(1987 기준)

	북한		남한	
	화물	여객	화물	여객
철도	90	62	13.1	9.3
도로	7	37	38.6	90.5
해운	3	1	48.2	0.1
항공			0.1	0.1

자료: 남한;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1.

북한; 통일원

3) 通信

통신은 국민경제의 神經계통으로서 생산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유효히 전달해 줌으로써 생산활동을 촉진시킨다.

북한의 통신부문은 그 기능이 겨우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평양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회선은 약 30만, 100명당 1.5대(한국은 33.5대: 1989기준)로써 수송부문과 함께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

對外通信網은 1986년 3월 평양근교에 위성통신지국을 건설하여 직접통신이 가능하며, 텔렉스시설은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980년 이후 서방으로부터 도입, 지방의 관공서, 중요 기업소, 무역기관 등에 설치하고 日本 싱가포르 등과는 고정망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4) 과도한 軍事費支出

북한에 있어 군사비지출은 국방에서의 자위, 나아가 대남통일을 위한 군수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중공업우선 정책을 실시한 상당부분의 이유도 주체이념에 의한 국방의 자위에 있었던 것이다.

군수산업이 있게 되면 그만큼 군수물자를 주문하여 이익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군비증대는 곧 군사비 증대를 가져오는 產軍複合體(industry and military complex) 형태를 갖고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제4기 5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4대 군사노선」,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국방·경제병진책」 이후 군사력증강을 모든 경제목표중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왔다. 1960년 이후 줄곧 국민총생산의 20% 이상(1990년 21.5%, 한국 4.6%)을 군사비로 지출해오고 있다.

이러한 군사비 과다지출은 주민생활과 후생 복지향상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제약하고 유한한 국민자원의 대안적인 지출에서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된다. 총공공지출중 국방비(depencc expenditure)의 지출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상대

적으로 對民支出(civilian expenditure)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재정상태를 악화시킨다. 군사비 지출은 세입의 대부분을 사회주의 경리수입금¹⁵⁾이 차지하는 만큼 북한주민들의 조세부담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는 절약, 증산을 강조하는 선동과 정치우선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업지체의 요인을 몇가지 점에서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요인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동질적인 문제이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한 요인의 해결이 다른 요인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으며, 그런만큼 사회전체의 체계적 문제의 일환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인 정책의 수정, 전환보다는 근본적인 개방, 개혁이 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중심고리라 짐작되어진다.

15) 북한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선전하고 있으나 세입원천인 사회주의 경리수입금내역을 보면 거래수입금(55%), 국가기업이익금(30%), 협동단체이익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소비세, 법인소득세, 협동단체 소득세에 각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V. 開放과 工業構造의 方向轉換

1. 開放展望

북한은 지금까지 자력갱생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대내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대내외적 여건으로 대외적 개방과 체제개변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은 주로 외부적, 경제적 요인으로서 첫째, 소련모델의 부적합성, 계획경제가 갖는 비능률, 경직성에 따른 정체적 악순환을 경험하였으며 둘째, 작금의 동구, 소련등의 공산주의의 붕괴, 개혁정책이 기본흐름이 되어 동서화합무드로 경험이 증진되고 있고 셋째,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경제협력권 형성과 한국의 북방정책, 남북경제력 격차확대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1人 獨裁體制로 보수적 관료층이 집권하고 있으며, 정책전환은 곧 동유럽과 같은 공산당 독재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혁과 개방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즉 정치적, 내부적 요인에 의해 현상고수 이외의 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개방의 정도를 동구와 비교해 보면 2단계 초기에 머물고 있다(<V-1>참조). 그간 성장이 장기간 둔화됨에 따라 70年代에 차관도입형 개방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수출증대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외채만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 V-1> 개혁과 개방의 진행 단계(동구의 경우)

단 계	시 기	진 행 과 정	
제1 단 계	60년대 후반 ↓ 70년대 초반	경제 침체 장기화 ↓ 체제 내적동질변화	⇔ 차관 도입형 개방 ↓ 무역 적자와 외채
제2 단 계	70년대 후반 ↓ 80년대 초반	투자 유치형 개방 ↓ 성과 부진의 한계	⇔ 체제 내적 이질 변화 ↓ 정치 체제의 한계
제3 단 계	80년대 후반 ↓ 90년대	정치 개혁 ↓ 비공산 정권 등장	⇔ 경제 개혁 ↓ 시장 사회주의 추구

자료: 신승철, "개혁, 개방 그리고 합영법",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 p.225.

이후 70년대의 동구, 79년 중국 투자유치정책을 본받아 1984년 合營法을 후행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정경분리방식의 고집, 미수교국과의 협력한계, 투자환경미비, 기업경영 등 여건과 정책의 상이로 큰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개방은 시장요소를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으며, 개혁과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되찾는 것으로 당과 정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며 이데올로기, 정치우선적 경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방정책과 경제구조개선,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서어비스 육성정책, 경제관리체제의 합리적 개혁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내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은 비릇 공식화하였지만, 최근의 소련의 政變에도 변함없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등 표리가 부동한 이중적 정책노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방 개혁으로 정치적 대내적 개혁없이 자본과 기술만 도입하는 대외적 선별적 개혁 개방수준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개방,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비록 움직임의 속도는 늦을지라도 북한은 중국에는 사회주의 특징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장경제 조직의 운용을 도입하는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예견된다.

소련과 동유럽의 민주화, 대변혁 압력을 차단하고 무너지는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新社會主義聯盟을 추진한다거나, 남북한 1국 2정부통일정책에 입각한 남북한 UN동시가입권고를 받아들이는 등의 정치적 협력이 중국에 편향되는 흐름을 볼 때 소련의 변혁보다는 중국형 계획상품경제(A Planned Commodity Economy)로 변화할 것으로 믿어진다.

북한이 중국의 1979 中外合資經營企業法,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대외개방구 설치를 본받아 1984년 滬甯法을 제정하고 豆滿江流域特區, 선봉(웅기) 지역을 개발하려는 것 등은 단편적인 하나의 예로 이해된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고도의 하향적(top down), 군림적, 명령적 경제체제하에서 개혁 개방과 같은 특수적인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최고정치지도자의 의지와 성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금년 7월 24일 金日成이 일본의원과의 면담에서 “동유럽의 민주화를 인정한다”는 발언은 북한이 대외정책에서 취하는 자금의 변화성격과 앞으로의 방향을 암시해준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對日수교에 적극적 움직임과 對美유화제스처, 유엔가입선언 등 크게 달라진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우선, 이념중심 외교에서 경제적 실리외교로 정책 변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경협추진, 합작투자유치등 개방폭이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대외개방이 대내적 개혁으로까지 연결될 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으며,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작금의 상황이 급격히 달라질 개연성도 높은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2. 工業 構造의 方向轉換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경제정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개혁의 길로 나아가면, 당연히 그 경제규모와 구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NP가 1064달러(1990년)인 북한은 경공업, 서서비스생산의 증대를 통한 주민생활의 향상이 요구되는 사회주의 중진국¹⁶⁾ 초기단계에 있다. 개방과 개혁에 따라 소비패턴의 변화는 내핍위주로 되어 있는 국내수요구조를 개선할 것이고, 국외수요 또한 수출증대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수요 중에서도 소비수요는 지금까지 배급에 의해 철저히 억제되어 왔으나 가공식품수요와 TV, 냉장고, 교통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왜곡된 산업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기계, 운송설비 등의 내구 생산재와 사회간접자본설비 수요가 증가되어 이 부문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며, 개방 개혁정책은 수출증대를 가져와 총수요중 해외수요의 비중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해외수요를 이용한 규모의 경제와 대외경협을 통한 기술이전 등 개혁과 개방은 공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합작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

16) 사회주의 중진국이란 개념은, ① 일정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여 기본적 공산품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② 생산 확대에 있어서 노동력보다는 기술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③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국제분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대외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며, ④ 1인당 GNP의 증가로 인하여 욕구 수준이 높아지며, ⑤ 경공업의 육성과 소비재 생산의 증대를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는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小牧輝夫, “北朝鮮の經濟建設狀況”, 국토통일원 주최,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1989. 8.)

는 사회간접자본과 자원개발, 소비재산업, 그리고 수입수요가 큰 자동차 기계설비, 수송설비, 생활일용품 등에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개방·개혁으로 물질적 유인등의 동기부여만 주어지면 손재주와 생산기술을 빨리 익히는 자질과 근면성, 높은 교육열, 우수한 관리능력등 韓民族의 德性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섬유 신발 등의 노동집약산업을 특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식, 기술집약, 자본집약산업으로의 공업구조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것은 체제내적 이질변화 뿐 아니라 경제개혁 3단계의 체제개변적 개혁과 개방이 전제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의 對應方案

상이한 체제가 접근하는데 있어 경제교류는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으로 장래 정치적 통일, 통합을 실현하는 디딤돌로 이용될 수가 있다. 북전의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경제교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民族共同體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또 북한내의 체제개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남북한 경제교류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수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Know-How와 경험, 기술, 해외 시장의 기반과 설비제작, 운영능력과 북한의 立地, 人力이 서로 합치될 때 서너지효과(synergy effect)로 그 힘은 倍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방 개혁에 따른 남북한 경제교류는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직접교역, 국제기구가입을 유도하고 항로, 철도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제편의의 상호제공, 자원의 공동개발, 기술 및 자본협력 등의 제 방법이 고려될 수가 있다. 이는 단계별로 접근할 수도 있으나 위의 모든 전략이 동시에 전면적으로 운용함이 좋을 것이다.

최근의 언론매체를 통해 볼 때 위의 각 접근방법이 다 동원되어 전면적인 접근이 모색되고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교역으로 북한 금과 한약재 반입금지, 남쪽의 섬유, 생필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으로 결제토록 남북중앙은행간 청산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원의 공동개발로 금강산 공동개발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그외 용기, 청진 경제무역지구에 북한이 공장부지, 땅을 현금출자하고, 남한이 자본재를 출자 합작공장을 설립한다거나, 임진강 골재를 도입하고 나아가 청진에 합작공장을 설립방안, 원산만 철도공장 건설, 두만강 하구 준설공사에 국내건설업체의 참여계획, 대우자동차부품 공장 건립계획, 동해어항 급랭시설, 연육가공처리공장 건립계획, 해운업계 직항로 개설, 특구개발자금을 조달토록 하기위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주선하고 용자를 권유하는 등 경제편의의 상호제공, 기술 및 자본협력등의 제접근법이 다 고려되고 있으며, 그 사안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기본적 과제는 교류의 증대에 따른 북한의 경제력 증대에 대한 우려보다는 고립화 지양에 따른 긴장완화, 남북한 격차 해소,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 접근에 있어 동독의 흡수통합과 같은 자극적, 극적 방법보다는 그들의 체제적 자존심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 동구의 변혁을 인정은 하되 수용은 않는다거나, 상호간섭 않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강요 않는다는 중국·대만의 접근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자신들 경제체제 한계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북으로부터의 搬入可能品目과 搬出可能品目を 남북의 공업구조, 무역구조

(SITC 중분류)에서 보면 반입가능부분이 광산물, 수산물, 비철금속, 전기기계장치 등이며, 반출가능품목이 고무, 섬유제품, 통신녹음, 재생기기, 도로주행차량이 대표적이다.¹⁷⁾

북측에서 볼때 이러한 교역구조는 원료수출, 공산품수입이라는 수직적 분업체계, 종속적 구조를 낳게 되며, 자원개발, 기술, 자본협력 역시 그 수준과 규모에서 볼때 우리의 일방적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역으로 개방과 개혁을 늦추거나 축소하게 하는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합작투자때에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반입하거나,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 가공조립케 하여 기술을 점차 이전하고 생산품을 제3국에 수출하게 하는 수평적 분업체제를 적극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17) 보다 상세한 것은 한국무역협회, “南北韓 경제교류 추진을 위한 中長期計劃(案)” 1989참조.

VI. 結 論

지금까지 本 研究에서는 북한의 工業構造를 經濟發展論的 觀點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그것은 주로 현재의 북한의 工業構造를 가져온 정책기조와 기본노선, 단계적 발전과정과 개방과 개혁에 따른 구조의 전환가능성을 타진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소련의 모형을 모방,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경제운용체계에서 북한 특유의 교리적 경향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해결의 중심고리로서 중공업 우선적 성장을 꾀하였다.

둘째, 북한 경제는 공업, 그중에서도 중공업이 선도하였으며 그 연평균 성장속도는 37.0%(1946-60), 12.5%(1961-70), 10.3%(1971-77), 12.2%(1978-84), 10%(1987-93)로 사회주의 국가 중에는 양호한 편이나 시장경제 국가에 비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계획경제운용양식의 한계, 개발전략상의 오류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투자비중과 계획기간별 목표에서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은 배급제와 절약에 의한 소비억제로 생산활동이 지연되고 제약을 받아왔다. 최근 생필품 증산과 다양화, 질적 제고를 모색하고 있으나 생산설비의 영세성, 공정의 전근대성, 계획당국의 의지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애로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중공업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보면 고급중화학공업과 그 이상

의·공업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중화학 공업 중에서도 '공작기계, 농기계 등 몇몇 기계부문에서만 우위를 보일 뿐 수송용기계, 전자, 전기, 금속, 석유, 화학 등에서는 생산능력, 기술수준 등에서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또한 무역구조에서도 성장정책과는 반대로 서방 및 사회주의 선진국에 광물자원, 농산물, 원료가공제품을 수출하고 기계, 수송기기, 고급기술의 경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파행적 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개방 개혁과 관련하여 경제운동방식의 한계, 남북 경제력 격차 등을 인식하여 대외교역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재체제의 붕괴 등 내부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 구조적 개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개방개혁은 돌이킬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북한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사회주의적 장점을 보유하면서 시장경제조직의 운용을 도입하는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는 중국을 본뜬 합영법, 경제특구 등에서 보듯 중국의 모형을 따른 계획상품경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점진적, 대외적, 경제적 개혁과 개방으로 소비패턴과 해외수요가 변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규모, 공업구조도 크게 바뀔것으로 보인다. 1인당 GNP가 우리의 1977, 1978년 수준으로 그후의 우리 소비패턴으로 미루어 체제개편적 개혁이 전제될 때 가공식품, TV,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교통 등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며, 왜곡된 산업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기계, 운송설비 등의 내구생산재와 사회간접자본설비 투자수요가 증가되어 이 부문에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해외경험, 해외수요로 공업구조를 고도화 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일곱째, 목전의 단기적 이익보다 경제교류가 신뢰구축의 바탕 위에 통합을 가져

을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인식에서 남북경제교류 협력은 의미가 크다. 한국의 지금 까지의 KNOW-HOW, 기술, 해외시장 기반, 설비제작, 운영능력과 북한의 입지, 인력 등이 합쳐될 때 그 힘은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로 倍加될 수 있다. 공업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적 면이 있다고 공산품 수출과 원료수입의 종속적 무역관계, 수직적 분업관계로 결정짓기보다 입지, 인력을 이용, 직접투자로 해외수출하는 방안과 경영 KNOW-HOW와 기술이전 등으로 점차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과 같은 중앙 집권적 명령체제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성향과 의지가 모든 정책결정에 결정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최근 金日成의 동구변화 현실인정등의 발언에서 볼때 남북관계의 급격한 상황변화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여러가지 상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編, 北韓經濟構造(亞細亞問題研究所 共產圈研究叢書 第15卷), 서울, 同所, 1978.

高瀬淨 著 이남현 譯, 북한경제입문, 서울, 청년사, 1988. 2.

國民經濟制度研究院, 社會主義國家에서의 經濟改革, 서울, 同院, 1991.

國土統一院,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실천방안, 서울, 1984.

國土統一院 編, 北韓의 政治 經濟, 서울, 同院, 1988.

國土統一院, 북한경제 통계집, 서울, 同院, 1972, 1986.

國土統一院,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서울, 同院, 1988.

國土統一院, 북한경제 개관, 서울, 同院, 1988.

國土統一院 編, 北韓 經濟와 貿易 展望: 87年の 回顧와 '88年の 展望, 서울, 同院, 1988.

國土統一院, 북한경제 종합평가, 서울, 同院, 1989.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I - IV), 서울, 同院, 1988.

金榮奉外,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서울, 世經社, 1989.

_____, 經濟體制論, 서울, 博英社, 1987.

金 源, 北韓의 國土開發研究,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991.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朴 昇, 經濟發展論, 서울, 博英社, 1984.

北韓研究所編, 北韓經濟論(북한연구총서 제2집), 1979.

北韓研究所, 북한총람, 서울, 1989.

延河清, 북한의 경제전략과 운용,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6.

- ____外, 北韓의 經濟計劃,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0.
- ____, 東北亞 경제환경변화와 南·北韓經濟協力,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 李相禹外,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 이태욱 編, 北韓의 經濟(북한의 인식 총서 제3집),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編, 1956-196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1冊.
- 中央日報附設 東西問題研究所 編, 北韓經濟(研究叢書 第1輯), 1973.
- 朝鮮中央年鑑, 각 년도
- 鄭暢泳, 經濟發展論, 法文化, 1986.
- 최 성 編,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학민글밭 제43집), 서울, 학민사, 1990.
- 統一問題研究所, 북한경제 자료집, 서울, 도서출판 민족통일, 1989.
-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 計劃(案) 서울, 1989.
- 海外經濟研究所 編, 北韓의 工業化 技術革命에 관한 研究, 서울, 同所, 1978.
- 高瀨淨, 朝鮮社會主義經濟の研究, 東京, 文化書房博文社, 1973.
- 國際關係共同研究所 編, 北朝鮮の工業, 東京, 同所, 1979, 3冊.
-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1988.
- 日本朝鮮研究所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民經濟開發統計集, 東京, 1965.
- Chung-Joseph Sang 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Kim, Youn-Soo ed, The Economy of Kore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1945-
1977), Kiel, 1979.
- John, K. Galbraith and Stanislav Menshikov, Capitalism, Communism and Coexistence

- John, K. Galbraith and Stanislav Menshikov, Capitalism, Communism and Coexistence,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1988(裴然秀譯,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共存,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0)
- Albert. O. Hirs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58.

II.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 國際問題研究所 編, “북한 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체” 國際問題 210('87. 5.): pp. 16~22.
- _____, “북한의 경제실상과 합영법” 國際問題 174('84. 1): pp.73~84.
- 金南權, “공업배치면에서 본 북한경제” 北韓 124('82. 4): pp. 156~167.
- _____, “공업생산의 침체와 경제계획실패(特輯)” 北韓 145('84. 1): pp.73~81.
- _____, “북한의 에너지산업 개발실태” 北韓 135('83. 3): pp.72~189.
- 金東源,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격과 경제개혁 전망” 亞細亞研究(高麗大) 81('89. 1): pp.109-146.
- 金永圭,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과 전망” 총력안보 176('87. 6): pp.22-28.
- _____, “자원과 에너지산업 석탄의존형 에너지구조” 통일한국 57('88. 9): pp.46-48.
- _____, “초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 오늘의 북한경공업정책” 통일 5('81. 12): pp.94-97.
- _____, “폐쇄와 통제로 멎은 생산공장, 오늘의 북한중화학공업” 통일 4('81. 11): pp.90-93.

북한研究所 編, “경공업 발전에서 전변을 일으키자: 노동신문 사설” 共産圈資料 157('82. 7): pp.25-28.

勝共生活社 編, “北傀輕工業 生産増大의 腐心” 勝共生活 123('80. 11): pp.72-74.

申泰煥, “지나친 중공업우선정책, 북한의 경제실체” 통일 2('81. 9): .45-49.

安文錫,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과정 분석: 시장의 생성을 중심으로” 北韓法律行政 論叢(高麗大) 6('84. 12)

吳基完, “북한의 금융제도와 주민생활” 自由公論 186('82. 9): pp.46-53.

吳勇錫, “脫마르크스主義의 共産圈 經濟學”, 經濟學研究(한국경제학회) 36-1('90. 5) pp.83-101.

玉城素, “북한 경제계획의 실적과 문제점”; 國土統一院,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자료집〉, 1988. 8.

禹吉命, “북한의 상업 유통 그실상” 自由公論 186('82. 9): pp.54-61.

이철주,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과 물가” 自由公論('82. 9): pp.70-78.

李泰旭, “북한경제구조와 문제점” 東亞研究(西江大) 14('88. 12): pp.73-95.

_____, “남북한 경제의 상극성과 상보성의 연구” 東亞研究 16, 1988.

李 浩, “北韓의 經濟構造와 現況”, 民主統一論(1991), 統一研修院 pp.73~116.

임양택, 남북한 산업 및 기초협력의 추진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9. 4.

_____, “北韓經濟의 開放과 改革展望”, 統一問題研究 3-1, 統一院, pp.75~105.

自由評論社 編, “북한의 광공업정책과 그 특징 비판 북한의 광공업” 防共 87('80. 11): pp.15-24.

_____, “북한의 광물자원개발 현황 분석, 북한의 광공업” 防共 87('80. 11): pp.25-35.

- _____,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의 저의, 북한의 광공업” 防共 87('80. 11): pp.25-35.
- 全應烈, “북한무역구조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역가능성 비판 및 대책” 研究論叢 6('81. 12): pp.69-163.
- _____, “북한의 전채공업” 北韓 136('83. 4): pp.160-166.
- _____, “북한의 기계공업” 北韓 138('83. 6): pp.187-200.
- _____, “북한의 상업(상)” 北韓 143('83. 11): pp.194-204.
- _____, “북한의 상업(하)” 北韓 144('83. 12): pp.183-192.
- _____, “북한의 수송기계공업” 北韓 137('83. 5); pp.134-147.
- _____, “북한의 식료품공업” 北韓 141('83. 9): pp.211-227.
- _____, “북한의 전자: 정밀기계공업” 北韓 139('83. 7): pp.170-183.
- 崔文鉉, “북한의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특성” 企業經營 370('89. 2): pp.34-36.
- 小牧輝夫, “北朝鮮經濟の實像: 工業部門を中心に” アシアトレント 26('84. 춘): pp. 70-80.
- _____, “北朝鮮の經濟建設狀況”, 國土統一院, 〈남북한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국제심포 지움자료집〉 1989. 8.
- 張善玉, “重化學工業再編策の背景と狙い” 朝鮮資料 236('81. 1): pp.48-59.
- 後藤官土男, “北朝鮮工業發展過程の特徵” 海外事情 36, 3('88. 3): pp.88-97.
- John C Merrill, “North Korea's Economy Today: The Limits of Juche, 한국공산권연구, 〈제4차 한미 북한회의 자료집〉 1989. 8.
- Wladimir Andreff, Planned Industry and Development in Socialist-oriented Developing Countries: Hinderance and Reforms,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9-2, 서울대 1987, pp.169-188.

북한에서의 宗教復活이 住民意識構造와 體制變化에 미칠 영향

황 인 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I. 논의에 앞서

(1)

종교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의 靈力을 믿는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신의 존재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질문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물론 神學을 과학의 차원에서 다루기에 어려움이 또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의 存否問題로 無神論的 입장에 섰다면 그건 이미 종교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종교의 입장에 가장 대척적인 입장이 無神論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랜 학문의 발달사 속에서 無神論의 입장에 가장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 있다면 단연 共產主義理論에서 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 때 共產主義理論속에서도, 18세기 불란서의 유물론적 전통과 포이에르바하(L. Feuerbach)의 생각이 어우러진 '唯物論的 思考'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해 정립된 이唯物論的 傳統은 그들에 앞선, 그들이 논박한 듀링(Duhring)이나 포이에르바하와 같은 융통성있는 唯物論¹⁾이 아니고, 철저히 종교를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본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분명히 해둘 것은, 唯物論的 思考가 共產主義의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공산주의사상 전체를 唯物論으로 환원시켜, 결국 共產主義가 宗教에 적대적이라고 간단히 일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거스틴(st. Augustine)의

1) 듀링의 경우 일관된 唯物論的 思考를 보이지 않았고*, 포이에르바하는 오히려 한층 고양된 종교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마르크스·엔겔스는 비판했다.

* F. Engels, *Anti-Dühring*(Progress Co. Moscow, 1969)

** K. Marx, "Theses on Feuerbach"(R.C.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W.W. Norton & Company, N.Y., London, 1978)

설명처럼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을 原始共產體로 생각하면, 역사의 진전과정속에서 基督教의 종말론적 세계관의 이면에 보이는 새로운 에덴동산이나 共產主義理論에서 보이는 새로운 共產體가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止揚되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 共產主義理論과 宗教(특히 基督教)가 펼쳐 보이는 청사진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神앞에서의 平等이나 階級없는 사회로서의 平等이나, 양자가 추구하는 主要價値體系도 일치한다.

이와같이 거시적인 면에서 共產主義論理와 宗教에서의 論理가 일치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 오히려 宗教에 적대적인 것은 共產主義가 아니라 그 내용중의 일부, 즉 唯物論的 思考로 귀착된다.

혹자는 방법론이 唯物論인 이상, 共產主義 자체의 실현에 있어서 宗教와 대립하게 되므로 결국은 共產主義와 宗教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共產主義體制의 현실을 볼 때, 상이한 방식으로 마르크스·엔겔스, 레닌을 해석하여 자기 고유의 民族성과 傳統的 歷史성을 일정 정도 가미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엔겔스, 레닌을 각기 달리 해석하였다면 그 중요한 것으로, 시장경제로의 부분적 수정이나 唯物論 자체에 대한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소련이 共產主義 盟主國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은 후자에 해당하고, 많은 유로코뮤니즘 국가들이 두 측면을 대체로 경험하고 있다.

(2)

천편일률적인 이념과 체제의 고수로 多樣性·多元性を 인정하지 않는 것이 共產主義였지만, 그 절대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속에서 이미 각기 國家와 民族이 당면해왔던 어려운 처지와 경험이 공산권국가들을 다양한 질서와 체제로 再編시켰다. 이제 그 절대적 목표가 각기 공산권국가들에게 상대적 목표로 화했고, 따라서 하버드大 소련문제연구소 연구원 대니얼스(Robert V. Daniels)의 말처럼 共產主義는 '信仰運

動'처럼 보였다. 이는 共產主義者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共產主義論理 자체가 그들이 그동안 공박해온 宗教처럼 명분에 그친 채 과학적 한계를 드러냈음을 뜻한다. 이러한 限界認識은 앞에서 지적한 唯物論과 宗教의 대립·대척적인 位相을 달리 가져야 할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과학에서도 베버(M. Weber)의 다소 관념론적 입장(「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²⁾과 마르크스의 다분히 唯物論的 입장이 논란을 일으켜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대립보다는 補完·統一의 측면에서 양자를 해석하는 시각이 유력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唯物論的 획일화된 思考를 다양하게 견지키 위해서는 宗教와 같은 意識의 측면이 자유롭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글라스노스트(Glasnost) 등의 意識改革이 소련공산당체제의 필연적 산물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앞서서 宗教(카톨릭)와의 제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폴란드 공산당의 입장에서도 民族的·宗教的 범주를 마냥 내박치지는 못했다. 이와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共產國家들이 宗教와 唯物論의 共存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때, 純粹共產主義國家는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 1955년 主體思想이 출현하면서부터 마르크스·레닌을 떠나기 시작하였는데³⁾ 주목할 것은 그 主體思想이 곧 金日成思想이요 이즘(ism)이며, 信仰과 같은 것이어서, 金日成敎가 명실공히 북한의 既成宗教를 대신하고 있다는

2) 베버는 논의를 통하여, 특히 칼빈교도(Calvinists)들이 어느 宗派·宗教보다도 富의 축적에 이바지 하였음을 그들의 信仰倫理 - 주로 '예정론'과 '神에 대한 召命意識' - 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칼빈교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선택적 親和性'으로 설명하여, 唯物論이 빛는 기계적 因果論을 피하고자 하였다.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trans. by T. Parsons), (Allen & Unwin, 1948).

3)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이 영국의 군사전략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은 맑시즘을 포기했다'고 했지만('91.9.11. KBS 저녁뉴스), 이미 북한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들 특유의 主體思想을 발전시켜가면서 독립된 폐쇄적 이념체계의 길로 들어섰다.

점이다. 이는 여타의 既成宗教 대신에 새로운 新興宗教(金日成敎)가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의 敎理(敎示)에 따라 生産, 勞動, 餘暇, 패션(fashion) 등 삶의 방식이 주어진다. 既成宗教도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북한의 唯一新敎만큼은 못된다. 게다가 金賢姬의 말대로⁴⁾ 보이지 않는 神을 믿고 따르는 허망함보다, 살아서 계시하는 現人神이기에 더욱 생생하고 皮下注射的인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既成宗教보다 우월하다고 그들이 보는 것은 主體思想이 民族의 獨自의 삶의 원리에 토대한 歷史的 結晶이며, 허망한 미래를 지향하기 보다 바로 현실을 지향하고 있는 實踐的 敎示다발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인물의 創作意識에서 삶의 방식이 나온다는 反唯物論的 思考는 마르크스 이래의 共產主義理論과 체를 달리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아울러 폐쇄적인 理念과 體制로 말미암아 多元的인 세계 조류속에서 필경은 理念과 體制의 단혀진 벽은 열린다.

북한의 경우 특정한 理念이 특정한 體制를 만들어 냈다면, 이를 유추하여 다양한 다원적인 宗教를 포함한 意識이 북한의 고답적인 意識과 體制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북한의 既成宗教 實態와 主體思想과의 논술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意識과 體制의 특수한 모습을 살펴보고, 아울러 既成宗教의 復活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 거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既成宗教의 復活은 어디까지나 전제된 가설일 뿐이므로, 科學的 논술을 위하여 比較論的 方法을 가미하였다. 즉, 폴란드에서의 카톨릭이 共產主義體制를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또 비록 共產主義는 아니지만 日帝下의 神道에 맞선 한국의 宗教的 社會運動이 경직된 體制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를 고찰하였다.

4) 金賢姬 고백록,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울, 고려원, 1991, 24쪽, 58쪽.

II. 북한사회의 새로운 이해

1. 북한의 宗教

(1) 북한의 既成宗教

북한에서의 既成宗教 活動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공산권 연구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주목받지 못할 미미한 정도로 그쳐왔다. 한국에서의 북한종교연구는 70년대 중반까지 전무했다가, 70년대 중반 이후라야 그로부터 10여년 동안 불과 15편 가량 소개되었을 뿐이다.⁵⁾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政府·民間次元에서의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宗教界에서도 뒤늦은 自省과 함께 일면 宣敎의 目的으로, 일면 民族統一의 大單元下에 북한의 宗教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북한의 宗教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인 交流活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간 政府 이외의 차원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것이 용이치 않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소소하나마 전해지는 문헌과 증언을 통해 북한에는 이미 既成宗教가 소멸해버려 交流對象이나 研究對象이 없어졌다고 믿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후자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1985년 9월에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청소년들이 宗教·敎會·절 등의 질문을 받고는 宗教의 의미를 몰라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어쨌든 정부차원에서만 이루어져오던 쌍방에 대한 연구와 交流活動이 한국측에서 먼저 民間側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었고,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정세에 발맞춰 국제적 고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계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면 政治宣傳的 道具로서의 기능을 위해 70년대 이후 宗教團體의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5)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한국공산권연구백서』, 1989, 66쪽

6) 통일연구원편, 『統一問答』 통일총서7, 1991, 290쪽. 쪽.

이렇게 하여 현재 알려진 북한의 宗教團體는 朝鮮佛教徒聯盟, 朝鮮基督教徒聯盟, 朝鮮天主教人協會, 朝鮮天道教中央指導委員會 등이다. 그 외에 朝鮮佛教聯盟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祖國統一民主主義前線의 예하단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뿐, 지방에 산하조직을 갖지도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宗教別 組織이나 規模, 실제 活動相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⁷⁾

첫째, 佛敎는 1945년 11월에 결성된 朝鮮佛教徒聯盟(위원장 박태호, 74세)에서 통괄하고 연맹원수는 약 1만명이며, '부처님 오신날'같은 때에 10만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인다고 한다. 승려는 3백명 정도이고, 사찰 수는 60여 개소가 있다고 한다. 특히 사찰의 경우는 순수한 宗教的 意味를 떠나, 국내·외 관광지로 쓰고 있다고 한다.⁸⁾

둘째, 基督教은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약 1만명 가량의 信徒와 5명의 牧師가 朝鮮基督教徒聯盟(위원장 고기준)의 통괄하에 있다. 天主教와 더불어 국제무대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고로 비교적 타종교에 비해 對外活動이 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76년도에 '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의 회원국이 되었고, 80년대부터 해외동포 종교인들을 적극 招請하기 시작하였는데, 85년 11월에는 世界教會協議會(WCC) 국제부장 타이난·코사 목사 일행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등 宗教宣傳에 주력하였다.⁹⁾ 그런가 하면 朝鮮基督教徒聯盟 대표단이 世界教會協議會가 주관하는 모임에도 열성껏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걸맞게 성경·찬송 등도 83년부터 발간하여¹⁰⁾ 여타의 宗教에서 보이지 않는 異彩를 띠기도 하였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까지 일컫던 평양에 이제 단 하나의 教會(봉수교회,

7) 일례로, 1974년 8월에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교회와 신자 수, 성직자의 현황등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좌절된 바 있다. 통일연수원 편, 앞의 책, 291쪽.

8) 정태력, 신법타, 『북한의 절과 불교』, 민족사, 1990, 283쪽.

9) 통일연수원 편, 앞의 책, 291쪽

10)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민족문화사, 1988, 125~129쪽.

1988년 건축)가 있을 뿐이며, 금년 10월에 또 하나의 教會(칠곡교회)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셋째, 현재 약 3백명의 信徒가 있다고 알려진 朝鮮天主教協會는 純粹信仰의 次元보다는 다분히 국제적 조류에 응하고자 하는 뜻에서 88년 6월 30일 결성되었다. 天主教의 세계적 영향력은 資本主義陣營만이 아니라 共產主義陣營에서도 팔목할 정도며, 특히 공산권 폴란드 출신의 教皇 被選은 宗教에 대한 맹목적 적대감에서 조금은 친밀감을 불어 넣어주었던 모양이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하여 “향후 天主教人들의 信仰의 自由와 교인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세계의 天主教人 및 團體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¹¹⁾시킬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는 88년 10월에 건축된 장충성당이 하나 있으며, 로마교황청에 사람을 보내 神父養成을 하기도 한다.

넷째, 1946년에 ‘천도교 북조선총무원’으로 발족한 天道教 단체는 그 후 74년도에 天道教會中央指導委員會(위원장 최덕신, 89년 사망)로 변신하였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여타의 宗教에 비해 民族宗教라는 점에서 天道教에 가해진 회유와 압력이 컸으며, ‘천도교 청우당’은 그러한 배경을 지닌 政黨의 색채를 띠는 것이다.

그외에 儒教聯盟은 1947년에 발족하여 약 10년간 존속하다가,¹²⁾ 북한에 主體思想이 들어서면서 활동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개괄한 북한의 宗教實態는 극히 단편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뢰성에도 문제가 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宗教에 대한 統計的 서술이 아니라, 북한이 무조건적 탄압대상으로 여기던 宗教觀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미 基督教 團體들 간에 1984년 이래로 南北이 회동하는 선례가 늘면서 初期의 政治宣傳中心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1984년 10월 29일 ~ 11월 2일 사이에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발표한

11) 윗 책, 292쪽.

12) 《내외통신》 제322호, 1983. 3. 11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선언서—이른바 도오잔소(東山莊) 선언으로 불리우는—의 발표와 함께 한반도는 선교 1차지역이 되었다. 이후 同委員會의 협조아래 3차에 걸친 스위스 글리온회의를 개최하면서 南北이 함께 意思를 교환하였고, 금년에도 7월9일~12일간 ‘제2회 祖國의 平和統一과 宣敎에 관한 基督教 도쿄회의’를 가졌다. 북측 대표로 고기준 목사, 김운봉 목사(朝鮮基督教聯盟中央委員會 常務委員 겸 平壤市 副委員長)등이 참가하여 ‘韓半島 平和統一을 위한 共同宣言’과 ‘統一祈禱文’을 채택하기도 하였다.¹³⁾

南北韓 佛敎團體의 交流도 점차 民間次元·宗教 本來의 次元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금년 11월 중순께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열릴 ‘漢民族 佛敎指導者宴席會議’의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이며, 이를 위해 이미 금년 4월부터 朝鮮佛敎徒聯盟과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¹⁴⁾

(2) 또 하나의 新興宗教, 金日成敎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既成宗教들은 세계조류에 따른 신선한 활동을 최근들어 폭넓게 전개해 나가면서도 행동의 제약을 일정하게 받지 않을 수 없다. 既成宗教들에 運身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共產主義理論만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미 마르크스·레닌의 共產主義를 극복했다고 자부하는 思想이 있으니, 곧 金日成主體思想이 그것이다. 主體思想이야말로 金日成式 共產主義를 낳은 원동력이며, 유일무이한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金日成式 共產主義가 마르크스·레닌式 共產主義보다 진보된 까닭에 既成宗教들은 그 휘하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즉, 既成宗教에 대한 해석과 통제방식은 金日成式 共產主義의 原理인 主體思想에 근거하게 된다. 여기서, 既成宗教들의 상위개

13) 박완신, 「북한과의 기독교 교류전망—북한교회, 정치적 도구라도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신앙계》 294호, 국민일보사, 1991. 9월, 142~146쪽.

14) 〈한겨레신문〉 1991. 8. 31, 9면, “남·북한 불교계 11월 미국서 첫 회동”.

념이며, 일반적인 共產主義를 극복했다고 보는 金日成 主體思想을 일별해 보지 않을 수 없다.

① 主體思想의 형성과 성격

主體思想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金日成이 내린 정의를 서술해본다.

“주체를 배우는 것은 혁명과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주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이다. 이것은 남에 대한 依存心을 버리고 自力更生의 精神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풀어나가는 自主的인 입장이다.”¹⁵⁾

이를 요약하면, ‘주체사상이란 革命과 建設의 주인이 人民大衆이며, 革命과 建設을 추동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는, 즉 현실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 革命과 建設에서 人民大衆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科學的으로 밝히고, 勞動階級과 人民大衆이 革命과 建設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과 방법, 지도원칙을 명시한 革命思想¹⁶⁾인 것이다.

이러한 主體思想의 기본원리는 金日成 생일 70회 기념으로 金正一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속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¹⁷⁾, 첫째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결정권자라는 점, 둘째 人民大衆이야말로 革命과 建設의 主體라는 점, 셋째 人間은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社

15) 김일성, 「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노동당출판부, 1967, 560~585쪽.

16) 통혁당 선전부, 『김일성주의의 원리』, 1974.

1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 1982.

會的 存在로서 自主性·創造性·意識性을 지닌 존재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특질이야말로 인간고유의 성향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主體思想을 『철학강좌』라는 教程으로 만들어 1973년부터 2년간 강의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主體哲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金日成 개인의 어록이나 교시를 편집한 『철학강좌』는 특히 ‘思想意識의 本質과 인간개조’의 항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 ‘金日成의 主體哲學은 우리 革命時代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革命哲學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勞動階級の 불멸의 철학이며, 인류의 철학 발전에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철학¹⁸⁾이라고 할 정도로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위 金日成의 主體哲學이란 것도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소련의 관제 철학교본인 쿠시넨(Kuusinen)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를 대본으로 번안하고 그것을 모두 金日成 개인의 사상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¹⁹⁾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자칭 완벽하다고 믿는 주체사상, 주체철학, 주체이즘, 혹은 金日成敎理로도 불리우는 이 현상은 1955년 12월28일의 김일성 연설 「당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主體를 확립할 데에 대하여」에서 萌芽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10여 년에 걸쳐 각 방면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1956년 1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적 자립’의 형태로 1957년 12월 5일 같은 회의에서는 ‘政治的 自主’의 형태로, 1962년 12월10일 회의에서는 ‘國防에서의 自衛’의 형태로, 그리고 1966년 10월5일의 당대표자회의에서는 ‘自主的 外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⁰⁾ 60년대 중반 이후 유일사상으로서의 체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70년대부터는 조선노동

18)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 9쪽.

19)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7, 12쪽.

20) 윤진현,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6, 18쪽.

당 제5차대회의 당규약 개정 내용에 포함되는가 하면, 1972년 12월에는 헌법개정안에서 주체사상이 강조되기도 한다. 80년대 초, 金正一의 『主體思想에 대하여』가 발표됨을 전후로 主體思想은 단순히 북한의 統治이데올로기에 그치지 않고, 그 思想의 創始者인 金日成과 承繼者인 金正一을 現人神으로 신격화하기에 이르렀다. 日本帝國主義 시기의 天황이 신격화되어 現人神으로 군림하던 모습과 유사성을 띤다.²¹⁾ 巴야호로 主體思想을 特定の 既成宗教로 자리바꿈시켜도 무리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귀순했거나 북한을 탐방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어떤 외국인이 호텔 접수계원에게 그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김일성 배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것은 판매치 않으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속에 거룩한 지도자가 모셔져 있어야 한다”²²⁾며 화를 내더라는 얘기는 이와 관련하여 유명하다.

主體思想이 金日成敎라는 信仰으로 화할 즈음, 마르크스·레닌식의 공산주의에서 크게 이탈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마르크스·엔겔스는 어떠한 프롤레타리아 조직도 指導者들에 대한 個人崇拜를 처음부터 용납하지 않았다.²³⁾ 1877년의 마르크스의 서신에는 “엔겔스와 내가 비밀공산주의 조직에 최초로 참여한 것은 권위에 대한 미신적 숭상을 조장하는 모든 사항들을 규약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한 오직 그러한 조건속에서 이루어졌다”²⁴⁾고 하였다.

한편, 主體思想은 애매한 표현으로 ‘사람’中心論을 펴기도 하고, 이와 관련하여 ‘意識’의 능동성 문제를 강조한다. 이는 共產主義의 唯物論과 달리 - 비록 『철학강좌』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 意識改革·人間改造를 통한 세계질서의 개편이라는 논리가 된다. 달

21) 『歴史評論』, 「北韓共產制と日本君主制との比較」, 1991, 4月號.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비록 공산권 문제는 아니지만 日帝의 神社參拜를 본고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22) (Reuter), 1991. 5. 13

23)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마르크스(上)』, (김태웅·임경민 역), 서울, 두레, 1989, 205쪽.

24) Marx, Engels, Werke Bd., 34, 308쪽.

리 표현하면 上部構造가 土臺에 反作用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主體思想은 전통적인 唯物史觀과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정 개인을 現人神化하고 그 개인의 絶代意識에 의한 全體意識의 支配를 정당화시키는 의골로 빠지고 있다.

② 主體思想의 宗教解釋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는 宗教에 대하여 ‘자연과 사람을 지배하는 그 어떤 超自然的이고 超人間的인 힘, 곧 神이 있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더우기 宗教를 현실지향의 가장 일반적인 상징체라고 보면, 불교나 유교나 共產主義는 똑같이 그러한 다양한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²⁵⁾ 그러나 마르크스는 共產主義를 宗教라는 외투로 덮어 씌우는 것은 共產主義를 고의적으로 속류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왜냐하면 宗教는 인간의 투쟁의지를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主體思想의 측면에서 볼때도 역시 宗教批判은 유사하다. 즉, 宗教는 세계를 왜곡되게 반영한 것으로서 科學과 양립할 수 없다. 宗教는 역사적으로 支配階級の 수중에 장악되어 人民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 국가의 人民을 침략하는 思想的 道具로 이용되었다는 식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主體思想이 특수한 社會史的 背景에서 형성된 탓에 共產主義理論의 일반적인 宗教批判과 색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것은 각 宗教에 대해 할애된 批判的 定義를 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첫째로, 儒敎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이며, 宗教的 및 觀念論的 思想에 기초하여 人民大衆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들에게 예속적 굴종의 사상을 주입시켜 勞動大衆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反動的인 役割을 하였다.²⁷⁾ 따라서 儒敎思想은 현시기의 思想革命에 있어서 부르조아

25) R.N., Bellah, *Religion and Progress in Modern Asia* (N.Y., The Free Press, 1965), pp. 172~3.

26)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앞의 책, 189쪽.

2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편, 『철학사전』의 儒敎項.

사상과 함께 주로 투쟁대상의 하나²⁸⁾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佛敎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物質世界를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한 幻影이라고 보며, 종교적인 정신수양으로만 現實世界의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에 도달²⁹⁾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같은 佛敎哲學은 사람들에게 모든 현실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며 일체의 階級鬭爭을 중지하여 현존질서를 유지하고자 설교³⁰⁾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道敎에 대해서 主體思想은 수용과 거부의 양면성을 보인다. 즉, 원칙적으로 老子의 哲學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道敎的 입장에선 老子는 부정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사상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조선 철학사상에서 觀念論 哲學을 반대하는 唯物論 哲學의 주요한 조류의 하나였으며, 그의 사회정치적 견해에는 허다한 비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³¹⁾’는 식이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道敎는 ‘老子를 神格化하고 그의 唯物論 哲學의 기본내용인 道의 思想을 宗教的으로 왜곡 해석하여 그것을 자기의 神學的 內容으로 하는 宗教³²⁾’라는 것이다.

넷째로, 天道敎에 대하여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 출발점은 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사실상 유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神의 초자연성, 초인간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인내천은 사람에 대한 神의 支配를 부정하고 인간능력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 그 어떤 초자연적인 全知全能한 神을 설교하는 儒敎敎理나 基督教의 敎理에 커다란 타격이었다.’³³⁾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 다음, 道敎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를 지적하기를 잊지 않는다. 즉, ‘民族宗教로서 1860년대 이후에 農民들의

28) 윗 책, 같은 곳.

2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정진철, 정성철, 김창원 공저), 『조선철학사』, (광주편집부 역음, 『조선철학사 연구』, 광주, 광주출판사, 1988, 23쪽).

30) 윗 책, 같은 곳.

31) 앞의 책, 27쪽.

32) 윗 책, 같은 곳.

33) 윗 책, 137쪽.

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해 왔으나, 그것은 宗教的 形態를 띠고 있다는 자체의 本質적인 限界性으로 인하여 農民運動을 고양하는 데서는 더 이상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³⁴⁾는 것이다.

다섯째로, 基督教은 ‘해방후 남조선에서 美帝의 식민지 壓迫政策을 변호하는데 적극 복무하고 있다. 그리고 美帝國侵略者들은 남조선 人민들의 鬪爭精神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基督教 계통의 선전기관을 설치하고, 근로대중속에 宗教的 幻影과 奴隸的 屈從의 思想을 퍼뜨리고 있으며, 특히 反共思想을 불어 넣고 있다³⁵⁾고 본다.

主體思想의 시각에서 이제까지 비판적으로 정의내린 바를 알기쉽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表1〉 主體思想의 既成宗教 評價 (○ 긍정, × 부정)

차원 \ 종교	유교	불교	도교	천도교	기독교
계급적 차원	×	×	○	○	×
유물론적 차원	×	×	○	×	×
인간중심적 차원	×	×	○	○	×
과학적 차원	×	×	×	×	×
현실적 차원	×	×	×	○	×
민족내재적 차원	○	○	○	○	×
혁명적 차원	×	×	×	○	×

主體思想이 既成宗教에 대하여 주로 강조한 요인들을 7차원으로 설정하여 각 宗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일괄한 것이다. 먼저 階級的 次元이라 하면, 宗教의 支配階級の 道具 여부에 따른 평가로서, 儒·佛·基督教은 봉건적 이데올로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34) 앞 책, 146쪽.

35)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의 基督教項, 1970.

것이다. 唯物論的 次元에서 비취볼 때 老子的 思想만이 해당된다. 人間中心的 次元은 主體思想과 보다 친숙한 요인인데, 단순히 神本位에서 떠난 것으로 족하지 않고 人間本位の 능동적 실천성이 가미되므로 儒·佛敎는 해당에서 제외된다. 科學的 次元에서 보면 역시 既成宗敎는 해당사항이 없다. 現實的 내지 實現性的 次元에서 볼때 天道敎만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民族內在性的 次元은 民族宗敎이든지, 아니면 유구한 역사속에서 民族宗敎化 했든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外來의 侵略的·帝國의 宗敎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끝으로 革命的 次元으로는 天道敎만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階級的 次元에서 같은 평가를 받은 道敎는, 현실유지적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革命的이지도 않은채, 원시적인 생활양식에서의 복구적인 성향을 지니는 한계로³⁶⁾ 인해 제외되었다.

결국 既成宗敎에 대하여 거부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때 主體思想은 既成宗敎들에 대하여 부분적 요인을 통하여 親疎關係를 드러내 준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할 것이지만, 主體思想의 既成宗敎政策觀에 영향을 미친다.

③ 主體思想의 宗敎政策

마르크스·레닌의 무조건적 宗敎拒否는 애초에 그들이 科學性을 입증하려는 현실에서조차 결맞지 않음을 그들의 계승자들이 깨달으면서, 현실타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소련의 경우, 스탈린대에 와서 국가의 理念과 宗敎는 양립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나마 가시화하게 되었고, 여타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들의 民族的·宗敎的 狀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主體思想이라는 독특한 共產的 思考의 범위내라는 한계를 떠고는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宗敎團體가 해방이래로 間歇的인 命脈을 잇고 있다.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36) 광주면김부 엮음, 앞의 책, 27쪽.

제정된 1948년의 구헌법 14조에서, '공민은 신앙 및 宗教儀式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렇게 북한이 宗教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지역이 많은 종교들의 전래지요 전파지 역할을 했음은 흥미롭다. 이러한 信仰地에서 해방이후 뒤늦게 막차탄 共產思想이 主導權을 막무가내로 잡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면 호의적인 이미지로 친숙해진 뒤 黨政次元에서 제도권속에 포섭하려는 계획이 북한의 초기 既成宗教에 대한 정책이었다.

초기의 既成宗教政策³⁷⁾이라 해도 동등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親疏關係에 따른 차별적 정책이 이뤄졌음은 말 할 나위없고, 6.25전쟁을 치루면서 본래의 宗教彈壓은 표면화하였다.

원래부터 북한이 基督教을 여타의 宗教보다 더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 한 때 古堂과 같은 民族主義者가 속한 基督教을 회유하기 위한 제스처로 '北朝鮮民主黨'의 창당을 돕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작 제 의도에 맞지 않자, 종교인들의 숙청과 종교재단의 경제압박으로 전환해갔다. 북한에서 이런 식의 종교탄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는, 1946년 3월 土地改革 때에 종교재단 소유지 15,195 정보를 몰수하여 宗教人들이 경제적 기반을 박탈한 때부터 였다. 이어서 1948년 이른바 產業國有化政策의 일환으로, 종교단체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고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였다.³⁸⁾ 이쯤에 이르러서는, 외래종교만이 아니고 天道教와 같은 民族固有의 宗教도 예외일 수 없었다. 1919년 天道教團體로 설립된 天道教靑友黨은 1946년부터 북한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갖은 회유와 압박을

37) KBS 전문위원 최광석은 증언을 통해, ① 제한, ② 탄압, ③ 이용의 3단계가 있었다고 하고, 북한탐방기자 공종원은 ① 종교재산 몰수, ② 종교시설 복구금지(戰後), ③ 종교예식 금지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공종원, 「북한공산정권의 종교탄압 실태」, 김정기편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서울, 성광문화사, 1982, 222쪽.

38) 심일섭, 「북한의 선교정책과 기독교 신앙운동」, 「한국기독교와 제3세계」, 풀빛, 1981, 232쪽.

받았으며, 다만 친숙한 이미지³⁹⁾ 때문에 쉽게 政教密着關係에 놓일 수 있었다.

6.25전쟁을 치루면서 既成宗教들은 더 이상 이용가치를 못느낀 북한 정권에 의해 피멸상태로 치달았다. 게다가 적대감을 고조시킨 것은 既成宗教들이 宗教本然의 자세를 찾기 위하여 또 하나의 類似宗教 共產主義에 대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基督教은 UN軍과의 親和性 때문에 남다른 박해를 감수해야 했다. 전쟁을 통하여 북한정권과 既成宗教 사이에 이뤄진 限땃힌 골은 전쟁이 끝난 뒤, 더우기 主體思想이 통치이데올로기로 들어서면서 전자에 의한 후자의 일방적 탄압으로 단기간내에 종결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實存에 反한다고 파악되는 宗教를 퇴치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實踐的·科學的 이데올로기가 요청되었고, 그 요청이 主體思想을 낳게 되었다.

主體思想이 既成宗教에 上位하는 초월적 개념이기 위해서는 既成宗教에 대한 말살로 일관할 수는 없었다. 즉, 인간이 지닌 宗教的 歸依本能을 일정한 곳으로 분출되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統治理念下에 놓여지도록 꾀하는 것이다. 게다가 70년대 이래로 다윈해져가는 세계 정세를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의 신헌법에는 종교 자유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보인다.⁴⁰⁾

그러나 그것이 야누스적 규정으로 이율배반된 논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80년대 이후부터 세계무대에서 종교의 교류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主體思想을 토대로 한 金日成敎의 수하에 모든 既成宗教를 아우르고 독단적으로 平價切下하던 정책에 뜻하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것은 金日成敎는 북한지역에 한하여

39) 특히 天道敎의 경우 빈농층에 광범한 세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박해를 가할 경우, 반발을 사게 되면 공산당의 밑바닥 구축에 지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박해의 정도가 비교적 덜했다. 원용국편, 『기독교와 공산주의』, 서울, 성광문화사, 1980, 278~279쪽.

40) 1972년 12월 제정된 신헌법 제4장 54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족할 뿐이지, 세계무대에서 국제교류의 방식으로는 전혀 부적합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제교류에서의 國家·民族의 實利를 위하여 既成宗教의 역할을 기대할 필요마저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건축하고 있는 교회나 성당은 信者數와 건물수에 상관없이 이런 점에서 중대한 시사가 아닐 수 없다. 절을 복원하여 관광유원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호의적으로 재평가해 볼 수 있다. 얼핏 보기에 既成宗教의 권위와 체면을 꺾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60년대까지 아예 宗教儀式이나 宗教施設을 근절시켰던 정책에서 크게 전환했다는 점이다.

2. 북한주민의 意識構造

既成宗教에 上位하는 북한에서의 또 하나의 新興宗教, '金日成이즘'의 형성은 북한 住民의 意識構造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는 住民의 意識構造는 그간 북한이 취해온 宗教政策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⁴¹⁾ 넓게 대별하면 主體思想의 보급을 계기로 나눌 수 있으나, 좀더 시기적으로 세분하면 意識形成의 제1단계를 해방 이후~6.25전쟁 까지로 볼 수 있다. 이 동안에 마르크스·레닌식 共產主義를 향한 점진적인 政治社會化가 꾀해졌다. 기존의 전통의식과의 커다란 마찰이나 충격을 애써 줄이기 위해 住民을 회유하는 한편, 共產主義意識을 이식시키기 위하여 크게 들어나지 않을 정도의 숙청도 함께 행해졌던 시기이다. 즉, 지지자, 동조자의 확대를 위해 '표면상 회유, 이면상 압박'이 住民들에게 가해졌다.

意識形成의 두번째 단계는, 6.25전쟁 이후~60년대 중반의 主體思想形成期까지이다. 이 시기는, 이미 6.25전쟁을 치루면서 理念的 區分이

41) 여기서는 宗教의 제한-탄압-이용정책을 말하지만, 김일평이 나는 ① 민주개혁시기(1945~1953), ② 대중정치 교육시기(1954~1958), ③ 문화사상 혁명시기(1959~1970)라는 文化思想改造過程도 주목할 만하다.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68쪽.

확연히 드러났으므로, 피농고 住民에 대한 억압과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다. 理念的으로는 마르크스·레닌식 共產主義를 떠나 스탈린식 共產主義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급진적인 政治社會化가 피해졌다. 따라서 그만큼 傳統意識과의 단절이 급격히 요구되어 一般住民은 물론, 社會主義에 동조를 보이던 知識人들까지도 價値觀의 혼란을 겪는다.

세번째 단계는 主體思想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명실공히 북한의 唯一無二한 통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시기이다. 이제 마르크스·레닌식 共產主義나 스탈린식 共產主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金日成式 共產主義를 지향하게 된다. 전단계에서 理念에 따른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이 가해졌던 만큼, 面從腹背일지언정 표면상 하나의 의식속에서 추종하는 住民들에게 宗教的(카리스마적)·家父長的 은총이 베풀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엄격한 보안과 규찰이 수반되어 결국 양면적으로 住民의 意識과 行動을 제한하고 있다. 70년대 들어 3대혁명의 일환으로 시행된 文化革命과 思想革命은 각기 社會改造와 人間改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북한 住民의 意識構造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集團主義的 性向이다. 46년도에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조치, 50년대 이래의 農業協同化가 진행되면서 ‘集團을 위한, 集團에 의한, 集團的 意識과 活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전문성과 개별적 창작성이 요구되는 文藝에서도 集團創作이 나타나 획일화된 의식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연히 意識과 行爲가 지향하는 邊據도 國家가 최우선시되며, 가정, 개인의 순으로⁴²⁾ 나타난다.

두번째 특징은, 他律的 性向이다. 이는 앞에서의 集團的 意識과 行爲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겠다. 구조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가 제한된 것에 기인한다. 인간이 갖는 자연스런

42) 국토통일원, 『북한국민의식구조 변화실태』, 1983.

자율적·능동적 본능을 國家理念과 集團論理로 억제하는 데서 오는 소극성·무기력성·책임회피가 그 결과로 나타난다.

세번째로, 勞動重視觀이다. 이는 集團性, 平等性과 더불어 社會主義가 표방하는 主要價値의 하나이므로 당연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既成宗教 抑壓政策에서 보여지듯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원칙을 승려나 목회자들에게도 적용하여 시주나 헌금과 같은 경제조달방식을 끊었던 예는 유명하다. 여기서 일(노동)이라는 것은 육체노동에 대체로 해당되며, 정신노동은 金日成과 黨 차원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네번째로, 특수한 理念과 體制에 대한 排他的 優越意識을 들 수 있다. 북한만의 독자적인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세상만사를 해석하고, 그 優越性을 과시·선전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400여 개의 主體思想研究所를 운영중이다. 이러한 排他的 優越感은 資本主義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같은 共產主義陣營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섯번째로, 金日成과 黨에 대한 忠誠心이다. 여기서, 黨은 다만 겉으로 표방되는 상징물이며, 金日成·金正一 개인의 막후조직일 뿐이므로 결국 忠誠은 金日成·金正一을 향한 것이다. 金日成은 인민들이 지향할 바를 교시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神이며, 아울러 북한 전체가 하나의 가정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모든 인민의 유일한 아버지인 것이다. 『조선음악 600곡집』⁴³⁾에 수록된 가곡 300여편 중에서 230곡 이상이 金日成讚美歌임이 이를 대변해준다.

여섯번째로, 傳統意識과의 단절현상이다. 전통의식의 근간이 되어온 宗教와 家族中心體制가 와해됨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既成意識과 生活樣式, 民俗놀이 등도 사멸하거나 主體思想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 크게 변화를 겪게 되었다. 모든 행사가 혁명투쟁과 노동력에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집단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傳統意識·行事의 폐기여부는 북한 헌법 38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43) 『조선음악 600곡집』, 평양문예출판사, 1977.

중요한 典據는 『金日成著作集』 30권과 앞으로도 계속될 金日成·金正一의 敎示라고 할 수 있다.

일곱번째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도 불리는 現實主義를 들 수 있다. 宗教가 뿌려놓았다고 보는 現世에 대한 허무감, 來世로의 정신적 도피, 그리고 現實과 理想과의 괴리 등은 그러한 것들의 主犯인 宗教를 없애고 대신 들어선 主體思想에 의해 ‘現實=實現’이라는 現實萬能主義로 탈바꿈된다. 아울러 철저한 現實認識을 갖는다는 것은 곧 革命意識·階級意識을 전지하는 것이다.

여덟번째로, 男女平等意識이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여성을 家父長制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본다. 단순히 家事와 性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니고 ① 여성 스스로의 意識革命, ② 社會的 革命, ③ 家庭의 革命化를 꾀하는 主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⁴⁴⁾ 이를 고루하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男性과 동등한 女性의 ‘社會勞動力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들은 지속적인 위기의식 속에서 생활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노동당의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기의식 조장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金日成敎理인 主體思想은 그릇된 現實萬能主義에서 파생되는 住民들의 불만과 욕구의 해소를 위하여 꾸준히 ‘적대자’를 만들어 적대성·투쟁성·혁명성·당파성(계급성)을 고취시킨다. 현세에서의 안정과 여유는 사회주의의 실천윤리에 어긋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북한은 일면 위기의식을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思想·文化·技術革命을 통해 사회주의형 人間·社會·環境을 改造해 나가는 것이다.

44) 김일성, 「여성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974, 115쪽.

3. 북한체제의 特殊性

북한은 그 특이한 理念志向 못지않게, 그에 상응하는 독특한 체제 관리방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 나름대로의 체제관리방식은 현재의 북한체제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임은 말할 나위없다. 따라서 그들의 체제관리방식을 살피는 것은 현 북한체제의 전모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그 특징적인 체제경향을 살펴본다.

첫번째로, 金日成神政世襲을 들 수 있다. 主體思想을 유일한 이념체 계요, 삶의 원리로 삼고 있는 북한은 70년대부터 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로 정식화하여,⁴⁵⁾ 1982년 3월 金正一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부터는 여타의 공산체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金日成式 共產主義體制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바야흐로 모든 의식과 체제가 金日成에게서 나오며 그가 지닌 생각의 轉化物이 현재의 북한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金日成을 現人神으로 부각시키면서 아울러 그의 생각을 唯一思想體系로 확립시키는데 주력한 인물이 金正一이다. 가히 神格화된 金日成에게 金正一은 충실한 단 한 사람의 司祭인 셈이다. 이쯤되면 ‘一黨獨裁’라는 말은 북한체제를 설명하는데 적합치 않게 된다. 이제 勞動黨은 두 父子를 열렬히 추종하는 信徒組織에 불과할 뿐이다.⁴⁶⁾ 그리고 이러한 ‘신정(神政)’은 곧 ‘친정(親庭)’의 의미를 수반하며 世襲皇室로 자리잡히고 있다.

두번째로, 북한사회의 특이한 모습으로 새로운 階級構造로의 再編을 들 수 있다. 이는 無階級社會를 志向하는 共產主義理論에서 크게 전도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51개의 출신성분분류를 통해, 군간부와 관료가 포함된 核心黨員階級, 노동자와 농민 및 지식인이 속한 基本階級, 그리고 反動階級인 非基本階級으로 3등분하였는데,⁴⁷⁾ 이러한 새로운 階級構造의 특징이라면 階級間的 間격이 크다는 점, 신분

45)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46) 이와 유사하게, 북한을 勞動黨이라는 司祭團을 가진 宗教團體라고 보는 이도 있다.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특질」,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9, 26쪽.

47) 안병영, 「북한 정치엘리트의 구조분석」, 《아세아연구》16-2, 1973, 6월호, 47~90쪽.

별 귀속성이 크게 작용하여 階級간의 수직이동(上向移動)이 제약된다는 점, 그리고 核心黨員階級에 의한 절대엘리트중심체제라는 점 등이다.

세번째로, 철저한 집단중심체제를 들 수 있다. 북한 헌법 제49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自由와 平等이라는 거대한 두 價値를 전체와 개인이라는 모순된 관계속에서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인류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불균형만이 역사속에 존재해왔고, 이를 고루하게 표현해보면 '개인과 자유' 對 '전체와 평등'이 각기 상응하여 체제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특히 후자는 共產主義 理念의 지향하고자 하는 원리이며 가치처럼 정식화되었고,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헌법이 명시하는 바처럼, 개인(하나)과 전체간의 조화는 集團主義의 優位에 의해 단지 理想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난다.

네번째의 특징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개조방법으로 북한은 '새인간'을 양성해내고 있다. 초기의 사회주의자였던 오웬(R. Owen)이 새로운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출현은 既成社會의 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실천적으로 주력했던 사실은 유명하다.⁴⁸⁾ 즉, 개인과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능을 社會主義教育을 통하여 전체와 평등을 지향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어 사상혁명·문화혁명을 통하여 新人間·新社會의 건설은 물론, 敎示를 내리는 金日成·金正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全人民의 臣民化를 꾀하는 것이다.

다섯번째로, 傳統文化와의 단절을 들 수 있겠다. 『金日成 著作集』에서도 보여지듯이, 다분히 金日成 개인의 의도와 신념대로 북한은 다

48) 따라서 오웬을 教育的 社會主義의 측면에서 논하기도 한다. 五島茂, 坂本慶一, 「ユートピア社會主義の思想家たち」, 『オウエン, サンシモン, フーリエ』, 東京, 中央公論社, 1987, pp.33~37.

방면에 걸쳐 傳統的 生活樣式을 차단하고, 主體的 生活樣式을 뿌리내렸다. 이러한 방식의 傳統과의 단절이, 있을 법한 葛藤속에서도 쉬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까지 反體制·反意識成員들을 대거 숙청함과 동시에 主體思想이 북한의 새로운 삶의 원리로 보급되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하게는 북한주민의 극심한 경제난에 기인한다. 主體思想과 함께 보급된 경제적 빈곤은 주민들에게 生活樣式의 혁명적 전환 조차 쉬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번째로 ‘쌀의 共產主義’라는 표현에서 북한체제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식량난의 시급함이 80년대 들어 더욱 심각해지면서, 金日成은 1982년의 시정연설과, 1986년 12월27일의 노동당 제6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쌀은 공산주의’라고 언명함으로써 북한체제의 궁핍한 현실상을 고백했다. 1960년 8월 機械化實現令公布 이래로 농기계의 꾸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부진한 이유는 ① 경지면적의 확장 곤란, ② 노동력 부족, ③ 영농기술의 부족, ④ 분배상의 문제점⁴⁹⁾, ⑤ 공업(특히 중공업) 절대위주의 산업정책 등에 기인한다. 바야흐로 ‘衣食住’가 아닌, ‘食衣住’의 문제가 북한체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한 폐쇄경제체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의 자급자족 경제방식과 金日成 主體思想에서의 經濟的 自立이 합쳐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위기에서 사회주의를 보호하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은 해외무역 의존도를 남한의 69.7%에 비해 훨씬 낮은 20.7%로 보여주고 있지만,⁵⁰⁾ 南北韓 공히 對外貿易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내부경제의 한계적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자력갱생의 폐쇄경제-국체경쟁력 약화는 문제가 앞될 수가 없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키

49) 이태욱, 「북한경제:자력갱생 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서울, 울유문화사, 1989, 177쪽.

50)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7.

위해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1984년 9월에 26개 조항의 외국인 합작회사 운영법을 채택하였다.⁵¹⁾

51) 河合弘子, 「合營法の背景, 問題点」, 《現代コリア》47號, 1985.1, p.20.

Ⅲ. 북한에서의 宗教復活

1. 宗教復活의 可能性

북한에서의 宗教復活은 宗教에 대한 인식론적인 측면과 실재론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 같다. 먼저 전자에 대한 고찰로, 共產主義 理念속에서 宗教가 마르크스 이래로 어떻게 비판적으로 거부되어져 왔는지를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宗教認識과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의 宗教認識觀과 일반적인 宗教認識觀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태어나던 당시(1818년)는, 중세를 思想의 암흑기로 몰아넣은 카톨릭의 위광과 봉건귀족들의 위세가, 合理性과 新敎앞에서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마르크스의 부친은 원래 유태인 출신으로 姓이 헤르셸(Herschel)이었지만, 1816년의 반유대법률에 의해 생계수단에 위협이 가해지자, 姓을 마르크스(Marx)라고 고치고 宗教까지 基督教로 바꾸는 등 철저한 변신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바야흐로 카톨릭에 이어 新敎가 支配의 論理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영국의 경우, 아프리카의 植民國에 파견되어진 牧師들은 노동력이 착취되어지다 못해 끝내 생명이 消盡되어가는 植民地 勞動者들의 곁에서 彼岸에서의 永世를 기도할 따름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당시의 감상주의, 초자연적인 원인에 대한 信念,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들을 증오했으며, 民族的·宗教的·人種的 團結力같은 비합리적인 세력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였다.⁵²⁾ 스트라우쓰(David Strauss)와 포이에르바하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종교관에 영향을 줬던 인물이다. 前者는 1835년에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비평적인 글을 발표하였는데, 福音이라는 것도 초기 기독교시대에 받

52) I. Berlin, *Karl Marx*(신복룡역, 『칼 마르크스』, 서울, 평민사, 1982, 49號).

아들여진, 어느 정도 神話的인 믿음과 순수한 創作物이 결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포이에르바하는, 인간의 상상속에서 만들어져 인간의 현실적 비참상을 구원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로 宗教를 파악하였다.⁵³⁾

마르크스는, 이들과 당시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종교 파악을 했으면서도 共產主義와 宗教가 共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 데 대해서는 적개심어린 비판을 가했다. 즉 宗教는 불행한 사람들의 진통제 구실을 할 뿐이기 때문에, 이 宗教的 矛盾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숙명적인 환상과 위안에 빠질 뿐이며, 아울러 인간의 투쟁 의지를 마비시키는 아편적 경향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共產主義式 宗教觀은, 植民帝國主義 시대에 政宗癒着에서 宗教가 權力의 시녀로 작용하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다원화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그러한 宗教認識은 논리적 강도를 잃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宗教復活의 實在論的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위에서와 같은 宗教認識의 변화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로코뮤니즘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민들의 生活原理의 일부로 자리한 宗教가 공공연히 共存하거나, 암묵리에 통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다. 특히 이들 공산권 국가들에서 宗教가 唯物論과 共存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 宗教가 갖는 특유의 民族的 기질 때문이었다. 植民帝國主義時代에 宗教가 權力에 편승하여 작용한 탓에 共產主義로부터 배척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이제 이들 국가에서의 宗教는 共產主義와 더불어, 혹은 共產主義가 할 수 없는 영역-소련·중국의 新版共產帝國主義로부터 民族共產主義를 보호-에서 필요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53) L.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N.Y., Harper & Row, 1957), pp.185~196.

그리고 여타의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이제 宗教에 대한 강한 拒否權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공산권의 약화로 보여지듯이, 食依住에 허덕이는 인민들에게 역시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共產主義가 아니라 宗教의 순수한 이상에 두어져야 했던 것이다. 레닌이 숙청대상이 될 정도로 급격히 체제변화를 보이고 있는 소련의 경우, 聖書가 암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데, 눈에 띄기 무섭게 판매된다고 한다.⁵⁴⁾ 共產主義가 宗教를 대신하여 現實적으로 더 기여할 부분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精神世界에 작용하는 측면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金日成은 現人神으로 그의 敎示에 따라 祖國이 現實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믿는 터에, 아직 一般宗教가 金日成敎를 대신할 여지는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과 기술이 한계가 있는 북한으로서는 언제까지나 主體思想의 自力更生原則에 입각하여, 유일한 神政世襲政治, 외국시장을 배제한 自給自足經濟, 創意力이 없는 全體主義社會로 남을 수 있을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최근들면서 북한은 전면적인 폐쇄체제를 부분적으로 풀어 조심스럽게 外交를 늘여나가기 시작했다. 경제적 낙후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종교인들의 교섭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북한측의 종교라고 해봐야 金日成敎의 下位概念으로 전락된 정도이지만, 여타의 공산권에서 宗教가 인민들의 새로운 精神的 理念으로 수용되고 있듯이 金日成式 共產主義가 실패했거나 이룩하지 못한 영역을 채우는 식으로 宗教는 북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2. 宗教復活의 경로

그동안 북한에서의 宗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54) 심일섭, 앞의 책, 227쪽.

것은, 60년대 이후로 30여 년간을 既成宗教들의 활동이 끊겨 왔다는 것과, 일면 북한이 그러한 反宗教政策을 쓰면서도 남아있는 모든 종교·신도들을 主體思想의 기치아래 政治道具로 삼게 된 데에 기인한다.

한 세대 동안 획일적인 國家理念下에 모든 가치체계가 통괄되어 오면서 南韓의 사회와 문화와는 커다란 이질상을 낳았음도 물론이다. 이렇게 상당한 정도로 이질화된 분위기 속에서도 통일에 대한 모색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정치영역으로 대표되는 정부간의 외교가 戰後 이래로 비밀리에 -최근들어 공개적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왔고, 요즈음에는 경제외교가 官民間 次元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두 외교의 최근동향은 첫째, 統獨과 소련공산당의 몰락에 영향을 미친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점차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정치주도형에서 경제를 주변수로 하는 경제적 사회재구성 방식으로의 편향에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이 가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째로는 점차 官僚次元에서 民間次元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외교동향은, 물론 다원화·다양화되어가는 세계적 흐름에 편승하고, 아울러 民族統一의 의지를 남북한 쌍방이 보임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주축으로 정치, 예술, 스포츠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宗教的 側面만은 조금 논의를 예외로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여타의 측면과 달리, 북한에 교류의 상대가 될 宗教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요즈음 표방되는 북한의 宗教團體는 政治的 宣傳道具에 불과할 따름이다.

북한에서 宗教復活이 가능한 길을 모색해 볼 때, 한 세대의 단절과 종교거부관으로 인하여 自生的으로 싹트어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우기 金日成 主體思想이 宗教의 외피를 둘러싼 채, 宗教보다 더 上位의 개념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결국 宣敎와 宗教外交를 통한 전파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宣敎나 宗教外交는 형식적으로나마 표방되는 북한내의 宗教團體를 통한 다거나, 아니면 第三國에서의 종교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 이 방식이 결코 쉽지는 않다. 우선 북한 종교인들의 共產主義式 그릇된 宗教觀과, 그로 말미암아 政治的 道具化·이데올로기화로 인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어느 영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宗教外交나 宣敎를 위한 전제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의 宗教觀의 변화를 위하여, 南韓의 종교실상을 착오없이 보여야 하는 이유에서이다.

첫째, 남한의 宗教는 '科學的'인가? 共產主義式으로 반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종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신과 허구성이 상당한 정도로 가미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基督教의 경우, 50년의 宣敎歷史를 자랑하던 1934년에 이미 知性的 신앙적 모색을 박해하는 '악의 꽃', 根本主義 保守神學이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을 정도이다.⁵⁵⁾ 둘째로, 남한의 宗教는 '現實的'인가? 이 물음 역시 첫 번째의 물음과 관련되며, 보기에 따라서는 종교해석상 논란이 일 소지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知性이 과학성과 관련되면서, 아울러 초시간적이고 독단과 고집을 거부하며 꾸준히 현실(reality)에 따라 수정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수용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물음은 곧 세번째의 남한의 宗教는 '改革的'인가 라는 물음과 떼놓을 수 없다. 현실을 宗教는 도외시해서는 안되고, 현실을 관조해서도 안되며, 현실의 물음에 조용할 수 있는, 즉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의 냉엄한 평결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종교의 생리상, 사회변동과 떼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네번째로, 남한의 宗教는 '民族宗教'로서의 위치를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1895년경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북장로교의 데니스(J.S. Dennis)는 한국교회의 가장 흥미있는 특징으로 '애국심'을 들었다.⁵⁶⁾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고 佛敎, 儒敎, 天道敎 등이 護國宗教·民族宗教로서의 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외래

55) 서광선, 「한국기독교와 반지성」, 『한국기독교와 제3세계』, 풀빛, 1981, 169쪽.

56) J.S. Dennis, *Christian and Social Progress*, (Edinburgh:Oliphart Anderson & Ferrier, 1899), p.250.

종교의 경우, 특히 基督教처럼 서양문화의 축수라는 인상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번째로 남한의 종교는 '平等宗教'인가 종교가 지배 계급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도구로 작용하던 오욕의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비대해진 官僚制와 화폐가치를 으뜸으로 여기는 資本制 속에서, 宗教 역시 形式이나 商品으로 전락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資本主義가 결여하고 있다고 共產主義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주요한 價値, 平等性을 宗教는 견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비록 共產主義 조차도 平等性에는 실패했지만, 宗教는 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宗教는 '普遍性'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普遍宗教로서의 위상은 남한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世界宗教로서의 측면이므로, 얼핏 民族宗教로서의 위상과 상충될 수 있겠다. 그러나 世界的 高等宗教들이 몇몇 나라에서 民族宗教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그러한 위상간의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宗教外交를 위한 전제적 조건으로 남한의 종교가 견지해야 할 이러한 6가지 佛敎-科學宗教·現實宗教·改革宗教·民族宗教·平等宗教·普遍宗教-은, 북한의 主體神學에 대응하기 위한 宗教外交로서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統一韓國이 지향할 宗教的 位相이기도 하다. 따라서 宗教外交와 宣敎가 政治·經濟·스포츠·예술·문학 등에 비해 늦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향점이 한민족이 지녀야 할 가치체계의 중요한 일부임을 생각할 때, 신중하고도 인내심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宗教傳播過程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殉敎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한 세대간의 종교적 단절이 있었을 뿐이므로, 한국사속에서의 佛敎·基督敎의 첫 유입속에서 나타났던 수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이제 경제를 주축으로 한 다각적인 外交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임으로써,⁵⁷⁾ 북한은

57) 金日成은 '91. 7. 24 방북중인 朝·日友好축진의원연맹 방문단과의 회담에서, "우리 나라도 지구상의 한 나라이며, 지구의 움직임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강영지, 「남북한 유엔가입, 북한은 고립을 탈피하는가」, 《신동아》, 1991, 9월호, 175쪽.

孤立無援의 수렁에서 탈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술을 통해 볼 때, 북한에서의 宗教復活은 宗教外交와 宣敎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경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① 政治的 宣傳道具, ② 經濟實利를 위한 道具로서의 宗教外交政策이 선행된 후에, ③ 개방 물결에 따른 宗教의 自然普及이 잇따르리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宗教와 主體思想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은 ②의 과정에서 진행되어 ③의 과정에서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宗教復活에 따른 意識과 體制의 변화

1. 宗教의 意識·體制간의 일반논리

宗教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超越성을 들 수 있다. 이 超越은 힌두교·불교에서 말하는 초과 같은 존재양식일 수도 있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실재일 수도 있다. 또는 기독교·유대교 등에서 보이는 超世的인 종말론과, 그의 現世的인 대응물인 마르크스주의의 혁명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⁵⁸⁾ 이렇듯 超越성은 인간세계의 상대적이고 불합리하고 불완전함에 기인하여, 現世를 탈피한 彼岸(神의 世界)에 삶과 희망의 마지막 기대를 둠으로써 발생한다.

현실에 강한 메시지로 투사된 宗教의 超越적인 힘은 인간의 意識과 體制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宗教가 現實에 작용하는 모습을 意識의 차원과 體制의 차원에서 살핀 것이다.

〈表2〉

지향 차원	① 과거←현재	② 현재지향	③ 현재→미래
의식	부정의 논리	긍정의 논리	부정의 논리
체제	보수적) 혁신적	보수적	혁신적 (초월적)

종교의 초월은 과거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주로 미래지향적이다. 어쨌든 현재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를 否定의 논리로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체제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①의 경우 종교의 지향이 의식에 부정의 논리로 작용하였지만, 체제에는

58) 정재식, 「부정의 논리와 사회변혁」, 《延世論叢》21집, 연세대학원 논문집, 1985, 263쪽.

보수 우위로 나타난다. 조선조 實學의 원시유교에 대한 지향이 현실 부정의 논리로 작용하되, 체제초월적이지는 못했다. ②의 경우, 宗教가 政權과 밀착되어 현실긍정의 논리로 작용하며 체제는 다분히 보수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조 500년의 견인차로 儒敎가 기여했음은 말 할 나위없다. ③의 경우 宗教가 超越性을 주로 표면에 내세울 때 현실적으로 부정의 논리로 작용한다. 現實에 대한 강한 거부와 革新的인 체제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주로 종교의 수난기를 통해 보여진다. 본고에서 事例로 거론하게 될 폴란드의 카톨릭과 共產主義, 일제치하의 한국 宗教와 일본 神道와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③의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중에서, 宗教의 超越性이 또다른 超越的인 힘과 만나 對立하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나 神道도 超越的인 힘을 지녔다고 할 때, 카톨릭과 한국의 종교들이 어떻게 각기 대응했을까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무릇 어떠한 宗教든지 超越的인 힘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과의 밀착을 보일 때(②처럼) 그 超越的인 모습은 잠재화되는 것이다. ③의 예에서 폴란드 共產主義와 일제의 神道는 超越的인 모습을 잃은 채, ②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즉, 같은 宗教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超越性을 지향하여 否定의 論理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는 現實肯定的 論理로 작용하기도 한다.⁵⁹⁾

59) 家永三郎, 『日本思想史における否定の論理の發達』, 東京, 新泉社, 1983, pp.17~19.

2. 구체적인 事例

(1) 폴란드의 카톨릭과 共產主義

폴란드의 사회체제와 의식구조를 아는데 있어서 특유의 전통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가족, 교회등에 의해 전수되어온 전통문화의 유산은 그들의 공산주의 문화와 어떤 면에서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묘하게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⁶⁰⁾ 그것은 가족과 교회가 전통적으로 폴란드의 주요한 社會化의 기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폴란드에 있어서 카톨릭의 사회적 힘은 팔목할 만하다. 1921년에 인구의 63.8%가 로마카톨릭, 11.2%가 회랍카톨릭으로 주류를 이루던 것이, 1931년에는 각각 64.8%, 10.4%로 나타났고,⁶¹⁾ 1970년대에는 3,600만명의 인구중 3,400만명이 카톨릭 신자로 나타나,⁶²⁾ 그 어느 나라보다도, 특히 공산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된 신장세에서 보여지듯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카톨릭의 신장세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 첫째가 폴란드의 카톨릭이 民族主義的 性向을 대외투쟁사속에서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실로써, 2차대전중에 폴란드의 카톨릭 성직자와 信徒들은 宗教의 순수한 계시와 民族獨立을 위하여 死鬪로써 나찌에 대항하였다. 독립을 위한 헌신적·종교적 희생이 2차대전중 동구 그 어느나라보다 극심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일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民族的 유대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비록 재집권한 뒤로는 종교탄압을 주도한 고물카로서도 집권 초기에는 民族共產主義를 표방함으로써 신앙깊은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

60) 오세철, 「동구제국의 민족문화의 유산」, 안병영·오세철편,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 서울, 박영사, 1986, 250쪽.

61) J. Rothschild, *East Central Europe, between the two World Wars* (Seattle:Univ. of Washington Press, 1983), pp.36~38.

62) R.F. Staar, *Communist Regions in Eastern Europe* (California:Stanford, 1977), pp.140~141.

그러나 민족적 성향이 깊다고 해서 宗教에 적대적인 공산정권이 그 대로 두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民族的이라는 점에서는 폴란드 자체의 공산정권과 카톨릭은 共存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련식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면서 共產主義는 宗教와 함께 폴란드를 지키고자 하지 않았다. 1956년 10월사건 당시에만 잠시 고삐가 늦춰졌을 뿐, 1948년 이래로 폴란드의 外來共產政權은 카톨릭을 박해하였다. 특히 1966년 체스뜨호바에서 기독교 전래 1,000년 기념행사를 박해한 사건은 유명하다. 그들은 교회재산을 몰수했고, 教會新聞을 폐간했으며, 비신스키(Wyznski) 추기경을 공개재판하였다. 계속하여, 敍任權의 제한, 聖職者의 대량체포, 政權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도 하였다.⁶³⁾

이러한 박해속에서, 폴란드 출신의 教皇(요한 바오로 II)출현은 民族 宗教 카톨릭에 희망을 안겨 주었다. 1979년에 教皇의 母國訪問은 폴란드에 주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개인적으로야 母國訪問이겠지만, 社會的으로는 宗教 對 共產主義라는 색다른 이념간의 접합을 의미하며, 國家的으로는 가톨릭이나 民族主義的 性向이 강한 폴란드인의 영광이고, 따라서 명실공히 카톨릭은 폴란드를 대표하는 國教나 다름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또한 政治的으로는, 세계인구의 각기 1/3씩을 점유하는 카톨릭과 共產主義라는 측면에서 전자의 首長이 냉전타개를 위해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다. 그리고 宗教的으로는 理念과 體制를 망라하여 宗教의 보편주의적 지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0년부터는 自由勞組의 정치적 진출이 훨씬 수월해졌고, 공산당으로서도 이제 무조건 압박만 가할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느덧 카톨릭과 폴란드 공산주의는 각각의 상대역이 뜨거운 감자였지만, 폴란드를 지탱하는 同伴理念體系로 표상화된 것이다. 그 결과로서 폴란드 체제는 크게 변화하였는데, 무엇보다도 1980년을 전후하면서 自由勞組의 제도화와 함께 連協體制(Corporation System)가

63) 양정숙, 「폴란드 고무우카정권 붕괴에 관한 연구-재집권기인 1956~1970년을 중심으로-」, 외대 석사논문, 1988, 38~39쪽.

출범하였다는 점이다.⁶⁴⁾ 그리고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은 社會階層的次元에서 기존의 엘리트 중심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직업분포면에서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50년대를 전후하여 형성된 폴란드의 全體主義理念은 宗教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인간구원에 압도되어 어느덧 社會理念으로서가 아니라, 宗教가 추구하는 장거리 계획을 단거리 계획으로 단지 전환하여 뒤쫓는 꼴이 되었다. 政治·經濟·社會體制面에서의 부문간 자체 權益調整方式은 획일화된 全體主義를 止揚하여, 다양성·다원성을 指向케 하였다. 폴란드 정부로서는 이같은 역동적 메카니즘인 카톨릭과 화해·친선관계에 서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학교교과과정에 宗教教育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고, 미사방송이 허용되었으며(1980.9.21), 10여만의 회원이 있는 청년교회조직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고, 심지어 政府·勞動者간의 중재기구로서 '司教團·政府合同委員會'가 발족하게 되기에 이르렀는데,⁶⁵⁾ 결코 우연으로 들릴 수 없는 현상들이다.

(2) 日帝下の 基督教과 神道

일제하의 神道는 여러 면에서 共產主義와 유사한 바가 있으며, 따라서 神道와 보편종교와의 관계를 통해서, 主體思想에 맞설 宗教의 위상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神道와 共產主義를 社會學的 측면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全體主義的'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자연히 본의가 아닐런지는 모르나 전과방식에 있어서 극히 '강압적' 수용방식을 공히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는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神道는 日本帝國主義의 상징이자 구현체로서 天皇制 이데올로기를 '정치원리로 확립하려 했다는 점에서 漢民族에게는 이념과 체제의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1940년을 전후하여 극

64) 伊東孝之, 「ポーランドにおけるノメンクラトゥラ論争(上)」, 《共產主義と國際政治》通卷23號, 東京, 國際問題研究所, 1982.

65) 박석진, 「폴란드 노동운동이 정치권력에 미친 영향」, 외대 석사논문, 1982, 73쪽.

성스럽게 神社建立을 추진, 皇民化政策을 본격화한 日帝는 一面一神社主義를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宗教彈壓을 자행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한국 각지의 토착신앙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이거나, 폐교의 위협속에서 基督教系 學校에 신사참배를 강요한다거나, 급기야는 諸宗校를 종속, 해체시키는 등이었다.⁶⁶⁾

이에 따른 반발이 종교계로부터 예상되므로 日帝는 무마책으로, 神社가 단지 皇室의 조상과 유공자에 대한 경배에 불과할 뿐이라고 定義하는 한편, 따라서 宗教하고는 그 관념을 달리하므로 신사에 참배시킨다고 하여 국민의 信仰과 自由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⁶⁷⁾ 설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래부터 日本人에게 神道는 하나의 宗教였다. 갖은 설득과 위협속에서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 1937년, 제국의회에 제출된 조선총독의 보고서에서처럼, 神道는 이미 宗教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國民的·團體的 根本原理로⁶⁸⁾ 탈바꿈했다. 만고불변의 國體를 떠받들기 위하여 日帝는 한반도 도처에 神社를 건립하였는데, 1936년에 524곳이던 것이 1945년 6월에는 1,062곳으로 量的 확대가 급하게 이루어졌다.⁶⁹⁾ 이쯤 되었을 때는 설득이니 회유니 하는 무마책은 이미 사라졌고, 한국의 宗教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탄압을 전개했다. 1939년에 宗教團體法을 만들고, 一都市一教會 원칙을 세워 基督教의 축소를 꾀하였는데, 日帝의 一面一神社 원칙에 의한 神道の 확대와는 대조를 이룬채, 거의 同時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1943년에는 성결교, 안식교, 침례교가 해산되고, 1945년에는 日本基督教朝鮮教團에 전체 교파가 통합되었으며, 목사들은 神宮으로 인솔되어 한강에서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다.⁷⁰⁾

66) 韓哲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서울, 고려서림, 1989, pp.180~196.

67) 高橋藤吉, 『朝鮮教育史考』, 1927, pp.507~508; 韓哲曦, 위 책, pp.164~166.

68) 민경배, 『일제말 기독교인의 최후저항』, 『한국기독교와 제3세계』, 서울, 풀빛, 1981, 114쪽.

69) 韓哲曦, 위 책, p.178.

70) 위 책, p.194.

그러나 보편종교의 위력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宗教의 超越性은 現實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철저한 現實拒否의 論理를 갖고 現實에 대항하게 된다. 神에 대한 召命意識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종교적 헌신에 현실적 추동력을 얻어주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나라와 역사의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民族愛가 그것이다. 척박한 시기에 보편종교는 왕왕 신의 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으로 무장되곤 한다. 따라서 보편종교는 時代宗教로서의 모습을 수시로 지니게 된다.

日帝下의 한국 基督教은 이러한 면에서 時代宗教로서의 양면성을 잘 드러냈다. 여타의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중에서도 長老教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파가 現實肯定의 論理로 神道에 수용되어졌다. 그러나 長老教 만큼은 자체내의 일부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로 하였지만, 現實拒否의 論理로 神道を 거부하였다. 기성교회의 참배, 굴복에 반발하여 다분히 종교적 차원에서의 저항이 神道에 과감히 맞설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것이 민족적 차원으로도 나타나 日帝를 거부하는 애국운동으로 번졌다. 1938년 평양신학교에서의 集合行動을 종교적 저항의 시발로 하여, 1944년에는 역시 長老教의 朴東基를 주축으로 民族的 宗教運動이 일어났다. 특히 朴東基는 경북 普賢山에 시온산제국을 세웠는데, 기성교회의 굴복에 반발하여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는 聖日本帝國을 조직하여 일본에 저항하였다. 信徒 1,000여명과 함께 일장기와 神社를 파괴하고, 참배·굴복한 교회를 탄핵하는 한편, 帝國的 學校教育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長老教를 주축으로 한 애국적 종교저항은 해방이 될 때까지 규모에 정도에 차이질 뿐, 끊임없이 일어났다. 미나미(南次郎) 총독이 제국의회 시정보고에서, 조선통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교인들이라고 했을 정도이다.⁷¹⁾ 결국 日帝로서도 무조건 탄압할 수가

71) 박영창, 『정의가 우리를 부를 때』, 1980, 307~308쪽; 韓督義, 앞의 책, pp.202~203.

없어서 日本教團의 통솔하에 두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超越성을 향한 보편종교의 불합리한 체제와 이념에 대한 저항이, 日本帝國主義로서는 그 실현을 목전에 앞두고 얼마나 큰 걸림들이었는지는 해방과 함께 일어난 사실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해방이 되자 전국 각지에서 神社·神祠 파괴 및 소각이 8일 동안 136건이나 발생했던 것이다.

3. 북한의 宗教復活과 意識·體制의 變化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시된 폴란드와 日帝下에서의 宗教 對 특수이데올로기·체제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宗教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現實을 극시할 때 그 힘은 대단하다. 특히 否定的인 현실을 직시한다고 할 때, 변혁을 위한 추동력의 근원은 역시 神의 召命에 따른 超越성에 있다. 超越성을 지향하는 한 現實은 부정되고 청산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쯤되어서는 否定되어야 할 대상은 단지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한 체제에 밀착·동조하고 있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 어떠한 이념도 포함된다. 여기서 어떠한 체제나 이념이라고 할 때, 그것은 宗教의 현실적 이상과 크게 괴리를 낳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특수한 金日成式 共產體制가, 이제 宗教가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이상과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이는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主體이즘의 입장에서 종교를 탄압해 왔었던 史實이다. 처음부터 보편종교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과 달리, 일부 종교의 聖地이기도 한 북한에서 보편종교의 단절은 단순히 共產主義의 反宗教觀으로만 설명되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主體思想이 일반적인 共產主義와 다르며, 또한 그에 입각한 북한체제가 金日成을 神格化하고, 金正一을 教主로 한 單一信仰共同體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북

한체제의 특수성과 주민 意識構造의 특성은 이미 앞에서 거론한 대로이다.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체제가 보편종교와 괴리를 보이는 또한가지는, 전자가 정치적 권력을 업고 나타난 사이비종교라는 것이다. 이것은 政權이 바뀌면 위세만만한 사이비종교(主體思想)는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金日成·金正一을 주축으로 단일신앙공동체로의 지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세계사의 흐름에 편입시키려는 대외적인 압력과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내적 폐쇄와 외적 개방의 모순속에서, 북한은 이제까지의 내적 강화에만 몰두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경제면에서의 낙후는 외교를 통한 對外體制와 바깥이념의 접촉·유입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직접적인 宗教外交나, 宗教外的 요인을 통한 直敎는 북한의 體制와 意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게 된 것은, 主體思想의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宗教가 主體思想의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한 세대간의 종교단절은 달리 표현해서 한 세대간의 주체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편종교의 유입이 처음부터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달리 보면, 주체사상의 현실화된 모습은 종교가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이상과 유사하여,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당분간 그대로 잔존할 制度나 意識體系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점차 宗教의 보급이 커져서 주체사상과 對應하게 되면 양상은 달라진다. 폴란드나 日帝下에서와 달리 한 세대간의 단절은 있었을지언정,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초월성을 향한 否定의 論理는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종교는 사회변혁의 메카니즘으로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수호집단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각방면의 원조를 북한이 바라는 입장에서, 對外的 이미지 때문에 큰 종교탄압은 예상되지 않는다. 결국 폴란드처럼, 주체사상과 종교가 공존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 때, 주체사상은 통치이데올로기로서 핵심계급들의 표상이 될 것이고, 종교는 기본계급과 반동계급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 자연히 북한주민의 意識構造의 특징으로 본 ① 集團主義, ② 打率性, ③ 勞動第一主義, ④ 排他的 優越意識, ⑤ 金日成 父子에 대한 家父長的·信仰的 忠誠心, ⑥ 傳統意識과의 단절 등에 변화가 일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일구어 낸 북한체제의 특수한 모습, ① 金日成神政·親庭世襲, ② 불가항력적이었던 3계급구조, ③ 철저한 集團性, ④ '新人間' 개조체제, ⑤ 傳統文化와의 단절, ⑥ 食衣住의 곤란 등에도 역시 동시에 변화가 일게 된다.

그러나 변혁을 위한 기제로서 宗教가 역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특수체제나 이념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종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宗教가 정치적 도구로서의 사명을 갖고 북한에 들어갈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역기능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종교가 비참한 북한주민들에게 구원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主體思想에 젖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선전용 정치이데올로기로 보이거나, 그렇게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宗教外交가 政治外交·經濟外交와 달리, 순수한 宗教人들에 의해 民間次元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이 정치적 도구로서 宗教外交에 옹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것은 종교가 순수한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 지킬수록, 超越的 變革의 힘은 커지기 때문이다.

V. 맺으며

본 논문은 북한에 宗教가 보급될 때, 북한체제와 주민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찰이다. 때문에 다분히 宗教復活이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전제를 포함하여, 북한체제의 현실을 좀더 명쾌히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宗教의 시각에서 본 북한은 더욱 특이하다. 본고에서는 북한을, 主體思想을 教理로, 金日成을 現人神으로 하여, 司祭 金正一이 이끄는 單一信仰共同體로 파악하였다. 북한이 既成宗教 대신에 新興宗教인 金日成敎로서 북한주민을 意識改造하고 體制를 개편해오는 동안 南北간의 이질성은 크게 심화되었다. 앞으로 統一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이러한 異質化 현상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同質性의 내용도 발굴해야 한다. 同質性을 토대로 상대적·적대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이질화된 현상을 적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북한측에서 보면 남한측의 이질화된 모습 역시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文化的 相對主義에 입각하여 서로의 이질적인 모습을 이제 다소간 인정하는 선에서 統一論議는 시작되어야 한다.

보편종교는 어느 특수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同質性을 회복하게 해주는 좋은 가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북한종교론은, 주로 탄압정책속에서 주체사상의 틀속에 묶여 있는 몇몇 既成宗教들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북한체제가 하나의 現實宗教인 金日成敎의 이념속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치 神道가 일본의 모든 가치체계의 上位概念인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정책적인 측면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이자 삶의 원리가 되어 있는 主體信仰의 실패여부에 대해선데, 이점은 북한주민 스스로의 판단에 기을도록 해야 좋을 것이다. 한 세대를 끌어온 主體思想이 현실적으로 한

계를 드러냈다고 하여, 외부에서 선불리 비판·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개방화를 움츠러들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참 고 문 헌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평양, 노동당출판부, 1967.
- 통혁당선전부, 『김일성주의의 원리』, 1974.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노동당출판부, 1982.
- 김일성방송대학강의록, 『철학강좌』, 1973.
-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윤진현, 『김일성 주체사상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6.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철학사』(광주편집부위음, 『조선철학사연구』, 광주, 광주출판사, 1988)
- 공종원, 「북한공산정권의 종교탄압실태」, 김정기편,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심일섭, 「북한의 선교정책과 기독교 신앙운동」, 『한국기독교와 제3세계』, 서울, 풀빛, 1981.
- 원용국편, 『기독교와 공산주의』, 서울, 성광문화사, 1980.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 국토통일원, 『북한국민 의식구조 변화실태』, 1983.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7.
-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88.
-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특질」, 『북한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안병영, 「북한엘리트의 구조분석」, 《아세아연구》16-2, 1973, 6월호.
- 이태욱, 「북한경제: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강영지, 「남북한 유엔가입, 북한은 고립을 탈피하는가」, 《신동아》, 1991, 9월호.
- 정재식, 「부정의 논리와 사회변혁」, 《연세논총》21집, 연대논문집, 1985.
- 오세철·안병영편,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 서울, 박영사, 1986.

- 양정숙, 「폴란드 고무우카정권 붕괴에 관한 연구」, 외대석사논문, 1988.
- 박석진, 「폴란드 노동운동이 정치권력에 미친 영향」, 외대석사논문, 1982.
- 민경배, 「일제말 기독교인의 최후저항」, 『한국기독교와 제3세계』, 서울, 풀빛, 1981.
-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울, 고려원, 1991.
-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한국공산권연구백서』, 1989.
- 통일연수원편, 『통일문답』, 1991.
- 정태혁·신범타, 『북한의 절과 불교』, 서울, 민족사, 1990.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 박완신, 「북한과의 기독교 교류 전망—북한교회, 정치적 도구라도 변화 되도록 기도하자—」, 《신앙계》 294호, 국민일보사, 1991, 9월.
- 〈한겨레신문〉, 1991.8.31, 「남·북한 불교계 11월 미국서 첫 회동」.
- 《歴史評論》 1991. 4月號, 「北韓共產制と日本君主制との比較」
- 五島茂·坂本慶一, 「ユートピア社會主義の思想家たち」, 『オウエン, サン・シモン, フーリエ』, 東京, 中央公論社, 1987.
- 河合弘子, 「合管法の背景・問題点」, 《現代コリア》 47號, 1985, 1月號.
- 家永三郎, 『日本思想史における否定の論理の發達』, 東京, 新泉社, 1983.
- 伊東孝之, 「ポーランドにおけるノメンクラトゥラ論争(上)」, 《共產主義と國際政治》 通卷23號, 東京, 國際問題研究所, 1982.
- 韓哲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서울, 고려원, 1989.
- Bellah, R.N., *Religion and Progress in Modern Asia*, N.Y., The Free Press, 1965.
- Engels, F., *Anti-Dühring*, Moscow, Progress Co., 1969.
- Marx, K., "Theses on Feuerbach", *The Marx-Engels Reader*(ed. by R.C. Tucker), N.Y., Norton and Company, 1978.
- Weber, M.,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trans. by T. Parsons), Allen and Unwin, 1948.

- Feuerbach, L., *The Essence of Christianity*, N.Y., Harper and Row, 1957.
- Dennis, J.S., *Christian and Social Progress*, Edinburgh, Oliphart Anderson and Ferrier, 1899.
- Rothschild, J., *East Central Europe, between the Two World Wars*,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83.
- Staar, R.F., *Communist Regions in Eastern Europe*, California, Stanford, 1973³.

北韓의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研究

- 所得保障制度和 醫療保障制度를 中心으로 -

金淵明(中央大 講師)

〈 要 約 文 〉

최근에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의 統一問題가 부각되면서 통일 일을 대비한 남북한 체제비교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불리는 연금 등의 所得保障制度和 醫療保障制度가 북한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를 할당체계(제도의 적용방법), 재원조달체계 그리고 급여체계 등을 중심으로 現況을 살펴보고 어떤 問題點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해야할 점을 추출하고 남북간의 사회복지제도의 統合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부차적인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안된 年金등의 소득보장제도에 강조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정리할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는 社會保險, 社會保障의 개념이 남한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 社會保障이라는 개념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社會保險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社會保障'이라는 용어가 勞動力이 영구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었을 경우 국가가 연금 등의 現金·現物給與를 지급하는 長期的인 所得保障制度로 이해하고 있고 사회보험은 勞動力의 일시적 상실시(6개월 기준) 소득을 일시적으로 보

장해주는 (예를 들어 산전산후보조금) 短期的인 所得保障制度로 이해하고 있어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 상위, 하위개념이 아닌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별도의 집단에게 적용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社會福祉制度의 形態와 發展은 '사회의 물질적 부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우선적으로 돌린다'는 북한 사회주의사회의 이념과 그 배분방법에 있어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라는 과도기로서의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념과 분배원칙은 어디 까지나 이에 상응하는 物質的 土臺가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충당하는 사회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經濟的 狀況(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부의 축적 정도)이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한 국가예산지출중 과중한 國防費支出이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 桎梏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를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보면 대략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1945.8 - 1956년까지의 '制度의 形成期', 둘째는 1957-1970년 까지 '制度의 整備·補完期' 그리고 1971-1985 까지를 제도의 '形態的' 完成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도의 형성기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가 무상치료제와 사회보험·사회보장제를 근간으로 하여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춘 시기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정비·보완기는 의료보장제도에서 醫師擔當區域制와 豫防醫學의 강화로 특징지워지는 무상치료제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며 소득보장제도는 큰 변화가 없다. 제도의 형태적 완성기는 상당히 포괄적인 급여 내용을 포함한 '勞動法'(1978), '人民保健法'(1980)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제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가 1986년에 실시됨으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社會福祉의 普遍主義적 성격이 관철된 시기이다. 1986년 이후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소득보장제도중 '社會保障制'는 장기적 노동능력상실자에게 소득보장을 해주는 제도이며 適用基準은 6개월 이상의 노동능력상실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사무원, 그리고 농민 등 전 '인민'을 포괄하고 있다. 財源은 국가일반예산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볼때 ① 國家功勞者 年金 ② 年老年金 ③ 勞動能力喪失年金 ④ 영예군인과 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⑤ 인민군 후방가족 원호 보조금 등이 있다. 연금의 支給條件은 일정한 노동근속연한을 채워야 하며 연금의 종류 그리고 직업의 성격에 따라 노동근속연한의 조건이 틀려진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勤續年限은 85년 이후 20년으로 5년이 늘어났으나 광산, 지하 노동종사자는 근속연한이 짧고 연금수준도 높다. 연금의 賃金代替率은 35%에서 100%까지 다양하며 국가공로자의 경우는 特惠가 주어진다.

사회보험제는 6개월이하의 단기적 노동능력상실자에게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이며 適用階層은 노동자, 사무원 등 이다. 농민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없고 協同農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財源調達은 사회보험방식이며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총소득의 1%, 국가 기업소, 사회단체 등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支拂賃金總額(현물 급여 비용까지 포함)의 5-8%를 납부하는데 노동강도가 높은 직장의 보험료율이 높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급여는 ① 一時的補助金 ② 産前産後補助金 ③ 葬禮補助金 ④ 醫療上 幫助費 등이 있으며 급여비율은 임금의 60-100%까지 다양하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대한 최근의 豫算 規模는 북한자료에서 거의 찾아볼수가 없다. 다만 56년의 경우를 보면 사회보험료수입이 전체 북한국가수입의 1.6%를 차지하고있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國家豫算의 비율은 63년도에의 경우 3.0%로 확인되었다. 사회보험의 지출예산내역은 상당부분이 보조금지불과 휴양소사업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勞動力을 상실하였을 경우 과연 어느정도의 소득보장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연금의 경우 한 사례에 의하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無償治療制와 醫師擔當區域制가 그 기본을 이루는 國營醫療서비스 (National Health Insurance) 方式이며 대상계층은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普遍主義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費用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전체 국가예산의 2.3%('82년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보장제도의 給與範圍는 외래, 입원, 왕진, 요양비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모든 치료가 무상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부분에서는 아직도 本人負擔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시·농촌간의 차이 그리고 의료시설의 상대적 낙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무상치료제에 걸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어느정도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0여년에 걸쳐 구축한 의료보장제도의 成果는 높게 평가할만하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전국민을 포괄하는 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한 남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점에서 補完해야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할 경우, 현재의 제한된 자료와 미흡한 研究水準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자칫 잘못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더 많다.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比較만이 현재의 수준에서 시도할수 있는 최대치로 생각된다.

남북간의 제도비교를 통해 볼때 북한의 제도는 비교적 단순한데 남한의 제도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의 경우 국가예산과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財政運營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북한은 국가예산의 비율이 높은 등의 특징을 발견할수 있다.

또한 소득보장부분에서 북한의 제도는 사실상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는데 남한의 경우는 아직 農漁民과 都市自營者에 대한 연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年金制度의 실시가 요망된다. 또한 농촌의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農業災害補償制度의 실시도 요망된다. 의료보장의 부

문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의 측면에서 남한이 높은 편이나 급여의 포괄 범위나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특히 농촌), 본인부담의 정도, 도시농촌간의 의료서비스의 隔差와 제도운영의 문제, 그리고 치료중심의 의료보장 등의 문제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의 變化展望을 보면 현재의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人民生活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북한의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현재의 수준은 유지하리라 전망된다.

I. 序 論

1. 研究 目的

최근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 통합과 동유럽의 붕괴 그리고 소련체제의 대변혁으로 상징되는 동서간 정치구조의 지각 변동과 함께 '脫冷戰의 時代'가 도래하면서 그 영향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남북간의 각종 교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남북간의 統一이라는 숙명적 과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체제가 상이한 남북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동서독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체제가 상이한 南北의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체제의 단점과 장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북한의 社會福祉制度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간의 체제통합시 經濟統合이나 政治統合

문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의 측면에서 남한이 높은 편이나 급여의 포괄 범위나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특히 농촌), 본인부담의 정도, 도시농촌간의 의료서비스의 隔差와 제도운영의 문제, 그리고 치료중심의 의료보장 등의 문제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의 變化展望을 보면 현재의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人民生活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북한의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현재의 수준은 유지하리라 전망된다.

I. 序 論

1. 研究 目的

최근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 통합과 동유럽의 붕괴 그리고 소련체제의 대변혁으로 상징되는 동서간 정치구조의 지각 변동과 함께 '脫冷戰의 時代'가 도래하면서 그 영향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남북간의 각종 교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남북간의 統一이라는 숙명적 과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체제가 상이한 남북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동서독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체제가 상이한 南北의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체제의 단점과 장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북한의 社會福祉制度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간의 체제통합시 經濟統合이나 政治統合

못지않게 양체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무시 못할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獨逸의 통일과정을 보고 정부기관의 한 보고서에서는 통독과정에서 서독의 높은 社會福祉水準이 통일기반중의 한가지 동력이 되었음을 지적한 적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南韓의 사회복지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醫療保障制度和 所得保障制度이며, 이미 알려져 있기로는 北韓의 사회복지제도중 보건의료부문에서는 '無償治療制'가 확립되어 있고, 소득보장부문에서는 全國民의 年金과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시 지급되는 각종 補助金(예를 들어 치료기간의 중의 임금보조)이 실시되고 있어¹⁾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한보다 앞서 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북한의 醫療保障制度에 대해서는 최근에 몇개의 보고서가 나와 있으나 의료보장제도와 더불어 社會保障制度의 기둥이라 할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특히 北韓의 연금제도와 각종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중 연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現況, 문제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 주요목적이며, 국내의 연구상황을 고려하여 소득보장제도쪽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南韓과 北韓의 醫療保障制度和 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남북간의 체제통합시 사회복지제도에서 어떤 示唆點을 얻을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개략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점이 연구의 부차적 목적이다.

2. 研究 方法 및 內容

1) 예를 들어 북한의 한 고위인사는 "우리는 국가가 戶主가 되어 모든 인민들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철저히 보장해두는 제도를 수립해 놓았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시해(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와의 인터뷰, 「사회평론」, 사회평론사, 1991.7월호, p.282

본 연구는 주로 文獻研究에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北韓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1차자료가 국내에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또한 북한 자체가 자료공개방법이 비과학적이어서 (특히 각종 통계치 발표) 北韓 사회복지제도의 實體를 밝히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한계점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나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자료를 되도록이면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 한가지 연구방법의 문제점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 얼마나 객관적으로 北韓의 社會福祉制度를 인식·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북한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한 몇편 안되는 연구결과를 보면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북한제도의 實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애를 가져다 주는 문헌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남북의 사회복지제도를 보완·발전시켜 향후의 통일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北韓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려는 研究視角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에서 매우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社會保險, 社會保障개념을 정리해 보고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할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시론적 수준에서 구성해 본다.

둘째,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醫療保障과 所得保障制度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북한의 醫療保障制度和 所得保障制度의 현황을 할당체계, 자원조달체계, 자원운영체계, 급여체계 등의 분석틀로 분석하여 보고 北韓 제도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찰한다.

넷째, 북한의 醫療保障制度和 所得保障制度를 남한의 제도와 비교하여 남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추출해 보고 향후 남북간의 體制統속에 사회복지부분에서의 시사점을 추출해 본다.

II. 北韓社會와 社會福祉

매우 독특한 社會主義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北韓 사회복지제도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예비적인 고찰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資本主義國家 혹은 南韓에서 사용하는 '社會福祉', '社會保障', '社會保險' 이라는 개념이 北韓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사회복지) 南韓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매우 상이하게 사용되고(사회보장, 사회보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용어사용의 혼동을 줄여야 하며, 둘째는 北韓에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상의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틀 혹은 방법론적인 틀에 대한 검토이다. 즉 北韓 社會主義라는 체제속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왜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단순히 제도의 소개에 머물지 않는(물론 자료의 한계로 현황파악조차도 힘들지만) '政策的 含意'를 갖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북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일천한 연구상황을 볼때 매우 힘든 과제이며 본고에서도 '試論的'이고 '假說的'인 수준의 논의를 전개할수 밖에 없다. 그러면 먼저 북한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사회보험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北韓에서의 社會保障, 社會保險의 概念

北韓사회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처럼 '社會福祉'라는 용어가 학술적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떠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社會保障', '社會保險'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사회보험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南韓과는 상이하게, 매우 독특하고 한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社會保障, 社會保險의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용어사용에서 파생되는 혼란을 피할수 있다.

먼저 남한의 경우에는 법적 규정에 의하면 “社會保障이라 함은 社會保險에 의한 제공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公的扶助를 말한다”²⁾ 라고 하여 社會保障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를 포괄하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그리고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국가시책을 ‘社會福祉事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³⁾.

그러나 學界에서는 ‘社會保障’이라는 용어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등 크게 3가지 종류의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⁴⁾ ‘社會福祉’라는 용어는 社會保障制度를 포함하여 주택과 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와 같이 법적 규정 혹은 학계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社會保障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北韓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南韓에서 사용하는 社會福祉라는 용어가 없고, 사회복지보다 더 제도의 포괄범위가 넓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⁵⁾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 내지는 학술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社會保障’ (혹은 국가사회보장)과 , ‘社會保險’(혹은 국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편), 「사회복지법전」, 1989.9, p.15

3)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전」, p.19

4) 김영모 (편), 「현대사회보장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제 1장 그리고 연하청 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8) 참조

5) 이 용어는 북한이 문헌과 각종 사전에 등록된 공식화된 용어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에 의한 분배(생활비) 이외에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권에서 사용하는 주택, 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사회복지혜택’ 혹은 ‘사회적 임금’ social wage 개념보다 넓은 개념으로 무상의 보건의료, 무상교육, 연금, 주택외에 국가가 산값으로 공급하는 생활필수품(의복, 식량) 과 각종 보조금까지 포함한 모든 혜택을 포함한다.

가사회보험)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뜻을 가진 매우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용어의 개념도 남한과는 매우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법령이나 노동당회의 자료 등의 공식문헌에서 社會保險, 社會保障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45년이후로 생각되나 이 문헌들에서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Ⅲ장 1절 참조). 社會保障, 社會保險에 대한 북한식의 개념을 정확히 알수 있는 북한의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社會保障에 대해 보기로 한다. 北韓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곧 ‘國家社會保障’을 의미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동안 일할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⁷⁾ 혹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동안 (6개월이상) 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들려지는 국가적 혜택”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의무탁하거나 부상, 질병으로 혹은 나이가 많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社會保障制’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國家社會保險’은 “국가가 ……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

6) 북한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보험’이라는 용어와 ‘국가사회보장’, ‘국가사회보험’이라는 용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행정적 책임 아래, 대부분이 국가예산을 통해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인 듯하다.

7)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서울: 지양사, 1989년 재인쇄), p.82

8) 「경제사전」, 제 1권,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과학연구소, 1985), p.205

주는 제도”로서 “국가사회보험은 생활비를 받는 현직일군들중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社會保障과 구별된다”⁹⁾고 하여 社會保障과의 차이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의 社會保險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회보장은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1978년에 북한에서 채택된 ‘社會主義勞動法’ 제 73조에서는 “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國家社會保險制’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國家社會保障制’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고 하여 두 제도를 완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남한의 경우 社會保障이라는 개념이 社會保險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치징하는 포괄적이고 넓은 상위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 상위, 하위개념이 아닌 勞動能力의 상실정도를 기준으로 별도의 집단에게 적용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구분을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社會保障 제도의 경우는 주로 연금등의 장기적인 現金給與 위주로 되어 있고 社會保險은 단기적인 현금급여로 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 北韓의 독특한 개념구분을 전제하지 않고 南韓에서 사용하는 社會保障 혹은 社會保險의 분류틀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인식할 경우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醫療‘保險’방식을 취하고 있는 남한의 의료보장제도를 國營醫療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을

9) 「경제사전」, (1985), p.205

〈 표 1 〉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본 북한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구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현금급여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현금급여
① 국가공로자 연금 ② 연로연금 ③ 노동능력상실연금 ④ 유가족 연금 : ⑤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⑥ 인민군 후방가족원호 보조금	① 일시적 보조금 ② 산전산후 보조금 ③ 장례보조금 ④ 의료상방조비 ⑤ 휴양 및 요양비

취하고 있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평면적으로 대비시켜 비교하거나 혹은 南韓에서 '국민층'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혜택을 표현하는 특수한 용어인 '생활보호사업'에 북한의 국가공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지급이나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시키는 것¹⁰⁾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2. 北韓 社會福祉制度的 變化에 대한 理論的 接近

北韓이 포함되는 사회주의나라의 성격과 정치,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그동안 全體主義論, 엘리트 葛藤理論, 近代化論, 收斂異論 등이 존재했었다¹¹⁾. 그리고 사회주의의 여러가지 제도중에 한가지

10) 국내에서 북한의 사회보장, 사회보험제도를 연구한 여러 문헌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박흥우,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비교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8, pp.51-53, 57-59

전응열, 박길준,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및 현황 비교 고찰」, 국토통일원, 1972, pp.79-81

제도로 볼수 있는 社會主義사회복지제도의 성격과 변화를 파악하려는 연구도 역시 수렴론, 근대화론 등의 이론 혹은 George와 Manning의 규범론¹²⁾ 등의 영향아래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 이론들은 社會主義社會의 사회복지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이론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¹³⁾. 이런 이유에서 소련의 사회복지제도를 대략적으로 훑어본 Mishra는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복지의 논의는 사실적 증거나 토론이 충분하지 못하며 … 다양한 해석과 일반화가 잠정적이고 탐색적¹⁴⁾ 일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이론의 대부분이 서구 資本主義圈의 시각에서 社會主義의 社會福祉制度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자체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성격과 기능을 곡해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접근법과는 좀 상이하게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북한자체의 인식에 따라 북한사회의 전반적 변화과정속에서 파악하는, 즉 북한에서 주장하는 ‘北韓의 社會主義·共產主義建設理論’에 입각해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접근법을 ‘試論的인 水準’에서 모색해 보기로 한다¹⁵⁾.

그러면 먼저 北韓의 社會主義·共產主義建設理論에 대하여 살펴보기

11) 이 이론들에 대한 정리와 검토는 극토통일원, 「기존 통일 및 북한 관계연구의 주제별·방법론별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1981 참조

12) Vic George & N.Manning, *Socialism, Social Welfare and the Soviet Union*, (London, R.K.P, 1980). 이들은 사회주의사회(소련)에서의 사회복지의 이념을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현실과 이상이 상이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규범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13)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상은, 「사회주의 사회복지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1991.2, 제 3장 그리고 오정수, 「북한의 사회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전개과정」,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14) R. Mishra, *Society and Social Policy : Theoretical Perspectives on Welfare*, 표갑수·장소영(공역),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2), p.131

15) 이상은은 ‘소련’의 사회복지를 접근하는 이론적 틀로서 ‘과도기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본고와 유사하다. 이상은, 앞의 논문

로 한다¹⁶. 北韓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은 크게 1) 공산주의사회와 그 실현의 전략적 목표, 2)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노정, 3)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원리, 4)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과업과 방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주체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의 기본틀이 되는 부분은 1)과 2)로서 社會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의 기본성격에 대한 규정 및 사회주의사회로부터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는 社會主義와 공산주의사회의 기본성격에 대해서 主體理論에 입각하여 共產主義社會는 “근로인민의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이다. 이 공산주의사회는 첫단계인 사회주의사회와 이후의 완성된 공산주의 사회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첫단계의 사회주의사회는 共產主義的 성격을 본질로 하면서 過渡的 性格을 공유하는 ‘두가지 성격’의 사회이다. 즉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은 공산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미숙성,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을 아직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이 사회의 제한성을 반영한다¹⁷” 이러한 社會主義社會의 두가지 性格論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가 완성된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하는 과정을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는’ 역사적 합법칙성의 구현과정으로 이해한다.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두가지 성격이 공존할수 밖에 없는 歷史的 發展段階에 있기 때문에 두가지 성격을 다같이 고려하여 이에 맞게 정책을 작성,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공산주의적 성격에 기초한 정치도덕적 자극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켜 과도적 성격을 이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두가지 성격에서 유래하는

16) 이 부분은 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노선”,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서울: 한울출판사, 1990), 2장과 북한원전인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태백, 1989년 재인쇄)를 참조하였음.
17)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앞의 책, p.57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의 合法則性을 준수하고자 함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의 두 단계론, 사회주의사회에 두가지 성격론, 사회주의사회에서 완성된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의 합법칙성론이 북한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理論의 토대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북한은 아직도 社會主義 段階이지 共產主義 段階는 아니라고 주장되고 있다. 북한은 1961-70년사이의 제 1차 경제 계획기간에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역사적 과제가 실현된 결과, 1970년부터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전설단계에 진입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1986년의 시정연설에서 제 3차 7개년계획 (87-93)년 기간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매진해야 된다는 요지의 시정 연설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도기 적인 社會主義社會에서 사회 복지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

자본주의권에서 통칭 社會福祉로 부르는 제도들을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생성된 물질적 부의 사회적 분배과정을 담당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富의 사용방법 그리고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을 보게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北韓의 각종 정책의 전개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형태 등을 '북한의 사고 방식'대로 이해할수 있다. 물질적 부의 사용방법 그리고 사회주의적 分配原則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 '社會主義憲法'과 '社會主義勞動法'에 명문화되어 있다.

먼저 物質的 富의 사용방법에 대해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物質的 富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福利增進에 돌려진다"(헌법 제 23조)¹⁸⁾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노동법 11조)는 규정에서 알수 있듯이 北韓에서는 物質的 富가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18)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1972.12, 「북한법령집」, 제 1권, (서울:대륙연구소, 1990), p.29.

있다. 다시말하면 북한에서는 물질적 부는 우선적으로 ‘人民’들의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노동을 통해 얻어진 社會的 富의 分配原則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社會主義 段階 이후에 나타나는 이른바 공산주의사회의 분배원칙인 “수요(욕구)에 따른 분배”가 아닌 과도기의 사회로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사회주의 노동법 11조)을 천명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부의 분배유형을 ‘생활비’(월급)와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혜택으로 볼수 있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두가지로 구분하는데¹⁹⁾,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동정량’을 제정하고 노동부류에 따라 생활비를 차등지급하는 ‘생활비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社會主義的 분배원칙을 관철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여기서는 사회복지가 관심이므로 생활비의 분배방법에 대한 더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이렇게 과도기 사회인 社會主義社會에서 생활비가 차등지급되는 것처럼 사회적 부의 분배방법중의 하나인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역시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즉 “추가적 혜택은 그 본질과 사명으로 부터 대부분이 均等分配의 방법으로 실현되지만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부 추가적 혜택은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 혜택의 실현에서 均等分配와 差別的 分配를 옹계 배합하여 실현하는 것은 추가적 혜택을 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지레대;역주)으로 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력적 열성과 공로를 물질적으로 평가하고 추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²⁰⁾”. 또한 이러한 社會主義的 원칙에 입각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19)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추가적 혜택은 그들이 노동에 따라 받는 분배몫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북한최고인민회의제 6기 제 2차회의 중 립춘추 대의원의 보고자료 ‘사회주의 노동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IV집, 1988, p.227

20) 최경인, “우리나라에서 추가적 혜택에 대한 통계적 연구”, 「경제연구」, 1989년 2호(누계 6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p.36

의 분배방법은 “아직 모든 것을 수요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완전히 無償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분배와 구별된다²¹⁾”고 북한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물질적 부를 ‘인민의 복리향상’에 우선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사고에서 1946년의 ‘社會保險法’, 1948년의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1976년의 ‘어린이 보육교양법’ 1978년의 ‘社會主義勞動法’, 1980년의 ‘人民保健法’ 그리고 1985년의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등 북한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각종 사회복지정책(법)의 전개과정을 파악할수 있다 (북한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서술함). 또한 Ⅳ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老年年金이나 勞動能力喪失年金 그리고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시 지급되는 ‘一時的 補助金’ 등이 해당 개인이 받던 생활비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도 바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라는 과도기의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이 물질적 부의 분배형태의 하나인 사회복지급여의 形態에 까지 관철되는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

이상에서 전개해 온 북한사회복지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형태를 인식하는 이론적 논의는 北韓의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상황을 파악할 ‘充分條件’은 될수 있으나 ‘必要條件’은 되지 못한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법령으로 규정된 사회복지제도를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북한의 ‘經濟能力’(물적 토대)에서 찾아야 한다.

뒤에서 보겠지만 北韓은 南韓과는 다르게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거의 국가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크게 人民經濟費, 社會文化施策費(사회복지비용은 여기에 포함됨), 國防費 등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인식에 따른다면 “국가예산지출에서 국가관리비, 국방비와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회문화시책비는 비생산적 지출에 속한다²²⁾”. 그런데 “비생산부분은 물적 부나 소득을 창출하지

21) 「경제사전」, 제 1권, p.208

22) 「경제사전」, 제 1권, p.664

않으며 ...그 업무 내지 활동은 생산부분에서 창출한 국민소득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생산부분이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非生産的 支出의 몫을 늘려가는 것(즉 사회 복지비의 확대) 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이렇게 볼때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率을 기록하던 70년대 중반까지²³⁾는 북한의 헌법적 규정에 따라 각종 '근로자의 복리'를 높히는 제도의 일환인 사회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이후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경제의 성장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애초의 경제의 成長目標치에 차질이 생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北韓은 '사회주의의 完全勝利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한다' 는 3차 7개년계획의 성장목표치를 공업생산(연 10%성장) 1.9배, 농업생산 1.4배, 사회총생산액(연 8.8%)성장 1.8배, 국민소득(연 7.9%)성장 1.7배 등으로 잡았다. 이 목표는 70년대의 6개년계획과 제 2차7개년계획보다 낮게 설정된 것인데, 國民所得의 경우 6개년 계획에서는 1.8배(연 10.3%성장), 그리고 2차 7개년 계획에서는 1.9배(연 9.6%)의 成長目標였음에 비해 3차 7개년 계획에서는 1.7배(연 7.9% 성장)로, 그리고 공업총생산액에 있어서는 6개년계획과 2차 7개년계획에서 공히 2.2배로 정한데 비해 3차7개년 계획에서는 1.9배로 하향조정되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목표치를 과거의 경제계획보다 하향설정한 것은 북한경제의 성장속도가 그만큼 둔화되었다는 측면도 고려될 수 있으며, 그와함께 지금까지의 목표치설정이 경제실정을 무시한 상향책정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²⁴⁾ 또한 "1980년에 세운 10대 展望目標는 본

23) 북한의 경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였음.

정상훈,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론적 고찰",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같은 책

GNP개념을 북한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GNP는 1970년대 10%의 성장율이 1980년대에는 5%아래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24) 김남식, "80년대 북한의 움직임",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래 1989년도를 계획년도로 한 것이나 北韓은 이 목표치 대부분을 제3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 1993년도로 4년간 연장하였다²⁵⁾.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정한 생산부분의 성장목표치가 둔화되거나 혹은 하향조정된다면 이것이 社會文化施策費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정부예산중 인민경제비의 비율이 80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사회문화시책비의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²⁶⁾.

北韓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수준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國防費로 돌려지는 국가예산이다. 국방비나 사회문화시책비는 모두 비생산적 지출로 인식되나 특히 國防費의 支出은 북한의 소비수준과 사회복지수준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며(이것은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²⁷⁾), 北韓도 과도한 國防費지출이 북한사회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음이 여러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국가예산의 30%를 넘어 급증하던 60년대 말의 상황을 엄두에 두면서 1970년 朝鮮勞動黨 제 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국방에 대한 지출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지출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경제건설에 돌릴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했을 것이고 우리 인민의 생활은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²⁸⁾” 라고 보고했으며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인민들이 지금보다 더 풍요

이해를 위하여》, (서울:현장문학사, 1989), p.164

25) 김남식, 앞의 논문, p.165

26) 물론 사회문화시책비를 비롯한 북한의 국가예산은 절대액수에서 계속확대되고 있다(국토통일원, 「북한개요」, p.155 참조). 그러나 사회문화시책비의 절대액수의 증가가 자연적인 증가요인(예를 들어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수혜자가 많아지거나 학생수의 증가로 교육비지출이 늘어나는 현상 등)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혹은 1인당 수혜액의 실질적 증가를 의미하는지는 현재의 북한에 대한 정보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27) 남한도 과도한 국방비지출로 사회복지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점은 평화연구소, 중앙대 「사회와 복지연구회」, “남북한사회복지비교”, 「한반도의 군축과 사회복지」 (서울, 한울, 1991) 참조

28) 김일성, 조선노동당 제 5차 당대회 보고, 소련 과학 아카데미 세계 사회주의연구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1985), 국토통일원 (역).

한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미국의 항시적 위협과 남북간의 군비경쟁때문에 허리를 졸라매면서 근검하게 살고 있다²⁹⁾ 고 하여 國防費가 북한의 物質生活 향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표 2는 北韓의 국가예산중 국방비지출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중 국방비의 비율은 60년대 중반에 한때 30%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하락하여 12%선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北韓의 발표치이고 각 관련기관마다 북한의 군사비비율이 다르게 추계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국내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실제 國防費支出 비율을 80년대의 경우 26%-31%로 추계하고 있으며 국방비지출이 社會文化施策費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⁰⁾. 아뭏든 북한의 국방비지출을 북한 발표대로 받아들이던 혹은 '은폐된 수치'로 받아들이던 간에 國防費支出이 북한의 사회복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수 없다.

< 표 2 > 북한 국가예산지출의 기능별 구성비

연 도	세출총액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국방비	관리비
1955	100.0	74.9	9.5	6.2	9.7
1957	100.0	70.5	18.2	5.3	6.0
1961	100.0	73.0	21.4	2.5	3.1
1963	100.0	74.0	21.5	1.9	2.6
1965	100.0	68.0	19.7	8.0	4.3
1967	100.0	49.9	17.5	30.4	2.2

「북한의 정치경제」, 1988년, p.170에서 재인용

29) 송두울교수(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김일성과의 인터뷰내용 (한겨레 1991.7.5일자)

30) 이달희, 앞의 논문, p.220.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재정규모안에서는 “군사비의 1%증가가 사회문화시책비를 0.3%감소시킴으로서 사회적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0	100.0	47.0	19.9	31.3	1.8
1972	100.0	55.5	25.4	17.0	2.1
1975	100.0	57.2	24.3	16.4	2.1
1980	100.0	60.5	22.2	14.6	2.7
1981	100.0	61.3	22.0	14.8	1.9
1982	100.0	62.5	20.9	14.6	2.0
1983	100.0	63.1	20.2	14.7	2.0
1984	100.0	64.4	19.9	14.6	1.1
1985	100.0	62.5	20.7	14.4	2.4
1986	100.0	63.5	20.3	14.1	2.1
1987	100.0	64.3	20.3	13.9	2.2
1988	100.0	67.2	19.0	12.2	1.6
1989	100.0	67.4	18.9	12.0	1.7
1990	100.0	67.5	18.8	12.1	1.6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 1946-1985」, pp.156-157
 통일원, 「북한개요 '91」, 1990, p.157 에서 재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北韓의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그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물질적 부를 인민들의 福利增進에 우선적으로 돌린다'는 북한사회의 이념과 부의 배분방법에 있어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라는 과도기로서의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이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 분배원칙은 어디까지나 이에 상응하는 物質的 土臺가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북한 경제적 상황(경제성장의 정도)이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한 국가예산지출증 國防費支出비율은 북한 사회복지의 확대에 極端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Ⅲ. 社會福祉制度的 歷史的 展開過程

국내의 北韓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가 매우 일천한 까닭에 총체적인 북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기구분'의 문제는 물론 아직 북한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을 '敘述的'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대략 훑어 보면 북한의 經濟計劃時期를 기준으로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서술적' 수준에서 접근한 경우³¹⁾ 나 혹은 醫療保障制度에 한정하여, 北韓의 자체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을 3-4단계로 재구성하는 접근방법³²⁾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의 '歷史'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질 IV장과 V장을 서술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醫療保障制度和 所得保障制度에 관련된 주요 법안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은 3시기로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制度的 形成期 : 1945. 8 - 1956

이 시기는 1945년 8월 해방에서 47년의 1차 1개년계획, 1948년의 2차 1개년계획, 그리고 6.25와 54년에서 56년까지 전개된 인민경제 복구기를 포함하는 기간으로서, 北韓의 인식에 의하면 식민지체제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人民民主主義 革命'에 의한 기초를

31) 전응열 외, 앞의 책, pp.37-46

유인학, 「남북관계발전에 대처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대책」, 1973, pp.52-55

32) 문옥륜 외,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보건의료정책연구소, 1989, 제 4장

보건과사회연구회, 「북한사회주의 이행발전과 보건의료」, 학술단체협의회 (편),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서울:한울, 1990), pp.537-538

이루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향후에 전개될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각종 주요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의미에서 '制度의 形成期'로 부르기로 한다.

이 시기에 제정된 북한의 사회복지관련법령 중에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에 모두 관련되는 '주요' 법령은 '20대정강'(1946.3), '社會保險法'(1946.12)이며, 의료보장에 관련된 법안은 '노동자,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 실시와 산업의료시설개편에 관한 결정서'(1946.12),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관하여'(1952.11.13), 등이며 소득보장에 관련된 법령은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6),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8),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2) 등이다.

먼저 醫療保障制度에 관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北韓은 이 시기의 保健事業 발전의 기본방향을 "일제 식민지 보건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보건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民主主義的 保健制度를 세우는 것³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적 보건제도 수립의 출발점으로 볼수 있는 것은 1946.3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북한에 수립될 임시정부의 정강을 발표한 '20개 정강'이다. 이 정강에서 醫療保障制度와 관련된 항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15조), 그리고 "국가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³⁴⁾"(20조) 등이다.

이러한 정강은 1946.1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제정된 '社會保險法'과 '노동자,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 실시와 산업의료시설개편에 관한 결정서'(1946.12), 에서 구체화되어 향후 北韓 醫療保障制度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無償醫療'의 틀이 잡히

33)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서울:청년세대, 1989 재인쇄) p. 390

34)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0개조 정강',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p.38

기 시작한다. ‘社會保險法’은 진찰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료 그리고 요양소 등이 입원비용 등에 대하여 무상치료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노동자와 사무원으로 그리고 부양가족에 한정시키면서 1947.1.27일 부터 실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社會保險法은 그 대상을 노동자와 사무원계층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전인구에 대한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즉 당시 北韓의 인구중 노동자와 사무원계층의 비율이 18.7% 밖에 안되 社會保險에 의한 의료상 수혜 인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農民과 개인상공업자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1949년도 말 현재 농민계층 69.3%, 개인 수공업자·기업가·상인은 2.6%이었음)³⁵⁾ ”

노동자와 사무원에 한정되었던 無償治療의 원칙이 전‘人民’에게 확대된것은 6.25기간중 이었다. 즉 전쟁기간중에 “ 각종 질병과 폭상 환자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 비추어 전체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은 당면한 국가적 중요과업”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1952년 10월 15일 조선노동당 조직위원회에서 國家負擔에 의한 ‘전반적 無償治療制’를 실시할 것을 채택하였고, 동년 11월 13일에는 내각결정 203호를 통해 1953년 1월 1일부터 ‘입원환자의 치료 및 약값’, ‘외래 치료는 무상, 처방에 의한 약값은 유상’ 등의 내용³⁶⁾을 담은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게 된다. 전반적 無償治療制는 막대한 국가재정부담이 요구되는 것인데 北韓은 이 재정부담을 ‘전시생산’의 성장을 통해 약 60%가 늘어난 국가예산수입으로 해결하였다³⁷⁾고 한다.

북한에서 所得保障制度의 실시에 관한 언급은 김일성의 항일투쟁기간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밝히신 각종 로동자들의 국가보험법을 실시할데 대한 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20대 정강’에서 다시 확인되었고 이것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북조선 노동자 및

35) 오정수, 앞의 논문, p.44

36)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관하여’, 『북한법령집』, 제4권, p.410

37) 『조선보건의사』, p.477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6) 과 '社會保險法'(1946.12) 이다.

'民主主義的 勞動法'이라고 불리우는 1946에 제정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노동법령의 목적은 北韓의 인식에 의하면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키며 산업에서의 제국주의적 착취의 잔재를 근절하고 노동계급의 민주주의적 해방을 실현할³⁸⁾" 필요성에서 제정되었는데 '각 기업소, 사무소 및 경제부문의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의무적 社會保險制를 실시하여 ①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에게 대한 보조금, ②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 ③ 장래시의 비용보조금, ④ 노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로할수 없는 자들의 年恤金(연금역주), 그리고 ⑤유가족 연포급 등(18조)³⁹⁾을 규정하고 있다.

이 勞動法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 '社會保險法' 인데 이 법안에서는 위의 5가지 社會保險에 의한 급여외에 실업보조금과 의료상의 방조를 포함하여 급여 범위를 10가지로 세분하고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피보험자와 고용주(국가, 소비조합, 기업소, 사무소의 책임자를 의미함)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社會保險制에 의한 소득보장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사회보험법을 기반으로 북한은 1949.9.9일에 선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서 社會保險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공민이 노쇠, 질병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제 17조)고 하는 公民의 權利를 보장하는 구절을 규정하게 된다.

社會保險法이 제정된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전쟁기간중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北韓은 "조국해방전쟁에서 ... 불구로 된자 및 사망한 자의 유가족과 또한 연로한 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38) 「노동행정 사업 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89), p.6

39)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 「북한법령집」, 제 4권, p.257

“물질 문화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1951.8)라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률은 전쟁불구자, 유가족 그리고 연로자 들에 대한 주택, 교육 등의 생활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전쟁불구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기보조금지급과 사회보험기관에서 관리하는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방조사업을 사회보장기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⁰⁾. 그리고 56년에는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를 제정함으로써 국가공로자는 일반 ‘인민’에 비하여 각종 사회보장혜택에 있어서 特惠를 주도록 제도화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45년에서 1956년까지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가 無償治療制와 社會保險·社會保障制를 근간으로 하여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춘 시기로 볼수 있다.

2. 制度의 整備·補完期：1957—1970

이 시기는 北韓이 社會主義工業化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계획의 시기로, 1957-1960까지의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을 완성하는 계획’인 제 1차 5개년 경제계획 그리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는 계획’인 1961-1970년의 제 1차 7개년계획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이 시기를 본격적인 社會主義 革命 段階에 돌입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醫療保障制度에 관한 주요 법령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1960.2)이며 의료보장의 내용의 변화는 無償治療制의 질적내용의 강화, 그리고 醫師擔當區域制가 실시되고 豫

40)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북한법령집』, 제4권, pp.557-558.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이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의 시행령격인 ‘국가사회보장에 대한 규정’이 국내에 입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내의 자료로는 알수가 없다.

防醫學이 社會主義的 의학의 핵으로 강조·시행되던 시기이다.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 2기 7차 회의에서는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토론이 진행되었고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이 채택되었다. 이 법령은 52년에 제정된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무상치료의 적용범위를 성별, 직장, 거주지들에 관계없이 전체 인민들에게 확대한 것이 기본 내용이었다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무상치료의 높은 質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내용이며"⁴¹⁾ 구체적으로는 '임신부에 대한 무상 해산방조의 대책수립 할것', '도시에서의 의사 담당구역제를 완성하며 농촌에서 담당구역 사업을 강화할 것' 그리고 '위생문화사업을 강화할 것'⁴²⁾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豫防醫學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이후 66년 10월에 김일성이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 교시를 발표를 하면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광범위한 예방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예방의학의 강조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社會主義建設'을 지속하기 위한 양질의 노동력확보라는 기능을 염두에 둔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이 시기의 社會保險制 등의 소득보장제도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1965년 7월 23일 내각결정 제 39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성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행정사업의 중앙기관인 노동성이 노동원천의 조사장악과 배치, 선진적인 노동조직과 작업방법의 도입, 노동규율과 노동보호, 그리고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에 대한 예산'과 정휴양계획의 작성 집행 등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할 것⁴³⁾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 社會保險 行政體系를 강화하려는 조

41) 「조선보건사」, p. 565

42)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 p. 365 366. 이 문헌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으로 공포된다.

43) 「노동행정사업경험」, p. 26

치가 이 시기에 취해진듯 하다.

이 시기는 결국 의료보장제도에서 醫師擔當區域制와 豫防醫學의 강화로 특징지는 無償治療制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진 제도의 정비·보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制度의 ‘形態的’ 完成期 : 1971—1985

이시기는 北韓에서 社會主義의 물질 및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6개년경제계획(1971-1976)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하여 社會主義 經濟土臺의 강화를 목표로한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그리고 85-86년간의 ‘경제조정기’를 거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관한 이 시기의 주요법령으로는 ‘社會主義憲法’(1972.12), ‘社會主義勞動法’(1978.4), ‘人民保健法’(1980.4), 그리고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1985.10) 등이다.

72년에 채택된 ‘社會主義憲法’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민의 권리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와 노동능력상실의 경우 물질적 방조를 받을 공민의 권리를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國家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北韓에서 존재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權利를 재확인하는 것이다(공민의 이러한 헌법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보장제’에 대한 협동농민들의 권리는 13년이 지난 1985년에 실시되게 된다).

한편, 이 기간에는 그동안의 북한의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社會主義勞動法’과 ‘人民保健法’이 새롭게 제정되어 北韓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복지제도가 일단 外形적으로

44)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1집, p.32

거의 완성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북한의 인식에 의하면 1978년에 제정된 勞動法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역사적 과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1946년에 발표된 노동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공히 하고 앞으로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사회주의노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를 뚜렷히 밝힌⁴⁵⁾” 것이고 또한 “사회주의 노동제도의 합법칙적 반영인 동시에 ……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객관적 현실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제정⁴⁶⁾” 된 것인데 이 법에는 年金, 補助金 등 소득보장제도에 관련된 북한의 제도가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73조)

“ 국가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경우 연로연금을 준다”(74조)

“ 국가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75조)

“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노력일을 주며 산전산 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준다”(76조)

“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에게 유가족 연금을 주며 돌볼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77조)

“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노동자, 사무원, 협동 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45) 김일성,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4

46) 「로동행정사업경험」, p.31

치료, 요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한편 1980에 제정된 人民保健法의 경우도 '勞動法'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존재해온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에 관련된 모든 법규나 규정을 총정리한 성격を 갖고 있다. 즉 北韓에 의하면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는 것은 보건사업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成果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⁴⁷⁾ 위한 것인데 이 법의 9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保健醫療에 대한 公民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는 모든 公民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公民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의료봉사는 완전히 무료이다.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환자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요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요양을 위한 왕복 여비는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勞動法'과 '人民保健法'은 그동안 북한에서 발전시켜오고, 존재하는 모든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를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두가지 법령의 제정은 북한사회의 내제적 발전 단계를 반영한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 온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正當性和 優越性을 대내외에 확보하기 위한 동기, 즉 사회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해당 체제의 정당화 기능'을 엮두에 둔 것임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 법에서 규정된 혜택들을 북한경제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두 측면에서 담보할

47)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p.354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두가지 법에 의한 규정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높히 평가할만한 것이다.

한편, '勞動法'과 '人民保健法'이 채택된 이후 1985년에 그동안 社會保障制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오던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⁴⁸⁾가 실시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사회보장분야에 남아있던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없애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진전⁴⁹⁾”으로 보고있다. 협동농민들에 대한 1985년의 社會保障制의 실시 이후에 북한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제도에서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북한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급여 내용을 포함한 '勞動法', '人民保健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제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가 실시됨으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제도, 즉 사회복지의 普遍主義적 성격이 관철되었다는 의미에서 제도의 '형태적 완성기'로 볼수 있다.

48) 1985년에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된 '협동농민에게 확대실시된 '사회보장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되지 않고 “정무원이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여기서 '사회보장제'는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 아닌, 제 2장에서 서술한 북한식의 사회보장제 개념, 즉 노동능력의 영구상실시 보장되는 각종 연금과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pp. 563-564

49) 『인민보건사업경험』, p. 34

IV. 所得保障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北韓에서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社會保障制'와 '社會保險制'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제도중에서 소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야중의 하나이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북한에서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社會保障'과 '社會保險'의 구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국내에서 이 제도를 연구한 최근 문헌⁵⁰⁾조차도 대개 1946년에 제정된 '社會保險法'에 많은 근거를 두고 北韓의 소득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북한에서는 사회보험법 이후 몇 차례의 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예를 들어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으로 社會保險法에 의해 규정된 '연금' (연금) 규정은 社會保險制에서 분리되어 社會保障制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國家社會保障制'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원문헌(국가사회보장제에 관한 규정'(1951.8.30)이 입수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 더우기 북한에서 자신감 있게 내세우는 '無償治療制'와 '無償教育制'와는 달리 「조선중앙연감」 등 北韓의 공식문헌에서 社會保障制와 社會保險制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언급은 거의 찾아볼수 없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1978)에서도 각종 소득보장급여에 대해 包括的인 규정만을 하고 있을 뿐 자세한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고 1985년에 제정되어 1986년부터 실시된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관하여'에서도 '사회보장제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조항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제도의 形態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 여기서는 '社會保障'·'社會保險'에 대해 비

50) 최일섭, "사회복지제도와 운영실태",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참조. 이러한 점은 통일원의 자료에서도 보인다. 통일원, 「북한개요 '91」, 1990.12, pp.264-268 참조

교적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1985년판 「경제사전」과 북한의 각종 사회복지 관계법령을 토대로 하여 北韓의 所得保障制度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하는 틀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많이 적용되는 Gilbert 와 Specht의 4가지 차원⁵¹⁾, 즉 할당 *allocation*, 급여 *provision*, 전달체계 *delivery system*, 재원조달방법 *financing* 등의 차원을 변형시켜 사용하기로 한다.

1. 制度의 概要

所得保障制度를 ‘노동능력의 영구적 혹은 일시적 상실로 노동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월급이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제도를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해하게 되면 北韓의 소득보장제도는 II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크게 일시적 노동력상실 시 지급되는 ‘社會保險制’에 의한 補助金과 노동능력을 완전히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했을 경우(6개월 이상) 지급되는 ‘社會保障制’에 의한 年金과 補助金제도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여 볼수 있다. 이러한 北韓의 所得保障制度를 자세히 분석하기에 앞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 과 같이 정리하여 볼수 있다.

먼저 적용기준에 있어서는 社會保障制가 노동력의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상실될 경우에 적용되며 社會保險制는 질병, 산재, 부상 으로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을 경우 해당된다. 적용계층은 社會保障制가 1985년 협동농장 농민에게 까지 확대됨으로써 전 ‘인민’이 적용되는 ‘普遍主義’ 원칙이 적용되고 사회보험제는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에 적용된다. 농민의 경우는 통일적인 제도가 없고 협동농장 자체 기금

51) 이 분석틀에 대해서는 N. Gilbert & H.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J., Prentice-Hall, 1974), 제 2장 참조.

〈 표 3 〉 북한의 소득보장 제도의 개요

	사 회 보 장 제	사 회 보 험 제
적용 기준	영구적 혹은 장기적 (6개월 이상) 노동능력상실자 및 기타 무의무탁한 사람들	질병, 산재,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자
적용 계층	노동자, 사무원 및 군인 협동농장 농민(1985년 이후)	노동자, 사무원 및 부양가족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실시)
재원 조달	국가 일반 예산	사회보험료에 의한 수입 농민은 협동단체 자체부담
급여 종류	① 국가공로자 연금 ② 연로연금 ③ 노동능력상실연금 ④ 유가족 연금 ⑤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⑥ 인민군 후방가족 원호 보조금	① 일시적 보조금 ② 산전산후 보조금 ③ 장례보조금 ④ 의료상방조비 ⑤ 휴양 및 요양비
근거 법령	노동법 ('46.6) 사회보험법 ('46.12)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승인에 대하여('56.2) 사회주의노동법 ('78.1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관하여('85)	노동법 ('46.6)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46.9) 사회보험법 ('46.12) 사회주의노동법 ('78.10)

에서 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補助金 까지 포함하면 적용계층의 측면에서는 '普遍主義' 원칙이 적용되고 있

다고 볼수 있다. 재원조달은 社會保障制는 국가일반예산에서 그리고 社會保險制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보험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완전한 국가예산에 의한 所得保障制度를 아직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給與의 종류는 사회보장제가 年金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 사회보험제는 일시적 補助金 위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割當 體系

할당체계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이 全階層에게 적용되는가(보편주의),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전제로 일부 계층에게만 적용되는가(선택주의) 하는 문제이다. 대개 社會主義 國家는 普遍主義 할당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1) 社會保險制

사회보험제에 의한 급여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등이 있는데(이 급여의 내용은 5절 급여체계에서 자세히 다룸) 이 보조금의 지급이 처음으로 명시된 것은 46년에 제정된 '社會保險法'에 의해서 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그 당시 전체 北韓 인구의 18%를 차지하던 노동자 및 사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한 選擇主義 원칙에서 출발했다. 그후 노동자와 사무원 계층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당연히 포괄범위가 늘어났을 것이다. 때문에 社會保險制의 적용율을 표 4 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연도별 인구구성의 변

< 표 4 > 북한의 연도별 직업별 인구구성

직업	1946	1954	1965	1972
노동자	12.5	25.7	41.2	42.0
사무원	6.5	10.4	15.6	14.0

협동농장농민	-	17.1	43.2	44.0
개인 농민	74.1	44.2	-	-
개인수공업자	1.5	0.3	-	-
기업가	0.2	0.1	-	-
상인	3.3	0.9	-	-
기타	1.9	1.3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 박재욱, “북한의 계급”,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95에서 재구성

화에 적용하여 추정할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54년도에는 36.1%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65년에는 55.8% 그리고 72년에는 전인구의 56%까지 社會保險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社會保險制는 노동자와 사무원의 社會保險料 그리고 해당 기업이나 사업소의 보험료로 예산이 충당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농민들은 사회보험제의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경우는 협동농장 자체의 ‘社會文化基金’에서 일시적 보조금이나, 산전산후보조금 등이 지불되기 때문에 社會保險制의 적용만 안되었을 뿐 거의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때문에 北韓의 사회보험제는 실질적인 ‘普瀋主義’로 볼수 있다.

2) 社會保障制

사회보장제에 의한 각종 年金과 補助金 등의 급여는 46년 社會保險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가 51년도에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면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社會保險制에 의한 일시적 補助金 등과 마찬가지로 연금 등의 급여는 초기에 노동자와 사무원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選擇主義 원칙에서 출발했고 앞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자와 사무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차츰 그 範圍가 확대되었을 것이다(사회보험제와 마찬가지로 72년까지 대략 전인

구의 56%정도 추정). 社會保障制에 의한 각종 年金과 補助金이 농민들에게 확대된 것은 “사회보장분야에 남아있던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없애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고 北韓에서 평가하는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관하여’(’85.11, 실제 시행은 86년)라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북한은 1985년도에 와서야 각종 언급 등을 전 ‘인민’에게 확대적용하면서 社會保障制의 普遍主義 原則을 실현했다고 볼수 있다.

3. 財源調達體系

社會保障制는 국가예산에서 충당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의 자원조달체계는 여기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다(본장의 4절 재정운영체계 참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재원이 구성되는 社會保險制의 자원조달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北韓은 社會保險制度의 운영에 소요되는 豫算을 세부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첫째, 사회보험행정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둘째, 고용주의 기여금 그리고 셋째, 피보험자의 기여금이 그것이다. 社會保險에서는 고용주와 피보험자의 寄與金이 중요하므로 이 두가지 측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社會保險料 賦課 要素

어떤 社會保險제도를 보험방식으로 자원조달을 할 경우, 즉 국가의 일반재정이 아닌 피보험자와 사용자의 社會保險料로 기금을 재원을 조달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어떤 기준을 근거로 거두어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資本主義 사회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부과요소는 일반적으로 賃金이며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들의 賃金總額에 대한 일정비율로 납부되거나(이러한 고용주부담금을 *payroll tax*

52) 「인민보건사업경험」, p. 34

라고 한다) 혹은 노동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임금중에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의 부과시 각종 수당을 보험료 부과요소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지가 항상 논란이 된다. 그리고 임금근로자가 아닌 自營者나 農民의 경우는 소득과악에 한계가 있어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외에 재산이나 혹은 가족수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⁵³⁾.

北韓의 경우는 이러한 보험료 부과요소에 대해 “고용주⁵⁴⁾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보수총액”, 그리고 “피보험자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 또는 보수”(사회보험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주는 지불임금총액, 피보험자는 임금 또는 보수가 社會保險料의 부과요소가 되고 있어 별로 특이한 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의 보수총액과 피보험자의 임금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있는 것이 북한 社會保險料 부과요소의 특이한 점이다. 즉 ‘보험료는 지불하는 元賃金 외에 지불하는 각종 가급·상급 및 시간외 노동에 의한 임금까지 포괄하고 있고 또한 원임금외에 각종 제수당(상여급·상급·물가수당·가족수당·특근수당 등) 까지 포함한 것을 임금으로 보고 이러한 모든 수당을 합친 임금에 대해 쌍방(고용주와 피보험자-필자주) 모두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보험료 납부절차에 관한 규정 제 8조).

또한 임금 등의 현금급여 외에 現物給與와 의식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주가 제공하는 임금제도의 경우 현물을 가격으로 산출하여 이를 보험료를 부과하는 임금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발공이

53)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의료보험제도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모 외, 「한국의료보험연구」,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제 3 장 참조

54) 여기서 ‘고용주’라 함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소비조합·사회단체의 각 기업소·사무소·기관의 각 책임자 및 개인기업주’를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이다. 별다른 언급이 없는한 이글에서 ‘고용주’는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食住를 고용주가 제공하고 월 삼만원의 임금을 받았을 때는 食住代를 가령 7백원이라 산출되면 그 임금은 천원으로 계상하여 보험료를 쌍방이 납부하도록 한다”(사회보험료 납부절차에 관한 규정 제 8조) 고 하여 현물급여를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그에 해당하는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北韓의 社會保險料 賦課要素는 피보험자의 경우는 임금, 고용주의 경우는 지불임금총액으로 한정하되, 임금의 범주를 상당히 넓게 잡아 고용주가 제공하는 모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전부 포괄하여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부과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社會保險料의 審與 比率

고용주와 피보험자의 기여금으로 대부분이 충당되는 社會保險 豫算에서 양자가 어떤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해당). 北韓의 경우 社會保險料의 기여 비율은 노동법 제 18조에 의해 표 5 와 같이 규정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도 이 規程대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에 의하면 국가, 소비조합 등은 피고용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총액의 5-8%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개인기업소와 고용주는 임금총액의

< 표 5 > 사회보험료의 기여 비율

납부 주 체	기 여 율
국가, 소비조합, 사회기업소, 사무소 및 단체 개인기업소, 고용주	지불임금의 5-8% 지불임금의 10%-12%

피보험노동자 및 사무원	임금의	1%
--------------	-----	----

10-12%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소와 고용주에 대한 보험료납부는 北韓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전의 50년대 초반까지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던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50년대 중반이후에는 이들의 보험료납부는 거의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보험노동자와 사무원은 임금의 1%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료 납부비율을 보다 자세히 보면 북한에서는 ①위험정도 ② 유해정도 ③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 ④ 사망율의 多少 등으로 각 기관을 1-4급으로 구분하여 국가, 소비조합 그리고 개인기업소 등의 보험료 납부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표 6 과

< 표 6 > 국가·소비조합 및 개인기업소 등의 보험료 기여율

	임금총액에 대한 기여비율	단 체
국가 사회 단체 기업 소 등	5%를 기여하는 부문(1급)	행정기관, 문화기관, 금융기관 등 6개
	6%를 기여하는 부문(2급)	교육기관, 의료기관, 식료품제조가공업, 여관·음식업, 등 18개
	7%를 기여하는 부문(3급)	섬유공업, 피복공업, 제당업, 철공업, 제약공업, 도금업, 수도업 등 23개
	8%를 기여하는 부문(4급)	광업, 석재가공업, 어업, 조선업, 화약공업, 채석업 등 30개
개인 기업 소 등	10%를 기여하는 부문(1급)	의료업, 상점, 사진업, 등 17개
	11%를 기여하는 부문(2급)	섬유공업, 유지공업, 제재업, 제약공업, 정미업, 고무공업 등 20개
	12%를 기여하는 부문(3급)	광업, 건설업, 유기합성공업, 해운업, 채석업, 하천운송업 등 20개

출처 :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

같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北韓은 국가기업이나 사회기업소가운데서도 비교적 勞動強度가 세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끔 하고, 개인기업소는 사회단체보다 약 2-4%가 더 많은 保險料를 납부하도록 하며, 개인기업소 내부에서도 노동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특징을 발견할수 있다.

4. 財政 運營 體系

다른 분야의 통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社會保險이나 社會保障에 대한 통계도 60년대 전반까지는 비교적 자세한 통계를 발표했지만 60년대 이후로는 '이전 연도보다 몇배 증가했다'는 배수율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고 70년대 이후로는 社會保險, 社會保障 예산에 관한 성장배수율조차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北韓의 문헌에서 확인할수 있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財政規模은 60년대 까지의 통계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사회보험료 收入에 관한 통계는 56년도까지 확인할수 있는데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48년도에 전체 국가총수입의 4.8%를 차지하던 사회보험수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1956년에는 전체 국가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7 > 사회보험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北韓貨), %)

연 도	사회보험료수입	국 가 총 수 입
1948	743 (4.8)	15,571 (100.0)
1949	602 (3.0)	19,763 (100.0)
1950	922 (3.5)	26,722 (100.0)
1954	1,051 (1.3)	78,341 (100.0)
1956	1,450 (1.6)	89,570 (100.0)

출처 : 국토통일원,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1988.12
제 I 집, 제 II 집, 해당연도 예산결산 보고자료,

한편, 지출규모는 볼 보면 63년도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社會保險과 社會保障 豫算이 분리되어 제시된 것은 표 8 에서 보는 것처럼 57-59년도 뿐이고 나머지 년도는 두 예산지출이 합쳐져 제시되어 있다. 두 예산을 합친 支出規模를 보면 1948년도에 예산지출의 4.8%를 차지했는데 50년대 중반에 올수록 점차 줄어들고 54년에 1.0%까지 줄어들었으나

< 표 8 > 사회보험·사회보장 예산의 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北韓貨), %)

연 도	사회보험(A)	사회보장(B)	(A)+(B)	국가총지출
1948	649(4.8)		649(4.8)	13,654(100.0)
1949	458(2.3)		458(2.3)	19,763(100.0)
1950	940(3.5)		940(3.5)	26,723(100.0)
1954	703(1.0)		703(1.0)	72,956(100.0)
1956	1,483(1.7)		1,483(1.7)	86,002(100.0)
1957	1,543(1.6)	427(0.4)	1,970(2.1)	95,588(100.0)
1958	25(2.1)	6(0.5)	31(2.6)	1,183(100.0)
1959	39(1.7)	6(0.3)	45(2.0)	2,281(100.0)
1960	46(2.4)		46(2.4)	1,900(100.0)
1961	68(2.9)		68(2.9)	2,336(100.0)
1962	75(2.7)		75(2.7)	2,811(100.0)
1963	90(3.0)		90(3.0)	3,418(100.0)

출처: 1) 국토통일원,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1988.12

제 I, II, III 집, 해당연도 예산·결산 보고자료

2) 「北韓法令集」, 제 5권, 49, 50, 54년 '국가종합예산법령'

비고: 1) 1958년 부터 100:1 화폐교환가치

2) 48, 49, 50, 54, 58년은 결산치 나머지 년도는 예산치임

3) 57-59년 외에는 사회보장비가 사회보험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60년대에는 다시 늘어나 63년도에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社會保險 豫算과 社會保障 豫算을 분리시켜 볼수 있는 57-59년 사이의 수치를 보면 사회보험예산이 사회보장 예산보다 약 3-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北韓사회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은퇴자가 많아지면서 연금지출비용이 많아져 社會保障 豫算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0,60년대의 지출율을 보면 그 이후에도 北韓의 총 예산지출에서 社會保障과 社會保險에 지출되는 예산비율이 5%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보험예산이 대략 어떤 項目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유일한 통계치로서 56년도의 통계치를 구할수 있다. 1956년의 경우를 보면 표 9 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收入의 74.7%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항목을 보면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4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휴양소사업비(이 사업비는 휴양소의 운

< 표 9 > 사회보험예산의 수입, 지출내역

(단위:만원(北韓貨), %)

연도	수입	지출
1956	145,000	사회보험보조금 58,300(40.2)
		휴양소 사업비 31,600(21.7)
		의료상 방조비 18,500(12.7)
		소 계 108,400(74.7)
1957	169,700	154,200(90.8)
1958	286,800	228,500(79.6)

출처 : 국토통일원,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1988.12

제 I집, p.771,849, 제 II집, p.94

비고 : ()안의 비율은 해당년도 수입에 대한 지출의 비율임.

영 및 신속시 사용된다)로 21.7% 그리고 의료상방조비로 12.7%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5년 이후로는 社會保險과 社會保障에 대한 통계발표가 부정확해져 사회보험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길이 없고 「조선중앙연감」에서도 ‘막대한 자금’ 혹은 ‘거액의 자금’을 사회보장, 사회보험사업에 돌렸다는 언급만 나오고 있다. 80년대 들어와서도 이러한 방법이 지속되는데, 예를 들어 86년에 실시된 협동농민에 대한 社會保障制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해마다 거액의 자금을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 補助金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 당에 의해 새로 실시되는 사회보장제에 의하여서만도 우리 농민들은 더 많은 추가적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만 언급하고 자세한 통계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5. 給與 體系

1) 社會保險制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社會保險制에 의한 補助金⁵⁵⁾에는 ① 일시적 보조금 ② 산전산후보조금 ③ 장례보조금 ④ 의료상 방조비 ⑤ 휴양 및 요양비가 있다⁵⁶⁾.

(1) 一時的 補助金

일시적보조금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동에 참가하지 못하였을때 주는 보조금”을 말하는데 “월 基本生活費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별로 각이하게 설정된 근속노동연한에 따르는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 지불된다” 여기서 근속연

55) 국토통일원,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제 IV집, 1988.12, p.729

56)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 benefit로 부르는 혜택을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을 ‘일시적 보조금’, 사회보장제에 의한 보조금을 ‘정기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57) 「경제사전」, 제 1권, pp.609-610

한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勤績勞動年限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데 6개월까지 지급되며 이 기간이 넘으면 社會保障에 의한 해당한 勞動能力喪失年金을 준다⁵⁸⁾.

한편, 이러한 일시적 보조금은 월기본생활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그 비율은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비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1946에 제정된 '社會保險法' 밖에 없다. 사회보험법이후로 이 법의 규정을 바꾼 법들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법안의 규정이 그대로 지켜진다고 보는수 밖에 없다. 社會保險法에 규정된 일시적보조금지급 비율은 표 10 과 같다

< 표 10 > 일시적 보조금의 지급 비율

구 분		생활비에 대한 비율
1급	모범근로자, 모범사무원, 및 기술자	75 %
2급	기관수 및 광산의 지하근로자 -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 근속 1-2년 미만자 - 근속 2년 이상자	최초 20일 60%, 이후 65% 최초 10일 65%, 이후 75% 75%
3급	광산의 일반노동자 및 공업, 철도 체신, 건축근로자, 교원, 예술인 등 -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 근속 1-2년 미만자 - 근속 3년 미만자 - 근속 3년 이상자	60% 최초 20일 60%, 이후 65% 최초 20일 65%, 이후 75% 75%
4급	사무원 및 1-3급 이외의 근로자 - 근속 2년 미만자 - 근속 2-3년 미만자 - 근속 3년이상자	60% 최초 20일 60%, 이후 65% 최초 15일 60%, 이후 65%
5급	비직업동맹원	최초 30일 50%, 이후 60%

58) 「경제사전」, 제 1권, p. 609, 제 2권, p.189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시적 補助金の 지급비율은 노동강도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그 비율은 노동성격과 근속연수에 따라 월 기본생활비의 50-75%가 지급된다. 이러한 지급비율에서도 '노동의 양과 질의 따른'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한편, '김일성 훈장'을 받은 사람을 비롯한 근로자나 직업과 관련하여 병이 생겼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勤續年限에 관계없이 일시적 보조금을 준다. 최근에는 국가공로자 중 국기훈장 수여자 이상은 일시적 보조금이 80%이고 公傷者에게는 100%의 생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産前産後補助金

산전산후 보조금은 "여성근로자들이 산전산후 휴가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국가에서 지불하는 보조금"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社會保險法에는 解産補助金の 수급권리를 노동자 및 사무원에 한하여 7개월-12개월의 근속기간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하여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임금액의 90%를 산후 42일, 산전 35일 총 77일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59조, 60조) 최근에는 이 규정이 약간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산전산후보조금은 勤續年限에 관계없이

< 표 11 > 산전산후 보조금지급액 및 기간

지급기간	산전 35일, 산후 42일 총 77일
지급액수	여성노동자와 사무원은 정액생활비의 100%, 여성협동농장원은 협동농장에서 평균노력일 받음
지급조건	근속연한에 관계 없음

59) 국토통일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북한상황변화 예측; 분야별 변화상황 장기예측」, 1986, p.184

출처, 「조선중앙연감」, 1980, p.184, 「경제사전」, 제 2권, p.23

초 77일간 지급되는데 지급액수는 여성노동자와 사무원은 정액생활비의 100%, 그리고 여성협동농장원은 협동농장에서 평균노력일의 액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葬禮補助金

장례보조금은 社會保險制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社會保險法에는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경우 北韓 구화폐로 120원에서 8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역별로 차등지급되며 피부양

< 표 12 > 장례보조금의 대상별 액수

(단위: 원, 舊 北한貨)

구 분		10세 이상	10세 미만	출산후 30일 이내
피보험자와 연금대상자	시지역	800	450	200
	기타	500	250	120
피부양자	시지역	500	250	125
	기타	300	150	100
직무수행시 사망자		2,000		
국가 공로자		30,000		

출처 : '사회보험법',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

자는 100원에서 500원이 지역별로 차등지급되며 직무수행시 사망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구화폐로 2,000원 그리고 국가공로자는 30,000원의 장

례보조금이 지급된다(통일원 「북한개요」 91년 판에는 葬禮補助金이 10세 미만인 경우는 신화폐로 5원, 10세 이상인 경우는 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대상자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

(4) 기타 보조금

위와 같은 보조금외에 北韓은 社會保險制에 의한 의료상 방조비와 휴양 및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는 전혀 알수가 없다. 아마도 의료상 방조비는 질병치료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예를 들어 장거리 교통비)을 의미하고 요양비는 질병치료시 병의원외에 각종 요양소를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요양시설 이용비와 왕복여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社會保險法'에는 실업보조금의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北韓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실업이 없어짐으로써 실업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최근 문헌에는 전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社會保障制

북한의 社會保障制에 의한 소득보장보조금은 주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에 해당되는 해당하는 각종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종류별로는 ① 功勞者年金 ② 年老年金 ③ 勞動能力喪失年金 ④ 遺家族年金 ⑤ 영예군인과 인민군 後方家族에 대한 補助金이 있다. 北韓에서는 연금을 “사회주의 사회에서 혁명투사, 로동자, 사무원, 군인이 늙었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그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에 의한 물질적 방조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年金은 그 종류에 따라 본래 받던 기본생활비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정된 금액으로 국가예산에서 지불” 하계금 되어 있으며 두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權利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중 유리한 한가지 年金만을 주도록 되어

있다.

(1) 功勞者 年金

공로자연금의 대상은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비롯하여 높은 수훈 및 표창을 받은 국가공로자중 나이가 많거나 (남자 60살 여자 55살) 또는 병으로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급여는 일반 연금보다 높아 수훈 및 표창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연금이 지불되며, 또한 식량공급과 병원치료에서도 공로에 따르는 해당한 특혜를 받게 되는데,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給與水準은 은퇴한 경우 최근 봉급액(1개월)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직에 있는 공로자가 질병·손상 등으로 2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최근 1개월 봉급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복할때까지 지급하며, 공로자가 死亡하였을 경우는 장례금으로 3만원(舊 북한 화폐)을 지급하며, 그의 유가족들이 연로, 부상, 질병으로 노동력 상실 및 사망하였을 시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액수의 반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⁶⁰. 최근의 귀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⁶¹ 이러한 공로자가 은퇴시 받는 구체적인 급여를 알수 있는데, 일반 年老年金 對象者가 300g+보충미 100g = 400g의 식량을 배급받는데 공로자는 이보다 200g이 많은 600g의 식량을 배급받으며, 현금도 일반연로연금대상자는 16원 30전을 받는데 비해 功勞者는 이보다 43원 70전이나 많은 60전을 현금급여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보면 해당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어느 사회나 特惠를 주듯이 北韓 사회도 이러한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60)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승인에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p.560

61) 안계춘 외, 「북한 주민생활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1989, p.63

(2) 老年年金

북한문헌에서는 연로연금을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로동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일할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로생활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老年年金의 대상과 내용은 관련 문헌을 종합해보면⁶²⁾ 대략 표 13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먼저 연로연금의 대상은

〈 표 13 〉 연로연금의 대상 및 급여수준

구 분	내 용
대 상 자격조건 근속연한	로동자, 사무원, 농민등 전‘인민’ (농민은 86년에 실시) 남자 60살 여자 55세 로서 일정 근속연한을 가진자 85년 이전 일반 노동부문 : 남자 15년, 여자 12년 이상인 자 힘든 노동부문 : 남자 12년, 여자 10년 이상인 자 85년이후
급여방법 및 수준	근속연한이 20년으로 연장. 그러나 남녀 및 노동부문에 따른 근속연한 연장기간 확인 불능 현금급여 : 월기본생활비의 60%-70% 증신 지불 현물급여 : 식량 300g+보충미 100g = 400g

85년까지 노동자와 사무원 및 군인에 한정되다가 86년에 협동농장농민에게 확대됨으로써 전‘인민’이 포괄대상이 되었다. 資格條件은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일정한 근속연한을 가진자로 조건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하면 연금에서 제외되 그 부양자(주로 맏아들)인 자녀에게 500g의 식량만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 것

62)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 분석」, 국토통일원, 1984
안계춘, 앞의 책, pp. 63-64, 「경제사전」, 제1-2권 중 연금관련 항목.

으로 알려져 있다⁶³⁾.

근속연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85년 이전에는 일반노동부분에서는 남자 15년 여자 12년 이었고, 힘든 노동부분에서는 男子 12년 女子 10년으로 되어있다가 85년 이후로 2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근속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자의 경우와 힘든 노동에 종사한 자의 勤續年數가 얼마나 연장되었는지는 확인할수가 없다. 給與水準은 현금으로 월 기본생활비의 60-70%를 증신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있고 식량 400g을 지급하는 현물급여가 있다.

(3) 勞働能力喪失年金

노동능력상실연금은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자, 사무원들이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랜기간 동안 잃었을 경우에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돌려지는 물질적 방조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 연금의 대상은 社會保險法에 의해 혁명투사, 군무자, 노동자, 사무원들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한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86년에 농민에 대한 社會保障制의 실시로 농민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 연금은 勞働能力이 회복될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노동능력상실의 原因(직무수행과의 관련여부)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의 程度(폐질의 정도)에 따라 지불율에 차이가 있다. 社會保險法에 의한 폐질의 구분⁶⁴⁾을 보면 표 14와 같다.

< 표 14 > 폐질정도의 구분

폐질구분	내	용
------	---	---

63) 안계춘 외, 앞의 책, p.63

64) '사회보험법'에 의한 3종류의 폐질구분은 최근의 북한문헌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제 1 류	노동능력을 완전 혹은 대부분 잃고 다른사람의 일상적 방조가 필요한 사람
제 2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眼상실자, 언어기능상실자, 兩上肢와 下肢 상실자 등 직업적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대부분 잃은 사람(장기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도 해당)
제 3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반 이상의 눈, 귀 상실자, 한편 上肢, 下肢 상실자, 발작증으로 지각능력 상실자 등 직업적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사람

출처 : '사회보험법', 「경제사전」, 제 1권, pp.485-486에서 재구성

이러한 폐질의 3구분은 다시 노동능력의 상실의 원인이 직무수행과 관련되었을 경우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을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지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年金의 액수로 틀려진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는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폐질의 정도에 따라 표 15와 같은 연금액수가 지불되는데 최근 1년간 평균임금액의 35%-90%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표 15 > 직무수행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시의 연금액

폐질구분	연금비율
제1류 폐질자	최근 1년간 평균임금年額의 90%
제2류 폐질자	최근 1년간 평균임금年額의 65%
제3류 폐질자	최근 1년간 평균임금年額의 35%
비고	1973년 「조선중앙연감」에는 40%-80%의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출처, '사회보험법', 「조선중앙연감」, 1973, p.283

그러나 1973년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상한액이 80%로 줄어들고 하

한액이 4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류폐질자는 80%, 3류 폐질자는 40%의 年金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職務와 무관하게 부상,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직무와 관련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보다 연금액수가 적게 지급되는데 그 규정은 廢疾者의 종류 그리고 勞動種類(유해노동 혹은 지하노동 여부), 당사자의 年齡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 平均賃金年額의 23%

< 표 16 > 직무와 무관한 노동력 상실시의 연금액

폐 질 구 분	연 금 비 율
제1류 폐질자	노동종류와 근속연수별로 1년평균임금年額의 57-60%
제2류 폐질자	노동종류와 근속연수별로 1년평균임금年額의 37-40%
제3류 폐질자	노동종류와 근속연수별로 1년평균임금年額의 23-25%
비 고	1973년 「조선중앙연감」에는 35%-65%의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출처, '사회보험법', 「조선중앙연감」, 1973, p.283

60%의 年金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 또는 유해노동 종사자는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에 0.5%를 가산하여 실질적으로는 65%를 지급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이후 최저한도액이 23%에서 35%로 인상되어 1973년의 경우 35-65%의 연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遺家族 年金

北韓의 유가족 연금의 종류는 ① 전사자가족에게 주는 유가족연금 ② 피살자가족에게 주는 유가족연금 ③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에게 주는 유가족연금 ④직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주는

유가족연금에 있으며 이때 생활보조금은 유가족 연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는 것은 ③과 ④의 연금종류이다.

遺家族年金은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직부관련 사망시는 유가족의 수에 따라 사망자의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최근 1년간 평균임금의 40%-90%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직부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는 매우 복잡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연금 형태가 아

< 표 16 > 유가족 연금의 종류와 연금액

	폐질구분	연금 및 일시금 비율
직부 관련 사망시	유가족 1명 유가족 2명 3명이상	최근 1년간 평균임금年額의 40% (근속연한과 무관) 최근 1년간 평균임금年額의 60% (근속연한과 무관) 최근 1년간 평균임금年額의 90% (근속연한과 무관)
직부 무관 사망시	유가족 1명 유가족 2명 유가족 3명 이 상	노동종류와 근속연수별로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年額의 80%-85% 일시불 노동종류와 근속연수별로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年額의 105%-110% 일시불 노동종류와 근속연수별로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年額의 130-135% 일시불
	비 고	지하, 유해노동 그리고 도금, 기계제작 등 힘든 노동 부문의외의 노동자는 가족수에 무관하게 전노동 기간평균임금年額의 70% 그리고 사무원은 60%임

출처 : '사회보험법'

닌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지하 유해노동과 도금 등의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유가족의 수에 따라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80%-135%를 지급하고 있으며, 여타 부문의 노동자와 사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유가족의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70%, 60%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규정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86년부터 농민들에게 실시된 社會保障制가 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혹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현재의 자료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아뭏든 이러한 遺家族年金에서 볼수있듯이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分配原則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농민들에 대한 유가족연금에도 관철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5) 기타 보조금

社會保障制에 의한 주어지는 보조금은 위에서 살펴본 각종 연금 외에 ‘인민군 후방가족원호 보조금’과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이 있는데 전자는 “조선인민군대, 조선인민경비대의 전사, 하사관들의 부양가족가운데서 노력자가 한 사람도 없거나 군인의 아내 또는 어머니가 3명 이상의 비노력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하며 후자는 일을 하고 있는 영예군인들과 영예전상자들에게 不具程度에 따라 주는 生活補助金을 의미한다.

6. 問題点

기존의 이 제도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社會保險制와 社會保障制의 문제점으로 “노동능력상실 불구폐질에 ……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든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매진에 대하여 일조가 되기 위하여 社會保險料를 반환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소위 반동세력에 대하여 ……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차단되게 하는 적용상의 不平等이 염려된다는 점에 오히려 더욱 큰 문제가 있다⁶⁵⁾”는 식의 평가나 혹은 “혹은 연금판단과 대상의 기준을 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住民統制의 수단이

65) 박길준, 「북한사회제도의 법적 구조분석 : 사회보장입법을 중심으로」, 1972.5, p.27

되고 있다⁶⁷⁾ 등의 다분히 근거가 희박하고,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이 앞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식의 판단이 北韓의 사회복지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차 지적하였다. 물론 워낙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北韓의 所得保障制度의 문제점을 정확히는 고사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조차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두가지 측면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소득보장제도의 包括範圍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北韓의 社會保險制度和 社會保障制度는 85년이전까지 농민이 배제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86년 이후 농민에게까지 社會保障制가 확대됨으로써 普遍主義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이 제도안에 포괄됨으로써 일부 계층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적용제한의 문제점은 없어진 것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國家社會保險制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補助金을 협동농장에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는 농민은 社會保險制에서 배제되어 있다).

둘째, 所得保障制度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社會保險 혹은 社會保障制를 통한 각종 年金과 보조금이 실제로 은퇴하거나 사고를 당한 개인이나 가구의 생활을 어느정도 보장해줄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 보통 개인이 은퇴전에 받던 소득의 60%정도 (임금대체를 60%) 만 되면 다른 여타 所得과 家族의 도움을 받으면서 은퇴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은 또한 ILO의 권고기준이기도 하다.

北韓의 사회복지제에 의한 賃金代替率은 年金種類마다 달라 30%에서 100% 까지 지급되는 등 다양하나, 소득비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전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연금비율도 높게 되어 있는 등 자본주의사회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所得比例制'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북한 문헌에 나타난 각종

67) 이정호,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비교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8, p.51

年金의 평균 賃金代替率이 60%이하로 떨어진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서 보면 老年年金의 경우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 연로연금을 받는 사람의 월연금 수령액은 식량 400g에 16원 30전의 현금을 남너구분없이 받고, 또한 老年年金수령자는 각종 '부대노력'을 함으로써 연간 600원에서 800원의 所得을 추가로 얻고 있다고 한다⁶⁸⁾. 그러나 귀순자가 증언한 16원 30전이라는 年金額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 연금을 받는 사람의 이전 직업이 무엇이고 월 基本生活費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기준연도를 알아야 할것이나 이에 대한 정보는 없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만을 보면, 北韓에서 노동자의 월급이 59원에서 92원정도이고 사무원의 경우는 70원정도가 되는 것을⁶⁹⁾ 볼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례에 불과하다.

68) 안계춘, 앞의 책, pp. 64-65

69) 김영규, 앞의 책, p. 7

V. 醫療保障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소련의 保健醫療體系를 분석한바 있는 V.George 와 N.Manning 은 蘇聯의 保健의료체계의 이념을 1) 포괄적인 保健의료서비스 2) 수혜대상 의 보편성 3) 국가에 의한 단일의 통일된 서비스 4) 무료서비스 5) 광범위한 예방보호 6) 보건서비스에서의 대중 참여 등 6가지로 제시한적이 있다⁷⁰⁾. 北韓의 保健醫療體系는 이 6가지 특징을 모두 보이고 있으나, 보다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1953년 10월에 열린 전국보건일꾼 대회에서 김일성이 보낸 호소문 중 “모든 건설과 창조와 생산의 근원은 인간이며 그의 노동력이며 그의 건강이다. 우리는 이 고귀한 勞動力의 빛나는 수호자로서 그 건강증진의 적극적인 안내자⁷¹⁾”라는 문구에 함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인식에 입각하여 北韓의 保健의료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保健의료체계의 下位 概念으로 볼수 있는 北韓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공급이 국유화된 상태에서 無償治療制, 醫師擔當區域制 그리고 豫防醫學의 강조 등을 결합시킨 굉장히 광범위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北韓에 의해 상당히 자신감있게 선전되는 가장 대표적인 北韓 사회복지정책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北韓의 保健醫療體系 전반⁷²⁾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IV장의 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Gilbert 와 Specht 의 분석틀을 변형하여 할당체계, 자원조달과 운영체계 그리고 給與體系

70) V.George & N.Manning, *Socialism, Social Welfare and The Soviet Union*, (London, RKP, 1980), p.105

7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서울:청년세대, 1989 재인쇄) p. 390

72) 北韓의 保健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 문옥륜 외, 「北韓의 保健의료제도 분석」, 국토통일원, 1989
변종화 외, 「남북한 保健의료 비교연구:북한실태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1989

등을 중심으로 北韓의 의료보장제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1. 制度의 概要

의료보장제도는 그 형태를 기준으로 몇가지 理想型 (ideal type) 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 형태의 이념형은 재원 조달이 보험방식인가 국가예산방식인가 그리고 의료공급이 상품성을 띄는가 아니면 상품성이 배제되는가에 따라 社會主義 國家와 영국 등 일부 資本主義 國家에서 실시되는 國營醫療서비스方式 (National Health Service)과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실시하는 社會保險方式 National Health Insurance 으르 나누어 볼수 있다⁷³⁾. 북한은 의료보장제도는 예산이 전액 국가에서 충당되고 보건의료의 상품성이 배제된다는 의미에서 國營醫療서비스方式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북한 의료보장제도는 無償治療制, 醫師擔當區域制라는 두 기둥을 근간으로 하며 여기에 豫防醫學의 원칙이 첨가되어 北韓의 보건의료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 의료보장제도의 두 기둥인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장에서 본것처럼 無償治療制는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1946), '전반적 무상치료'(1953) 그리고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1960)의 세단계를 거쳐서 정착되었다. 물론 이러한 무상치료제가 확립된 것은 평등을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社會主義體制의 특성외에 전쟁기간중의 상당수의 사상자 발생,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건강한 노동력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無償治療制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느정도의 무상치료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상당한 本人負擔金이 존재했고, 60년대까지 외래의 경우 약값

7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즐고, "한국의료보험제도와 노동력의 재생산문제", 「사회복지학연구」, 제 5호, 서울신학대학 사회사업학과, 1990, pp. 18-20 참조

에 본인부담금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北韓의 문헌에서는 거의 모든 의료과정의 치료에 무상원칙이 확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의료봉사사과정의 치료비와 약값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무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無償治療制는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시책⁷⁴⁾”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의료이용에서의 차별이나 치료의 질적인 수준에서의 낙후성 등에 대한 비판은 제기되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북한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될 부분이다.

醫師擔當區域制를 북한에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여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의료봉사제도’라고 규정하는데 북한 의료보장제도의 한가지 축인 동시에 豫防醫學的 방침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이기도 하다. 北韓의 의사담당구역제는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생활 및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구체적 실정에 따라 거주생활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居住地擔當制’와 생산활동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의료봉사조직을 하는 ‘職場擔當制’ 두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데⁷⁵⁾, 이는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의료봉사를 보장할 뿐아니라 자기 가정에 돌아와서도 거주지담당구역 의사에 의하여 2중적인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醫師擔當區域制의 단위는 행정,경제단위와 대부분 일치되어 있다. 도시의 경우는 시,구역병원과 그 하부단위인 종합진료소들이 되고, 농촌에서는 군병원과 그 아래에 있는 리 인민병원(진료소)들을, 산업지구에서는 공장병원과 공장진료소 등 말단단위 병원, 진료소가 된다.

담당구역의사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등 기본전문의과 의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내과의사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농촌의 경우를 보면 1개리의 인구수가 1,500-5,000명으로 리단위의 病院이나 진

74) 한기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 「주체의학」, (평양: 주체의학연구소 1991), 91년 2호(누계 252호), p.4

75) 「인민보건사업경험」, p.104

료소에 의사 2-10명이 배치되어 있어 보통 의사 1인당 인구 500명 내외를 기준으로 醫師擔當區域制를 실시하고 있다⁷⁶⁾.

2. 割當體系

北韓은 1946년 부터 '사회보험법'에 의해 당시 인구의 18.7%에 해당하는 노동자 및 사무원과 그 부양가족에 대해 無償治療制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계층만 의료보장제도에 포함시키는 '選擇主義'로 출발했으나 1953년부터 전 '인민'을 모두 무상치료제에 포함시키는 '보편주의'로 전환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보장제도의 割當體系는 普遍主義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의료보장제도에서 1953년도에 보편주의로 전환한 것은 6·25기간중의 수많은 사상자의 발생이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南韓의 경우는 1989년도에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을 포괄하는 普遍主義로 전환하게 된다.

3. 財源 調達과 財政의 規模

앞에서 보았듯이 北韓의 의료보장제도는 일반적인 社會主義국가들의 의료보장형태인 '國營醫療서비스方式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保險方式을 취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와는 자원조달체계가 상이하다. 사회보험방식에서의 자원조달은 크게 피보험자,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국영의료체계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가의 일반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다(예를 들어 자본주의국가이지만 국영의료서비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전체 보건예산의 약 97%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보장제도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없는 자료나마 대략적인 예산을 알수 있는 자료가

76) 변종화 외, 앞의 책, p.12

발표되고 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國家豫算과 支出에 대한 통계자료를 자세히 발표하지 않고 있고 배수율만을 제시하고 있어 예산의 規模를 推定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다. 때문에 65년도 이후에는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예산에 대한 언급을 기초로 대략적인 推計를 하는수 밖에 없다⁷⁷⁾.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북한 보건의료예산의 국가총재정에 대한 연도별 구성비율과 절대액수의 변화과정을 보면 표 17과 같다.

< 표 17 > 북한 보건의료예산의 연도별 지출규모

(단위: 백만원(北韓貨), %)

연 도	보건비	사회문화비	국가 총지출
1948	534(3.9)	2,975(21.8)	13,654(100.0)
1949	745(3.8)	3,814(19.3)	19,763(100.0)
1950	1,147(4.3)	5,660(21.1)	26,723(100.0)
1954	2,212(3.0)	9,535(13.0)	72,596(100.0)
1956	2,357(2.7)	10,936(12.7)	86,002(100.0)
1957	3,440(3.6)	15,839(16.6)	95,588(100.0)
1958	56(4.7)	245(20.7)	1,183(100.0)
1959	98(4.3)	429(18.8)	2,281(100.0)
1960	119(6.3)	511(26.9)	1,900(100.0)
1961	130(5.6)	548(23.5)	2,336(100.0)
1962	152(5.4)	625(22.2)	2,811(100.0)
1963	159(5.3)	710(23.8)	2,985(100.0)
1964	134(3.9)	704(20.6)	3,418(100.0)
1965	175(5.1)	684(19.7)	3,476(100.0)
1970	291(4.9)	1,193(19.9)	6,002(100.0)
1975	433(3.8)	2,757(24.3)	11,367(100.0)
1980	496(2.6)	4,174(22.2)	18,836(100.0)

77) 65년도 이후 보건의료예산에 대한 추계방법은 문옥륜 외, 앞의 책, 제 8장 참조. 문옥륜은 여러가지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필자가 수집한 자료와 가장 일치하는 추계치만을 제시하였다.

1982	514(2.3)	4,631(20.9)	22,203(100.0)
------	----------	-------------	---------------

- 출처: 1) 국토통일원,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1988.12
 제 I, II, III 집, 해당연도 예산.결산 보고자료
 2) 「北韓法令集」, 제 5권, 49,50,54년 '국가종합예산법령'
 3) 문옥륜 외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보건의료정책연구소, 1989.12, p.238
 4)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1946-1985」, 1986
- 비교: 1) 1958년 부터 100:1 화폐교환가치
 2) 보건비는 48,49,50,54,58년은 결산치 나머지 년도는 예산
 치. 65년이후는 추정치임 그리고 61-63년 까지는 체육비가
 포함된 금액임.
 3) 사회문화비와 국가총지출예산은 48,49,50,54,58년 그리고
 65년이후는 결산치. 나머지 년도는 예산치임

표 17에 의하면 1948년도에 북한 전체 국가예산의 3.9%를 차지하던 保健豫算이 50년도까지는 증가하다 50년대 중반까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58년도에는 4.7%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 이후로 60년도에 6.3%까지 늘어나 가장 많은 保健費支出比率을 기록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가장 최근연도인 1982년도에는 전체 북한예산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절대액수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82년도의 경우 북한 화폐로 약 5억 1천 4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표에서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한편, 이러한 保健豫算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의 북한관계자료로는 財政運營方法과 세부적인 豫算割當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는 길이 없다.

4. 給與 體系

북한의 無償治療制가 보장하고 있는 給與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무상치료제의 내용

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령 南韓의 경우 醫療保險制度의 보험급여는 진찰,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수술 등의 요양급여, 분만급여, 분만비, 건강진단, 장제비 등으로 보험급여가 구분되어 있어 給與의 종류를 알수 있고 또한 급여의 範圍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진료행위는 보험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 초음파검사나 CT촬영 등), 또한 일정한 本人負擔金이 존재한다.

北韓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의료봉사가 무료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人民保健法 제 9조에 '외래 입원의 처방약,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그리고 근로자의 요양의료봉사 및 왕복 여비, 해산방조,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치료에 의한 給與範圍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그나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최근의 한 문헌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이 문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외래 치료, 입원치료, 왕진진료 등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가 다 무상이며 진찰비, 실험검사비, 기능진단검사비, 수술비, 식사비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가 다 무료로 되고 있다. 심지어 요양소에 오고가는 왕복 여비까지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임신부들의 해산방조비, 불구자들에게 주는 교정기구의 비용, 이발의 보철비 등 모든 의료봉사가 다 무상이다" 또한 "무상치료체를 실시한다는 일부 나라들도 병원에서 치료비와 약값을 분리시켜 ... 외래 처방전에 의한 약은 돈을 내고 사먹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원에서의 치료비와 약값을 분리시키지 않고 입원치료비와 약값은 물론 외래의 모든 치료비와 처방전에 의한 약값을 다 무상으로 하고 있다"⁷⁸⁾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다면 북한 의 無償治療制에 의한 給與範圍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있고 급여범위의 제한이나 일부 本人負擔金은 없는 것으로 볼수 있다.

78) 한기환, 앞의 논문, p.4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폭넓은 급여범위외에 치료받는 급여의 질의 문제 그리고 거의 모든 치료가 무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서 유상의 본인부담이 남아 있다는 상반된 지적이 있다.

5. 問題点

北韓이 '형태적으로' 완벽한 무상치료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얼마나 질적으로 보장되는가하는 점은 제도의 형태와는 상대적인 문제이다. 물론 북한은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物質技術的'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⁷⁹⁾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점은 수긍하기 힘든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북한의 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評價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관련문헌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북한의 자체의 문헌에서 가장 최근시기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개년계획시기(1971-1976)에 제시된 '도시와 농촌의 의료봉사의 차이를 줄일것' 그리고 71년 노동당 5차대회에서 지적한 '보건부문의 과학기술수준을 높힐 것'이라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두가지 과업이다⁸⁰⁾. 농촌보건위생의 落後性에 대하여 북한은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워낙 농촌이 낙후되어 있어 보건위생면에서 都市와 農村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농촌리에까지 아동병동을 설치하며, 농촌주민과 도시주민간의 의료방조에서 차이를 줄일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保健部門의 기술적 낙후성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부분에 비해 보건부문의 科學技術發展이 '우리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비해 볼 때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농촌간의 보건의료수준 차이의 극복이나 보건부문의 과학기술의 발전(이것은 치료의 질과 관련되는 문제임)이 빠른 기간

79) 한기환, 앞의 논문, p.4

80) 「조선보건사」, pp.603-610 참조

에 해결되기 힘들고, 막대한 財政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80년대 이후도 이 부분이 북한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의 연구결과 그리고 귀순자의 증언에 의한다면 북한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無償治療制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일부 有償의 본인부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약국의 경우 처방전이 있어도 약값은 유상 그리고 부식비의 본인부담), 그리고 의료시설의 낙후성과 약품의 부족 등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문과목의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하여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醫療行爲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간부에 대한 치료상의 특혜가 있어 의료에 대한 平等한 接近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北韓이 지적하는 북한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이나 국내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0여년에 걸쳐 확립한 無償治療制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며 南韓의료보장제도의 보완·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VI. 南韓과 北韓의 比較

체제가 상이하고 서로 경쟁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상호 比較·評價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구수준으로는 남북한의 비교라는 것이 남북한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관하게 만들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 특히 南韓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비교적 자료입수가 쉽고, 제도의 문제점을

81) 변종화 외, 앞의 책, 제 4장

문옥륜 외, 앞의 책, 특히 귀순자와의 토론 부분 참조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p.1004

에 해결되기 힘들고, 막대한 財政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80년대 이후도 이 부분이 북한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의 연구결과 그리고 귀순자의 증언에 의한다면 북한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無償治療制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일부 有償의 본인부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악국의 경우 처방전이 있어도 약값은 유상 그리고 부식비의 본인부담), 그리고 의료시설의 낙후성과 약품의 부족 등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문과목의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하여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醫療行爲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간부에 대한 치료상의 특혜가 있어 의료에 대한 平等한 接近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北韓이 지적하는 북한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이나 국내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0여년에 걸쳐 확립한 無償治療制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며 南韓의료보장제도의 보완·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VI. 南韓과 北韓의 比較

체제가 상이하고 서로 경쟁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상호 比較·評價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구수준으로는 남북한의 비교라는 것이 남북한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판하게 만들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 특히 南韓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비교적 자료입수가 쉽고, 제도의 문제점을

81) 변종화 외, 앞의 책, 제 4장

문옥륜 외, 앞의 책, 특히 귀순자와의 토론 부분 참조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p.1004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는 南韓 연구자의 입장에서 아직도 구체적인 최근의 자료를 입수할수 없고, 또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는 북한 제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客觀的인 比較·評價'의 전제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제도에서 남북한 연금의 賃金代替率을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연금의 임금대체율은 단순히 임금대체율일 따름이지 중요한 문제는 그 연금으로 사실상 노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물가수준이나 소비수준정도 그리고 주택, 의료, 교육 교통 등 이른바 '集成的 消費手段' 사회화된 정도와 이것이 勞動力再生産費에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北韓 관계자료로는 이 작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며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인 비교이상의 차원을 넘기 힘들 것이다.

1. 所得保障制度의 比較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의 관련제도를 제도의 형태, 급여의 종류, 할당체계 그리고 재원조달체계 4가지 측면만을 비교하기로 한다. 연금 등의 임금대체율에 대한 비교는 바로 앞에서 지적한 이유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첫째, 所得保障制度의 形態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단순한 제도를 유지하는 반면 南韓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北韓은 노동력의 영구적 혹은 장기적 상실(6개월이상)인가 아니면 일시적 상실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상실일 경우 '社會保險制'를 적용하여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등이 지급되며, 사고 혹은 노쇠로 인한 노동력의 영구적 상실일 경우는 '社會保障制'를 적용하여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의 연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해주는 비교적 단순하게 구분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물론 국가공로자연금같은

은 예외는 있다).

반면 南韓은 노동력의 喪失 程度가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직역(군인, 공무원등의 특수직역인가 아니면 근로자 등의 일반직역인가)이나 노동력상실이유(업무상 사고인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사고인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제도가 만들어져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된 소득보장 제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北韓의 給與를 기준으로 보면 '장례보조금'은 의료보험, '일시적보조금'은 산재보험, '산전산후보조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연로연금'은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노동능력상실연금'은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각종 연금제도와 산재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등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것을 給與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로 給與의 種類에 있어서 北韓은 단순한 반면 南韓은 여러 제도에 의해 급여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급여종류를 기준으로 남한의 각종 소득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종류를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표 18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給與의 종류에 따라 南韓의 소득

< 표 18 > 남북한의 소득보장제도와 급여 종류 비교

급여종류	북한		남한	
	계층	적용제도	계층	적용제도
일시적 보조금	노동자, 사무원 농민	사회보험제 협동농장기금	*업무관련 근로자 자영자 특수직역 *업무무관 근로자 : 자영자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없음 특수직역연금 단체협약에 근거 없음
산전산후	노동자, 사무원	사회보험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보조금	농민	협동농장기금	자영자 특수직역	없음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장례 보조금	노동자, 사무원 농민	사회보험제 협동농장기금	*업무관련 근로자 자영자 특수직역 *업무무관 근로자 : 자영자 특수직역	산재보험의 장의비 지역의료보험의 장제비 공교의료보험의 장제비 직장의료보험의 장제비 지역의료보험의 장제비 공교의료보험의 장제비
연로 연금	노동자, 사무원 농민	사회보장제 사회보장제	근로자 자영자 특수직역	국민연금의 각종연금 국민연금(임의가입) 특수직역연금 각종연금
노동능력 상실연금	노동자, 사무원 농민	사회보장제 사회보장제	*업무관련 근로자 자영자 특수직역 *업무무관 근로자 : 자영자 특수직역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없음. 특수직역연금 각종연금 국민연금의 장해급여 없음. ?
유가족 연금	노동자, 사무원 농민	사회보장제 사회보장제	*업무관련 근로자 자영자 특수직역 *업무무관 근로자 : 자영자 특수직역	산재보험 유족급여 없음. 특수직역연금 유족급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없음. 특수직역연금 유족급여

- 비고: 1) 남한의 자영자는 도시자영자와 농민외에 5인이하 사업장 피고용인 포함.
 2) 남한의 특수직역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을 의미하고 특수직역 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의미함
 3) 남북한의 연금제도 비교시 남한에는 북한에 없는 '퇴직금제도'가 별도로 있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보장에 관계된 각종 給與는 산재보험, 연금, 의료보험, 근로기준법 등 각종 관련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지급되고 있는데 반해 北韓에서는 소득 관련급여를 社會保險制와 社會保障制로 단순화시켜 놓고 있다. 물론 급여율을 결정하는데 까지 들어가면 제 4장에서 보았듯이 北韓도 근속연한, 노동강도, 장애의 종류에 따라 매우 복잡해지나 일단 제도의 형태와 給與의 형태에 있어서는 단순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의 또 한가지 차이점은 북한의 경우 각종 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 말 그대로의 '年金'이나 南韓의 각종 연금은 대부분 일시불과 연금 두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상실연금'의 대응되는 남한의 산재보험의 障害給與는 일시불과 연금형태 두가지로 지불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年老年金'의 경우도 일시금과 연금 두가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의 경우 이렇게 복잡한 南韓의 제도는 꼭 북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분립으로 인해 效率性和 衡平性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통일적인 틀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여러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⁸²⁾.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립되어 있는 각종 소득보장관련제도를 현재보다 단순화시킬 필요성은 있다.

셋째, 위의 표 18에서 보았듯이 南韓의 경우는 아직 도시자영자와 농어민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근로자에게는 北韓의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그리고 '일시적 보조금' 등에 대응되는 소득보장관련 給與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소득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普遍主義 할당체계이나 아직 남한에서는 상당수 계층이 적용되지 않는 選擇主義 할당체계라는 점이다.

北韓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6년에 보편주의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南韓의 경우는 特殊職域을 중심으로 연금제도가 발전하여 1960년에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에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는 1975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일반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82) 예를 들어 고철기 외,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었고 아직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는 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⁸³⁾ 더우기 北韓의 사회보장제에 의한 각종 연금제도는 재정이 社會保險方式이 아니라 國家一般豫算에 충당되기 때문에 北韓의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은 이미 각종 연금을 받고 있으며 1986년에 협동농장농민에 대한 社會保障制가 실시됨으로써 농민의 경우도 1986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각종 연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⁸⁴⁾. 그러나 南韓의 경우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8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 정도가 되어야 給與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또한 90년도 중반에 농어민연금과 도시자영자연금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20년이 지난 2015년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각종 연금지급이 開始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의 경우를 보면 약 30년의 격차가 그리고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그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南韓과 北韓이 연금실시연도에서 수십년의 격차가 난다는 평가는 전혀 옳바르지 못한 평가이다. 왜냐하면 근로자에 한정시켜 보면 南韓에는 北韓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退職金制度和 産災保險制度가 있어서 그동안 이 두제도가 사실상 北韓의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에 해당되는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금 단순화시켜 보자면 일반근로자와 사무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南北韓이 제도形態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北韓의 '연로연금'은 南韓의 퇴직금제도를 '年金化'한 형태인 것이다.

83) 현재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포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농어민 연금제도는 최근의 7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90년도 중반에 실시될 예정이다.
84)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北韓의 사회보장제에 의한 각종 연금지급은 南韓의 경우처럼 개인에게서 보험료를 걷는 사회보험에 의한 적립방식이 아니라 국가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 1986년에 협동농민에 대해 사회보장제가 실시 되었다는 것은 1986년부터 급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어민과 자영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남한이 상당히 뒤져 있다. 때문에 농어민과 자영자에 대한 年金制度가 빠른 시간안에 도입되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에만 한정되어있는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농어민 등 자영자에게 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⁸⁵⁾. 물론 최근에 도입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농어민 등 자영자에 대한 災害補償制度를 사회보험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일반예산 증당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 統合을 염두에 둔다면 제도의 형태결정에 있어서 적어도 北韓의 제도형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의 형태에 있어서 북한은 보험료를 개인으로 부터 걷는 사회보험방식('사회보험제')과 국가일반예산에서 증당하는 방식('사회보장제')을 혼합되어 있으나 남한의 경우는 개인, 사용자,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社會保險方式의 재원조달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北韓의 통계부족 그리고 南韓의 제도의 복잡성으로 개인과 국가 그리고 사용자(북한의 경우는 기업소나 사회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의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북한의 경우 '社會保險制'는 개인의 보험료가 1%이고 기업소나 사회단체가 5-8%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또한 '社會保障制'는 국가예산으로 증당되기 때문에 북한이 南韓보다 국가와 기업소, 사회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남한의 경우는 연금의 경우 사용자(혹은 국가)와 개인이 50%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용자 전액부담이다)

2. 醫療保障制度의 比較

의료보장제도의 경우도 소득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의료보

85) 이에 대한 최근논의는 농어민층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명채, "농어민연금제도 수립방안",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 창간호, 1991. 그리고 정명채 외, 「농작업사고대책과 농업노동자해보험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참조

장제도의 형태, 할당체계, 급여체계, 그리고 자원조달체계를 비교하기로 한다.

첫째, 의료보장제도의 형태는 제 V장의 서두에서 본 것처럼 북한은 모든 의료자원이 國有化되어 있어 보건의료가 '商品化'되어 있지 않고, 재원이 국가예산에서 충당되는 國營醫療서비스方式을 취하고 있는 반면, 南韓의 경우는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民間中心으로 되어 있어 보건의료가 '商品化'되어 있고, 社會保險料로 예산을 충당하는 社會保險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⁸⁶⁾. 즉 북한은 전형적인 社會主義的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남한은 資本主義的 의료보장제도의 전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이 전혀 다른 의료보장제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매우 난해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몇가지 시사점은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社會保險方式이 國營醫療서비스方式으로 전환된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이미 資本主義 국가라 하더라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등은 국영의료서비스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11년 社會保險方式에서 1948년에 國營醫療서비스方式으로 전환했으며, 이탈리아는 1922년에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1979년에 그리고 네덜란드가 1992년에 각각 국영의료서비스방식으로 전환하였다(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자원조달을 租稅方式으로 바꾸었지 보건의료자원의 사회화는 더 시간이 걸릴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가 국영의료서비스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비생산적인 보건의료비에 지출되는 규모를 국가가 統制할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간편성을 유지할수 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衡平한 접근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社會保險方式에서 완전한 國營醫療서비스方式으로의 이행

86) 엄격히 말하자면 남한은 지역의료보험예산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부조)'제도의 예산도 국가부담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자원조달과 사회보험료에 의한 자원조달이 혼합된 방식이다.

혹은 보건의료자원은 민간중심으로 두고 자원조달만을 조세방식으로 바꾸는 문제는 조세구조의 형평성, 의료자원의 지역적 균등 분포,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그리고 의사등의 이해집단의 반발과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요 등의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南韓의 경우를 보면 공공부분 의료자원의 비율이 민간부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80%이상의 보건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몰려있어 도농간의 의료자원의 불균등한 분포가 심하며, 예방중심의 의료활동이 미약하여 社會保險方式의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점 등은 국내의 연구자들에게서 많이 지적되고 있다⁸⁷⁾.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 보완은 비단 南韓 의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남북 의료보장제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할당체계에 있어서 北韓은 1946년에 노동자와 사무원을 포괄하는 부분적 無償治療制를 실시하였고 1953년부터 전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보편주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50년을 전후한 당시의 북한 경제력이나 醫療資源의 절대부족, 그리고 醫學技術의 낮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상치료의 질적 내용은 저급한 수준이었을 것이나 그 이후 이 제도를 꾸준히 보완·발전시킨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남한의 경우는 1962년에 醫療保險法이 제정되었으나 이때는 強制加入이 아닌 任意加入으로 사실상 사회보험의 의미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醫療保險이 실시된 것은 77년 이후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농어촌지역은 1988년 그리고 1989.7월에 도시지역의료보험이 마지막으로 실시되어 1989년에 全國民을 포괄하는 普遍主義로 이행하여 현재는 南北韓이 모두 보편주의적 할당체계를 갖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87) 박봉상 외, 「'90년대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비해 보편주의로 이행한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이나 의료보험실시 12년 만에 보편주의로 이행한 것은 다른 先進國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예를 들어 영국, 일본은 보편주의로 이행하는데 30-40년이 걸렸다.

셋째, 給與體系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고 대략적인 비교밖에 할 수 밖에 없는데 제 V장의 4절에서 본 것처럼 北韓은 왕진치료, 식사비까지 포함하여 급여 포괄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약국이용시 약값의 비용 등 本人負擔金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앞에서 본 것처럼 북한의 최근 문헌에서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南韓의 경우는 모든급여에 본인일부부담금이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현재의 남한의 本人負擔金이 높아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⁸⁸⁾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의 측면에서는 北韓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V장의 5절에서 지적한 대로이다.

넷째, 자원조달체계에서 북한은 국가예산에 의한 자원조달방식, 남한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社會保險料에 의한 방식과 國家豫算에 의한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 국가예산방식에 의한 자원조달은 행정적으로 간편하나 사회보험방식은 매우 복잡한 측면이 있다. 남한의 경우에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간의 보험료부담의 불공평성, 그리고 조합방식때문에 도시·농촌간의 재정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자원조달과 자원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⁸⁹⁾ 있기 때문에 제도통합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자원조달체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88) 본인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영모 외, 앞의 책(1990), 제 5장 참조

89) 이에 대한 자세한 점은 김영모 외, 앞의 책(1990) 참조

VII. 結 論

지금까지 北韓의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제도를 '개괄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제한된 자료때문에 총체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사회주의국가 일반이 그러하듯이, 北韓의 경우도 아무리 낮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보건의료의 제공과 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成果를 이룩하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우선적으로 南韓에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소득보장부문에서의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 年金과 災害補償制度의 도입, 그리고 의료보장부문에서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보험료산정방식의 개선, 본인부담을 인하, 보험제정의 통합과 국가보건의료 예산의 증액 등의 문제점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보완은 北韓에 비해 GNP규모가 훨씬 큰 남한의 경제력규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경제개발비나 방위비 등의 투자때문에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었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肯定的인 측면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미비한 관련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대비한 올바른 방법이지 북한이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서 이룩한 성과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애써 평가절하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 제도의 통합을 모색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北韓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남조선에서는 진찰 한번 받는데 10만원의 목돈을 써야 하고 ... 한달에 로임 10만원을 타나마나 하는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남한 의료보장제도와 남한 사회의 '客觀的 現實'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많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北韓의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약간의 전망을 언급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북한은 사회복지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의 國家에서 부담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가예산을 충당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되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北韓의 경제는 그동안 추구해온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民族經濟'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사정은 향후 북한의 소득보장제도나 의료보장제도의 질적 발전을 방해하는 否定的 要因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장미빛 전망'이 될수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교양' 할수는 없으며, '南北韓의 經濟戰'을 강조하면서 인민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북한지도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면, 인민생활의 질의 하나인 의료보장제도나 소득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의 질이 낮아 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北韓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生産力 水準'에 달려있다.

90) 한기환, 앞의 논문, p.4

參考文獻

< 국내문헌 >

* 논문 및 단행본

- 고승호 저, 김한민 역 「북한사회주의 발전 연구」, (서울, 청사, 1988)
- 고철기 외,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지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국토통일원, 「기존 통일 및 북한 관계연구의 주제별, 방법론별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1981
- 국토통일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북한상황변화 예측; 분야별 변화상황 장기예측」, 1986
- 국토통일원, 「북한사회의 변화추세와 전망」, 1990
- 강정구, “북한 사회구조의 변혁”,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김남식, “80년대 북한의 움직임”,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학사, 1989)
- 김연명, “한국의 복지수준 규정요인으로서의 진영모순개념에 관한 고찰”, 중앙대 '사회와복지연구회' 발표 논문(미발간), 1990.8
- 김연명, “한국의료보험제도와 노동노동력의 재생산문제”, 「사회복지학연구」, 제 5호, 서울신학대학 사회사업학과, 1990
-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 분석」, 국토통일원, 1984
- 김영모 (편), 「현대사회보장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 김영모외, 「한국의료보험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 문육륜 외,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분석」, 국토통일원, 1989
- 문육륜 외,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서울: 보건의료정책연구소, 1989)
- 박길준, 「북한사회제도의 법적 구조분석 : 사회보장입법을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1972.5

박봉상 외, 「'90년대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박재욱, 「북한의 계급」,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박홍우,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비교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8

변종화 외,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연구: 북한실태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1989

보건과사회연구회, 「북한사회주의 이행발전과 보건의료」, 학술단체협의회 (편),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서울: 한울, 1990),

서울대 사회주의연구팀, 「사회주의 개혁논쟁」, (서울, 형상사, 1990)

안계춘 외, 「북한 주민생활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1989

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노선」,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서울: 한울출판사, 1990),

연하청 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8)

연하청, 「북한경제의 운용과 정책 결정」,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90)

오정수, 「북한의 사회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전개과정」,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2

원석조, 「한국 의료보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2

유인학, 「남북관계발전에 대처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대책」, 국토통일원, 1973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 국등문제연구소, 1990)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8)

이상은, 「사회회주의 사회복지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1991.2

이승훈, 「북한의 경제 총량 지표」,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

사, 1990)

이정호,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비교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8

전응열, 박길준,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및 현황 비교 고찰」, 국토통일원, 1972

정대화,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I) 정책변화 분야」, 국토통일원, 1990

정명채, “농어민연금제도 수립방안”,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 창간호, 1991.

정상훈,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론적 고찰”,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최일섭, “사회복지제도와 운영실태”,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통일문제연구소, 「북한경제자료집; 북한경제의 실체와 이론」, (서울 민족통일, 1989)

평화연구소, 중앙대 ‘사회와 복지연구회’, “남북한사회복지비교”, 「한반도의 균축과 사회복지」, (서울, 한울, 1991)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 국내자료 및 인터뷰기사

송두울교수(독일 뮌스터대 교수) 의 김일성과의 인터뷰내용 (한겨레 1991. 7. 5일자)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0. 9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1990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 1946-1985」, 1986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199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조재길,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서울, 삼민사, 1991)

「원자료로 본한: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한시해(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와의 인터뷰, 「사회평
론」, 사회평론사, 1991.7월호, p.282

< 북한 문헌 >

* 논문 및 단행본

「경제사전」, 제 1권 - 제 2권,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과학연구
소, 1985),

국토통일원,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제 1집 - 제 4집, 1988.12

김일성,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79)

「로동행정 사업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금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90년
4호, (누계 69호), (평양, 경제연구소, 1990)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5」, (평양: 사회과학출판
사, 1985 ; 서울: 태백, 1989년 재인쇄)

「세금문제해결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서울: 지양사, 1989년)

전영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구분과 징표”, 「경제연구」, 91년
1호, (누계 70호), (평양, 경제연구소, 1991)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

최경인, “우리나라에서 추가적 혜택에 대한 통계적 연구”, 「경제연
구」, 1989년 2호(누계 6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한기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전반적 무상치
료제는 가장 우월한 보건의제도”, 「주체의학」, (평양: 주체의학연구소
1991), 91년 2호(누계 252호)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서울: 청
년세대, 1989 재인쇄)

* 북한법령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승인에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이하 동일)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북한법령집」, 제4권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 「북한법령집」, 제 4권,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관하여', 「북한법령집」, 제4권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1집,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협동농민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북한법령집」, 제 4권

'사회주의노동법', 「북한법령집」, 제 4권

'사회주의 노동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IV 집, 1988.12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1972.12, 「북한법령집」, 제 1권

'20개조 정강',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신동아, 「원자료로 본한: 1945-1988」,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 외국문헌 >

소련 과학 아카데미 세계사회주의연구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1985), 국토통일원 (역), 「북한의 정치경제」, 1988

Vic George & N.Manning , 「Socialism, Social Welfare and the Soviet Union」, (London, R.K.P, 1980)

R. Mishra, 「Society and Social Policy : Theoretical Perspectives on Welfare」, 표갑수.장소영(공역),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2)

N. Gilbert & H.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J., Prentice-Hall, 1974)

北韓의 人權問題에 관한 法的 制度的 研究

— 國際法理論을 통한 北韓의 人權研究 —

성 재 호 (성균관대)

〈 要 約 文 〉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異口同聲으로 세계에서 가장 나쁜 실태임을 밝히고 있다. ‘최악의 인권유린국’, 혹은 더 나아가 ‘인권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 등이 그것이다. 우리민족의 뇌리에서 한번도 지워져 본적이 없는 통일문제와 이런 평가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북한의 인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민족의 화합문제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겨레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전제이다. 곧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통일은 민족의 대통합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먼저 개선되어야만 한다.

사회질서는 인간의 존재이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자유인으로서의 생활은 그들이 만든 사회속에 묻혀버림으로써 主客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바로 인권논의인 것이다. 인권이란 용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야 일상적인 용어로 되었으나, 그 역사적 근원은 자연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르네상스운동기에서 베스트파알리아 조약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狹量과 정치 경제적 구속에 대한 저항은 自由와 平等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

여, 급기야는 大憲章, 權利請願, 權利章典 등이 탄생되었고, 여기서는 인간이 永久不可褻의 權利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권 개념을 더욱 정치하게 된 것은 17세기 자연과학과 지식의 발달, 그리고 18세기 인간성의 믿음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자연, 인간, 사회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원칙을 발견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려 하였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지적 용틀임은 18세기와 19세기초 서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미국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天賦의 權利로서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8세기말에 들면서 절대주의체제와 법실증주의의 융성은 다시금 인권문제를 후퇴시켜버리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제1차세계대전까지는 자연법의 입장에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주장은 베일속으로 묻혀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시대에도 人道法의 형태로 인권의 개념은 부분적으로 존속하였고, 특히 법규와 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자들은 그러한 존재들에 대하여도 국가의 강제력을 요청함으로써, 개별적 문제이나 인권보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세계대전까지에는 인권의 문제가 개별국가의 헌법상 문제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 인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무력에 의한 국제평화의 파괴를 초래하였고, 이에 국제연합의 탄생과 더불어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강력히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국제연합체제하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규약이 성립되었고, 동일한 기반위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조약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이나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은 인권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까닭에 단순한 인권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왔다. 국제연합에서 인권문제가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이를 방치하여 둘 경우 平和에 대한 잠재적인 威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인권침해의 구제를 국제사회가 떠맡아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제연합의 무기력증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제관습법상의 인도적 간섭을 긍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결법외에 국제인권규약은 규약당사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B규약 선택조항 수락국가간 규약의무이행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권, B규약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규약상 권리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에의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이나 미주인권법원은 이러한 메카니즘외에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법원을 설치하여, 인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에 접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권헌장은 소위 제3세대 인권이라 일컬어지는 개발에 대한 권리와 평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개별국가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에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여 이에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관념하에, 어떤 지역의 어떠한 사람도 인권의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각을 북한문제로 돌려보면, 여전히 실망을 금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헌법이나 기타의 법률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유의를 하고 있는 듯 하나, 많은 국제기관의 평가에서 실제의 상황은 그렇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그들 스스로 천여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밝혀진 많은 법규정이나 제도 등은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상도할 때,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감마저 생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법을 받아들임에 있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만을 수용하려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공통된 입장에서 전연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법조차도 김일성의 교시에 끌어맞추는 독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제인권규약의 선택조항이나 선택의정서를 수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활용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남북간에는 이를 위한 국제적인 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간 대결의 유사형이 전면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더욱 문제제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관찰자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북한은 인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표현에서 해결책을 구할 수 있겠다. 즉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흥익인간이나 在世理化의 정신에서 자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지름길은 다름 아닌 북한의 개방화에 있는 것이다. 폐쇄사회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억압된 생활을 벗어나려 만들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인권

회복으로 귀착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염원하는 민족동질성회복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남북한문제가 국지적인 것임에도 항상 세계적 관심사였던 것처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연합을 통하여, 혹은 주변국과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인권문제의 국제성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I. 머리글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다. 이 말은 인간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여 그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조직체의 질서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도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主觀的 權利와 客觀的 秩序의 相互作用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찾게 되는데, 객관적 질서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가치있게 하는 형태에서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인간의 自由로운 本性으로 歸納되는 共同體秩序야말로 비로소 객관적 질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존재이전에 선행하는 사회질서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自由人으로서 형성한 社會規範을 스스로 준수하면서 살아나가게 된다. 그러나 社會의 肥大化는 인간의 자유인으로서의 생활을 조직화된 사회속에 묻어버림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현상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같은 불합리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가 바로 人權논의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그 본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해주는 본질적인 것으로, 고대 신학자나 중세의 기독교의 노력에 의해 단편적이거나 그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近代法體系의 성립이후에는 법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권문제는 國際法이란 터널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과제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타당한 人權法存在의 필요성은 누구나 긍정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北韓의 人權문제에 접해서는 국제법상의 일반론에 더하여 한민족으로서 특별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南北統一에 대한 강한 기대

를 갖게하는 요즈음 國家의 構成要素인 領土, 國民, 主權중에서 두번째 요소인 國民의 同質性回復은 分斷의 克服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며, 역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온 민족의 여망인 통일에 다가가는 본질적 부분이기에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II. 인권논의의 발전

1. 자연법사상과 인권논의의 발생

人權(human rights)이란 용어는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고 國際聯合이 탄생된 뒤에야 비로소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것이다.¹⁾ 그러나 人權概念의 역사적 근원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이 시기의 自然法概念이 바로 인권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²⁾ 그러나 중세이전의 자연법이론은 人間의 義務만을 가르쳤지 人間의 權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운동이 전개되고 封建制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13세기에서 1648년의 베스트팔리아講和條約에 이르는 시기이다. 종교적 狹諒과 정치 경제적 구속에 대

1) H. Gross. Espiel, "The Evolution Concept of Human Rights: Westen, Socialist and Third World Approaches", in *Human Rights: Thirty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ed. B. G. Ramcharan (Martinus Nijhoff, 1979), p. 42

2) 스토아철학에 의하면 자연법이론이 형성되기이전에 이미 그리스시민들은 平等的 言論自由(Isoyoria), 平等的 法(Isonomia), 平等的 尊嚴(Isotonia)을 自然權으로 향유하였다. 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Stevens & Sons, 1950), p. 74: 그러나 인권의 기원이나 근거를 추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근원과 이론의 성립간에 因果關係의 증명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 60

를 갖게하는 요즈음 國家의 構成要素인 領土, 國民, 主權중에서 두번째 요소인 國民의 同質性回復은 分斷의 克服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며, 역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온 민족의 여망인 통일에 다가가는 본질적 부분이기에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II. 인권논의의 발전

1. 자연법사상과 인권논의의 발생

人權(human rights)이란 용어는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고 國際聯合이 탄생된 뒤에야 비로소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것이다.¹⁾ 그러나 人權概念의 역사적 근원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이 시기의 自然法概念이 바로 인권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²⁾ 그러나 중세이전의 자연법이론은 人間의 義務만을 가르쳤지 人間의 權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운동이 전개되고 封建制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13세기에서 1648년의 베스트팔리아講和條約에 이르는 시기이다. 종교적 狹諒과 정치 경제적 구속에 대

1) H. Gross. Espiel, "The Evolution Concept of Human Rights: Westen, Socialist and Third World Approaches", in *Human Rights: Thirty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ed. B. G. Ramcharan (Martinus Nijhoff, 1979), p. 42

2) 스토아철학에 의하면 자연법이론이 형성되기이전에 이미 그리스시민들은 平等的 言論自由(Isoyoria), 平等的 法(Isonomia), 平等的 尊嚴(Isotonia)을 自然權으로 향유하였다. 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Stevens & Sons, 1950), p. 74: 그러나 인권의 기원이나 근거를 추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근원과 이론의 성립간에 因果關係의 증명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 60

한 저항은 自由와 平等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전이되기 시작하였는 바, 이것은 義務的 自然法을 權利로서의 自然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Thomas Aquinas나³⁾ Hugo Grotius의⁴⁾ 교훈이나, 大憲章(Magna Carta, 1215), 權利請願(Petition of Rights, 1628), 權利章典(Bill of Rights, 1688) 등은 이러한 변화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권리 또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국왕과의 계약을 통해 종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과 자연법이 더해지면서 天賦人權思想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다시 人間의 權利라는 표현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J. Locke는 인류는 시민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自然의 狀態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개인에게 부여된 일정한 權利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自然權을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것일 뿐 권리 그 자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가가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에 실패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결국 인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⁵⁾ 이와 같은 합리주의는 인간의 理性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성이란 보편적이고 불가양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⁶⁾ 그리하여 17세기 자연과학과 지식의 발달에 힘입은 자유로운 지적 용틀임은 18세기와 19세기초 서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영국의 혁명과 그 결과인 權利章典은 서구, 특히 북미주와 프랑스

3) T. Aquinas는 불가양의 특정권리를 부여하는 자연법에 큰 의미를 주고 있으나, 그의 견해에서 자연법이란 신법의 일부를 뜻하는 것이다. 三島淑臣, 法思想史(靑林書院新社, 1980), 171~172面

4) H. Grotius는 자연법을 올바른 이성의 명령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본성은 사회성에서 파악하여, 합리적인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회적 조화를 해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H.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Bk. I, Ch. I

5) Tibor R. Machan, *Human Rights and Human Liberties* (Nelson-Hall, 1975), pp. 21~22

6) John O'Manique, "Universal and Inalienable Rights: A Search for Foundation", *Human Rights Quarterly*, Vol. 12(1990), p. 468

를 휩쓴 혁명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1776년 7월 4일의 美國獨立宣言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의 창조자에 의해 일정한 不可讓의 權利를 부여받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⁷⁾ 1789년 8월 26일의 人間 및 市民의 權利宣言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en and of the Citizens)도 “인간의 自然스럽고 讓渡할 수 없으며 神聖한 權利”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인권선언과 같은 보조를 취하였던 것이다.⁸⁾ 미국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과거처럼 국가내에서의 기존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로서 확인하기 전에 인간이 사람으로서 출생시부터 가지고 있는 天賦의 權利를 선언하고 있다. 즉 自然權으로 주장한 것이다.

2. 법실증주의와 인권의 후퇴

18세기말에 들면서 自然法과 自然權思想은 공격받기 시작하였다. 즉 자연법과 자연권이란 假想의 隱喻的 現像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매우 강하여졌고 더욱 확대되어 나타났다.

J.S. Mill은 개인의 自由는 사회에 대한 效用性으로만 정당화된다고 하고 있으며,⁹⁾ J. Austin은 唯一한 法은 主權者의 命令이며, 唯一한 眞理는 증명될 수 있는 經驗뿐이라고 하였다.¹⁰⁾ 그럼으로써 제1차세계대전까지는 자연법의 입장에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혹은 할 수 있는 이론가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19세기 독일 觀念論의 영향과 유럽의 民族主義에 발맞추어 일부 학자들은

7) J. O'Manique, *op. cit.*, p. 468

8) 稻本洋之助, “一七八九年の「人および市民の權利の宣言」”, 基本的人權(東京大學出版會, 1978), 第3卷, 87面以下

9) T. R. Manchan, *op. cit.*, *supra* note 4, 165

10) 三島淑臣, 上掲書, 327面

사회와 국가에 속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특히 G. Jellinek는 事實上의 自然狀態를 권리로 파악하여 이 권리에 국가를 창조하고 제한하는 힘을 승인하는 자연법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권리보다는 國家優位의 사상을 피력하였다.¹¹⁾ P. Laband 또한 Jellinek와 같은 맥락에서 自由權 또는 基本權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의 자연적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제한을 가하지만, 국민의 實體的 權利로는 보지 않았다.¹²⁾ 요컨대 法實證主義者는 先驗的(a priori) 權利의 權源을 부정하였으며, 모든 권위는 국가와 정부가 法律로 규정함으로써 효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19세기 법실증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의 인권문제는 주로 人道法(humanitarian law)속에 포함되어 명맥을 유지하여 왔고, 극히 소수의 인권개념만이 국가간의 개별조약이나 국제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국가의 消極的 義務를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¹³⁾

이와 같이 법실증주의는 國家主權의 優越性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법률의 조작에 의해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해악을 가했던 역사적 사실은 법실증주의의 결정적 흠결사항이 아닐 수 없다.¹⁴⁾ 이러한 해악들은 어떠한 功利主義, 觀念論, 혹은 어떤 結果主義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서, 인간은 아무 조건없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人權宣言이나 人權鬭爭이 기존의 인권 즉 天賦人權을 압제자가 침해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을 주장

11) 金孝全 譯, 人權宣言論爭(法文社, 1991), 111쪽

12) 金孝全, 獨逸憲法學說史(法文社, 1982), 29쪽

13) Paul Sieghart,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Clarendon, 1983), pp. 11~12

14) 예컨대 나치의 법률은 유대인이나 기타 소수민족을 축출하고 절멸시키는 법을 정당화시켰고, 경찰의 자의적인 수색과 압수를 허용하였으며, 재판없이 수감하고 고문하며 처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하는 것이지, 압제자로 하여금 인권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투쟁이 아니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¹⁵⁾ 즉 인권의 존재는 국가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인권에 관한 한 자연법주의자건 법실증주의자건간에 自然法的 基盤위에서 논해져야만 할 것이다.¹⁶⁾ 다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실증주의자들은 法實現을 위한 국가의 強制力을 인권보장에도 적용하였고, 法規뿐만 아니라 그 法體系와 節次的 重要性을 강조함으로써, 個別的人權保障에 있어 質的 向上을 가져온 것은 평가받을만한 일이다.¹⁷⁾

3. 인권보호의 국제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권의 개념은 여러가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등장한 노예 제폐지등은 일반적 차원의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인권문제가 개별적 문제의 개선차원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력은 國際聯盟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1926년에 체결된 「奴隸制에 관한 協約」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은 그 규약을 통하여 인권에 관한 유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권보장책을 강구한 것은 아니나, 제22조에서 委任統治地城人民의 福祉와 發達이라든지, 제23조 1항에서 가맹국은 男女 및 兒童을 위하여 公平하고 人道主義的 勞動條件을 確保할 것에

15) 崔鎔基, 韓憲學과 韓國憲法(法曹閣, 1990), 254쪽

16)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Pittman, 1987), p.9: 서남아프리카사건에서 田中판사는 인권은 普遍的 人間의 本質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는 사회와의 관련과, 人間으로서의 사람이란 개념에서 도출한다고 하였다. ICJ Reports, 1966

17) Jerome J. Shestack, "The Jurisprudence of Human Rights", in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Clarendon, 1985), ed. Thedor Meron, pp.74~75

18)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Vol. 2(Stevens & Sons, 1970), p. 753

노력할 것을 요청한 것 및 동 3항에서 婦人 및 兒童의 賣買에 관한 一般協定을 연맹의 관리하에 두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등이 人權規定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제1차세계대전후 광범위한 지역에서 패전국의 세력약화를 위한 영토주권의 변경이 발생함으로써 少數民族의 保護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과제로 등장하였다.¹⁹⁾ 물론 소수민족의 보호문제가 直接的인 人權問題로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국제연맹이라는 국제조직을 통하여 집단적 보장을 받게 된 것은 人權의 신장을 위하여 귀중한 경험을 남김 것으로 평가된다.²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人權의 尊重이 國際社會의 一般的 課題라기보다는 個別 國家의 憲法上 問題로 존재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조차 國家主權의 絶對性이 강조되어, 國際法은 國家間의 法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個人의 國際法主體性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던 시기의 당연한 결론이었다. 즉 人權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國家主權을 전제로 하는 國際法觀을 수정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人權이 국제법의 한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人權이란 오로지 實定國內法에서 수용되는 개념으로서 「憲法的 權利(constitutional rights)」 혹은

19) 제1차세계대전후 폴란드, 체코, 유고, 루마니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등 8개국은 주요연합국과의 조약에 의해서 그 영역내에 거주하는 人種上 宗教上의 소수자를 공정하고도 평등하게 대우할 의무를 수락하였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이라크 등 5개국에 대해서는 국제연맹가입시의 선언에 의해서 소수민족보호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金正均, 國際法(螢雪出版社, 1991), 233쪽; 또한 1923년 國際聯盟協會國際聯合 제7회 회의와, 國際議員聯盟 제21회 회의에서도 소수자보호의 국제의무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하였다. 田畑茂二郎, 人權と國際法(日本評論新社, 1947), 70~71面

20) J.F.Green,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1958, pp. 8~9

「公的인 權利(libertes publique)」와 같은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²¹⁾ 그러던 것이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연합국지도자들이 인권존중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제2차세계대전 중 혹은 전후에 성립된 국제문서들은 하나같이 人權의 國際的 保護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제문서는 人權의 保障이야말로 國際平和의 保障으로서, 또한 國際關係의 一般的인 基礎로서 매우 중요하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법의 지배하에 자유를 부여하면서 국민의 유기적 단결을 도모하는 법적 자유보다는 오히려 무력에 의한 타역의 지배나 침략을 자행함으로써 국제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관련이 주목되어 왔다.²²⁾ 이러한 배경에서 國際聯合憲章에는 일련의 인권보호규정이 立法化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많은 인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특색은 첫째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普遍的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인권의 보호가 모든 國際關係의 基礎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셋째 인권의 보장이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가장 긴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²³⁾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前文은 基本的人權·人間의 尊嚴과 價値·男女 및 대소 각국의 平等權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할 것을 선언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량을 총집결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연합의 이념에 따라 헌장 제1조 3항은 국제연합목적의 하나로써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尊重을 조장 장려하는데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13조 1항 b, 제55조 c,

21) A. H. Robertson,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in *Studies and Essay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Red Cross* (Martinus Nijhof, 1989), p. 793

22) 金正均, 前掲書, 235쪽

23) E. Schwelb,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Quadrangle, 1964), pp. 30~31

제56조, 제62조 2항, 제68조, 제76조등 8군데에서 구체적인 인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 초기의 인권문제는 法的 義務의 대상이라기 보다 국제적 協力の 目的이나 客體에 불과한 것이었다.²⁴⁾ 그러던 것이 차츰 인권의 침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국제연합에서 世界人權宣言을 채택하여 인권의 존중을 재확인하고, 國際人權規約을 채택하는가 하면, 지역적으로는 유럽人權協約, 美洲人權協約, 아프리카人權憲章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선언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²⁵⁾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인권규정을 구체화하여, 普遍的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18세기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각종 人權宣言의 國際的 集大成으로서 인권의 역사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²⁶⁾은 人權史에 큰 획을 긋는 里程碑가 된 것으로, 국제법상 인권의 보호라는 대명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24) H.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Princeton, 1950), pp. 99~100; J. Kunz,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JIL* Vol. 43(1949), pp. 316~318: 이에 대하여 헌장의 法的 拘束力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H. Lauterpacht, *op. cit.*, *supra* note 1, pp. 145~148; M. McDougal, "Human Rights in the United Nations", *AJIL* Vol. 58(1964), p. 612

25) UN. GA. Res. 217A(III), UN. Doc. A/810, at 17(1948)

2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GA. Res. 2200(XXI), 21UN GAOR, Supp. (No. 16) 49, UN. Doc. A/6316(1967);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1UN. GAOR, Supp. (No. 16) 52, UN. Doc. A/6316;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1UN. GAOR, Supp. (No. 16) 59, UN. Doc. A/6316

4. 새로운 인권의식과 국제사회의 요구

미국이나 프랑스의 近代市民革命을 통하여 획득하였던 고전적인 인권의 내용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人權概念도 歷史的 社會의 產物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사회변화의 확대는 종래의 인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키게 되었다.²⁷⁾ 그리하여 근자에 와서 世界人權宣言이나 國際人權規約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기 위하여 인권의 범위를 확장시켜왔다. 그 중에서 첫번째의 것이 「開發에 대한 權利」의 확인이다. 미개발국의 경제적 개발은 그들의 사회적 복지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에서 「快晴하고 健康한 환경에 대한 權利」를 추론하고, 「平和에 대한 權利」와 「人類共同遺産에 대한 權利」를 요청하고 있다.²⁸⁾ 이와같은 소위 新人權(New Human Rights)은 국제적 승인을 받아야만 될 第3世代 人權이라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²⁹⁾ Karl Vasak은 프랑스혁명의 구호인 '自由(Liberté), 平等(Égalité), 博愛(Fraternité)'의 세가지는 그대로 人權의 세가지 標題語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인권의 세 세대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³⁰⁾ 제1세대는 自由, 所有權, 安全, 壓制에 대한 抵抗에 해당한다. 이것은 사회 정치적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없이

27)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을 「形成過程의 諸權利(werdende Rechte)」라고 한다. 小林直樹, 現代基本權の展開(岩波書店, 1981), 58面

28) A. H. Robertson, *Human Rights in the World* (St. Martin's Press, 1982), p. 193

29) 1979년 7월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10차 國際人權法研究所 研究會期에서 Karl Vasak이 행한 「人權法의 第3世代에 관하여」(Pour une "troisième génération" des droits de l'homme: les droits de solidarité)라는 發題講演에서 사용되었다. A. H. Robertson, *op. cit.*, p. 193, 209

30) D. H. Ott, *op. cit.*, *supra* note 16, p. 239

정부 혹은 기관이 일정한 양식으로 개인을 처우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만이 自然權이요, 不可讓의 權利일 수 있다.³¹⁾ 제2세대에 해당하는 平等權은 19세기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주의의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의 간섭에 대한 자유라기보다 公正한 社會的 經濟的 環境에 대한 權利의 성격을 취하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정책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적 권리 혹은 指向的 權利(aspirational rights)라고 한다.³²⁾ 제1, 2세대 인권이 인간이 살고있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것이라면, 제3세대 인권은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는 國際的 權利로 여겨진다. 그 초기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3세대 인권은 相互依存性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博愛의 의미이며, 그 선택적 용어로 連帶性(solidarity)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³³⁾ 이러한 제3세대 인권은 첫째 人間的 次元이 결여된 영역속에 인간적 차원을 불어넣은 인권이라는 점에서, 둘째 連帶權은 국가에 대항해서 원용될 수 있고 동시에 국가로부터 요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셋째 연대권은 사회현상에 관한 모든 행위자(個人, 國家, 國際組織)들의 조화로운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다.³⁴⁾

국제연합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88년 제43차 총회는 「連帶性에 기반을 둔 人權」이라는 제목으로 잠정일정속에 포함시켰고, 제44회 총회에서는 콜롬비아대표가 “平和에 대한 權利, 個人의 發展, 快晴하고 건강한 環境, 人道的 助力, 人類共同

31) *Ibid.*, pp. 238~242

32) *Ibid.*, pp. 242~244

33) *Ibid.*, p. 244

34) 李章熙, “第3世代 人權의 概念”, 人權과 國際法(博英社, 1989), 215쪽

遺産에 대한 利益의 享有는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는 구문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었다.³⁵⁾ 그러나 영국, 일본, 서독은 連帶權의 개념에 대하여 留保하였으며, 이태리는 連帶性에 기반을 둔 새로운 영역의 인권은 심의과정을 거쳐 정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³⁶⁾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人權이라고 할 때의 ‘human’은 集團的인 것이 아니라, 個人的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權利’를 法的으로 強制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권리를 정의하여 社會的 政策의 바람직한 모든 客體라고 한다면, 이에 의해 제3세대 인권을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인권에 주어진 보통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고, 전도력있는 명쾌한 사실은 아니다. 세째 法的 權利와 道德的 權利를 區分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⁷⁾

따라서 현 시점에서 新人權의 논의가 法的 確信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기에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³⁸⁾ 그러나 人權保護를 위한 법과 양식에는 動態的인 發展이 요구되는 바이므로, 새로운 영역의 인권에 대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法制化되어 나타날 것이다.³⁹⁾

35) B. G. Ramcharan,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1990'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3(1991), p. 165

36) UN. Doc. A/44/829

37) A. H. Robertson, *op. cit.*, *supra* note 28, pp. 196~197

38) 그러나 平和에 대한 權利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人民의 平和에 대한 宣言」은 지구상 인민은 平和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가짐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8년 오슬로 國際平和研究所와 스트라스부르 國際人權法研究所 공동주최로 개최된 「平和와 人權會議」 최종문서는 平和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하여, 平和롭게 살 고유의 권리가 있다고 적고 있다. UNESCO 「人權, 人間的 必要性 및 新國際經濟秩序의 確立에 관한 전문가회의」도 1978년의 최종보고서에서 “인권과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무력행사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선언이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바이므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국제법에 구체화된 것이 바로 平和에 대한 권리이다”고 하였다. 拙稿, “人道主義와 人道的 干涉”, 人道法論叢, 제10.11호(1991), 239~24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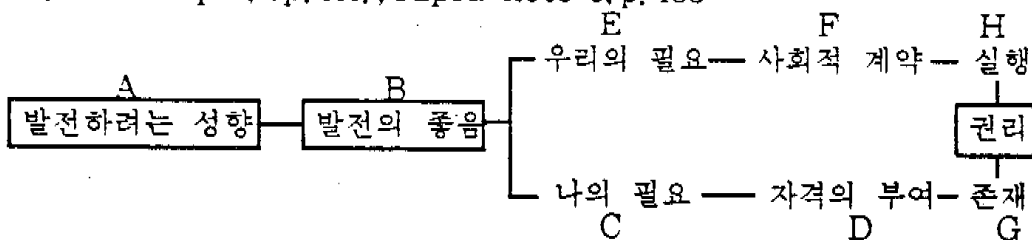
III. 국제법상의 인권보호

1. 국제관습법상의 인도적 간섭

국가가 주권의 담으로 보호되는 한 不干涉은 國際法上的의 義務요, 原則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干涉的行爲가 國際法에 合致하는 것이거나, 더 나아가 國際法을 勵行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의 평가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人道的干涉(humanitarian intervention)이다. 즉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하여 당해 국가가 적절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할 수 없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3자의 專斷的 介入(dictatorial interference)은 그 행위의 違法性을 阻却한다.⁴⁰⁾

인도적 간섭의 개념은 13세기 T. Aquinas의 저술에서도 발견되

39) J. O'Manique는 인권의 성립과정을 다음과 같은 표로써 설명하고 있다.
J. O'Manique, *op. cit.*, *supra* note 6, p. 483



- A. 권리의 존재를 위한 근거
- B. 도덕적 요구의 근거
- C. 요구대상의 결정
- D. 須要되는 바의 도덕적 요청
- E. 상호의존성에 대한 공동체승인
- F. 지속적 합의 또는 도덕적 체계
- G. 권리 그 자체
- H. 사회적계약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실행

40) I. Pogany.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Law: The French Intervention in Syria Reexamined". *ICLQ*, Vol. 35 (1986), p. 186

나,⁴¹⁾ 그 법적 논의는 18세기 유럽 啓蒙運動期의 인권개념에서 구하게 된다.⁴²⁾ 19세기 중엽에는 自然法の 衰落과 法實證主義의 浮上으로 인도적 간섭을 부정하려는 견해가 등장하였으나,⁴³⁾ 여전히 많은 주장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하려고 하였다. 예컨대 V.Harcourt는 간섭은 法이 아닌 政策의 문제이며, 현명하고 형평하게 다루어진 正義와 人道는 가장 숭고한 정책이므로, 인도적 간섭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⁴⁾ 이렇게 하여 20세기 초반에는 Fauchille, Stowell, Seferiades, Le Fur, Mosler등 많은 학자들이 人道的 干涉을 國際慣習法으로 주장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들은 國際聯合의 設立후에는 인도적 간섭의 慣習的 存在를 부정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도적 간섭이라는 명분하에 간섭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인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연합에서 해결하도록 하려는데 있다.⁴⁶⁾ 그러나 국제연합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정부가 그 국민을 大量으로 虐殺하거나 威脅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개별 국가에 의한 간

41) M. Bazylar, "Reexamining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Light of the Atrocities in Kampuchea and Ethiopia",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6, p. 570

42) F. Ermacora, "Human Rights and Domestic Jurisdiction" *Recueil des Cours*, 1968(I), p. 392

43) Carnazza Amari, Pradier Fodere, A. Heffter가 여기에 해당한다. J.-P.L. Fonteyne,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ts Validity Under the UN Charter", *Comparative Judicial Review*, Vol. 17(1980), pp. 38~40

44) *Ibid.*, p. 41

45) 그러나 Roxburgh, Higgins, Winfield, Potter, Strupp, Troillet, Accoily는 이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bid.*, pp. 47~48: 이러한 논란은 인권에 관하여 國際社會의 統一된 價値秩序를 구축하려는 경향과, 內部秩序를 스스로 형성하려는 국가의 國內法이 충돌하는데 기인한다. E. Menzel und K. Ipsen, *Völkerrecht* (C. H. Beck, 1979), S. 119

46) D. W. Bowett,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1958), pp. 104~105

섭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⁴⁷⁾ 국제연합이 그 본연의 임무수행에 실패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인도적 간섭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⁸⁾ 특히 M. Bazylar는 조약내용과 국가관행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인도적 간섭이 현행 국제법질서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결국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간섭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바, 첫째 인권침해의 急迫性, 廣範性, 適法한 當局者의 要請, 사용된 強制措置의 程度, 간섭측의 相對的 公平性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⁵⁰⁾ 둘째 平和的 解決방법에 의한 해결이 우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⁵¹⁾ 셋째 인도적 간섭이 행하여졌을 경우, 이를 국제연합에 신속히 보고함으로써, 그 제출을 통한 사후적 통제가 요망된다.⁵²⁾

인도적 간섭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일반 국제법의 허용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야 비로소 그 慣習的 存在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2. 국제연합내의 메카니즘

(1) 국제연합헌장

1945년 샌프란시스코회의의 일부 참석자들은 國際聯合憲章에 특

47) M. Reisman & M. McDougal,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Protect the Ibo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3), ed. R. B. Lillich, p. 167

48) T. M. Frank & N. S. Rodly, "After Bangladesh-The Law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Military Force", *AJIL*, Vol. 67 (1973), p. 257

49) M. Z. Bazylar, *op. cit.*, supra note 41, p. 578

50) R. B. Lillich, "Forceful Self-help by States to Protect Human Rights", *Iowa Law Review*, Vol. 53, pp. 347-351

51) F. Ermacora, *op. cit.*, supra note 42, p. 444

52) *Ibid.*

별한 인권규정을 삽입하여, 서명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의 존중규칙하에서 개인을 처우하도록 하는 엄격한 法的義務를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⁵³⁾ 그러나 헌장상에 人權과 基本的自由의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확실히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헌장 제1조 3항에 표명되고, 제55조 (c)에서 되풀이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56조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회원국은 공동적 개별적 행동을 취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만약 이 서약이 法的義務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국제연합은 인권에 관한 문제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덤바아튼 오크스안의 제9장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문제를 다룬 제3위원회 2분과위원회는 제9장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회원국의 國內管轄事項에 干涉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⁵⁴⁾ 뿐만 아니라 헌장 제2조 4항은 武力使用의 禁止를 원칙화하고, 제7항은 本質上 國家의 國內管轄權內의 事項에 대하여 國際聯合의 干涉을 禁止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제1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A분과회의의 보고자가 人權尊重을 위한 國際協力の 促進을 밝힌 제1조 3항과 관련하여, “그러한 基本的 權利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원래 관련당사국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權利나 自由가 현저하게 侵害된 경우, 그것은 平和를 威脅하여 헌장의 적용을 저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는 단순한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 바 있다.⁵⁵⁾ 실제로 국제연합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남아공화국의 人種隔離政策(apartheid)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인권문제가 아닌 ‘平和에 대한 威脅’이라는 형태로 파악하여 행동하고 있다. 즉 국제연합에서 인권문

53) UNCIDO, Vol. 6, p. 536

54) UNCIDO, Vol. 10, pp. 271-272

55) H.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Princeton, 1950), p. 29

제가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이를 방치하여 둘 경우 平和에 대한 潛在的인 威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⁶⁾ 이것은 人權保護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의 國內管轄權에 속하는 사항이나, 人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는 國際社會가 떠맡아야 함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 세계인권선언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은 人權의 範圍와 內容에 관한 결정을 위해 명백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성을 결하고 있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人權을 保護하도록 強制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人權의 보장을 위해서는 헌장을 개정하거나, 일정한 條約의 성립이 필요하다. 헌장의 기초자들은 경제사회이사회로 하여금 人權과 基本的 自由를 존중, 촉진, 준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 보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발족한 人權委員會(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활동으로, 1948년 12월 10일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世界人權宣言은 全文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및 2조는 一般的 條項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自由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平等하다” 고 말하고, 이어서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의 차이, 재산, 출생 기타 지위의 차별없이 이 선언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21조는 市民的 政治的 權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2조에서 27조까지는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權利에 대

56) J. M. Howell, "A 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 *AJIL*, Vol. 63(1969), p. 774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8조서부터 30조간에는 이상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社會的 및 國際的 秩序를 누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모든 사람은 사회에 대한 義務와 責任을 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성립된 것으로,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국가가 공히 달성해야 할 道義的 指針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⁵⁷⁾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동생활에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道義上의 基準이 명확히 설정되었다는 것은 국제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그 후의 많은 국제조약에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유럽人權協約」과 「美洲人權協約」은 그 前文에서 조약의 근거가 세계인권선언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3) 국제인권규약

國際人權規約⁵⁸⁾은 본질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나, 그 규정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두가지 면에서 형식상의 특징이 있다. 첫째 國際人權規約은 인권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社會權的인 것과 自由權的인 것을 구별하여, 각각 A規約(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權利에 관한 規約)과 B規約(市民的 政治的 權利에 관한 規約)으로

57) 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세계인권선언이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총회의장도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있다. *Yearbook of United Nations, 1948~1949, p. 535*; 1968년의 테헤란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국제사회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제4조), 여기서도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차원이라고 해석된다.

58) 1966년 12월 16일 제21회 총회에서 A B양규약은 만장일치(A규약:105대0, B규약:106대0)로 통과되었고, B규약선택의정서는 66대2, 기권38로 가결되었다. 寺澤一 山本草二編. 國際法の基礎(靑林書院新社, 1979), 313面

하고 있다. 31개조로 구성된 A規約은 노동조건, 단결권, 사회보장, 가족의 보호, 생활수준의 확보 및 건강 교육 문화생활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러한 제권리가 점진적으로 차별없이 실현될 것을 규정하였다.⁵⁹⁾ 35개조인 B規約은 이전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 프라이버시, 혼인의 자유, 공정한 재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공무 및 선거 참가권, 소수자등의 권리등을 규정하고, 일방적인 생명박탈, 고문, 노예, 강제노동, 일방적 체포나 구금, 전쟁의 선전, 차별 혹은 폭력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증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⁶⁰⁾ 둘째 A規約 및 B規約은 民族自決權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國際人權規約은 원래 個人의 人權保護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어떤 민족이 타 집단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된다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각각 제1조에서 스스로의 富와 資源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권리를 포함한 民族自決의 權利를 도입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단순히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國際人權規約은 규약상 제권리의 실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實施措置를 규정하고 있다.⁶¹⁾ 그 첫째의 방법이 실시상황을 국제연합에 報告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A규약 제16조, B규약 제40조). 특히 B규약에 있어서는 당사국의 보고의무이외에 人權委員會(Human Rights Committee)를 설치하여, 제권리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제28조). 이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리나, 규약의 의무위반에 관계되는 당사국으로부터의 통보(제41조; 소위 選擇條項)⁶²⁾를 審理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뿐만

59) A규약은 제6조에서 15조까지 10가지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60) B규약은 제6조에서 27조까지 23가지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61) A규약은 제16조에서 25조까지, B규약은 제28조에서 45조까지에서 규정되어 있다.

62) 그러나 선택조항 당사국은 대부분은 인권상황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므로, 이

아니라 이에 의해서도 만족스런 해결을 얻기 어려울 때에는 特別調停委員會를 임명하여, 해결을 위한 周旋을 행할 수 있다(제42조 1항). 그 외에 B規約選擇議定書는 個人도 국가의 위반에 관하여 人權委員會에 請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제2조). 그러나 여기에는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⁶³⁾ 즉 人權委員會의 권한은 그러한 권한을 당사국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회원국이 제기한 경우에만 이 조항상의 통보가 접수되고 검토된다(B規約 제41조, 선택의정서 제1조). 또한 심리에 이용가능한 것은 객관적 當事國이 提供하는 情報에만 限定되며, 심리기관이 직접적으로 이를 조사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⁶⁴⁾ 나아가 심리결과도 見解의 表明에 그치고 實質的인 行動은 不可能하다. 뿐만 아니라 규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法的으로 強制할 수 없으며, 가입당사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留保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는 法的 拘束力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지역적 인권조약상의 메카니즘

(1) 유럽인권협약

유럽人權協約(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⁶⁵⁾은 5절,

조항의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엄격한 시간제한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이 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제약요인이 된다. Scott Leckie, "The Inter-State Complaint Procedur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opeful Prospects or Wishful Thinking?", *Human Rights Quarterly*, Vol. 10(1988), p. 267

63) *Ibid.*, p. 299

64) E. Schewelb,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AJIL*, Vol. 62(1968), p. 843

65) 1950년 11월 4일 서명되고, 1953년 9월3일 발효되었다. 그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5개의 추가의정서(規約1절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와 자유의 시행.

6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2조~18조)은 基本的人權의 內容을 규정하고, 제2절(19조)은 유럽人權委員會 및 유럽人權法院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3절(20~37조)은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을, 제4절(38~56조)은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그리고 제5절(57~66조)은 雜則으로 짜여져 있다. 제1조는 제1절에 규정된 제 권리와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적고 있다. 제1절에서 열거되고 있는 권리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중 일정한 것, 즉 市民的 政治的 權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회원국 國內法에서 共通적으로 인정하는 基本的 權利에 한정하여, 새로운 권리의 설정보다는 기존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하는데 더욱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⁶⁶⁾ 經濟的 社會的 權利는 1954년 閣僚委員會의 결정을 거쳐 1961년 Turin에서 유럽社會憲章(European Social Charter)이 調印되어, 1965년부터 발효되었다.⁶⁷⁾

유럽인권협약은 그 실시를 위하여 유럽人權委員會, 閣僚理事會, 유럽人權法院의 세가지 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유럽인권위원회는 國家(제24조) 및 個人(非政府間 機構 및 個人의 그룹을 포함, 제25조1항)이 협약위반사실을 위원회에 請願할 경우, 이를 審理하고 調停한다. 국가간 訴請節次는 위원회에서 義務적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⁶⁸⁾ 個人的 請願權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수리권한

권고적 의견권한, 제29조 30조 34조의 수정, 추가권리의 보호, 제22조 40조의 수정)가 채택되어 왔다.

66) G. L. Weil,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Leiden, 1963), p. 35

67) B. H. Weston, *Basic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West Publishing, 1980), 178

68) 그러나 이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K. Boyle & H. Mannum, "Individual Applicat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ractice; The Donnelly Case", *AJIL*, Vol. 68 (1974), p. 44

을 갖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선언을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별히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만 그 행사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1961년 Austria v. Italy 사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는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公法의 違反」으로 위원회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⁹⁾ 각료이사회는 인권위원회로부터의 秘密報告를 수리하고, 法院에 부탁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準司法的 역할을 담당한다. 각료이사회는 결정은 체약국을 구속하고, 체약국은 이러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유럽인권법원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強制管轄權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또는 여러 회원국이 상호 교환조건으로 強制管轄權을 受諾하는 宣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2議定書의 발효에 따라 협약과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勸告的 意見을 발할 수 있다(제2의정서 제1조1항). 인권법원의 判決도 체약국에 대하여 最終的이고(협약 제52조), 拘束的이다(협약 제53조).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正當한 賠償(just satisfaction)을 제공할 수 있다(제50조).

(2) 헬싱키의정서

1975년 채택된 헬싱키議定書(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제7부는 人權과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포함하는 基本的 自由의 尊重을 타이틀로 하고 있다. 그 다섯번째 문장은 “참가국은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尊重은 平和의 本質的 要素임을 인정한다”고 하고, 일곱번째 문장은 “참가국은 이 분야에 있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個人의 權利를 확인한다”고 규

69) D. Ott, *op. cit.*, supra note 16, p. 260

정하는 바, 비록 이 선언이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구문은 人權問題가 국가에 유보된 국내관할사항이 아니라 國際的 關心事項을 수락하는 표현임이 분명하다.⁷⁰⁾ 즉 헬싱키의정서는 인권이 국제적 관심의 적법한 이슈임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人權의 定義에 관하여는 명백히 국제연합헌장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을 언급하고 있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존중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가국들은 독자적 혹은 공동으로 상호관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존중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人權保障을 위한 메카니즘의 성립에는 실패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相互적으로나 全體적으로 人權論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법상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않았으나, 인권분야에서 共通의 利益에 관하여 非定型的인 合意에 이르게 된 것이다.⁷¹⁾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國際人權規約의 定型的 節次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권 문제의 취급에 있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미주인권협약

美洲人權協約(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⁷²⁾는 유럽인권협약과 같이 自由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社會權의 점진적 달성을 약속하고 있다. 이 협약은 3부 8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국가의 一般的 義務(제

70) J. G. 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utterworth, 1984), p. 357

71) Jochen Abr. Frowe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Helsinki Final Ac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Accord* (Allanheld, Osmun co., 1977), p. 80

72) 1969년 11월 22일 서명되고, 1978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1~2조)와 市民的 政治的 權利(제3~25조),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權利(제26조), 權利의 制限(제27~31조), 個人的 義務(제32조)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2부(제33~73조)는 美洲人權委員會와 美洲人權法院의 구조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74~82조)는 一般規定을 담고 있다.

미주인권협약상 회원국은 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⁷³⁾의 요청에 따라 협약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제43조), 매년 美洲諸國機構(OAS)헌장상에 규정된 經濟 社會 教育 科學 文化的 權利에 관한 報告書 및 研究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2조).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 국가는 타국의 협약위반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제45조), 어떠한 개인이나 사람들의 그룹, 혹은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非政府間 實體도 어느 계약국에 의한 협약위반에 대하여 비난이나 불만을 담은 請願을 人權委員會에 제기할 수 있다(제44조). 위원회는 제기된 청원이나 통보에 관한 情報를 要請할 수 있고(제48조 1항 a), 제기된 사실과 자신의 결론을 담은 報告書를 작성할 수 있다(제50조1항). 그 외에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勸告를 행할 수 있다(제51조2항).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은 繫爭管轄權과 勸告的管轄權이 인정되며⁷⁴⁾, 계약당사국과 위원회만 當事者能力이 인정되고 個人的 出訴權은 부인된다(제61조1항). 判決은 당사국을 拘束하며(제63조 1항),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正한 補償(fair compensation)을 결정한다(제63조1항).⁷⁵⁾ 또한 극도로

73) 위원회는 OAS에서 구성된다. 까닭에 OAS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협약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Cecilia Medina,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Reflections on a Joint Venture", *Human Rights Quarterly*, Vol. 12(1990), p. 443

74) *Ibid.*, p. 444

75) 법원은 온두라스가 협약 제1(1), 4, 5, 7조를 위반하였다고 선언하고, Velasquez에게 公正한 補償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Velásquez Rodríguez Case, Judgement of 28 July 1988, Series C, No. 4

深刻하고 急迫한 경우, 개인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損傷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적절한 暫定措置를 취하여야 한다(제63조2항).

(4) 아프리카인권헌장

아프리카지역에 있어 영어권국가는 '法の支配'의 개념하에, 불어권국가는 나폴레옹법전과 프랑스혁명의 이념에서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여 왔다.⁷⁶⁾ 2부 68개조로 구성된 아프리카人權憲章⁷⁷⁾은 제1부(제1~29조)에서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제권리를 열거하고, 제2부(제30~45조)는 아프리카人權委員會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특히 제45조는 위원회의 권한이 인권의 촉진과 보호기능의 쌍방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장은 전체를 통하여 權利와 自由의 향유는 모든 사람들의 義務의 성실한 이행과 일체임을 밝히고, 市民的 政治的 제권리의 향유는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제권리의 충분한 향유없이 있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인권헌장은 몇가지 점에서 특색을 갖고 있는데, 첫째 市民的 政治的 권리와 함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集團(group)의 權利를 인정함으로써 人民의 自決에 대한 權利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셋째 소위 제3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經濟 社會 文化的 開發에 대한 권리와 國家的 國際的 平和와 安全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個人의 權利 외에 가족, 사회, 국가, 아프리카공동체에 대한 個人의 義務에 관하여 자세한 조약장치를 두고 있다.

헌장의 보장수단으로서 관계제국은 人權委員會의 調査 혹은 調停의 메카니즘을 통하는 외에, 友好的 解決을 권장하고 있다. 특

76) T. O. Elias,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in *New Horizons in International Law* (Oceana, 1980), p. 160

77) 1981년 6월 채택되고, 1986년 10월 21일 발효되었다.

어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이 없어도 타국의 위반에 대한 통보가 가능하다(제47조). 게다가 여타 인권조약과는 달리 人權法院이 없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의 慣行과 傳統은 西歐法體系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對立的 裁決的 節次보다는 仲介, 調停, 合意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유럽인권협약이나 미주인권협약이 비교적 市民的 政治的 권리에 관한 個人的 權利保護를 강조하고 政府에 대한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人權憲章은 法的 政治的 社會的 構造로 얽힌 血族關係와 部族集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⁷⁸⁾ 즉 전자가 市民的인 것인데 비해 후자는 그들 나름의 傳統的인 것에 인권의 바탕을 두고 있다.

IV.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법의 적용

1. 북한의 인권실태

‘北韓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人權侵害國’, ‘1973년 이후 1988년까지 16년동안 세계 167개국중 最惡의 人權狀況에서 전연 변동이 없거나 악화된 국가’. 이 표현들은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1990인권보고서」의 북한편에 쓰여진 표현과, 아시아위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간행한 「북한의 인권」에 있는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심지어 1991년 4월 평양에서 열린 國際議會聯盟에 참관했던 영국 Reuters기자 Andrew Browne은 ‘북한은 오웰도 상상못한 통제사회’⁷⁸⁾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991년 4월 3일 韓國自由總聯盟이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前 日本

78) R. Gittleman,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 Legal Analysi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1982), p. 71

79) Reuters, 1991. 5. 8.

公安調査處 北韓擔當官 구니아끼라(久仁昌) 씨는 「北韓社會의 人權狀況과 政治體制」란 주제발표에서 '북한에서는 人權의 개념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있다'⁸⁰⁾고 하였다.

북한은 형식상으로는 憲法이나 기타의 法律에서 인권에 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⁸¹⁾ 대표적으로 북한의 헌법 제4장은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라는 제목으로 24개조항을 두고 있다.⁸²⁾ 그중 제4장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제4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민의 사전적 개념을 보면,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⁸³⁻¹⁾ 계급성과 계층성을 띠는 인민중에서 선택된 또는 제한된 개념을 담고 있다. 즉 공민이란 사회실체적 개념으로써 민족반역자, 반혁명분자, 17세 이하의 자는 공민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⁸³⁾ 그리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個人을 喪失한 基本權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主體없는 權利, 즉 全體에로의 強制를 위한 義務에의 변신을 의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⁸⁴⁾ 이것은 個人보다 組織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결국 공민의 권리보다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주체사상을 도입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

80) 久仁昌, "北韓의 人權狀況과 政治體制", 北韓社會의 人間化와 開放化 展望

81) 규정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 개인적 권리 정치적 권리가 혼재되어 있어 體系성을 결여하고 있고, 의무의 열거로 끝을 맺고 있다. 法務部, 蘇聯法研究(Ⅲ), 43쪽

82) 金榮秀 編, 사회주의국가헌법(인간사랑, 1989), 584-586쪽

83-1) 정치용어사전(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사회과학원, 1970), 35쪽

83) 金東漢, "北韓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北韓의 法과 法理論(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8), 81쪽

84) 韓泰淵, "北德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北韓의 人權問題(國土統一院教育弘報局, 1976), 34쪽

도」라는 책에는 “공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어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다.⁸⁵⁾ 요컨대 공민의 권리에 있어서까지 主體思想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主體思想의 테제에는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이 있는 바, 개인은 처음부터 그 존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⁸⁶⁾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민의 권리란 그 형식적 표현과는 관계없이, 그 기본취지는 공민의 조직화와 의무의 철저한 이행에 있음이 명백하다. 북한의 형법도 인간의 존중을 그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을 가급적 가혹하게 제한하면서 그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리바이어던 국가」에게 모든 권력을 수여하는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⁸⁷⁾ 지난 4월 제정된 민법 또한 국가와 사회이익의 우선적 보장을 통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공고화를 명문으로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보장과는 무관하다.⁸⁸⁾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재판소 검찰소 및 변호사제도가 있으나, 이는 구제측면보다도 의무이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처벌에 그 중점이 있다고 하겠다.⁸⁹⁾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國家의 法律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내용이 본래 實質的이지도 않으려니와, 具體的이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은 社會主義國家의 法律文獻과 法律慣行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⁹⁰⁾ 더욱이 北韓의 人權問題에 접해서는 모든 관찰자가 정보의 빈약에 더하여, 그 사

85) 한석봉,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가사회제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186쪽

86) 久仁昌, 前掲論文, 8쪽

87) 朴光燮, “北韓刑法에 관한 考察”, 北韓의 法과 法理論, 241쪽

88) 朝鮮日報, 1991. 9. 6.

89) 金榮三, “北韓人權의 展望과 實相”, 無碍徐燉珏博士 古稀紀念 東西의 法哲學과 社會哲學(法文社, 1990), 544~545쪽

90) 法務部, 蘇聯法研究(Ⅲ), 68쪽

실확인의 곤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살펴 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北韓의 法規나 制度 등 확인된 내용과 그들이 기가입하고 있는 國際人權規約을 대비시켜 보기로 한다.

(1) A 규약과의 비교

A 규약규정	합치규정	위반법규 및 제도
§ 3 남녀평등	헌법§ 51 모든 공민의 평등 § 62 남녀평등	사회적 계급분류에 의한 계급제도의 존재로 생활과 안전의 모든 면에 서 불평등초래 형법§ 152 훈장 메달 비법 패용죄
§ 6, 7, 8 노동조건	헌법§ 27~29	형법§ 108 노동남비죄 등§ 91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등§ 197 의무적 노동 임시인민의원회법안 제57호§ 52 공안당국의 허가없이 직업 변경금지
§ 9 사회보장	헌법§ 58 국가사회보험	퇴직후 식량배급의 감축
§ 10 가족의 보호	헌법§ 63 결혼과 가정 에 대한 국 가의 보호	1974. 4. 「근로자」 “혁명의 투쟁을 떠나서 개인적이나 가족적인 행복을 생각할 수 없다”
§ 11 생활수준의 확보		12등급의 성분분류에 따라 배급제
§ 12 건강권	헌법§ 48 무상치료	의료서비스의 질이 환자의 사회적 신분(진찰권의 색차이)에 차이
§ 13, 14 교육권	헌법§ 40~43	정치 계급적지위와 성에 따라 좌우
§ 15 문화적권리	헌법§ 35~37, 60	헌법§ 49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예술작품의 사전승인

(2) B규약과의 비교

B규약규정	합치규정	위반법규 및 제도
§ 6 생명권		형법상 47가지 사형규정 공개처형
§ 7 고문 및 인체 실험의 금지	형법§ 147 비법적 방법 의 진술강요금지	알리 라메다의 증언 푸에블로호 로이드 파커함장의 증언
§ 8 노예 예속		A규약§ 6, 7, 8참조
§ 9 신체의 자유	형소법§ 9 불법구속 부당재판, 사건파장 날조죄	구금소, 갱생원, 강제노동수용소, 청소년교화원, 최대보안교도소, 격리수용소, 요양소
§ 10 수감자 처우		빈약한 식사, 부적합한 생활환경 불충분한 의복, 가혹한 작업환경
§ 12 거주 이전 출입국의 자유		형법§ 229 거주시 공민증 입시 증명서 요구(분실시 처벌) 형법§ 230 비법국경출입죄 임시인민위원회조례57호 § 55 여항 시 사회안전부의 숙박허가가 필요 동§ 59 유숙증명서의 제출
§ 13 외국인추방		
§ 14 공정한 재판		당이 형사재판전반을 통제 형소§ 94 예심의 2개월내 종결 형법§ 147 부당재판죄
§ 15 소급처벌금지		형법§ 63 민족반역죄 신법에서 종전보다 중하게 형을 중하게 개정시 신법적용
§ 16 인격권		
§ 17 사생활 명예	헌법§ 64인신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5호담당원, 서신검열, 통신도청 해외여행시의 집단행동

§ 18 사상 양심	헌법§ 54 신앙의 자유	형§ 258종교단체에서의 행정행위죄
§ 19 표현의 자유	헌법§ 53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헌법§ 71 국가비밀준수 형법§ 56 반동선전선동죄 등§ 122 출판 인쇄법규위반죄 등§ 111 부르조아문화 유입 반포죄
§ 20 선전금지		
§ 21 집회의 자유	헌법§ 53	집회의 의무적 참가
§ 22 결사의 자유	헌법§ 53	형법§ 51국가주권전복음해죄 형법§ 118 집단적 소동죄
§ 23가정 및 결혼		A규약§ 10 참조
§ 24 어린이 권리		출신 계급적 배경에 따라 보호와 양육의 질이 결정
§ 25 공무참여	헌법§ 52 공무담임권	350여명의 당원이 550개요직 과점 투표율 100%, 전원찬성
§ 26 법앞의 평등 및 차별금지		계급제도 법인의 처벌조차 계급부류에 좌우
§ 27 소수자보호		복송교포 및 일본인처에 대한 차별

2. 일반국제법의 적용가능성

1956년 이후 소련 국제법은 일반 국제법의 범주내에서 발전시켰다는 주장과, 그와 반대로 사회주의적 국제법을 우선시키고 일반 국제법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는 오히려 전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⁹¹⁾ 그 대표적 존재인 G.I. Tunkin은 인권문제를 접함에 있어 인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를 자국의 국내문제

91) 崔榮澤, “社會主義國際法の 態度研究”, 國際大學論文集, 제14집(1986), 14쪽

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1차적으로 국제적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나, 그것은 단순히 인권을 확보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²⁾ 특히 소련에 있어 고르바초프등장이후 글라스노스트(glasnost)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결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고, 특히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인권분야의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지난 1988년 12월 고르바초프는 국제연합총회 연설에서 “모든 국가는 각종 인권협정에 관한 법적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국제사법법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1989년 3월 8일 세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상은 케야르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동안 소련이 각종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다.⁹³⁾ 이와 같이 인권에 관한 국제사법법원의 권위인정은 인권의 개념에 대한 소련측의 변화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1991년 여름 소련사회의 근본적 변화후, 1991년 9월 5일 소련인민대표회의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국내에서 이주할 수 있으며, 제한없이 주거지역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등 31항목으로 된 「人權과 自由에 관한 宣言」을 채택하였다.⁹⁴⁾ 이에 더하여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991년 9월 10일 개막된 유럽安保協力會議(CSCE) 개막연설을 통하여, “소련의 개혁작업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소련은 앞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이전에 채택한 인권기준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견해의 표명은 그간 나타난 소련사회의 내부적 변화와 맞물려, 점진적으로 일반국제법상의

92) G. I. Tunkin, *Theory of International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 82

93) 中央日報, 1989. 3. 9.

94) 朝鮮日報, 1991. 9. 6.

95) 朝鮮日報, 1991. 9. 11

인권논의에 완전히 다가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⁹⁶⁾

반면에 중국의 상황을 보면, 소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제법에 대한 접근에서의 자세이다. 중국의 국제법 태도는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국제법을 사용한다. 그 태도는 계획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다.⁹⁷⁾ 인권문제에 있어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티벳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은 국제연합에서 티벳문제를 다룰 때 이는 자국의 국내문제라고 강하게 반대한 반면, 이와는 정 반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사태에서는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보조를 취한 바 있다. 둘째 중국은 외국 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권문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해왔다.⁹⁸⁾ 예컨대 1991년 9월 3일 존 메이저 영국총리의 인권문제 거론에 대하여, 중국외교부대변인은 “중국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오히려 서구인들”이라고 응수했음을 밝히고 있다.⁹⁹⁾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언명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人權騷動은 두 강대국이 서로 진흙을 던지면서 꾸미는 偽善的 演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¹⁰⁰⁾ 그들은 자국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에 내정간섭이라는 표현으로 방어하는 한편, 人種과 植民壓制에 대한 鬭爭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인권축진과 인종차별, 제국주의, 식민주의, 패권주의간의 연계를

96) 민주화이전의 소련인권상황은 서방국가에 비하면 뒤떨어지나,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Ed., J. Donnelly & R. E. Howard, *International Handbook of Human Rights* (Greenwood Press, 1987), p. 409

97) Shao-Chuan Leng, "Human Rights in Chinese Political Culture", in *The Moral Imperatives of Human Right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0), ed., Kenneth W. Thompson, p. 98

98) *Ibid.*

99) 朝鮮日報, 1991. 9. 4.

100) "Absurd Champion of 'Human Rights'", *Peking Review*, 11 March 1977, p. 23

뚜렷이 하고 있다.¹⁰¹⁾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매우 선택적이었고, 때로는 모호하며, 회피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북한의 경우도 중국측 입장과 대등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국제법을 대함에 있어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그중 개개의 법규를 선택적으로 수락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국가목표에 종속시키고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⁰²⁾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교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¹⁰³⁾ 북한의 인권에 대한 특징은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권조약에 대하여 「國際人權規約」(A, B규약)에는 가입하였으나, 「모든 형태의 人種差別撤廢에 관한 國際條約」 「集團殺害防止 및 處罰에 관한 條約」 「女性에 대한 모든 형태의 差別撤廢에 관한 條約」 「拷問 및 殘虐하고 非人間的이며 非人格的인 處遇 또는 處罰의 禁止條約」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¹⁰⁴⁾ 둘째 인권의 개념에 대한 태도는 일반국제법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북한에서 간행된 국제법 교재를 보면 “현대국제법은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중요한 규제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다” 고

101) See, UN, Doc. A/C.3/31/SR. 58, p.7

102) 金燦奎, “國際法에 대한 北傀의 態度”, 國土統一院, 51~52쪽

103) 북한헌법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고,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의 상위에 노동당의 결정이 있고, 노동당은 김일성의 교시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형법의 실상(북한연구소, 1990), 25쪽; 그들 국제법교재(현대국제법연구, 김영철 서원철 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의 기술방법도 김일성의 교시를 첫머리에 달고, 다음에는 그 말에 부합되는 김일성의 행적을 부연하여, 국제법내용을 김일성의 말과 행적에 맞도록 각색하고 있다.

104) 송철복외역, 북한의인권(고려원, 1990), 66쪽

되어 있다.¹⁰⁵⁾ 이 표현만을 보면, 북한은 국제법상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보편적인 내용대로 받아 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주성'이란 표현은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공산주의적 개념이지,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산주의투쟁의 정당화를 위하여 자주성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설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¹⁰⁶⁾ 인권의 내용으로서는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현대국제법의 규범들」이란 제하에 국적문제, 인종적 종교적 차별의 금지, 조국래왕의 자유, 외국인법의 법적 지위, 비호권, 집단적 살해죄의 처벌, 노예제의 철폐, 고문의 금지, 남녀평등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共産主義理念을 교묘히 接木시킨 서술형태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고, 특정국가의 개별사항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¹⁰⁷⁾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은 자본주의국가와 식민지인민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인종주의, 파시즘 및 소수민족들의 자결권에 기초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¹⁰⁸⁾ 또한 결론문장에서는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법규범들은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하나하나 규제되어 가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¹⁰⁹⁾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의 문제마저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운색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를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공산주의의 합리화도구로 삼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 세계 외부로부터의 인권언급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1990년 2월 1일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하여,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며 오

105) 김영철 서원철저, 현대국제법연구, 86쪽

106) 上掲書, 86~87쪽

107) 上掲書, 79, 85, 86, 88, 89쪽

108) 上掲書, 87쪽

109) 上掲書, 90쪽

만불손한 수작”, “미국은 초보적 인권도 보장안된 7백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는 인권유린왕국”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¹¹⁰⁾ 이는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보려는 태도이며, 따라서 인권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인권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그나마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개념을 왜곡하고 있다.¹¹¹⁾ 이에 더하여 내부적 문제는 은폐하면서, 타국의 문제점은 확대 혹은 변형시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절한 國際法的 措置가 있어야 마땅하나, 국제법자체의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실질적 제재에는 난관이 예상되는 것이다.

3. 북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남북한 문제는 어떠한 다른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의 정확한 이해와 극복을 통하여야만 옳바르고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서 첫째 남북한간에는 완성된 국제문서가 없으며, 참고할만한 國際法 國際政治學的인 선례가 드물다. 둘째 局地的인 것인 동시에 世界的인 규모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兩者關係인 동

110) 로동신문, 1991. 2. 12.

111) 社會主義국가에서의 人權은 공민의 권리로서 목적에 결부된 사회주의적 인격권(Sozialistische Persönlichkeitsrechte)을 의미하는데, 그 특성으로는 ①국가내적인 권리로만 취급되고, ②사회의 구성원, 즉 전체로 의미되는 집단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에 의하여 전적으로 인정된 인간이라고 하는 국가내의 공민이 향유하고, ③국가권력과 평행하는 권리와 의무이고, ④유물론에 입각한 물질적 수단에 의하여 확립되고, ⑤국가와 헌법이전의 권리가 아니고, ⑥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⑦노동의 권리가 그 핵심이 되며, ⑧특히 자유권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은 장식적이므로 현실적 실제로 보장될 수 없다. 張明奉,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 관한 研究”. 省谷論叢, 제11집(1980), 399~400쪽

시에 多着的인 관계에 있고, 따라서 국제기관의 관여가 짙게 나타난다. 세제 法的인 것과 政治的인 것의 혼돈이 심하다. 네제 對決의 類似型이 全面的인 連續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현학적인 人道主義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法律解釋上의 形式主義나 行政的인 形象主義, 政治的인 原理主義는 더더욱 문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 모두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제법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1981년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연합에서 규약채택시 만장일치였다는 것에서도 당연한 결론이다. 규약의 “모든 인간은(All human beings)”, “모든 사람은(Everyone)”, “누구도(No one)” 라는 표현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작금의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이 국가중심의 본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인권규정은 시민과 그 정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內在된 前提가 있다.¹¹²⁾ 이러한 국가중심주의는 국제인권제도의 이행이나 강제를 위한 國際的 權威가 없음을 나타낸다.¹¹³⁾ 즉 人權規範의 勵行은 국제적 행동이 아니라, 國家의 措置에 크게 의존한다.¹¹⁴⁾ 국제인권규약의 실시조치도 당사국에 의한 규약실시상황의 보고나, 계약당사국간 소청제도 및 규약위반국 개인에 의한 소청제도와 같이 事後的인 方法만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은 이미 밝혀진 국제적 단체들의 평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을 간행하기 전에 북한측 논평을 요청하자, 그 회답에서 자신들의 체제는 인간의

112) R. J. Vincen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1986), pp. 150~152

113)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Regim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1986), pp. 642

114) J. Donnelly & R. E. Howard, "Assessing Human Rights Performance: A Theoretical Framework", *Human Rights Quarterly*, Vol. 10 (1988), p. 244

자주성과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사회의 모든 일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가장 앞서가는 제도이므로, 인권침해란 일어나지도 않으며, 생각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¹¹⁵⁾ 이것은 자신의 범규정이나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은 B규약의 선택조항이나, B규약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문제의 제기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약 자체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자 국제연합에서는 여러해동안 國際人權法院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회원국 대부분이 반대하여 실패한 바 있다. 심지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회원국의 개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통보를 감독하는 國際聯合人權高等辦務官을 두자는 제안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¹¹⁶⁾ 결국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주민에 의한 自生的 人權意識의 고양과 인권신장을 위한 自發的 努力에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은 북한주민의 勞動條件의 改善과 北韓社會의 開放일 것이다. 노동조건 개선은 가혹한 노동조건과 자유시간의 박탈에서 생기는 무기력증을 제거함으로써 인권의식을 싹틔울 수 있을 것이며, 외부세계와의 잦은 접촉은 인권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북한주민 스스로 억압과 통제의 사슬을 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에의 가입등을 유도하고, 남북간 상호교류, 특히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병행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국제연합의 가입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가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다. 그 외에 헬싱키의정서에 의해 유럽국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정형적 방법이나, 아프리카인

115) 송철복외역, 북한의 인권, 214쪽

116) T. O. Elias, *op. cit.*, supra note 76, pp. 163~164

권헌장상의 우호적 해결방법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이미 살핀 바처럼 남북간에는 대결의 유사형이 전면적 연속성을 띄고 있는 형편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인권침해의 구제를 제창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빗장을 굳게 하거나 대결상황을 심화시킴으로써,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까닭에 힘의 우위를 앞세운 干涉의 실행은 더욱 곤란하다.

이미 말한 방법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며,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상 인권의 특성에 비추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나아가 부작용의 돌출없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일 것이다.

V. 맺는 글

북한의 인권실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도, 이미 밝혀진 사실과 객관적 관찰자들의 평가를 통하여 볼 때, 극도로 열악한 상황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혹자는 그 배경으로서 북한은 그의 역사에서 아예 인권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내세운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사회의 산물이어서, 군주제도하의 유교사상과 일본제국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연속된 북한에서 인권의 존재는 생각해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¹¹⁷⁾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착오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상을 간직하고 있으며, 개국초부터 弘益人間 혹은 在世理化라는 사상이 정착되었다.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도리로서 교화한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

117) 북한의 인권, 53~66쪽; 佐藤勝己, “金日成主義 下에서의 人間の 權利”, 北韓社會의 人權(韓國自由總聯盟, 1989), 5~6쪽

118) 崔鍾座, 韓國法思想史(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8쪽

권헌장상의 우호적 해결방법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이미 살핀 바처럼 남북간에는 대결의 유사형이 전면적 연속성을 띄고 있는 형편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인권침해의 구제를 제창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빗장을 굳게 하거나 대결상황을 심화시킴으로써,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까닭에 힘의 우위를 앞세운 干涉의 실행은 더욱 곤란하다.

이미 말한 방법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며,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상 인권의 특성에 비추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나아가 부작용의 돌출없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일 것이다.

V. 맺는 글

북한의 인권실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도, 이미 밝혀진 사실과 객관적 관찰자들의 평가를 통하여 볼 때, 극도로 열악한 상황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혹자는 그 배경으로서 북한은 그의 역사에서 아예 인권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내세운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사회의 산물이어서, 군주제도하의 유교사상과 일본제국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연속된 북한에서 인권의 존재는 생각해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¹¹⁷⁾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착오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상을 간직하고 있으며, 개국초부터 弘益人間 혹은 在世理化라는 사상이 정착되었다.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도리로서 교화한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

117) 북한의 인권, 53~66쪽; 佐藤勝己, “金日成主義 下에서의 人間の 權利”, 北韓社會의 人權(韓國自由總聯盟, 1989), 5~6쪽

118) 崔鍾座, 韓國法思想史(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8쪽

은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정신의 구심점이 되어 왔다.¹¹⁸⁾ 뿐만 아니라 유교사회는 仁義禮智라는 道德的 普遍秩序에서 근본을 찾는 것으로, 이 도덕질서는 人性에 內在하는 것이다. 곧 유교는 人性을 天性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유교는 인간을 중시하는 교육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인권의 개념이 끼어들 역사적 경험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인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은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이러한 민족의식과 교육체제를 전도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도된 가치체제의 복구가 북한인권문제의 직접적 해결방법이 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권의 역사는 국가자의로부터의 자유의 역사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상도해서도, 북한당국의 전단적 행위로부터 주민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요체가 된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는 쇄국정책 못지않는 폐쇄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며, 그로 인한 결과 외부로의 직접적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태도가 바뀐다 해도, 완전한 인권의 회복 구제는 결국 주민 스스로의 인권의식의 분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법의 현실적 한계내에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북한의 개방화에 있다.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등에의 가입을 촉발시키고, 우리의 전향적인 교류의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무리없이 그들을 국제사회에 개방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유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곧 북한사회의 개방을 통하여 그 주민 스스로가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그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인권투쟁의 역사에서 보았듯, 빼앗긴 인권을 되찾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北韓의 人權問題에 관한 法的研究

— 刑法 및 刑事訴訟法の 分析을 中心으로 —

권오걸(경북대)

< 요 약 문 >

I. 서 언

北韓의 人權에 대한 연구는 매우 複合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 작업이다. 또한 많은 접근의 다양성도 있다고 본다.

法的 接近의 方法에 있어서도 순수한 法解釋을 통한 分析, 學者들의 學說을 통한 分析, 判例의 態度를 통한 分析 등의 方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 刑法 및 刑事訴訟法 條文과 北韓 學者들의 견해를 기초로 했다.

본 研究는 단순히 北韓의 人權을 폭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체제와 현실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人間尊嚴性에 비추어서 北韓 刑事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형법의 검토

가. 북한형법의 제정

共和國刑法 또는 朝鮮刑法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북한형법은 1950. 3.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5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었다. 이법은 모두 2편 23장 30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

아있으며 1950. 4. 1부터 북한전역에서 시행되어 1974. 12. 19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새로운 형법이 채택되어 1975. 2.1부터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법을 구형법으로 부른다.

나. 북한형법의 개정

북한은 1972. 12. 27 최고인민회의에서 社會主義 憲法을 채택하였다. 이는 1948년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24년만에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헌법 제정의 思想을 더욱 具體化하고 社會主義의 完全勝利를 앞당기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1974년에 1950년의 형법을 전면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북한형법의 本質과 任務

1) 북한에 있어서 刑法의 意義

북한에서는 '刑法은 犯罪와의 法的鬭爭을 目的으로 해서 國家가 制定하는 犯罪와 刑罰을 규정하고 있는 法規範의 總體'라고 정의하고 있다.

2) 刑法의 任務

북한형법에서는 刑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共和國 政府의 路線과 政策을 옹호관철해서,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획득물을 지키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북한 형법 제4조)라고 규정한다.

라. 북한형법상의 범죄론의 특색

북한형법에서는 우리와 같은 범죄론의 3단계원칙 즉,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성을 구비한 행위라는 일반적 범죄 성립이론 대신에 형법이 구체적인 범죄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및 주관적인 표정들의 총체라고 하는 범죄성립조건의 해당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

마. 행위의 개념

북한형법에서는 행위는 범죄자의 당에 대한 思想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적, 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있다.

바. 사회적 위협성

범죄구성요건과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은 상호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곳에 범죄구성요건도 없다.

사. 죄 책

북한형법상의 죄책은 우리의 책임성에 해당하나 죄책의 내용은 심리적이거나, 규범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 위험성의 배제사유

북한형법상의 위험성배제사유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며, 우리의 경우처럼 구성요건에는 해당 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없는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자. 예비와 미수

범죄의 예비와 미수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우리의 경우와 달리 극단적 주관주의적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차. 共 犯

교사자, 방조자에 대한 형벌은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정범자의 형벌과 같은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카. 형벌론

북한형법상의 형벌의 종류는 死刑, 懲役, 教化勞動, 選舉權剝奪, 財産沒收 등 5종이 있다.

타. 반혁명범죄

反革命 犯罪는 社會主義國家의 刑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유형이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파. 一般犯罪

북한형법에서 일반범죄란 '반혁명 목적이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하며 농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3. 북한 형사소송법의 검토

가. 형사소송법의 意義

헌법의 具體化로서의 형사소송법의 人權保障的 기능의 강조, 북한형사소송법의 제정 및 개정, 북한 형소법은 1950년 3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1972년의 헌법개정에 따라서 1976. 1. 10에 전문 25장 281조로 개정되었다.

북한형소법 탄핵주의적 구조, 직권주의적 구조, 재판의 비공개 원칙의 폭넓은 인정, Due Process of Law 원칙의 소극적 인정

나. 수사절차

재판소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당사자 주의의 무시)

다. 공판준비 절차

법률에 소양이 없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참심원제도의 인정

라. 공판절차

피소자, 검사 이외에도 피해자, 私訴原告人 및 그 대리인, 피소자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을 모두 소송의 당사자로 봄

마. 상소제도

2심제의 원칙이다.

4. 결 론

북한형법 및 형소법은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칙들 죄형법정주의, 유추제도의 부인, 재판의 공개주의 등을 무시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들스스로에 있어서는 '계급독재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에 입각해본다면 인권침해적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I. 序 言

人權이란 人間으로서의 權利를 뜻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게 되는 생리적이고 天賦的인 權利를 뜻하며, 이는 人間の 尊嚴性에서 나온 것이며 그 尊嚴性을 保障받을 權利가 人權이라고 할 수 있다.^{1) 2)}

社會主義國家에서의 인권은 公民의 權利로서 목적에 결부된 사회주의적 인격권(sozialistische Persönlichkeitsrechte)을 뜻하며³⁾, 북한에서의 인권 또한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人權에 대한 研究는 매우 複合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 작업이며, 또 다양한 접근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法的 接近의 방법에 있어서도 순수한 法解釋을 통한 分析, 學者들의 學說을 통한 分析, 判例의 態度를 통한 方法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의 刑法 및 刑事訴訟法의 條文과 북한 學者들의 견해를 기초로 했다.

본 연구는 단순히 北韓의 人權을 밝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體制와 現實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人間尊嚴性에 비추어서 北韓 刑事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李太裁, 法哲學史와 自然法論, 法文社, 1990., 94면.

2) 人權(Human Right)과 基本權(Fundamental Right)은 그 意味하는 바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見解에 의하면 基本權은 國家의 最高規範인 憲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며, 인권은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생래적 自然權으로 參政權이나 청구權적 기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金哲洙, 新橋憲法學概論, 博英社, 1990., 219면.

3) 金英삼, '북한인권의 실상과 전망', 東西의 法哲學과 社會哲學, 無碍徐燉珏博士古稀紀念論文集, 法文社, 1990., 532면.

II. 北韓刑法의 검토

1. 北韓刑法의 制定과 構成

共和國刑法 또는 朝鮮刑法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북한형법은 1950. 3.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었다.⁴⁾ 이 법은 모두 2편 23장 30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950. 4. 1부터 북한전역에서 시행되어, 1974. 12. 19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새로운 형법이 채택되어 1975. 2. 1부터 시행될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법을 구형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북한형법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형법학자 심현상은 (ㄱ)8.15해방 후 평화적 건설시기에 있어서의 형사입법(1945. 8-1950. 6) (ㄴ)소위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의 형사입법(1950. 6-1953. 7) (ㄷ)전후 인민경제복구 및 사회주의기초 건설시기에 있어서의 형사입법(1953. 7-)등 3단계로 나누었으며,⁵⁾ 김규승은 형법개정을 포함하여 (ㄱ)反帝反封建 民主革命時期의 刑事法制 (ㄴ)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 段階의 刑事法制 (ㄷ)소위 祖國解放戰爭時期의 戰時刑事法制 (ㄹ)戰後復舊 建設時期와 工業化 段階의 刑事法制 (ㄱ)소위 社會主義의 完全勝利를 위한 刑事法制 등 5段階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⁶⁾

4) 이는 1953. 9. 18 제정되어 1953. 10. 3부터 시행된 우리형법보다 북한형법이 약 3년 6개월 정도 앞서 제정,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北韓法研究(7)-新刑法-, 法務部 法務資料 제128집, 1990. 10.

5) 심현상, 조선형법해설(평양, 국립출판사, 1957) 43-51면, 그러나 이는 형법개정까지 포함한 단계구분은 아니다.

6)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刑事法制(日本, 社會評論社, 1988), 19-132면; 한편 이와 같은 분류는 북한에 있어서의 지배사상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일수교수는 북한형법을 먼저 형법전 제정 이전의 북한형법, 형법전 제정 이후의 북한형법, 형법전 개정 이후의 북한형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형법전 제정 이전의 시기를 항일혁명투쟁시기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로, 형법전 제정 이후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와 한국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사회주의 전면건설기로, 형법전 개정 이후를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시기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북한법 40년과 그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150면

결국 1950. 3. 3 제정된 북한의 구형법은 1950. 3. 1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1950. 3. 3 제정된 형사소송법 등과 함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로서 8.15 해방후 평화적 건설시기에 제정되어진 대표적 형사입법에 해당된다.

한편 북한형법이 제정되기 이전단계, 즉 反帝半封建 民主革命時期에는 형사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공산혁명의 장애가 되는 요소 즉, 제국주의적, 봉건주의적 사상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로 했다. 이때 만들어진 法規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1945. 11. 16 北朝鮮司法局에서 ‘北朝鮮에서 시행해야 될 法令에 관한 件, 이라는 법률을 공포하여 일본식민지 통치하에 실시되던 모든 법과 규정들이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人民民主主義獨裁體制를 건설하기 위한 이익과 배치되는 어떤 질서와 법도 허용되지 않음이 천명되었다.

이에 따라 人民政權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법규도 차차 완비되어 갔다. 특히 권력기관을 강화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를 담보하기 위해 反帝半封建民主主義革命에 복무하는 법, 人民民主主義獨裁실현에 복무하는 법⁸⁾을 제정,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따라 1945. 11. 13 司法局布告 제4호로 ‘裁判所組織에 관한 件’ 과 ‘1945. 11. 27에 제정 공포된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5호로 ‘檢察所 組織設置에 관한 件, 이⁹⁾ 마련되었고 1946. 3. 6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 裁判所, 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관한 基本原理’를 同年 5.14에는 ‘北朝鮮司法機關의 刑事裁判에 관한 規定’을 6.20에는 ‘北朝鮮의 檢察所豫審 및 保安機關의 刑事事件審理에 관한 法令’을 제정하였다.

1947. 1. 24 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北朝鮮의 人民保健을 侵害하는 罪에 관한 法令’과 生命, 健康, 自由, 名譽의 保護에 관한 法令을 제정하였고 동시에 ‘個人財産保護에 관한 法令’을 제정하고, 同年2.21에는 北朝鮮人民

7) 吳道基, ‘北韓刑法의 特色’, 刑事法研究 第3號, 韓國刑事法學會, 7면.

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13면.

9) 이 두法令은 민족반역자, 악질경관, 악질관리들을 청산하기 위해 아직 성문법이 없었던 해방 직후의 조건에서 순전히 인민들의 혁명적 법의식과 창의에 의해 인민 자신들이 조직, 운영했다고 하는 民衆裁判을 成文化한 법령이다; 김일수, 앞의 글, 155면.

委員會司法¹⁰⁾에서 ‘북조선의 裁判所 및 檢察所에 관한 規定’을 제정하고 1948. 11. 1에는 ‘人民軍裁判所에 관한 規定’을 제정하는 등 서둘러서 많은 단편적인 法令을 제정 시행하다가 1950. 3. 1 최고인민회의에서 ‘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고 同年 3.3 최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이미 1948. 3. 9 그 초안이 완성 보고되었음—刑事訴訟法과 함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형법 채택에 관하여’라는 기다란 명칭으로 북한형법을 제정 공포하고 同年 4.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단편적인 형사법령을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렇듯 급속하게 형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일제의 잔재인 일제의 법령을 일거에 폐지하고 선진 소련의 법을 따온 형법을 제정, 시행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소련의 선진법과 같은 법제하에서 생활한다는 환상을 가지게 하려 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 북한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보다 늦어진 것을 만회하고 적어도 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 대한민국보다 앞서서 통일된 法典을 제정, 공포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¹¹⁾

10) 1948. 9.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당국가(Communist Party State)가 수립될 때 까지의 북한에 있어서의 입법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이 北朝鮮司法局(1945. 11. 19)－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1946. 2. 8)－北朝鮮人民委員會(1947. 2. 21)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북한에서의 인민정권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성격에 대해서는 1946. 3. 6에 공포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관한 규정의 제1조에서 동 임시위원회가 ‘北朝鮮最高行政機關’이라고 명시하여, 이것이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닌 주권기관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3와 제7조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있어서 중앙기관으로서 북조선인민, 사회단체, 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법령을 제정, 공포할 권한이 있으며, 5인의 상무위원회가 최고행정주권기관으로 임시법령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46. 11. 3 북한의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선거가 실시되고, 1947. 2에는 면·리 인민위원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첫 민주선거라고 하여 북한에서는 그 역사적의의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조선 통사－하－, 평양, 1958, 68면) 이 선거를 통해 2.17에는 도·시·군 인민 위원회 대회를 열어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임시’를 떼어 버린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북한에서의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서 그 지도하에 북조선 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김일성 선집 제5권, 평양 71면－142면참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梁好民,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의 확립, 북한40년(서울:을유문화사, 1989)47면.

11)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박영사, 1975), 170면.

2. 北韓刑法의 改正

北韓은 1972. 12. 27 最高人民會議 第 5期 第 1次 會議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김일성의 연설을 들은후¹²⁾ 사회주의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제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원안 그대로 채택하고 1972. 12. 27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이것은 1948년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실로 24년만에 ‘사회주의헌법’으로 대체한 것이다.¹⁴⁾

이에 따라 사회주의헌법체정의 사상을 더욱 구체화 하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고히 하기위해 1974. 12. 19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에서 1950년의 刑法을 全面改正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論文에서는 이 개정형법을 新刑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¹⁵⁾

북한형법 改正의 배경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북한형법개정의 직접적 원인인 북한헌법개정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김일

12) 김일성은 이연설에서 사회주의헌법체정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위한 공화국정부의 투쟁과정,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내용,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소개하고, 사회주의헌법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든든히 지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복무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3輯), 統一院, 1988, 487-509면.

13)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3輯), 統一院, 1988, 622면.

14) 北韓은 이에 앞서 1970. 11초순에 노동당 제 5차 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1960년대에 수행한 모든 과업들을 총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과업을 제시하고 아울러 노동당의 권력구조를 재편성하였다; 김남식, “조선 노동당 제5차 대회”, 북한 정치체계 연구,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2, 161면 이하 참조.

15) 그러나 이 북한 신형법의 조문내용도 아직까지 외부세계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은 신형법을 그들의 기관지에 한번도 게재한 바가 없기때문에 외부세계는 물론 북한 주민들조차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법률해설원을 두고서 주민들에게 법령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朝鮮社會主義法”, 아시아의 사회주의법, 社會主義研究會編(京都; 法律文化社, 1989), 50-51면. 이와같은 점에서 북한형법의 존재이유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오로지 국가목적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북한에서의 일반국민의 형사법적 인권의 향유가능성이 충분히 짐작되어 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상주체사상, 조선노동당규약, 북한헌법, 북한형법 상호간의 규범적 체계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¹⁶⁾

먼저 북한의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은 구헌법과 비교할 때 여러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8)

첫째, 인민 민주주의를 청산함으로써 소위 인민 연합 독재 대신 노동당을 선봉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우게 되었고(제10조), 동시에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를 규정하게 되었다(제4조).

둘째,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고착시킴으로써 국가 소유 위주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으며(18조-21조), 따라서 국가만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되고 국가의 예산편성과 경제계획 자체가 경제활동의 전체적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

셋째,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법적 담보를 가진다는 뜻에서 표면상으로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제5조).

넷째, 신헌법은 김일성이 창안했다고 하는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국가주석제(國家主席制)를 도입하여(제88-99조), 국가주석에게 국가 원수의 지위와 함께 국가 권력 집중의 유일한 구심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는 북한이 소련에 종속된 노동당에서 사회주의 독립국가로 변모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며 김일성식(武)공산주의를 합법

16) 北韓法研究(7), 18면.

17) 그러나 사실은 북한 신헌법이 채택된지 거의 20여년이 지난시점에서는 그동안 헌법의 정신이 얼마나 실현되었는 지의 여부 즉, 헌법의 규범력과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북한헌법의 개정여부와 변화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18) 張明奉,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북한의 정치, 울유문화사, 175-176;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북한헌법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은 김진, Timothy G. Kearley, “北韓憲法의 一般的 考察”, 北韓의 法과 法理論,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원, 49-77면.

화 내지는 성문화 한 것이다.¹⁹⁾

다섯째, 이른바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다(제49조)

이와같은 특색을 가지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전술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은 1948년의 人民民主主義 憲法을 채택하여 24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주장해온 위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可視化하기 위해서는 새로운憲法の 제정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다.²⁰⁾ 즉, 북한은 해방후 바로 북한에서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완수하였고, 1947년 초부터 사회주의혁명의 단계에 들어가, 이미 1958. 8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1961년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기에 들어갔다고 계속 선전해 왔는데도, 구헌법은 여전히 인민민주주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북한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신헌법의 제정이 불가피해졌던 것이다.²¹⁾

둘째는, 김일성의 지위의 격상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19) 또한 共和國 主席의 자리와 함께 행정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어 권력의 중심이 당에서 정부로 이전되고, 당의 운영과 정부의 기능이 분명하게 나누어 져나는 점이다. 즉, 당의 정책 결정 기능이 대부분 중앙인민 위원회로 넘어갔고, 김일성이 직접 정부 행정부서들 관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당의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김일성은 당의 운영을 아들 김정일에게 맡겼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것은 정권승계를 위한 장기적인 조치로서 김일성 자신이 과거 당 기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김정일이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서대숙, “당. 정 관계 변화”, 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274-275면.

20)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조선인민이 자기 역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헌법을 가지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새사회,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인민은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기간 우리나라에서는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룩되었으며 우리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 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인민이 이북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第3輯), 487면.

21)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박영사:1975), 76-80면

동안의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김일성의 최종승리를 선언할 필요성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소위 주체사상의 명문화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중·소 이념의 분쟁기에 김일성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장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와같은 국내 정치적으로인 외에도 특히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변화와 분열²²⁾, 반미·반제 성향의 제3세계 국가 특히 비동맹 국가의 등장에 따른 북한의 자주노선추구라는 외부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은 주체사상이 이미 김일성이 소위 항일무장투쟁시기²³⁾에 창시한 위대한 철학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승이 아니라 새시대의 요구와 과제를 해결해주는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선전한다. 결국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을 성문화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위를 마르크스·레닌과 거의 동격화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체사상의 명문화와 함께 김일성을 위한 국가주석제의 신설과 중앙인민위원회 신설이다. 이는 외부적으로 볼때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비동맹 국가들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수상의 지위보다는 주석의 지위가 필요했으며, 남북대화에서도 남한의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할 필요성 또한 강했을 것이다.²⁴⁾

22) 레닌과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 운동은 소련의 주도하에 전개되었으며,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위주의 단결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의 운동은 1948. 6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 간의 불화로 인하여 코민포름으로부터 유고가 축출되었으며, 스탈린의 사망에 이은 스탈린격하 운동등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Cal Clark, "Balkan Communist Foreign Policies", in Ronald H. and Linden, ed., The Foreign Policies of East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26면 이하.

23) 북한측 자료에 의하면, 주체사상의 시원이 1926. 10. 17 김일성이 결성하였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과 특히 1930. 6. 30부터 同年 7. 2까지 사흘간 열렸다는 '카륜회의'라고 주장한다; 김정일, "로동당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로동신문, 1982. 10. 18.

24) 남북한은 '7.4공동성명'에서 이른바 통일의 3대원칙 즉,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천명였지만, 양측은 남북대화를 통해 오히려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재확인하고 자기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남한에서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반공적인 군사정부를 강화했고, 북한에서는 같은 해 12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새로 정비하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세제는 김정일세로의 권력승계의 필요성이다. 김일성은 스탈린 사후의 격하 운동과 모택동사후의 비판운동등 공산세계의 지도자들의 死後受難에 대해 스스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이다.²⁵⁾ 이에따라 김일성은 1972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권력의 중심을 당에서 정부로 이전하고, 당의운영은 김일성 자신이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치밀한 감독아래 김정일에게 맡김으로써 이미지(image)개선과 지도자수업을 통하여 권력승계에 대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⁶⁾ 1972년 12월 신헌법 제정 이후 당의 운영권을 물려받은 김정일은 1980. 10 조선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인 김일성의 뒤를 이어 당 비서국의 비서로 선출됨으로써 공개적으로 후계자로 임명된다.

이것은 그 동안 후계자지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를 극복하고 당초 김일성의 계획대로 아들 김정일이 당의 운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신헌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떠오르게 되었다.²⁷⁾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 경제발전을 강화하고, 그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심화발전시키는 일에 주력해왔으며, 혁명의 기본임무를 실현하는 요구에 부응해서 법제정의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했고, 국가, 경제기관을 강화해 그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법규등을 제정실시했다.²⁸⁾

그래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는 부문별 法典을 현실에 맞게 제정, 완수하

25)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김일성은 도전자들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나, 그가 신뢰하던 빨치산 동료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거의 사거(死去)했거나 노쇠해 버렸다. 따라서 김일성은 자신의 동료보다는 아들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고, 순조롭고 확실하게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게된다.; 서대숙, 앞의 글, 281면이하 참조.

26) 신헌법 제정과 더불어 김일성이 권력승계를 위해서 처음 내세운 캠페인이 소위 '3대혁명소조운동'이다. 3대혁명이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말하며 이 운동은 1973년 2월 당 정치국에서 제안되었다; 서대숙, 281면.

27) 서대숙, 283면

28)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事法制, 107면.

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²⁹⁾ 즉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해서 혁명적인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정연한 사회주의적 법질서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사회주의 사회가 강건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法體系를 완성하고, 각부문별의 법전을 제정실시하는 것은 社會主義法發展의 合法則的 過程이며; 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보장책이 된다고 한다.^{30) 31)}

따라서 社會主義憲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헌법에 기초하는 개별법규의 제정 및 개정은 법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의 형법개정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 하겠다. 즉,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교시를 最高上位規範으로 하고 그 아래에 조선노동당규약이 있고 그 아래에는 북한헌법이 자리잡고 있는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³²⁾ 북한헌법의 下位規範인 북한형법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성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뒷받침하고 김일성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조선노동당의 지배

29) 특히 조선노동당 제5회 전당대회(1970. 11. 2-13)이후 金社會를 혁명화, 노동자 계급화하기 위한 국가사회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金圭昇, 107면.

30) 金圭昇, 124면.

31) 이는 社會主義憲法은 社會主義國家의 基本法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의 법적총화이며 社會主義制度의 本質과 優越性, 그 발전의 필수적요구의 법적 반영으로써, 사회주의헌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관리, 운영되고,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방향이 규정되며, 사회주의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준칙과 생활양식이 규제된다고 하는 社會主義的 憲法觀에서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 張明奉, 을유문화사, 176-177면.

32) 이러한 현상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기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법은 政治作用의 補助的 機能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은 정치에 從屬되며 정치적 방편에 의해 정해진 한계내에서만 효력이있다.그리하여 공산주의 體制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정치의 지배'(rule of politics)로 되며, 이로써 공산주의 국가가 '법치국가'(Rechtsstaat)가 아니라 '정치국가'(Politischer Staat)라고 할 수밖에 없다; Georg Brunner, "The Functions of Communist Constitutions :An Analysis of Recent Constitutional Development," Review of Socialist Law, Vol.3, No.2, 1977, 145면. 한편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국가와 법의 관계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V.Chirkin, Yu.Yudin, O. Zhidkov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 (Progress Publishers : Moscow, 1987), 34-280면 참조.

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장치로 개정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北韓刑法의 本質과 任務

1) 北韓에 있어서 刑法의 意義

일반적으로 刑法이란 ‘犯罪과 刑罰과의 관계를 규정한 國家法規範의 總體, 즉, 어떤 행위가 犯罪이고 그 범죄에 대한 法律效果로 어떤 刑罰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法規範’³³⁾ 또는 ‘犯罪과 刑罰에 관한 法이며, 犯罪과 刑罰을 定한 法’³⁴⁾ 또는 이에 대해 保安處分(Massregeln)³⁵⁾을 포함하여 ‘刑法이란 犯罪과 犯罪에 대한 法律效果로서 刑罰 또는 保安處分을 규정하는 法規範의 總體,³⁶⁾등으로 정의된다.³⁷⁾

北韓에 있어서도 刑法은 ‘犯罪와의 法的鬭爭을 目的으로 해서 國家가 制定하는 犯罪과 刑罰을 규정하고 있는 法規範의 總體’, 즉 刑法은 犯罪과 刑罰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法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⁸⁾

33) 劉基天, 改訂 刑法學, 3면; 李炯國, 刑法總論, 19면; 鄭盛根, 改橋版 刑法總論, 31면; 陳癸鎬, 新稿 刑法總論, 22면.

34) 現代刑法學原論, 刑法理論研究會(東京;三省堂, 1983), 12-13면.

35) 학자에 따라서는 保安處分을 社會防衛를 主目的으로 하는 協의의 保安處分(Sicherungsmassnahmen i.e.S)과 教育, 政治, 改善을 主目的으로 하는 改善處分(Besserungsmassregeln)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Roxin, 刑法學入門, 18면. 立法例 중에도 서독형법은 이 兩者를 합쳐 ‘改善 및 保安을 위한 處分’(Massregeln ssreg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金日秀, 刑法學原論(總則講義), 67면.

36) 金日秀, 刑法學原論, 3면; 李在祥, 全訂版 刑法總論, 3면; Baumann-Weber, Strafrecht, 7면; Jakobs, Strafrecht, 3면; Wessels, Strafrecht, 3면.

37) 刑法이라는 명칭도 刑罰法(刑法; Strafrecht, droit penal) 또는 犯罪法(criminal law, droit criminel)이라는 용어가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18세기 중엽 이전에는 주로 犯罪法이라 하여 사실면을 강조하여 사용되었고, 오늘날 까지도 英美法은 刑罰을 犯罪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規範面이 강조되어 刑法은 刑罰을 정한 法, 즉 刑罰이라는 명칭으로 大陸法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陳癸鎬, 22면.

38) 金圭昇, 177면.

또한 刑法에는 어떤 행위가 犯罪로 되는가, 형사책임의 基礎와 範圍는 무엇인가, 범죄행위를 수행하면 어떠한 종류의 형벌을 어느정도 받게되는가등, 犯罪와 刑事責任, 刑罰과 관련되는 原則的 諸問題가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刑法을 反革命犯罪者를 법적으로 진압하고, 一般犯罪者에는 制裁를 부가하는 것을 그 基本機能으로 본다³⁹⁾(犯罪統制機能)

社會主義制度가 勝利한 다음에도 搾取階級の 殘餘分子들은 社會主義社會에 오래동안 남아 있으면서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옛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특히 美帝國主義者들이 남조선을 점령하고, 북한에 세워진 社會主義制度를 顛覆할 목적으로 남조선내의 소위 反動階級과 북한에 남아있는 착취계급의 殘餘分子들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파괴활동을 강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完全勝利를 보장하고,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反革命勢力, 反社會主義 勢力에 대해서 철저히 진압하여야 함을 강조한다.⁴⁰⁾

이는 北韓刑法의 소박하나마 法益保護的 機能(Rechtsgutschutzfunktion)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원래 북한에서는 法益(Rechtsgut)이라는 概念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급이익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刑法은 行爲規範을 통한 教育的機能과 함께 裁判規範을 통한 위화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規範的 機能) 즉, 형법은 社會主義革命과 건설에 危險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대로 社會主義의 강력한 발전과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一定한 行爲를 반드시 遂行하도록 요구하는 法이라는

39) 刑法의 機能은 刑法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며, 刑法을 통제하는 指導原理이므로 그것은 刑法의 目的使命에 적합한 본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刑法은 사회통제의 부분영역으로서 犯罪統制(Verbrechenskontrolle)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犯罪行爲에 대한 反作用을 통해 犯罪의 法益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일반의 法益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형법의 法益侵害는 가혹한 국가적 強制力을 가지고 행하여지기 때문에 刑法의 범죄통제의 手段은 반드시 公式化(Formallisierung)되어 있어야 한다; 김일수, 101면.

40)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 金社會의 主體思想化를 추진하고, 革命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合法則的 要求에서 제기된다고 한다; 金圭昇, 178면.

것이다.⁴¹⁾

한편 북한은 모든 법은 그것이 규제하는 사회관계의 분야, 규제대상과 규제 방식에 따라 구별되며, 이에 따라 구별된 刑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刑法은 犯罪 및 刑罰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法이다. 어떠한 행위가 犯罪로 되고 그것을 감행한 者에게 어떠한 종류의 형벌을, 어느정도 賦課할 수 있는 가를 규제하는 것은 刑法뿐이다.

둘째, 刑罰的인 鎮壓과 강제, 行爲規定과 동시에 制裁規定에 의해, 인민이 法秩序를 遵守하도록 慣習化하고, 오래된 思想殘在와 習性的 發現을 방지하고, 그래서 克服하도록 統制하고 教育하는 것은 다른 법과 구별되는 형법의 특징이다.

2) 刑法의 任務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刑法의 任務는 그 출발에 있어 社會主義 觀點에서의 人間의 本性和 社會主義法의 일반적 기능, 그에 依據한 刑法의 目的과의 關聯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社會主義 법에있어서는 특히 刑法에 있어서는 인간⁴²⁾은 천성적으로 惡하다고 보며 법은 인간의 惡性を 改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基本的인 假定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할 때, 法의 基本的 任務는 현재의 인간을 改造하는 것, 즉 그의 사악한 本性を 除去하고 그를 새로운 人間型으로 만드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社會主義 刑法의 주된 목적은 현재 인간을 再教育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法律社會를 法이 필요없는 자유인들의 조직체, 즉 共產主義로

41) 刑法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中世에서는 法益保護的 機能이, 近代自由主義 時代에서는 人權保障的 機能이 大戰의 前後를 통한 나치독일이나 소련같은 全體主義時代에서는 規範的 機能이 각각 강조되어 왔다; 진계호, 29면. 북한형법은 規範的 機能과 階級利益的 機能은 있으나 保障的 기능은 微弱한 것으로 사료 된다.

42) 法에 있어서의 人間(Der Mensch im Recht)에 대한 연구는 어떤 법이 法自身이 作用하고자 의도하는 인간을 어떻게 表象하고 있는가, 즉 法은 어떤 종류의 人間에게 겨냥되어져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意味가 있다; Radbruch, Der Mensch im Recht-Ausgewählte Vorträge und Aufsätze uder Grundfragendes Rechts-(Vandenhoeck und Ruprech; Gottingen, 1957), 19면.

변형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의 立法者들은 刑法制定을 사회전체와 인간의 本性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도구의 촉매로 사용한다.^{43) 44)}

이에 따라 社會主義國家의 刑法은 그 任務를 다음과 같이 定意한다. 먼저 蘇聯刑法은 1982년에 수정된 1959-61년 형법전에서 刑法의 任務를 소련(USSR)의 社會制度和 政治, 經濟制度, 社會主義所有制度(socialist ownership), 국민의 人格과 權利 및 자유 그리고 全體社會 法秩序를 범죄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⁴⁵⁾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은 刑法의 制定根據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指針으로 하고 憲法을 根據로 하며 懲罰과 寬待를 結合하는 政策에 依據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諸 民族 인민들이 無產階級이 領導하

43) 이러한 社會主義刑法의 기본임무에서 社會主義的 刑事政策이 유래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北韓刑法도 反革命犯罪를 범한 소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處斷하는 반면에, 一般犯罪를 범한 근로 인민에 대해서는 教養하고 改造하는 방향에서 懲罰과 寬待를 바르게 결합해야 한다는 刑事政策의 基本原理에 입각하고 있다; 金圭昇, 199-230면.

44) 중화인민공화국형법도 이와같은 刑事政策的 原理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목적 우리나라에는 性質이 不同한 두가지 矛盾이 的연히 存在하고 있다. 하나는 敵我모순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적아모순은 적게 存在하고 人民內部矛盾이 많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 모순은 性質이 다르고 處理方法도 다르므로 반드시 엄격히 구분하고 정확히 處理해야 하며 이 양자를 뒤섞지 말아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있어서는 社會主義建設事業을 擁護하며 社會主義建設事業에 참가하는 모든 階級, 階層과 社會集團은 모두 인민의 범위에 속하고 社會主義革命에 반항하며 社會主義建設을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모든 社會勢力과 社會集團은 모두 인민의 敵이다."(모택동선집, 제5권, 543-544면) 이것은 두가지 모순을 엄격히 구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掌握해야 할 근본적인 標準이다. 적아모순은 獨裁의 方法으로 處理하고 인민내부의 모순은 民主主義的方法으로 處理하여야 한다.; 法律常識手冊(朝鮮文), 民族出版社, 北京, 1948. 97면. 결국 社會主義國家의 刑事政策은 한마디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의 人間에 대한 改造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며 이 또한 새로운 나치형법의 再現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5) 이와 같은 형법의 기능에 의해서 소련에서의 刑法의 發展은 소련사회 안밖에서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위협(a real or potential threat)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는 세력에 의해서 받고 있는 소련당국의 불안의 정도와 범죄와 형벌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소련의 成熟의 정도에 대한 바로미터(a barometer)로 되어왔다; W. E. Butler, SOVIET LAW(London : Butterworths, 1983), 258면. W.E. Butlen, 260.

는, 勞動同盟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無產階級獨裁를 실시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여온 具體的經驗과 실정에 결부하여 제정한다'(第1條)라고 하고, 第2條에서는 '刑法의 任務는 刑罰에 의하여 모든 反革命 및 기타 刑事犯罪行爲와 鬪爭함으로써 無產階級獨裁制度를 保衛하며 社會主義的 全人民的 所有的 財產과 勞動大衆의 集團的所有的 財產을 保護하며 公民個人所有的 合法的財產을 보호하며 公民의 人身權利, 민주주의적 권리 및 기타 權利를 保護하며 社會秩序, 生産秩序, 事業秩序, 授業秩序, 科學研究秩序 및 人民大衆의 生活秩序를 維持하며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事業의 순조로운 進行을 保障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6) 47)}

북한형법에서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主席을 保衛하고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찰해서,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획득물을 지키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제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⁸⁾

北韓刑法 第4條에 대한 解釋은 다양하게 가능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北韓刑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사회의 主體思想化를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즉, 北韓에서는 刑法은 단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무기일 뿐 아니라 더 나가서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사상의 확립이 형법의 存在事由로 되는 것이

46) 1979. 7. 1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79. 7. 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명령 제5호로 공포, 198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의거한 조문임; 법률회집 1, 민족출판사, 北京, 1988.

47)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에서 '수업질서의 보호'는 다른 나라의 형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48)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북한형법에 있어서 刑法의 任務로서 공통적인 것은 社會主義 政治, 經濟와 인민의 權利의 保護, 刑事政策的 方向의 提示 등이라고 하겠다. 즉 사회주의 刑法에 있어서의 최종 목표는 共產主義의 실현으로 共產主義아래에서는 국가와 계급과 법이 모두 소멸된 狀態로되며, 범죄를 저지르려는 모든 천성적性向이 없어진 사람들만이 살게 되는 독점적 평온상태(state of monolytic tranquility)가 된다고 한다; 金撤, 러시아-소비에트 法(서울: 민음社, 1989), 345면. 이에 반해 北韓刑法에서는 사회주의 어떤나라 에서도 볼 수 없는 '공화국 주석의 보위, 주체사상의 일색화, 라는 것을 刑法의 任務의 하나로 보고있다.

다. 따라서 북한형법학의 指導思想, 指導的 指針은 당연히 주체사상이며, 주체사상은 刑法學의 思想理論 및 方法論的 基礎로 되어 있다.⁴⁹⁾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哲學的 原理에 근거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주체의 혁명적 법률과정을 정식화하고, 刑法을 위시해서 모든 法發展의 合法則性을 밝히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⁵⁰⁾

그래서 형법학연구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만이 事大主義, 教條主義 등 모든 反人民的, 反革命的 思想의 침입을 阻止하고, 刑法學이 혁명에 기여하는

49)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지도사상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근본원칙밑에서 제정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은 인민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적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두개 방면을 구현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實事求是로 원수를 타격하며 범죄분자를 懲罰하며 인민을 保護한다. 刑罰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자를 懲罰해야 하거니와 범죄분자를 改造도 해야하며 懲罰主義와 報復主義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2) 憲法은 根本的大法으로서 刑法을 제정하는 依據이다. 刑法은 憲法의 원칙적 규정에 根據하여 제정되고 그것은 또 憲法의 원칙을 위하여 服務하는 것이다. 懲罰政策과 寬待政策을 결합시키는 것은 反革命分子 및 기타 刑事犯罪分子들과 투쟁하는 기본정책이라는 것이 憲法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분자의 부동한 정황에 비추어 분별있게 대하며 관대한 처리와 엄격한 처리를 정확하게 結付시켜 懲罰政策과 寬待政策을 결합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조문화함으로써 기본정책의 위력을 더욱 유력하게 발휘하고 모든 범죄분자와 효과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경험을 총화하고 민주주의와 독재를 결부시켜 성질이 不同한 두가지 모순을 엄격히 구분하고 罪와 非罪 및 적아모순의 성질에 속하는 범죄와 인민내부모순의 성질에 속하는 범죄의 界線을 명확히 정하고 不同한 방법으로 不同한 성질의 모순을 처리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守護하고 社會主義偉業을 담보하는 刑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새로운 시기의 독점과 國內 階級關係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地主階級, 富農階級이 이미 소멸되고 資本家階級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反革命分子와 기타 刑事犯罪分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와 그들간의 투쟁은 새로운 歷史時期에 있어서의 階級鬭爭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階級鬭爭을 진행하자면 성질이 不同한 두가지의 모순을 엄격히 구분하고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刑法은 바로 새로운 시기의 이러한 需要에 적응하여 제정된 것이다.

50) 따라서 조선혁명과 共產主義運動의 사상이론적 總和인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와 함께, 反犯罪 鬭爭分野에서 제기된 이론실천적문제에 정확히 회답을 주고 있으며 이것과 더불어 刑法學研究에서 견지해야될 근본입장과 方法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金圭昇, 175면.

科學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共和國刑法의 根本革命은 공화국의 最終目標인 전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하고, 주체의 혁명실현을 담보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⁵¹⁾

모든 사회구성원을 주체형의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교육하고, 主體思想의 요구대로 사회를 改造하고, 共產主義 思想的 要素와 物質的 要塞를 占領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전사회의 주체사상화는 政治, 思想分野를 위시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階級鬭爭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⁵²⁾ 라고 하면서 北韓刑法이 反革命敵對分子의 책동을 분쇄하고 오래된 思想殘滓가 再生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要求에서 제정된 강력한 계급투쟁의 武器로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 服務하고, 전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하고 그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그 근본사명으로 함을 재삼강조 하고있다.⁵³⁾

또한 공화국 형법학연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⁵⁴⁾ 첫째, 김일성 주석이 解明한 刑事法律思想과 理論의 獨創性을 전개하고 논증하는 것이다. 둘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립된 공화국 형법의 혁명전통을 연구하고, 계승발전 시키는 것이다.⁵⁵⁾ 셋째, 이제까지 공화국에서 범죄와의 鬭爭에서 거둔 實踐的 經驗과 成果를 科學論理的으로 一般化하고, 實踐的으로 살리는 것이다. 넷째, 左右의 社會主義者의 刑法理論과 그 이론의 反革命的 本質을 批判하고, 남조선 형법의 반인민적, 군사파쇼적 본질을 폭로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刑法의 任務에 따른 刑法의 課題는 다음과 같이 주장되고 있다.

51) 김근식, 형법학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11면; 심형일, 225면.

52) 法學論文集, 社會科學出版社, 1975, 31면.

53) 이렇듯 북한이 형법의 사명을 主體思想의 구현 내지 담보에 두고 있는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朝鮮勞動黨規約이나 북한 新憲法의 규정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北韓法研究(7), 法務部, 51면.

54) 金圭昇, 176면.

55) 이러한 전통은 北韓 刑法이 이미 抗日革命鬭爭時期와 反帝半封建民主主義革命期를 거치면서 일제의 植民地刑事惡法을 철폐하고 북한인민의 利益에 맞게 주체적으로 형성되면서 일관되게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傳統에서 형법은 反革命犯罪를 비롯한 온갖 犯罪와의 鬭爭을 강화하여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튼튼히 擔保하는 階級鬭爭의 무기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근식, 27면.

첫째, 공화국 주석을 政治思想으로 擁護하고, 보위하는 것으로, 이것은 刑法의 사명에서 부터의 根本要求이다. 階級鬭爭의 歷史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계급적 적대분자는 무엇보다 먼저 勞動者階級の 領袖를 공격하는 것에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反革命과의 鬭爭은 그 본질상 勞動者階級の 首領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首領이 개척한 소위 혁명위업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首領과 지도자의 권위와 위신을 비방하고 훼손하려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단호한 懲罰을 가하게 된다고 한다.⁵⁶⁾ 둘째, 당의 노선과 정책을 擁護 貫徹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은 首領과 지도자⁵⁷⁾가 제시한 것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며, 그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 된다.⁵⁸⁾

刑法을 포함한 北韓의 모든 法이 예외없이 黨의 정책을 擁護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武器로 보기 때문에 刑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비방, 또는 歪曲하고, 그 執行을 懈怠하는 것을 犯罪的인 현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옹호하고, 保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主權과 社會主義 制度和 社會主義的 所有를 위시한 혁명의 획득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勞動者, 農民의 主權과 社會主義制度和 社會主義的 所有는 조선인민이 내외의 階級的 敵對分子에 반대하는 鬭爭을 통해서 爭取한 혁명의 획득물이라고 주장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서,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는 혁명의 근본문제이며, 노동자 농민의 主權을 敵對分子의 침해로부터 保衛하는가의

56) 金圭昇, 182면; 김근식, 12면.

57) 여기서의 수령은 '김일성'을 가리키고, 지도자는 '김정일'을 持稱한다고 본다.

58) 이와같은 결론은 바로 김일성교시의 '無條件性의 原則과 絶對性의 原則에서 유래되며, 그 결과로 북한에서는 모든 기관, 모든 주민들이 당의 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아무런 이유도 붙일 수 없으며 헌신과 희생을 바쳐 무조건 이를 관철해야만 한다; 北韓法研究(7), 53면.

여부는 혁명의 勝敗와 建設事業의 성과를 좌우하는 死活的인 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혁명의 획득물인 社會主義的 所有는 共和國의 經濟的 基礎로서 나라의 富強發展을 위해서, 인민의 物質文化生活이며, 남조선인민을 구원하기 위한 귀중한 富이라고 설명한다.⁵⁹⁾

넷째는, 人民의 憲法的 權利와 生命財産을 犯罪的侵害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生命 財産을 보호하는 것은 社會主義制度의 근본적 요구로서, 국가와 사회의 主人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확고한 擔保로 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분야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유지해서, 혁명적인 規律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共和國의 국가사회제도를 보다 강화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 가운데, 反革命分子의 犯罪的 策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粉碎하는 위에서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고 한다.

4. 北韓刑法上的 犯罪論의 特色

前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刑法은 犯罪과 刑罰 및 그 兩者의 關係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刑法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인 刑法學의 主된 任務는 범죄와 형벌의 法律인 意味內容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⁶⁰⁾

즉, 어떠한 경우에 범죄가 成立되고, 이것에 대하여 어떠한 刑罰을 附課하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刑法學의 課題라고 본다.

그러나 犯罪라는 用語에는 다양한 意味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령 甲이 乙을 殺害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日常生活가운데 發生하는 現實의 事件 그 自體를 가리킨다.

이러한 實在로서의 犯罪는 一面에있어서 一定한 節次에따라 法律的으로 處理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役割을 擔當하는 刑事司法, 예를들면 범죄의 搜查, 法院에서의 審理, 判決등의 대상으로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 범죄의 현

59) 金圭昇, 183면.

60) 西原春夫, 刑法總論(東京:成文堂, 1983), 61면.

상형태와 그 원인을 연구하며, 개인과 사회생활에 犯罪가 미치는 意味와 刑事制裁的 手段의 작용과 效果 등을 검토하는 犯罪學(Criminology, criminologia) 내지,⁶¹⁾ 類似犯罪의 再發의 豫防策을 추구하는 刑事政策⁶²⁾의 對象으로 되지만 반드시 刑法學의 直接的인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刑法學의 임무는 犯罪라고하는 概念의 規範的意味內容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음으로, 甲이 乙을 살해했다고 하는 現實의 사건은 어떠한 경우가 犯罪로 되는 가를 歸納的으로 고려하는 경우의 判斷資料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犯罪의 成立要件의 內容 및 限界를 표시하기 위한 ‘事例’로 될 뿐이다.

한편으로, 犯罪라는 용어는 殺人, 절도, 방화와 같이 각각의 犯罪類型의 意味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個別類型的인 概念으로서의 犯罪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의 犯罪는 예를 들면 甲이 乙을 살해한 경우도, 丙이 丁을 살해한 경우도 包括하는 것이므로, 이미 實在의 世界는 아니며 觀念의 世界로 抽象化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甲이 乙을 傷害한 경우와 甲이 乙을 錯誤로 死亡에 이르게한 경우로 부터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않으면 아니 되며, 이 구별은 확실히 法律的觀點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意味에서의 犯罪는 틀림없이 刑法學의 對象으로 된다.⁶³⁾

이에 대해서 살인, 절도, 방화등 각각의 犯罪類型모두를 포괄하는 최고의 보편적개념으로서의 범죄의 추구는 刑法各論의 領域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이 야말로 바로 刑法總論의 課題로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刑法總論의 대상은 犯罪라는 용어의 제3자의 意味가 되며, 一般概念으로서의 犯罪로 된다.

61) 犯罪學이란 용어는 1885년 이태리의 犯罪學者 R. Garofalo의 ‘criminologia(first Italian ed., Naples, 1885)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世界 犯罪學의 研究動向에 관해서는 이수성, 한인섭, 세계범죄학의 연구동향分析’ 法學, 제26권 1호(통권6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4. 123-139면.

62) 형사정책이란 독일어의 Kriminalpolitik에 해당하는 말로서 영어로는 Criminal policy로 표현된다. 이를 처음 사용한 것은 ‘近代 刑法學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이에르바하(Paul Johann Anselm Feuerbach, 1775-1883)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日本과 韓國에서 ‘刑事政策’이란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 부터이다; 慎鎭揆,

63) 그러나 刑法學 중에는 刑法總論외에 各個의 犯罪類型을 考察하는 刑法各論이 있으므로 이 두번째 意味에 있어서의 범죄는 刑法各論의 對象으로 된다; 西原春夫, 62면.

그리고 刑法總論 중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범죄론이다.

64) 刑法理論 중 犯罪論은 可罰的 行態(Strafbares Verhalten)의 一般的 標識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삼는다. 즉, 한 人間行態가 處罰받기 위해 前提되는 必要 내지 充分條件을 다루는 것이 범죄론이다.⁶⁵⁾

마꾸어 말하면 범죄론은 犯罪의 一般的 成立要件을 分析하고 體系化하는 理論이다.⁶⁶⁾ 한편 犯罪의 일반적 成立要素를 一定한 원리에 根據해서 체계화 하는 것을 犯罪體系論이라고 하고, 刑法上 犯罪論은 이 犯罪體系論을 軸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이다.⁶⁷⁾

犯罪論의 成果로서 現대의 刑法理論學(Strafrechtsdogmatik)에서는 犯罪는 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 有責한 行爲로 定義하는 데에 원칙적인 일치를 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4) 西原春夫, 62면

65) 金日秀, 刑法學原論, 178면; 한편 이와같은 범죄론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犯罪를 犯罪아닌 類似한 現象으로 부터 形式理論的 측면에 있어서 구별하는 것이다. 둘째는, 범죄의 認定에 있어 統一의原理를 부여해서, 處罰, 不處罰의 근거에 法感情以上の 體系的 부여함을 통해서, 刑事司法의 恣意的 내지 感情的인 犯罪認定을 防止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범죄론은 國民의 自由, 權利를 國家의 자의적인 司法作用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西原春夫, 63면.

66) 大谷實, 刑法總論講義(東京: 成文堂, 1986), 134면.

67) 일반적으로 체계(System)라는 것은 일정한 原理에 기초해서 組織된 知識의 統一體를 말한다. 體系가 對象의 認識을 돕고, 體系性이 일정한 對象技術에 관한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法學의 오랜 전통이 되어왔다. 刑法理論學에서도 體系的의 思考(Systemdenken)가 선호되고 있다.

刑法理論學에서 체계적 사고가 갖는 長點은 (1) 사례검토들 함에 있어 편리하며, (2) 具體的인 사례해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法適用者의 자의성과 不合理性을 방지해 줄 수 있으며(Gimbernat, Hat die Strafrechtsdogmatik eine Zukunft? in ZStW 82(1970), 405면) (3) 法素材의 體系的 整序는 法規範의 內在的 意味와 그의 目的論的 基礎에 관한 통찰을 통해 法解釋者와 適用者에 의한 創造的인 法形成(Rechtfortbildung)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등이다(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4. Aufl., 1979, 402면; 金日秀, 170면에서 재인용).

刑法學에 있어서는 刑法의 目的, 機能을 基準으로 해서, 그 實現에 의해서 矛盾이 없도록 知識을 통일하고, 組織化하는 것이 체계구성의 임무이다. 이에 따라 犯罪論의 체계는 일정한 目的에 봉사하는 體系 즉, 目的論的 體系이기 때문에 우선, 犯罪로 되는 與否의 限界를 명확히 指摘하여야만 하고, 또한 犯罪의 인정에 있어서의 統一의 原理를 제공하고, 刑事司法에 感情論과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大谷實, 135면

즉, 犯罪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상 意味있는 行爲로서의 實質的 基礎가 存在하고, 이것이 構成要件該當性, 違法性, 責任이라고 하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犯罪는 이 行爲, 構成要件, 違法, 責任이라는 概念에 根據해서 構成되어 지지만, 각각의 概念은 刑罰의 非難에 相當하는 事象을 選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相互間에 체계적인 綜合性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⁶⁸⁾

일반적으로 行爲, 構成要件, 違法性, 責任 등의 기본적인 犯罪成立要件의 範疇는 약 1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학문적인 論議過程에서 서서히 形成 발전된 것이다.⁶⁹⁾

이상에서 刑法理論學에서 犯罪論이 가지는 意義와 一般的인 犯罪體系論의 構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럼 北韓刑法上의 犯罪論의 體系 및 그 特色은 어떠한지 北韓刑法 및 北韓 刑法學者들의 解釋論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刑法上 犯罪成立要件으로서 構成要件該當性(Tatbestandsmassigkeit), 違法性(Rechtswidrigkeit), 責任(Schuld)은 相互 綜合的, 有機的 關聯性을 가지고 있으며 세 要件을 犯罪成立의 必要. 區分條件으로 된다.⁷⁰⁾

68) 大谷實, 134면.

69) 行爲概念은 맨 처음 Berner에 의해 범죄체계의 礎石(Grundstein)으로 파악되었고 (Berner,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Leipzig, 1857), 책임과 독립된 客觀的 違法性的 승인요구는 Jhering에서 비롯되었다(Jhering, Das Schuldmoment romischen Privatrechts, 1867), 構成要件概念은 Beling으로부터(Beling, Die Lehre vom Verbrechen, Tubingen, 1906), 責任論은 責任을 心理的 事實關係에서 評價的 價値關係로 이해하는 Frank의 責任概念의 再構成(Uber den Aufbau des Schuldbegriffes, 1907)에서 제기된 規範的 責任論(Normative Schuldlehre)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70) 犯罪의 成立要件을 構成要件, 違法性, 責任의 세 要件으로 보는 견해를 3분법이라고 하며, 이는 독일형법학의 영향이며, 英美法에서는 客觀的 要素로서의 actus reus와 主觀的 要素로서의 mens rea로 분류하며 犯罪概念을 구성하고, 佛蘭西에서는 實質的 要素(element materiel)와 道德的 要素(element moral) 및 法律的 要素(element legal)로 분류한다; 大谷實 113면. 蘇聯刑法學에서는 客體, 客觀的 側面, 主體, 主觀的 側面으로 분류하고, 이태리에서는 行爲, 違法性, 責任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多數있다; 團薦重光, 88면.

또한 이 세 要件은 別個, 獨立의 相互對等한 成立要素로 可能하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 要件이라도 缺如된다면 처음부터 全體로서의 犯罪成立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北韓刑法上으로는 犯罪成立의 要素는 構成要件과 構成要件의 內容으로서의 危險성과 罪責이다.

構成要件은 違法性(危險性)과 責任(罪責)을 포함하는 包括的, 綜合的 概念으로 기능한다.⁷¹⁾ 즉, 構成要件은 바로 犯罪成立要件의 總體이며 危險성과 罪責은 構成要件成立의 要素이다.⁷²⁾

危險성은 우리 刑法上の 違法性과는 달리 構成要件과 形式的으로 對等한 犯罪成立要素가 아니라 構成要件에 從屬된 要素이다.

따라서 特定の 行爲가 危險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構成要件에는 해당되나 위험성이 阻却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構成要件이 充足되지 않으므로 犯罪로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北韓刑法은 構成要件, 違法性, 罪責의 犯罪成立要件이 있으나, 이 세가지 요소는 상호 對等的, 獨立的 要素가 아니라 違法성과 罪責은 構成要件의 内部的인 要素로 되고, 構成要件은 違法성과 罪責을 포함한 總體的, 包括的 犯罪成立要件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犯罪가 成立된다.⁷³⁾

71) 犯罪論體系를 남·북한 비교해 보면,

(남한) 구성요건-위법성-책임.

북한

구 성 요 건	
위험성	죄 책

72) 따라서 北韓刑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성요건이라는 용어는 바로 우리 刑法學에 있어서의 犯罪成立要件에 해당된다; 朴光燮, 220면.

73) 일반적으로 犯罪의 成立은 먼저 刑法上 意味있는 行爲가 構成要件에 해당하고, 構成要件該當性を 前提로 해서 違法성을 判斷하고, 構成要件該當성과 違法성을 前提로 즉, 不法(Unrecht)은 責任判斷에 앞서서 行해져야 한다는 原則(Das Unrecht muss vor der Schuld geprüft werden)에 入脚해서, 責任平價의 단계로 이어진다. 즉, 犯罪는 理論的, 規範的, 段階的 順序로 成立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刑法에서는 構成要件 自體가 바로 犯罪成立要件이며, 위법성(위험성)과 罪責의 判斷이 構成要件 判斷보다 앞서며, 따라서 反社會的 行爲로서의 構成要件該當性이라는 제1단계에서는 犯罪成立 여부가 결정되어 지므로(강구진, 130면), 범죄론의 後續段階는 그 實質的 意味를 상실할 수 밖에 없게 된다(朴光燮, 北韓과 法과 法理論,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20면)

둘째, 우리는 形式的 犯罪概念에 入脚하고 있으나 북한형법에서는 實質的 犯罪概念에 입각해서 構成要件은 形式的, 客觀的 判斷에 의해서, 危險性과 罪責은 主觀的 判斷에 의거한다.⁷⁴⁾

셋째, 北韓刑法上の 犯罪論에서 犯罪論의 體系性과 이를 통한 刑法의 保障的 機能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罪刑法定主義의 否認과 類推制度의 認定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犯罪體系論은 罪刑法定主義를 前提로 할 때 비로서 그 機能을 다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北韓刑法에 있어서 罪刑法定主義의 否認, 類推解釋의 認定, 實質的 犯罪概念의 규정, 犯罪成立要素로서의 社會的 危險性的 강조등은 北韓刑法의 非人權的 性格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⁷⁵⁾

넷째, 前述한 것처럼 北韓刑法에서는 犯罪의 성립여부를 刑法이 具體的인 犯罪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客觀的 및 主觀的인 표징들의 總體라고 하는 범죄 성립조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犯罪成立條件을 犯罪 構成要件 또는 犯罪表徵이라 부르면서, ① 犯罪에 의하여 侵害된 社會關係를 특징짓는 표징⁷⁶⁾ (2) 犯罪的 行爲 및 結果를 특징짓는 客觀的 表徵⁷⁷⁾ (3) 犯

74) 이점에서 違法性은 客觀으로, 責任은 主觀으로 라는 現代 刑法學의 일반원칙과 많은 차이가 있다.

75) 특히 범죄의 形式的 概念을 무시한 채 犯罪의 實質的 側面을 강조하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기만 하면 모두 犯罪로 되고 刑法各論上の 處罰條項은 刑法이 범죄로 보고 있는 例示規定에 불과하므로 立法의 未備가 있을 때에는 類推解釋을 하게 되고, 사회적 위험성 있는 행위는 모두 處罰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刑法의 保障的 機能은 몰각되고 만다(北韓法研究 7, 法務部, 99면) 한편 이와 같은 위험한 결론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의 刑法學者중에는 범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行爲의 위험성외에 죄책성과 刑事可罰性을 강조하거나(김근식, 83-85면; 김규승, 255-256면; 심현상, 101-103면), 類推解釋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北韓刑法 자체가 類推解釋을 정면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類推解釋의 허용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범죄의 실질적 概念定意와 關聯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實在의 실무에 있어서 解釋의 엄격성의 限界가 어디까지 결정되는 것인지, 실제 이러한 엄격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懷疑的이다(朴光燮, 213면)

76) 이는 刑法이 保護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며, 犯罪의 客體라고도 한다; 심현상, 108-174면.

77) 犯罪의 客觀的 側面이라고도 하며(심현상), 犯罪 行爲概念과 因果關係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罪的故意 또는 過失을 特徵짓는 표징⁷⁸⁾ (4) 犯罪者로 되는데 필요한 조건⁷⁹⁾ 등 4가지를 들고 있다.⁸⁰⁾ 여기에서 (1)과 (2)는 사회적 위험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3과 (4)는 罪責(責任)의 성립요소라고 하겠다.

5. 북한형법상의 行爲論

犯罪란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違法하고 有責한 ‘行爲’를 意味한다. 따라서 犯罪라는 概念의 제1要素로 되는 것은 바로 行爲이다.⁸¹⁾ 즉, 犯罪는 먼저 行爲의 存在를 요건으로 하며, 여기에서 ‘犯罪는 行爲이다’라는 命題가 도출된다.⁸²⁾

‘犯罪는 行爲이다’라는 것은, 行爲가 아닌 것은 犯罪를 構成하지 않는다는 趣旨이며, 이를 行爲主義라고 한다.⁸³⁾ 따라서 刑法的 評價의 대상이 되는 것은 行爲이고, 형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行爲로서의 性질(Handlungsqualität)를 가져야 한다.⁸⁴⁾ 그 결과 近代刑法은 行爲者(Tater)가 아니라 行爲(Handlung)에 主眼을 두게 된다. 이를 行爲刑法이라고 한다.⁸⁵⁾ 형법상 行爲와 關係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⁸⁶⁾ 오늘날 처럼 犯罪는 違法하고, 有責하고, 可罰的인 行爲라고 정의되고, 동시에 이러한 犯罪要素들 사이에는 包

78) 犯罪의 主觀的 側面이라고도 한다(심현상) 責任條件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79) 범죄의 주체로 설명하기도 한다(심현상), 責任能力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80) 김근식, 85-112면; 金圭昇, 257-285면

81) 西原春夫, 67면; 大谷實, 117면; 團騰重光, 91면.

82) 우리 刑法도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刑法 제13조)라든가,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인하여 罰하지 아니한다(제17조)’라고 규정하여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83) 大谷實, 117면.

84) 李在祥, 74면.

85) 陳癸鎬, 134면.

86) 行爲概念이 처음 刑法學의 中心概念으로 자리잡게 된것은 Abegg, Kostl in, Berner, Halschner 등의 헤겔學派에 의해서이다. 헤겔은 行爲는 主觀的 意思 또는 倫理的 意思의 表現이라고 설명하였다(Jakobs, Strafrecht AT, Berlin, 1983, 105면), 헤겔學派들은 그 이전에는 형법체계내에서 이름도 형태도 없이 분산되어 있던 行爲概念을 具體化(Materialisation)하였다고 Radbruch는 평가하기도 하였다(Radbruch, Der Handlungsbegriff in seiner Bedeutung für das Strafrechtssystem, Berlin, 1903, 85면).

攝關係(Subsumtionsverhältnis)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까지에는 많은
論議의 變遷을 겪었다.⁸⁷⁾

行爲와 관련한 많은 견해들은 주로 行爲概念이 수행하여야 할 機能을 중심
으로 행위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들은 대부분 行爲概念을 전체 犯
罪體系의 기초로 이해하고 行爲概念이 일정한 機能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있다.^{88) 89)}

이에 반해 行爲概念이 일정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行爲概念은 이론상의 문제에 불과하며 그 論議의 실익이 없으므로 行爲나 行
態(Verhalten)가 아닌 다른 概念들을 통해 犯罪를 정의하려는 노력 즉 行爲概

87) 吳英根, '現代의 刑事法學', 朴貞根博士華甲紀念文集, 法元社, 1990, 68면.

88) 李在祥, 刑法總論, 75면이하; 金日秀, 刑法學原論, 212면 이하; 車鏞碩, 刑法總論,
167면이하; 陳癸, 刑法總論, 134면 이하.

89) 行爲概念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Maihofer는 限界機
能(Abgrenzungsfunktion), 根本要素(Grundelement), 結合要素
(Verbindungselement)를 들고있으며(Maihofer, Der Handlungsbegriffim
Verbrechenssystem, Tubingen, 1953, 8-10면), Jescheck은 限界機能, 分流機能
(Klassifikationsfunktion), 定義機能(Definitions-funktion), 結合機能으로 설명한다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 AT, 4. Aufl., Berl in. 1988, 196면 이하).

여기에서 根本機能이란 우선 行爲 그 자체가 犯罪概念의 基本的 要素라는 概念에
서 출발한다. '어느 누구도 思想에 의해서는 罰받지 아니한다(cogitationis poenam
nemo patitur)라든가, '思想에는 稅金이 부과되지 않는다(Gedanken sind zollfrei)'라
는 法이 암시하는 것처럼 思想, 人格과 같은 단순한 내심적 사시를 社會的 意味
를 가지지 않으며, 國家觀力이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刑法的 評價의 範圍밖의 것이
다. 즉, 刑法的 評價의 대상은 行爲이고, 構成要件, 違法性, 責任性이라고 하는 刑法的
的 評價는 行爲라고 하는 對象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大谷實, 118면) 따
라서 行爲概念은 犯罪概念은 犯罪體系에서 優越的 地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犯罪
概念의 上位概念으로서 犯罪論의 礎石이며, 전체 犯罪論의 出發點이 된다고 본다
(Strantenwerth, STrafrecht, AT 1, 3. Aufl., koln, 1981, 60면) 이러한 行爲概念의
理論的 意味를 行爲의 根本機能 또는 分類的 機能 등으로 부른다. 한편

念否定論도 제기되고 있다.⁹⁰⁾

北韓刑法에 있어서도 犯罪는 일정한 行爲이어야함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刑法學者들에 의하면, 犯罪는 외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위험한 ‘行爲’와 그 ‘行爲’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범죄적 행위와 범죄적 결과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¹⁾

또한 北韓刑法學에서는 犯罪行爲를 범죄의 客觀的 側面 또는 犯罪의 客觀的 표징의 한 要素로서 파악하고 있다.⁹²⁾

그러나 北韓 刑法學界에서는 行爲의 概念과 特性, 刑法的 機能 등에 있어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犯罪的 行爲의 成否, 나가서 刑罰의 範圍를 정함에 있어서 그 犯罪者의 思想과 意識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⁹³⁾

그들은 소위 犯罪와의 鬭爭에 있어서 누구 黨의 思想을 가지고 있는느냐를 판별하여 그 자가 그들의 敵인가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이는 특

90) 行爲概念否定論은 行爲概念이 표방하는 바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어떠한 行爲概念도 그 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犯罪불 “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하고, 歸屬가능한 事件”, “違法하고, 有責한 構成要件實現” 등으로 정의한다. 특히 Armin Kaufmann은 行爲概念을 둘러싼 논쟁은 올바른 不法概念을 위한 논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Armin Kaufmann, Zum Stande der Lehre vom personalen Unrecht, in : Festschrift für Welzel, 1974, 395면; 金日秀, 209면에서 재인용)

또한 犯罪概念의 第1要素는 構成要件該當性이고, 刑法的 評價 以前의 存在論的 行爲를 論하는 것은 意味가 없다(南興祐, 刑法總論, 70면)고 하고, 行爲犯과 不作爲犯, 故意犯과 過失犯에 共通妥當한 一元的, 實質的 行爲概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Bockelmann, Medizinische Welt, 1972. 1310면, AT, 3. Aufl., 1979), 처음부터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具體的 行爲를 문제삼아야 한다. 즉, 보편타당한 前構成要件的 行爲概念에 관한 사고는 전적으로 포기되어야 하며 그 대신에 Radbruch가 이미 착상한 바와같이 構成要件該當性을 刑法體系의 基礎概念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Schonke-Schroder-Lenckner, Strafgesetzbuch, Kommentar, 23. Aufl., München, 1988. 23면이하; Roxin, ZStW, Bd. 74, 514면)

91) 김근식, 90면이하; 金圭昇, 263면이하; 심현상, 122이하.

92) 범죄의 客觀的側面은 犯罪的 行爲, 犯罪的 結果, 犯罪的 因果關係 등 세가지 要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93)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전술한 ‘어느 누구도 思想에 의해서 罰받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많은 人權 侵害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정의 故意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行爲者의 당에 대한 思想을 犯罪的 意思의 구별과 함께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⁹⁴⁾

따라서 북한형법에 있어서 犯罪的 行爲는 그 思想的 表現으로서 反階級的 本質을 遂行하는 外的 動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北韓에서의 犯罪的 行爲는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닌다.⁹⁵⁾

첫째, 북한사회를 침해하는데에 둘러진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行爲만이 범죄적 행위로 된다.

둘째,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에 대한 일정한 主觀的 態度, 즉 故意 또는 過失과 같은 犯罪的 意思에 따라 감행된 행위만이 犯罪的 行爲로 된다.

셋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엄중하고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犯罪的 行爲는 北韓刑法이 보호하는 社會關係를 침해하는데 둘러진 言語・行動 등으로 표현되는 肉體的 動作이다.⁹⁶⁾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犯罪的 行爲를 肉體的 動作이라 하면서 이를 禁止된 行爲를 積極的으로 遂行하는 데서 표현되는 行爲犯과 그가 수행하여야 할 義務있는 행위를 消極的으로 遂行하지 않는 데서 표현된다는 不作為犯(Unte

94) 이에 관하여 북한 형법학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침을 그 기초로 삼는다; ‘그 누가 우리 당의 사상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그의 실천에서만 점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하며 적, 아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우리 당의 계급적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김일성저작집, 12권, 297면). ‘사람의 사상의식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자로 잴 수도 없다. 오직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사상적 입장과 태도, 견해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생활하는 것을 보아야 사상의식이 개변되어 가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김정일, 영화예술론, 46면).

결국 북한형법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실적인 범죄행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범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그 범죄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자의 사상의식 상태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과 ‘아’를 구분하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北韓法研究(7), 114면.

95) 北韓法研究(7), 114-116.

96) 意思의 外部的 表現으로서의 動作이 行爲의 客觀的 要素임은 우리형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鄭榮錫, 95면; 진계호, 135면.

rlassungsde likte)으로 구별한다.⁹⁷⁾

不作為犯을 다시 순수 소극범 또는 순수 부작위범⁹⁸⁾과 혼성소극범 또는 혼성부작위범으로 나누고 있다.⁹⁹⁾ 다섯째, 犯罪的 行爲는 犯罪者의 肉體的 動向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이용하는 모든 힘과 合法則性까지 포함된다. 즉, 다른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 事物의 合法則性까지 포함된다. 즉, 다른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 事物의 合法則性을 이용한 경우에도 모두 범죄적 행위로 된다.¹⁰⁰⁾

또한 일반적으로 전술한 것처럼 根本機能, 結合機能, 限界機能등을 가진다고 論議되고 있는 行爲에 대하여 북한형법학계는 犯罪的 行爲는 소위 犯罪와 의 鬭爭에서 다음과 같은 意義내지는 機能을 가진다고 주장한다.¹⁰¹⁾

97) 심현상은 부작위범으로, 김근식과 김규승은 소극범으로 부른다.

98) 우리의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 likte)에 해당되며, 북한형법상 反革命的 台業罪(제61조), 反革命的 犯罪 不申告·放任罪(제66조), 設備点檢補修規制 違反罪(제89조), 勞動保護法規 違反罪(제105조), 社會主義分配原則 違反罪(제109조), 一般犯罪 不申告罪(제139조), 죽을 危險에 처해있는 사람을 내버려둔 罪(제157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북한형법은 비교적 많은 진정부작위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연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심현상은 “共和國에서의 不作為犯은 주로 낡은 사상잔재를 가진자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작위범과 투쟁하는 것은 낡은 사상잔재와 투쟁하는데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일부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자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적 사업방법과 소극적 태도로서 자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인민정권과 인민대중과의 연계와 노동동맹을 강화하며 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여 不作為犯의 政治性을 부각시키고 있다(심현상, 126면).

99) 혼성소극범 또는 혼성부작위범에 있어서 行爲義務의 근거를 法令, 契約 또는 직무상의 地位, 무임관리와 선행행위, 慣習 또는 공동생활의 준칙 등에서 찾고 있다. 우리형법학계에서도 Nagler의 保證人說(Garanten theorie)에 의거하여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서 保證人的 地位에서 발생하는 行爲義務를 요구하며, 그 발생근거로서 法令, 契約, 條理, 先行行爲 등을 들고있다; 劉基天, 124면; 鄭榮錫, 109면; 錢계호, 148면; 黃山德, 71면; 李在祥, 130면.

100) 즉, 타인을 도구(Werkzeug)로 이용하는 間接正犯(mittelbare Taterschaft)을 인정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行爲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101) 김근식, 95면 이하.

· 첫째, 犯罪的 行爲는 적·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¹⁰²⁾

북한의 刑法學界에서는 犯罪的 行爲 하나만으로 적·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犯罪者의 階級的 位置, 혁명에 대한 態度, 犯罪的 行爲를 감행하게 된 목적과 동기 등과 함께 犯罪行爲의 性格, 犯罪行爲를 감행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分析하여야만 적·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犯罪的 行爲는 犯罪者의 犯罪遂行의 主觀的인 態度, 즉 故意인가 過失인가, 意識的인가 無意識的인가를 정확히 밝힘에 있어서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셋째, 犯罪的 行爲는 같은 사회관계를 침해하는 유사한 범죄들을 서로 구별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 예컨대, 個人所有財産을 침해하는 犯罪인 훔치기, 빼앗기, 속여먹기, 강도 등이 구별되는 것은 犯罪的 行爲를 감행하는 수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犯罪的 行爲는 그 犯行手法, 遂行場所, 遂行環境, 遂行時機에 따라 刑罰을 무겁게 주는 條件으로서의 意義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 있어서 犯罪行爲는 그 자체로서 刑法的 評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思想과 결합되어 판단의 대상 및 處罰의 대상으로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행위자의 行爲보다 오히려 國家的 觀點에서 評價되는 行爲者의 思想이 더 주요한 평가의 基礎가 됨으로써 近代刑法의 根本原理인 行爲主義에 違反되는 結果를 초래할 危險性도 적지 않다고 본다.

102) 적아의 구별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즉, 범죄라는 社會的 現象에서 어떤 범죄는 적아의 모순의 성질에 속하고 어떤 범죄는 인민내부모순의 성질에 속하며, 刑事犯罪의 大部分은 보통형사범죄이고 小部分은 反革命犯罪이다. 보통형사범죄는 대부분 인민내부모순의 성질에 속하는 犯罪이고 소부분은 적아모순에 속하는 범죄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두가지 모순은 그 性質뿐만 아니라 處理方法에 있어서도 적아모순은 독재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인민내부의 모순은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므로 반드시 엄격히 구분하고 정확히 처리해야 하며 뒤섞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현단계에서는, 社會主義 建設事業을 찬성하고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에 속하고 사회주의혁명에 반항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모든 사회세력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의 적이다.(모택동선집, 제 5권, 543-544면)고 한다; 법률상식, 민족출판사, 97면.

한편 北韓刑法에서는 存在論的 또는 規範的으로 前構成要件의인 行爲概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며, 행위론의 유형-因果的, 目的的, 社會的, 人格的 行爲論 등에 대한 論議도 보이지 않는다.

6. 犯罪成立條件으로서의 社會的 危險性.

北韓 刑法學上 犯罪成立條件은 북한 사회를 침해하는 일정한 社會的 危險 行爲를 北韓刑法이 具體的인 犯罪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客觀的 및 主觀的 표징들의 總體를 말한다.

북한의 형법학계에서는 어떠한 犯罪에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犯罪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社會關係를 특징짓는 표징

둘째, 犯罪的 行爲 및 結果를 특징짓는 객관적 표징

셋째, 犯罪的 故意 또는 過失을 특징짓는 주관적 표징

넷째, 犯罪者로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특징짓는 표징

여기에서 첫번째 조건은 犯罪의 客體 또는 對象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두번째의 조건은 犯罪的 行爲概念에 관한 내용이며, 세번째의 조건은 責任條件에 관한 내용이고, 네번째는 責任能力에 관한 내용으로 보겠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北韓刑法上 犯罪成立條件이란 特別構成要件 그 자체이며 社會的 危險성과 죄책이 그 要素로 되어있다.

결국 北韓刑法上 犯罪成立要素는 危險성과 罪責으로 요약되며 이중에서도 危險성은 그 核心要素라고 하겠다. 즉, 북한형법에서는 犯罪란 社會的 危險성이 있는 行爲이고 社會的 危險성이 있는 行爲를 類型化해 놓은 것이 犯罪 構成要件이며, 범죄의 構成要件에 該當하면 바로 犯罪가 成立되는 것으로된다. 이러한 犯罪論의 構成은 蘇聯 刑法學에 있어서의 構成要件理論인 이른바

Sostav 이론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¹⁰³⁾

실제로 북한의 刑法學者 중에는 위의 理論을 그대로 차용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¹⁰⁴⁾

최근 북한의 刑法學者들의¹⁰⁵⁾ 사용하는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社會關係를 특징짓는 표징’등 4가지 犯罪成立條件도 사실상 소련 刑法學上의 概念을 內容적으로 풀어서 구체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犯罪構成要件의 理論體系는 매우 即物的이고 範疇論的이며¹⁰⁶⁾, 이러한 構成要件概念은 Beling 이전의 낡은 觀念으로서 이미 근대 형법학에 의해서 극복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⁰⁷⁾

그러면, 北韓刑法上 社會的 危險性의 意味 및 機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社會的 危險性의 概念은 기본적으로는 20세기 초엽의 社會防衛論(Defense sociale, Gesellschaftsschutz)¹⁰⁸⁾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103) 심현상의 조선형법해설(148, 193, 212면 등)은 소련 刑法學者중에서도 특히 A. N. Trainin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그의 영향을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련 형법상의 Sostav이론에 관하여는, Feldbrugge, ‘Soviet Criminal Law’(Leyden; A. W. Sythoff, 1964)89-95면 ; Academy of Science the U.S.S.R., ‘Fundamentals of Soviet Law’(Moscow;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406-409면 참조.

104) 심현상, 108-174면.

105) 김근식, 김규승이 여기에 속한다.

106) Radbruch, ‘Zur Systematik der Verbrechenslehre, Festgabe für Frank, Bd 1., 160-162; 강구진, 190면에서 재인용.

107) 강구진, 190면.

108) 社會防衛論은 아직도 生成, 發展되고 있는 理論이기 때문에 그 概念定義는 아직도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만큼 多義的이다(朴陽植, 保安處分에 관한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46면).

초기에는 ‘범죄로 부터 社會를 방위하는 理論으로서, 社會的 危險을 일으키는 一切의 犯罪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抑壓되어야 한다’는 意味로, 또는 ‘형벌권의 正當化 根據로서 ‘共同體의 生存과 權利를 위협하는 犯罪에 대한 社會共同體의 反作用’이라는 意味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社會防衛는 ‘犯罪의 豫防과 犯罪人의 處遇’라는 概念으로서 應報處分에 대한 反作用으로 나타났으며 犯罪에 대한 鬭爭의 概念으로 등장했다; 李壽成, ‘社會防衛論의 過去와 現在’, 서울대학교 法學 제 24권, 1983. 9, 87-88면.

서¹⁰⁹⁾ 인식되어 진다.

危險 내지 危險性이라는 개념은 ‘막연하여 定義하기 어려운 概念’이라든가 ‘危險이라는 概念은 위험한 概念’이라는 말이 있듯이 學問적으로 精確한 說明을 하기 어려운 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⁰⁾

또한 危險性이란 ‘犯罪人이 違法行爲를 하는 것이 豫想된다는 蓋然性(Wahrscheinlichkeit)을 意味하며,¹¹¹⁾’ 중대한 違法行爲를 행할 개연성, 高度의 優越한(uberwiegend) 可能性(Möglichkeit) 등으로 定義되어 지기도 한다.¹¹²⁾

결국 危險性이란 公共의 安全上 그를 防止해야 할 必要性的 정도가 중대한 違法行爲를 행할 可能性이며, 이것은 犯罪者가 可罪行爲를 다시 행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豫想되고 法秩序를 위해서는 救濟策이 必要하고 다른 手段에 의해서는 達成할 수 없다고 하는 行爲者의 危險性和 補充性的 原則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위험성의 개념을 分設하면 다음과 같다.¹¹³⁾

첫째, 장래 危險性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再犯可能性(Widerholungsmöglichkeit) 내지 潛在的 危險(latente Gefahr) 정도로는 不足하며¹¹⁴⁾, 상당한 정도의 蓋然性이어야 하며 반드시 充紛하고 確實性 또는 그에 가까운 정도의 개연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¹¹⁵⁾

둘째, 이때 危險性的 정도는 侵害可能性的 정도(Grosse der Verletzung)

109) 刑法과 犯罪學의 역사 속에서 볼 때 社會防衛運動은 주로 近代的 現象이며,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직접적인 기원은 사실상 19세기 후반의 實證主義學派에 의하여 刑事學(science criminelle)에 가해진 혁명에 까지 소급된다.

110) 振津降行 刑法における危險概念-危險概念 本質について刑法雜誌, 第24卷 第2號, 78면 이하; 墨谷葵, “保安處分における危險の意義,” 「ジュリスト」호(1982. 8), 71면.

111) F. Exner, ‘Das System der sicherenden und besserenden Massregeln nach dem Gesetz V. 24, November, 1933, ZStw, Bd. 53, 633면.

112) Schonke-Schroder도 단순한 可能性(Möglichkeit)으로는 不足하고 一定 以上の 蓋然性(ein gewisser Grad vom Wahrscheinlichkeit)이어야 한다고 한다; Schonke-Schroder, Strafgesetzbuch Kommentar, 13 Aufl., 243면.

113) 朴陽植, 128-132면.

114) Schonke-Schroder-Stree, StGB. 18. Aufl.(München, 1976), 652면.

115) 大法院도 “再犯의 危險性이란 保護對象者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平穩을 침해할 蓋然性”이라고 하였다: 大判, 81 判도 104, 1982. 2. 23.

Molichkeit) 및 可能한 侵害의 정도(Grosse der moglichen Verletzung) 兩者에 의해 決定된다.¹¹⁶⁾ 이것은 比例, 均衡의 原則(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과 연결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며 독일형법 제 63조 내지 66조¹¹⁷⁾와 같이 행위의 중대성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¹¹⁸⁾

셋째, 危險性原因의 本質은 違法意思 즉 社會的 行動에 대한 意思缺如(mangel an Willen)와 社會的 行動에 대한 能力缺如(Mangel an Fähigkeit)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行爲者의 危險성과 위 兩要素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넷째, 豫想되는 行爲로 인한 危險성은 社會와 一般人에 대한 것임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不特定 多數人에 대한 危險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범위의 制限된 사람 또는 特定人에 대한 危險성이 있는 것으로 充分하다.¹¹⁹⁾

다섯째, 危險性이란 장래에 ‘중대한 違法行爲(erhebliche Straftat) 또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違法行爲(rechtswidrige Taten mit scheweren Folgen)를 할 危險성을 意味한다.

社會防衛思想에 입각한 社會的 危險性的 概念은 北韓刑法을 비롯한 社會主義 刑法의 공통된 특색으로 나타나며, 이 概念은 소련형법에 導入된 이래로 다른 社會主義 刑法의 모델로 되어왔다.

1917년의 10월 혁명은 그 以前의 러시아제국의 형법전을¹²⁰⁾ 비롯한 모든법

116) 李在祥, 保安處分の 研究,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78. 50면; Jong-Dae-Bae,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 im massregelrecht des StGB(Frankfurt, Lang, 1985), 171-178면.

117) 독일형법 제 66조 제 1항은 “行爲者와 그 行爲를 전체적으로 評價하여 그 行爲자가 중대한 犯罪行爲 특히 被害者에게 精神的 또는 肉體的으로 중대한 損傷을 가하거나 또는 經濟的 損害를 야기하는 犯罪行爲의 星癩으로 인해 公共에 대하여 危險하다는 것이 判明된 경우”라고 위험성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18) 이 基準으로는 被害의 性質, 行爲의 實行方法, 犯罪에너지의 정도 犯罪에 대한 基本觀念 등을 들 수 있다; 李在祥, 50면.

119) Schonke-Schroder-Stree, 652면.

120) 1845년에 공포된 러시아 제국 최초의 형법전은 1810년 프랑스 형법전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고 있다. 1905년의 최후의 형법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國際刑事學協會의 理論 및 19세기 후반의 新古典主義的인 법전 편찬을 모범을 하고 있다; Mare Ancel, La Defence Sociale Nouvelle, 李壽茂, 李榮蘭 譯, 新社會防衛,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165면.

령을 부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형사입법에 착수하였다.

소련형법의 발전은 소련사회의 社會的, 經濟的 그리고 政治的 變化와 더불어 이루어졌으며,¹²¹⁾ 刑法은 새로운 秩序에 대한 모든 부르조아적 저항과 殘在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階級鬭爭의 武器이어야 한다는 命題가 公式化되었다.¹²²⁾ 즉 소련의 社會主義的 制度를 防衛하기 위한 강력한 法的 裝置로서 刑法이 대두된 것이다.

여기에서 刑法의 階級性이 도출되고, 따라서 犯罪란 소련체제와 社會主義法

121) 일반적으로 소련형법은 다음과 같이 4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시기(1917-1921): 이 시기는 소련 법규칙의 일반적 원리의 점진적 構成, 짜아르 정권의 모든 司法體制와 監獄體制의 광범위한 解體, 짜아르 刑事立法의 폐지에 대신하는 새로운 刑法의 공포 등이 이루어진 단계이다. 또한 새로운 소련형법에 포함된 일반원리를 구체화한 이 시기의 중요한 기록 중의 하나는 1919년 12월에 法務擔當人民委員(People's Commissariat of Justice)에 의해 공포된 Rukovodiashchie Nacha la Po Ugolovnomy Pravy RSFSR(러시아 공화국의 刑事立法에 관한 지침적인 원칙)이었다.

제2시기(1922-1923): 이 시기에는 소비에트의 刑法이 제2차 성문화된 시기였다. 러시아공화국 형법전은 1922년에 채택됐다. 새로운 법전은 소비에트가 외국의 간섭에 성공적으로 저항했고 내부의 반혁명세력을 억눌렀고, 그리고 내부 경제재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사회주의 혁명의 이익의 통합에 대한 전반적 의문이 제기되었던 시기에 채택되었다. 이 法典은 사회주의적 合法性에 대한 중요한 의문과 형법적 문화 문제에 대한 레닌의 조언을 통합하였다. 이 법전은 간섭전쟁(wars of intervention)과 반혁명주의 시기 동안에 채택된 법에 많은 의존을 했고, 또한 형법영역에서 다양한 소비에트 법정의 판례를 성문화해 왔다.

제3시기(1924-1958): 이러한 소비에트 형법의 새로운 개혁의 불결은 1922년 소비에트(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성립에 의해 필요해졌다. 이 시기는 다음의 특징이 주목된다. 1924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 헌법의 채택; 형법문제에 관한 일련의 연방법령의 공포; 다양한 연방법령의 원리에 토대를 둔 개별적 연방공화국 형법전들의 채택.

제4시기(1958-현재); 이 시기는 다른 사항들 중 다음이 목격되었다. 1958년 형법에 관한 새로운 연방입법의 공포; 개별 연방공화국 형법전의 새로운 세대의 채택; 그리고 1969년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및 개별 연방공화국의 수정노동입법의 기본원칙-FPCL(Osnovy Ispravitel'notrudovago Zakonadatel'stva SSR; Soiuznkh Republik) 채택. 이 시기동안의 형법개혁의 일반적 기초는 22차, 23차 소비에트 공산당회의(Congresses of the CPSU)에서, 뿐만아니라 소비에트 형법의 새 목표 즉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모든 범죄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소비에트공산당 강령(the Program of the CPSU)의 일반적 조항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김철, 376-378

122)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李壽成, 李榮蘭, 176면.

秩序에 대한 社會的 危險行爲라고 하는 社會的 危險性的 概念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社會的 危險性的 概念이 처음으로 표현된 것은 1919년의 러시아공화국 刑法指導原理(the Guiding Principles on Criminal Law of the RSFSR; GPCL)이었다.¹²³⁾ 이 指導原理 第 6條에서 犯罪은 ‘社會關係體制에 危險을 주는 行爲와 不行爲’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犯罪概念은 1922년의 러시아 공화국(RSFSR) 刑法典¹²⁴⁾에도 이어졌다.

同 法典 第6條에서는 ‘犯罪은 共產主義로의 이행시기에 勞動者와 農民의 政府에 의해 설립된 소비에트체제의 토대와 그 法秩序를 위협하는 社會적으로 위험한 行爲 또는 不作爲 이다’라고 規定하였다.

이것은 다시 1926년 형법의 第 8條에 나타났고¹²⁵⁾, 1958년의 刑事立法의 基本原理(F. P. C. L)에서도 社會的 危險性的 概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¹²⁶⁾ ¹²⁷⁾

이와 같은 危險性的 概念이 北韓의 舊刑法 및 新刑法에도 그대로 도입된 것이다.

123) 指導原理(GPCL)은 前文(Preamble)과 刑法一般論, 犯罪와 處罰論, 刑法委員會의 단계문제(On stage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刑法에 있어서의 共謀論, 刑事裁判論(On criminal conviction), 行爲時 刑法에 관한 문제(On the operation of criminal law in time)로 構成되어 있다; 金澈, 380면.

124) 이 법전은 總則과 各則의 227개 條項으로, 總則은 法律의 適用範圍(제 1-4조), 刑事處罰의 一般的 處理(제5-23조), 處罰手段의 決定(제24-31조), 處罰의 종류와 다른 社會的 防禦手段(제32-50조), 處罰의 施行을 위한 節次(제51-56조)로 구성되었다; 金澈, 386면-388면.

125) 1922년과 1926년의 刑法典은 형식상으로는 1921년의 페리초안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金壽成, 李榮蘭, 166면.

126) F.P.C.L은 제 3조에서 ‘刑事責任 및 刑罰은 犯罪의 실행에 대해서 責任있는 者, 즉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刑法에 규정된 社會的 危險行爲를 한 者에게만 歸着된다.’라고 규정하며, 제 7조에서는 ‘犯罪란 소비에트의 사회 또는 국가체제, 社會主義 經濟制度, 社會主義的 所有, 시민의 인격, 정치상, 노동상, 재산상 및 기타 提權利를 침해하는 社會的 危險行爲(作爲 또는 不作爲) 및 社會主義 法秩序를 침해하는 기타의 社會的 危險行爲로서 刑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刑法에 규정된 어떤 행위의 특징을 포함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라 하더라도 경미하기 때문에 社會的 危險性이 없는 것은 犯罪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7) 1917년에서 1959년까지의 소련 刑法의 발전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을 子恒夫, 社會主義國家の刑法 有斐閣, 112-170면 참조.

북한 형법상의 危險性의 概念은 그 개념의 규정된 각 조항의 따라 犯罪者의 危險性을 의미하거나 犯罪行爲의 危險性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양자를 포함하는 概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¹²⁸⁾

그러나 北韓 刑法上의 社會的 危險性의 概念은 그 자체가 思想이나 體制와 결부되어 階級性과 政治性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蓋然性이나 可能性과 같은 이른바 定型性이 없는 非法律的이고도 抽象的인 概念으로서 극히 伸縮性이 많은 개념이며¹²⁹⁾, 위험성에 기초한 實質的 犯罪概念의 정립은 類推制度와 함께 刑法의 보장적 機能을 퇴색케 할 소지를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¹³⁰⁾

7. 罪 責

北韓 刑法上의 罪責은 우리의 責任性에 해당하나 罪責의 내용은 심리적이거나 규범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政治的 概念으로 파악하고 있다.

北韓 刑法에서의 罪責 評價는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罪責의 내용은 심리적 과정에만 귀착시킬 수 없다. 罪責은 社會政治的 概念이다. 共和國 刑法은 故意 및 過失등이 共和國의 人民民主主義를 반대하여 저항되었거나 法秩序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故意, 過失로 인정된다고 하여¹³¹⁾, 故意와 過失의 판단을 정치적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¹³²⁾

128) 北韓法研究(7), 106.

129) 심현상, 102-102면.

130) 北韓法研究(7), 106면

131) 심현상, 148면.

132) 이러한 북한의 責任概念도 蘇聯刑法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蘇聯의 1919년의 지도원리는 責任概念을 否定하고, 행위자의 社會的 危險性을 責任으로 대치하였다. 1922년의 형법전은 刑事責任의 主觀的 要件으로서 처음으로 故意, 過失을 요구하였으나, 1924년의 기본원리에서는 책임개념의 기초가 다시 불명확하게 되고 행위자에게 重點이 옮겨갔다. 그것이 1926년 형법전에서 다시 故意와 過失을 요구하게 되었다; 李漢教, 北韓刑法에 있어서 犯罪論의 基本問題, 社會科學研究 第 21輯, 강원대학교, 1985. 121면

·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우리 당과 국가와 우리 사회와 근로인민에게 否定的인 結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目的意識的으로 하거나¹³³⁾, 또한 위험한 結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예견할 수 있었던 狀態에서 한 행위¹³⁴⁾만이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서 刑事責任을 질 조건으로 되며 따라서 범죄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³⁵⁾

8. 위험성의 排除事由

북한 형법상의 위험성배제사유는 명문의 규정상 正當防爲와 緊拔避難이며, 학설상으로는 被害者의 승락, 사회적으로 유익한 직업적 기능의 수행, 의무적 명령의 집행, 자기 권리의 행사 등이 인정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이와 같은 위험성 배제사유는 우리형법의 경우처럼 構成要件에는 해당되나 違法性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없는 行爲는 처음부터 構成要件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북한 형법학자들은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正當防爲와 緊急避難에 대

133) 이 경우가 故意로 되며 故意는 直接故意와 間接故意로 구분되고 있다. 直接故意란 자기 행위의 危險性있는 結果를 “예견”하면서 그 結果의 발생을 意識的으로 “희망”한 것을 말하고, 間接故意란 자기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있는 結果를 “예견”하면서 그 結果의 발생을 의식적으로 “허용”한 것을 말한다.

134) 이 경우가 過失에 해당된다. 북한 형법상 과실로 인한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處罰하는 根據는 사회적으로 危險한 結果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과실적 행위와 소위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사업과 생활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함에 있어서나 사람들의 혁명적 각성과 책임성을 높이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있다(김규승, 276-277면) 한편 북한에서는 과실을 과신적 과실과 부주의적 과실로 구분한다. 과신적 과실은 자기 행위의 위험성있는 結果를 예견하였으나 그 結果의 발생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히 기대하였을 때 성립된다. 부주의적 과실은 자기 행위의 위험성 있는 結果를 예견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예견가능성)이 있고, 응당 예견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예견의 무성)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135) 김근식, 99면.

한 解釋基準을 김일성의 교시에서 찾고 있다.¹³⁶⁾

일반적으로 正當防爲(Notwehr)는 自己保護의 思想(Gedanke des Selbstschutzes)과 法の 確證思想(Gedanke des Rechtsbewahrung)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국가적 및 사회적 法益(Rechtsgüter)이 그 대상으로 되는 지의 여부에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북한형법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기인하며 북한형법상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계급의 이익이 앞서기 때문이다.

沿革적으로 그리스, 로마법에서 이미 인정되어 왔던 緊急避難(Notstand)은 ‘緊急은 法을 갖지 않는다’(necessitas non habet legen)는 法諺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북한형법학자들은 법이 보호하는 두 이익 중에서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고 보다 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社會的으로 유익한 긴급대책적인 행위라고 실명하고 있다.¹³⁷⁾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익과 손해의 크고 작음은 반드시 정치적 이익의 견지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형법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9. 예비와 미수

북한형법학에 있어서 犯意가 犯罪로서 既遂에 달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노출 과정은 우리 형법학의 입장과 거의 같다.¹³⁸⁾

즉, 故意犯罪에 있어서 우선 심리적, 물질적인 범죄수행의 準備段階에 앞서 故意가 표명되고 그 고의에 기초하여 犯罪豫備가 이루어지며 그후 단계인 實行의 着手한 후의 결과 발생여하에 따라 미수, 기수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136) ‘共產主義者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인민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더욱 귀중히 여겨야 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지들과 인민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혁명가들은 자기의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혁명집단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 김일성저작집, 15권, 77면.

137) 北韓法研究(7), 155면.

138) 朴光變, 225면.

다만 우리 형법이 實行的 着手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그 前段階를 심리적, 물질적 준비단계로서 陰謀와 豫備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 刑法은 結果發生時點을 基準으로 하여 그 前의 犯罪活動의 단계를 ‘예선적 범죄 활동’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¹³⁹⁾ 陰謀라는 개념은 실정 형법상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형법상 범죄의 미수는 형법 각칙에 미수를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범죄의 예비도 범블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각칙이 정하고 있는 예비의 법정형은 기수범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형법은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범죄의 기수와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하고, 그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적 의사를 실현한 정도, 기수에 까지 이르지 못한 원인들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형법은 고의범에 있어서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모두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칙에는 범죄의 준비 또는 미수에 관한 처벌규정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불과한 경우에도 기수범과 동일한 형벌 조항으로 처벌받게 된다.¹⁴⁰⁾

또 우리 형법은 中止犯에 관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減輕 또는 免除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북한형법은 자발적 중지제도를 두어 자발적 중지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색이 있다.¹⁴¹⁾

10. 共 犯

北韓 刑法上 공범론의 特色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¹⁴²⁾

139) 심현상, 189면.

140) 中國 刑法에서는 미수는 기수에 비해서 輕하고 處罰하거나 또는 處罰을 輕減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中國 刑法 提 20 條.

141) 中國 刑法의 경우에는 中止犯의 刑은 免除 또는 輕減한다고 규정한다: 中國 形법 제21조.

142) 北韓法研究(7), 180-184면.

첫째, 공범의 한 형태로서의 共同正犯에 관한 규정이 없다.

둘째, 학설상 間接正犯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형법의 규정상 間接正犯에 관한 규정이 없다. 북한의 형법학계에서는 犯罪의 教唆나 방조는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지 정범의 成立과 處罰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정범의 성립과 처벌은 단지 刑罰의 量定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共犯獨立性說).

세째, 北韓刑法은 정범자, 교사자, 방조자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벌을 量定함에 있어서 그 犯罪에 加擔한 정도와 범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을 규정한 우리형법과 달리 북한형법에서는 종범도 정범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다는 특색이 나온다.

이처럼 모든 공범자를 통일적·포괄적으로 정범자와 같이 취급하는 소위 통일적 정범자 개념은 1926년의 러시아공화국 刑法 제17조, 제18조와 1958년의 형사입법의 기초 제18조 내지 제19조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¹⁴³⁾

이에 대하여는 소련학자들조차도 공범의 가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산한다는 비판을 하여 왔다.

네째, 教唆의 未遂, 즉 실패된 교사와 효과없는 교사를 “성공못한 추진자”라 하여 범죄의 준비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종범의 미수를 “성공못한 방조”라고 하여 이 또한 범죄의 준비로 처벌한다.

다섯째, 공범과 身分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이점은 소련형법과 중국형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섯째, 犯罪組織體라는 특수한 공범형태를 총칙적 성격의 규정에서 일반화하고 있다. 우리 형법이 범죄단체조직죄를 각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이하다. 북한 舊刑法은 공범으로서 정범자, 교사자, 방조자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刑法解說書에 범죄조직체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나 이는 각칙적 성격

143) 그러나 中國刑法은 ‘종범에 대하여는 주범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면제하여야 한다’(25조), ‘협박, 유혹, 기만에 의하여 범죄에 참가한자에 대하여는 그의 범죄의 정상에 따라 종범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면제하여야 한다’(2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의 각 처벌조항에 정해진 범죄조직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犯罪組織體를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목적인 범죄의 豫備로서만 고찰하게 되어 있었다.¹⁴⁴⁾

그러나 신형법은 범죄조직체를 공범의 한 형태로 일반화하고 이에 가담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目的한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¹⁴⁵⁾

일곱째, 우리 형법에는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不申告犯과 放任犯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은닉범도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편에 두고 있다.

불신고범에 관한 규정은 1926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전을 모방한 북한 구형법상 조문내용이 신형법에 그대로 인계된 것으로 보인다.

방임범에 대하여는 북한 구형법이 전혀 규정하지 않았고 학설상으로도 인정되던 개념이었는데 신형법에서 이를 입법화 한 것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11. 형 별 론

北韓刑法에 있어서 刑罰의 目的은 特別豫防主義와 一般豫防主義 및 教育主義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刑法의 規定을 보면 死刑에 처하는 罪가 많고 反革命犯罪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刑罰을 과하고 있으며 政治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刑法에 있어서 <형벌의 과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공화국형법에서 두 과업—강제와 교양의 결합에 관한 레닌의 교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반항하는 반

144) 심현상, 211-212면.

145) 이러한 입법태도는 1958년의 형사입법의 기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입법 제17조는 종래의 소련형법과는 달리 공범형식 속에 전통적인 실행자, 교사자, 방조자 개념 외에 “조직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의 공범자란 실행자 외에 조직자, 교사자, 방조자를 말한다. 조직자란 범죄의 실행을 조직하거나 그것을 지휘한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中山研一, 235-236면
또한 中國刑法도 ‘범죄집단을 조직지도하여 범죄활동을 수행하였거나 공동범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자는 주범이다’(23조)라고 규정하여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혁명분자들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진압을 적용한다>¹⁴⁶⁾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北韓刑法에 있어서 刑罰의 目的課業은 體制에 反抗하는 反革命分子에 대하여는 鎮壓, 懲罰 등의 강제로, 낙후한 人民에 대하여는 강제를 통한 教養의 方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刑罰의 目的, 과업은 應報刑主義와 教育刑主義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刑罰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 刑法에는 死刑, 懲役, 禁錮, 資格喪失, 資格停止, 罰金, 科料, 拘留, 沒收 등 9種으로 되어 있는데, 北韓刑法에 있어서 刑罰의 종류는 死刑, 懲役刑, 教化勞動刑, 選舉權剝奪刑, 財產沒收刑, 등 5種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選舉權剝脫刑과 財產沒收刑은 附加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北韓의 舊刑法의 刑罰種類를 보면 사형, 징역, 교화노동,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 등 7종으로 구분하고 이외에도 특수한 것으로 원격지 추방을 합하면 8種이었던 것을 改正된 新刑法에서는 모두 5種으로 정리한 것이다.

北韓刑法에 있어서 量刑에 관한 내용을 조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反革命犯罪의 諸規定은 거의 死刑 및 財產沒收로 처형하고 있으며 刑의 減輕이나 執行猶豫를 못하도록 하고 公訴時效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犯罪에 비하여 量刑의 均衡을 잃은 잔혹한 刑罰을 과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또한 國家主權과 社會主義制度나 朝鮮民族解放鬪爭을 반대하거나 反革命犯罪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가 모두 반혁명범죄에 해당하므로 광범위한 처벌을 하고 있다.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의 장에서 제56조 反動宣傳煽動罪를 보면 당과 국가의 정책을 비방하거나 낙서, 투서를 하는 행위까지도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여 그 刑罰은 사형에 처하고 全財產沒收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형벌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北韓刑法에서 또 하나의 특색은 不當裁判罪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형법 제147조를 보면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에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서

146) 심현상, 상계서, 233-234; 법부부, 상계서, 78-79면.

裁判上の 과오는 上級法院에 上訴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近代法の 원칙이다. 그러나 北韓刑法에서는 법관의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司法權의 獨立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⁴⁷⁾

12. 반혁명범죄

반혁명죄는 사회주의국가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유형이기는 하나 북한의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국가 체제와 구별되는 유일적 지배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형법상 반혁명죄도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북한형법상의 반혁명범죄를 중국형법상의 반혁명죄와 비교해 보면, 첫째로,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는 그 규제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우선 규제조문도 중국의 12개 조문(제91조 내지 제102조)에 비해 16개조문으로 많을 뿐아니라 중국의 반혁명죄가 사회주의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만을 규제하는데 반하여, 북한의 반혁명범죄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체제를 반대하거나 그들의 정부 및 당을 반대하는 행위, 심지어는 김일성 개인을 반대하는 행위까지도 반혁명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을 반대하는 행위까지도 반혁명범죄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로서 제시된 근거를 보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에는 계급투쟁의 내용과 형식이 과거(민주주의) 혁명단계와는 매우 다르다. 공화국(북한)의 현실은 미국제국주의가 남조선을 점령하고 남의 반동계급과 북의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를 선동하여 공화국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혁명의 획득물을 전취하고자 함과 동시에 부르조아 사상을 침투하려하고 있다.¹⁴⁸⁾ 계급투쟁의 역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계급적 적대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

147) 오도기, 19-21면.

148) 김주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법제(일본, 사회평화사, 1988), 125면.

계급의 영수를 공격하는데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영수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영수가 개척한 혁명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된다.¹⁴⁹⁾ 따라서 공화국 형법은 주석의 권위와 위신을 비방하고 훼손시키려는 세세한 요소에 대해서도 단호한 징벌을 추가해야 함을 요구한다.¹⁵⁰⁾”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의 신형법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은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 형법의 목적이 국가안보나 사회보호보다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¹⁵¹⁾

따라서 북한의 안보형사법이라 할 수 있는 반혁명범죄 규정의 이와같은 입장은 <국가의 존립, 안전¹⁵²⁾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행위일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우리 국가보안법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은 물론이다.¹⁵³⁾

둘째로,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는 그 형벌이 가혹하게 되어 있다.

우선 북한형법의 반혁명적 태업죄, 반혁명범죄 은닉죄, 반혁명범죄 불신고 및 방임죄를 제외한 모든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사형 및 전재산 몰수>라는 가혹한 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범죄라 할지라도 특별히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우리 법제와는 달리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

149) 사회과학 출판사간 범학논문집 1,1975,31면.

150) 김규승, 전게서, 182면.

151) 북한의 구형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할 것”을 형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1조 참조>

152)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5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1990. 4. 2자) 참조

저 가볍게 보는 조건>이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¹⁵⁴⁾ 반혁명범죄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형법이 이와같이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반혁명범죄는 그 근원이 사회주의제도 자체나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가 아니라 계급적 근원으로서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에 앙심을 품고 있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이 존재와 그들의 반항에 있다.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을 비롯한 적대적 요소들은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악랄한 반항을 계속 시도한다. 이 적대분자들은 대를 이어 가면서까지 착취제도를 복구해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변혁명과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반혁명범죄의 계급적 근원인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을 비롯한 인민정권의 독재대상들과의 계급투쟁을 강화하며 그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적 원수들에게 사상교양이나 해설과 설복을 하여 그들의 적대행위의 시도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반혁명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반혁명 적대분자들을 무자비하고 엄격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어¹⁵⁵⁾ 범죄인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적을 섬멸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형법에서는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되,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9개조의 반혁명죄(해당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와 인민에 대한 위해가 특히 중하고 그 정상이 특히 악랄한 자

154) 김근식, 형법학 1,173면.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모자 또는 추진자의 위협 강제 등으로 말미암아 피동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2.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을 때
3. 미성년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4.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5. 자기의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친 때

155) 김근식, 형법학 1,28-45면.

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여¹⁵⁶⁾ 법정형에 관한 한 북한 형법상의 반혁명범죄 규정과는 정반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제3조중 반국가단체의 수괴, 제4조의 목적수행 중 일부, 제5조의 자진지원 중 일부, 제6조 중 지령수수잡입, 탈출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적죄¹⁵⁷⁾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징역형 또는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실무상으로는 작량감경사유¹⁵⁸⁾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은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도 역시 북한형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

셋째로, 북한형법은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양형을 가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추시효제도와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북한형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보안법등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물론이고 중국등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인데 북한에서는 이와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형사소추시효와 집행유예제도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관대와 배려가 깃들여 있다. 이러한 제도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들,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을 비롯한 적대분자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만일 적대분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계급적 원수들에게 관용성과 자애심을 베푸는 것으로 되며 그들과 타협하는 것으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¹⁵⁹⁾ 반혁명범죄에 대한 북한 형법의 이와같은 태도에서도 북한의 호전성과 비민주성, 반통일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밖에도 북한에서는 반혁명범죄자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정당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격자를 죽이거나 직무집행상 필

156) 중국 형법, 제103조

“이 장의 상술한 반혁명죄 행위중 제98조(반혁명집단조직. 지도), 제99조(반혁명활동 수행), 제102조(사회주의제도 전복. 선동등)를 제외한 국가와 인민에 대한 위해가 특히 중하고 그 정상이 특히 악랄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157)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3조

158) 형법 제51조

159) 김근식, 형법학 2, 15면.

요한 정도를 넘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북한형법 제161조의 정당방위초과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나, 그 상대가 반혁명범죄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북한형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당방위 초과로 인한 살인은 반혁명과의 투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격하여 오는 반혁명 적대분자를 막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그놈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유익한 적법적 행위로 된다.¹⁶⁰⁾”

13. 일반범죄의 의의 및 본질

<일반범죄>란 “반혁명적 목적이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하며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¹⁶¹⁾

북한에서는, 일반범죄를 낳는 근원을 일부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에 있다고 한다. 북한형법 교과서에서는 일반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일반범죄를 낳는 사상적 근원인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고 부패한 사상도 발생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사상, 집단주의 원칙만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이와같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일반범죄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회주의 사회에 일반범죄를 낳는 사상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 것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관련된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부화타락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방시키는 사업을 방해하려고 교활하게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내부로부터 와해

160) 김근식, 형법학 2,190면.

161) 김근식, 형법학 2,50면.

시키며 자본주의제도를 복귀시키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¹⁶²⁾

따라서 “일반범죄를 반대하는 투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착취사회들부터 물려 받은 낡은 사상잔재와 그 발현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된다”는 것이다.¹⁶³⁾

1) 일반범죄를 처벌할 필요성과 처벌의 근본원칙

일반범죄를 처벌하는 목적은 첫째,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경제관리규범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 운영하게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힘있게 담보”하고, 둘째, “일반범죄자들은 반혁명적 흉계실현에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계급적원수들의 음흉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⁶⁴⁾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반범죄를 반혁명범죄와 구별하고, 일반범죄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형법 교과서는 일반범죄 처벌의 근본원칙과 관련하여 “일반범죄도 혁명과 건설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므로 예외없이 징벌하여야 마땅하나, 그 성격으로 보아 반혁명범죄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당과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 전복하려 하거나 혁명과 건설을 반대하는데 돌려진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범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이다. 이로부터 반혁명범죄의 경우처럼 폭력인 형벌에 의한 제재를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여야 하며, 사회적 교양을 고칠 수 없는자들에 대하여 형벌에 의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⁵⁾

이와같은 일반범죄 처벌의 근본원칙에 따라, 실제로 북한형법에서는 일반범죄에 대하여 “강도죄, 살인죄를 비롯한 특히 암중한 몇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으며, 암중한 일반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162) 김근식, 형법학 1, 46-48면.

163) 김근식, 형법학 1, 49면.

164) 김근식, 형법학 2, 49면.

165) 김근식, 형법학 1, 57면.

징역형을 적용하며 그것도 거의 다수가 징역형이 짧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교회로동형은 일반범죄자에게만 적용하며 선거권박탈형은 원칙적으로 반혁명범죄에만 적용하며, 일반범죄에 있어서는 극단적 이기적 범죄인 특히 대량 국가재산 약취죄와 강도죄에서 사형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리고 집행유예와 형사소추시효제도는 일반범죄에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¹⁶⁶⁾

2) 일반범죄의 유형별 분류

일반범죄를 침해되는 사회관계의 공통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여기에는 사회주의적 소유, 사회주의 경제관리운영질서, 국토관리질서, 사회주의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속한다.

②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속한다.

여기에는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보건분야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속한다.

③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여기에는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들이 이에 속한다.

④ 사회주의적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여기에는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준칙과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속한다.

⑤ 국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여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와 국민의 개인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속한다.

166) 김근식, 형법학 2, 52면.

Ⅲ. 북한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意義

刑事訴訟法(Strafprozessrecht)이란 刑事節次를 규정하는 國家的 法律體系, 즉 刑罰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¹⁶⁷⁾

형법이 刑罰權의 발생요건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실제적 정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라면,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의 실현과정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라고 하겠다. 형법을 적용, 실현하는 節次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형법이 범죄인의 改善을 위하여 형벌의 個別化, 教育化를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에 범죄인의 人格에 대한 調査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의 理念은 실현될 수 없다. 즉 형법의 이념은 刑事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¹⁶⁸⁾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없는 형법은 있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憲法의 下位規範으로서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기본질서, 그리고 國家가 보장하는 人權의 실정법적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법률이다. 즉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보장의 한계를 형사소송법이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¹⁶⁹⁾ UN결의를 통해 탄생된 인권에 관한 宣言規定 및 국제조약을 보아도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주된 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인류사회의 정치생활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고찰은 그 시대 인류와 그 국가의 정치이념 및 체제를 분석하는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와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형사소송법이기에 때문에 북한의 형사소송법을 고찰한다 함은 바로 북한의 인권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⁰⁾

167) 이재상, 형사소송법, 3면.

168) 이재상, 4면.

169) 이러한 이유에서 형사소송법을 흔히 응용된 헌법(Peter, 19면) 또는 헌법의 地震計(Seimograph der Staatverfassung)라고 한다(Roxin, 8면; Zipf, 16면)

170) 박동희, 「북한형사소송법」,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88, 2, 44면.

2. 刑事節次上 人權保障

1) 형사절차상 인권의 보장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세 초기 전제군주국가에 있어서 侍女的 刑事節次인 糾問節次에서는 自白強要를 위한 拷問의 허용, 無制限的인 強制處分의 인정, 有罪, 無罪가 證明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범죄의 嫌疑(Verdacht)만 있어도 處罰하는 嫌疑刑의 허용¹⁷¹⁾, 同一事件에 대한 二重處罰의 허용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 罪人의 人權은 극도로 유린되었다.¹⁷²⁾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人權은 被疑者의 人權, 被告人의 人權, 受刑者의 人權으로 分類할 수 있다. 그러나 刑事節次는 본질적으로 범인을 處罰하는 節次인 것이므로 인권보장은 極限의 原理일 수는 없고 有罪者處罰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실질적 목적과 調和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¹⁷³⁾ 여기에 刑事節次上 人權保障의 法哲學이 있다.¹⁷⁴⁾

본 論文에서는 前述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人權保障의 原則¹⁷⁵⁾—人間尊嚴性에서 유래하는—에 입각해서 北韓刑事訴訟法에 대한 實定法的 해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171) 高田卓, 刑事訴訟法, 1984, 9면.

172) 그래서 糾問節次의 時代를 刑事節次의 暗黒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白亨球, 刑事節次上 人權保障의 當面課題,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4

173) 白亨球, 형사소송법, 머리말.

174) 白亨球, 人權保障의 法哲學, 月刊考試, 1991. 3. 13면.

175)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糾問主義的 訴訟節次의 排除, 實體的 眞實主義와 適法節次의 원칙(Due Process of Law, im gerechten Verfahren)의 調和, 신속한 裁判의 원칙, 拷問의 억지, 자백강요의 금지, 強制搜查의 制限, 被疑者 및 被告人의 實質的 防禦能力의 保障, 公訴權 濫用의 制限, 違法募集證據排除法則의 強化, 上訴制度의 合理的 保障, 非常救濟節次의 強化, 刑事補償制度의 인정, 特別裁判節次의 신중한 시행 등을 들 수 있겠다.

3. 연 혁

1) 6·25 事變前

우리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후 북한에서는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북한으로 진주한(1945. 8. 8) 蘇聯軍의 사주에 의해서 공산당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共産黨政權이 수립되어 가는 초기단계에는 북한 사회를 규율할 만한 형사절차적 규정이 없었다.¹⁷⁶⁾

1945년 10월 10일 朝鮮共産黨北朝鮮委員會가 조직되고 그 아래에 1945년 11월 19일 北朝鮮行政 10局을 설치하였으며 10局的 하나로 司法局이 창설되어 1948년 9월 司法省으로 개편될 때까지 朝鮮共産黨의 지휘아래 蘇聯의 司法制度를 도입하였으며 司法分野에 대한 指導事業을 전개하였다.¹⁷⁷⁾ 1945년 11월 23일 北朝鮮司法局 布告 第4號 ‘裁判所 組織에 관한 件’이 공포되었으며 이 布告로 북한의 주요 시, 군에 人民裁判所가 道에는 道裁判所가, 平壤에는 北朝鮮裁判所가 설립되었고 人民參審員制가 도입되었으며 1945년 11월 27일 同布告 第5號에 의거하여 ‘檢察所 組織내지 設置에 관한 件’이 공포되고 이에 의거하여 市·郡人民檢察所, 道檢察所, 北朝鮮檢察所가 설립됨으로서 북한의 기본적인 사법제도의 골격이 이루어졌다.¹⁷⁸⁾

그후 1946년 2월 8일 中央行政主權機關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司法局 裁判所 및 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관한 기본원칙이 同委員會 決定 제3의 2호로써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5월 14일과 6월 20일에 同위원회 決定 제13호, 제20호로 ‘北朝鮮司法機關의 刑事裁判에 관한 규정’과 ‘北朝鮮檢察所 豫審 및 保安機關의 刑事事件審理에 관한 法令’이 제정되었다.¹⁷⁹⁾

176) 이때에는 소위 人民裁判이라는 일종의 民衆裁判을 통하여 북한공산집단에 반대하는 인사들이나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하였는데 人民裁判은 광범위한 군중의 참가와 군중속에서 그때 그때 訴追機關과 審判機關을 조직하였으며 군중의 격정적 감정과 군중심리에 依存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북한법연구(3)－刑事訴訟法－, 法務資料 第72輯, 法務部 1986. 10. 13번.

177) 리재도, 共和國裁判立法의 發展, 平壤國立出版社, 1960, 242면.

178) 리재도, 244-245면.

179) 리재도, 246면.

·이밖에도 ‘判事의 選舉에 관한 결정서’, ‘北朝鮮裁判所 및 檢察所에 관한 규정’ 등을 同委員會의 결정으로 제정하였으며 1947년 3월 23일 29개조 20개조 政綱으로 일제시대의 법령과 司法制度를 폐기하였다. 이러한 北朝鮮臨時委員會의 決定은 대부분 北朝鮮司法局의 布告內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2월 8일 朝鮮人民軍이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9월 8일 最高人民會議 제1차 회의에서 1936년에 제정된 蘇聯憲法을 모방하고 人民民主主義를 표방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이 채택 공포되었으며 그 다음날 共產黨政權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창건되었다. 司法局은 이러한 憲法의 채택에 따라 폐지되고 대신 內閣의 한¹⁸⁰⁾ 省으로서 司法省이 설치되어 最高裁判所의¹⁸¹⁾ 裁判事務를 제외한 司法分野에 대한 전반적인 指導와 監視業務를 수행하였다.

1948년 11월 1일 內閣決定 제62호로 ‘人民軍事裁判所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고 1949년 7월 9일 ‘市·郡人民裁判所 및 道裁判所 選舉에 관하여’라는 政令에 의하여 裁判員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0년 北韓最高人民會議 제1기 5차회의(1950. 2. 25-3. 3)에서 裁判所構成法과 刑法 및 刑事訴訟法의 채택이 이루어졌다.¹⁸²⁾

2) 6·25事變中

北韓은 6·25事變中에 국가기관을 戰時體制로 개편하고 그 일환으로 裁判, 檢察機關도 개편하였으며 일부 法令도 公布하였다. 이때 公布된 法令은 주로 一般刑事訴訟節次에 대한 特別法의 性格을 지닌 것으로서 北韓共產主義體制에 반대하는 인사 등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할 것과 事件審理에 人民參審員

180) 省은 憲法 제4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중앙집행기관으로 그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의 해당하는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憲法 제 64조)

181) 北朝鮮最高裁判 朝鮮最高裁判所 裁判員(판사) 15명은 朝鮮最高人民會議 第1期 第1次會議(1948. 9. 2-9. 10)에서 선출하였으며 第2次會議(1949. 1. 28-2. 1)에서는 20명의 最高裁判所 參審員을 선출하였다.

182) 이 法律들은 以前에 北韓共產黨政權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제정되었던 布告, 決定 등을 舊憲法(北韓最高人民會議 제1기 1차 회의에서 채택된 憲法)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리재도, 249면.

의 關與를 排除하고 上訴의 制限 등을 통하여 통상의 節次를 간편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¹⁸³⁾

3) 6·25事變後에서 新憲法 公布前까지

이 時期의 刑事公訴節次와 司法制度에 관한 立法의 主眼點은 共產主義體制를 強化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무기로서 裁判 및 檢察機關의 기능을 강화 하는데 두어졌다.¹⁸⁴⁾ 1954년 6월 15일과 12월 11일 北韓刑事訴訟法과 裁判所 構成法이 부분적으로 改正되었으며, 1956년 司法省軍事裁判指揮局이 閉止되고 軍事裁判所에 대한 司法行政上의 指揮를 最高裁判所 軍事部가 擔當하게 되었고, 1958년 4월에 特別裁判所인 通運裁判所¹⁸⁵⁾ 폐지하고 同裁判所의 管轄에 속하는 사건을 人民裁判所로 移管하였다. 1959년 9월 말에는 국가관리기관의 統合 및 폐지와 관련하여 司法省이 관장하던 地方裁判所에 대한 司法行政上 指揮機能을 最高裁判所로 移管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司法省의 폐지와 業務移管은 재판활동에 대한 중앙의 指導와 統制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⁸⁶⁾

4) 新憲法 公布 以後

1972년 12월 27일 最高人民會議 제5기 제1차 會議에서 人民民主主義를 표방하던 舊憲法을 폐지하고 社會主義와 主體思想을 표방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을 採擇함에 따라 最高裁判所와 最高檢察所의 名稱을 中央裁判所와 中央檢察所로 바꾼 것을 비롯하여 판사의 裁判에 관한 獨立의 規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裁判所는 裁判에서 獨自의이며 裁判活動을 法에 철

183) 6·25事變中 공포된 형사소송에 관한 주요 特別法으로는 ‘軍事行動區域內에서 軍事裁判所에 관한 규정’(1950. 8. 21), ‘戰時軍事裁判所에 관한 규정’(1952. 2. 29), 自首者取扱에 관한 규정, 戰時勞動에 관한 決定 등이 있다.; 法務資料 제72輯, 15면.

184) 法務資料 제72輯, 15면.

185) 通運裁判所의 管轄事件은 鐵道, 陸 및 水上機關 服務員의 職務上 犯罪事件 및 通運事業의 政黨的인 活動을 妨害하는 모든 犯罪事件이었다(北韓裁判所構成법 제 37조 제 2항)

186) 한장옥, “裁判實務 실천에서 群衆속에 들어가자”, 民主司法, 1950. 10, 16면.

저히 依據하여 遂行한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北韓 新憲法 第140條), 中央 裁判所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最高人民會議 및 共和國主席, 中央人民委員會 앞에 책임을 진다(新憲法 第142條)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刑事訴訟에 關聯되는 규정이 수정, 추가되었다.

또 이러한 新憲法의 採擇에 따라 1976년 1월 10일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결정으로 裁判所構成法, 刑事訴訟法 등이 改正 公布되었다.

4. 수사절차

북한의 刑事訴訟法은 裁判所, 訴追者, 被訴者, 辯護人, 私訴原告人이 소송의 주체로 관여하는 절차구조를 갖고 있다. 搜查官, 豫審員, 檢察 및 재판기관과 함께 證人, 鑑定人, 通譯, 입회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입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들이 형사소송에 참가하게 되며, 그 밖에 광범위한 군중들도 형사소송에 參加하게 된다.

북한의 형사소송의 첫 단계는 형사사건의 提起이다. 이것은 犯罪가 확인되었을때 檢事, 豫심원 또는 裁判所가 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결정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형사사건제기는 檢事, 豫심원의 결정서, 재판소의 判定書로써 이루어진다. 결정서나 판정서에는 범죄사건 및 犯行者, 형사사건제기 사유와 근거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형사사건이 제기되면 豫심기관은 豫審을 시작하여 범죄의 진상과 범죄자를 밝히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들을 수집한다. 豫심을 거치면 사건은 재판소로 넘어간다. 재판소는 그 사건에 넘길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를 해명한 다음, 사건을 공판에서 심리한다. 공판에서 내린 判決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제2심이 진행된다.

만약 이의가 없거나 상급재판소가 原審判決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어서 판결집행절차가 따른다. 확정된 判決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상소, 재심이 있을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搜查機關은 크게 一般搜查機關과 特別搜查機關으로 나뉘어진다. 檢事, 검찰소 豫심원, 수사의 권한 있는 軍관의 豫심원, 내무원 등 제기관의 감찰원이 일반 수사기관에 속하며, 國家保衛部가 특별수사

기관에 속한다. 우리에게 매우 특이하게 보이는 현상 중의 하나는 북한에게서는 재판소가 수사기관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북한 형사소송법 제75조 내지 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검사, 예심원 기타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소에 대해서도 직접 범죄의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소는 반드시 이를 受理하여 직접 심리하거나 검사 또는 예심원에게 이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檢事나 檢察所, 豫審院 등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북한 형법에 규정된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는 정치보위부원이 예심을 하게 되며, 이들 범죄자에 대한 체포송인절차도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검사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것은 豫審制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크게 검사 또는 예심원의 예심과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로 나뉘어 진다. 예기에서 예심원은 각급 검찰소 예심원, 정치보위기관 및 감찰기관의 심사원을 말한다(제20조 4호). 그리고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권한있는 군관, 예심원 이외의 사회안전원 등 감찰원을 말한다(제79조). 예심이란 피의자에 관한 犯罪의 유무 및 그 責任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밝히는 행위는 말한다(제90조). 예심원 이외의 수사기관의 수사는 예심행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설명 받는 방법으로 범죄사실의 基礎資料를 수집하는 行爲이다(제80조). 예심이 被疑者에 관한 범죄의 유무 및 그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밝힌다는 점과 예심원의 광범위한 강제처분권한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심은 예심원 이외의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의 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급의 절차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절차에 관하여 먼저, <예심원이 범죄에 관하여 入審함에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被審者로 하는 入審決定書를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피심자에게 그 결정을 통고한다. 예심원은 전항의 결정서 등본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출석한 후 또는 그를 구인한 후 24시간 이내

에 신문하여야 한다.

예심절차에 있어서 예심원이 취할 수 있는 強制處分을 살펴보면,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구인할 수가 있으며, 피심자가 逃走하거나 그 처치가 불분명할 때에는 搜索決定書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피심자가 공판 또는 예심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不離居誓的, 인적보증 또는 재산적 保證, 자택구속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유 불인 결정서를 작성하여 강제처분으로써 압수 또는 搜索을 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단계에서 피심자에 대한 구금, 자택구속, 수색압수 등 강제처분을 할 경우 재판소의 命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사의 권한이 있는 군관 및 사회안전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자신이 판단에 의해 피심자에 대한 구인, 수색,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예심원의 업무에 대해서 검사가 감시 및 지도를 행하고, 예심원이 취한 강제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119).

북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搜查를 終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건의 불기소를 예심원이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컨대 경상해죄, 暴行罪, 侮辱罪, 출판물 등에 의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공소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 피해자 등은 승소권자로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예외를 두고 있는 한편, 친고죄 등의 공소권행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식보다 우의에 두고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公判準備節次

북한에서는 裁判所가 檢事로부터 事件을 受理하면 수사과정 및 關聯證據를 일반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공판회부, 事件棄却 및 예심원에게 返送與否 등

을 결정하게 한다. 북한 형소법에 있어서 공판준비는 裁判長 1명과 人民참심원 2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민참심원의 사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참심원 대신 다른 판사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¹⁸⁷⁾

북한은 이러한 인민참심원제에 대한 규정은 바로 裁判制度의 인민적 성격의 表現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북한 형소법에서는 公判準備節次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충분한 예심조사, 起訴事實, 法令適用, 規定遵守, 피심자의 신청, 보전처분의 채택, 존속, 변경, 취소, 訴訟當事者의 參加, 公判召喚對象者 등을 들고 있다.

6. 공판절차

북한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심리가 시작된 직후에 재판장이 피소자에게 기소장 또는 공판 회부장에 기재된 사실을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제도가 있다(제194조). 소위 기소승인제도이다. 피소자가 이의가 없으며, 기소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소는 그 이후의 심리를 더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 당사자의 변론을 들을 수 있다(195조).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연속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계속 심리하며, 이미 심리를 개시한 사건이 끝나기전에는 타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고, 휴식시간이라도 타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제176조), 계속심리주의 보다 훨씬 더 엄격한 연속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는 피소자, 검사 이외에도 피해자, 私訴原告人 및 그 대리인, 피소자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을 포함하고 있다(제20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당사자를 단지 검사와 피고인에 국한시켜 파악함에 비해,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87) 참심원은 그 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判事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등록된 명부에 따라 1년에 14일 이내로 재판에 참여하되, 사건의 계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裁判所構成法 第15條.

그리고 이들은 權限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이 公判節次上 여러가지 신청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하며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심리의 순서는 공소사실 인부제도를 제외하고는 인정심문, 피소자 등의 권리고지, 피소자 신문 및 증거조사, 소송 당사자의 변론 및 피소자의 最後陳述, 判決의 宣告 등으로 이어지는 통상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

7. 上訴制度

北韓刑事訴訟法은 단 한번의 상소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241조이다. 즉 동조는 “判決 또는 判定에 대하여 檢事는 抗議할 수 있다. 피소자 및 그의 辯護人은 上訴 또는 抗告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상기규정은 검사의 경우는 ‘항의’라고 했으며 피고의 경우는 ‘상소’라고 하여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상소가 제2심으로써 確定判決의 효력을 갖는 北韓刑事訴訟構造는 동법 제26조가 “제2심 재판소의 관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없으며 다만 최고재판소에 非常上訴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

政治犯의 경우는 그나마 단 한번의 상소기회마저 없다.

즉 ‘국가주권적대에 관한’사건은 처음부터 최고재판소의 사물관할에 속하며 이 경우는 제246조가 “최고재판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없다. 다만 최고재판소 전원회의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大法院과는 달리 上訴審法院은 法律審만이 아니라 事實審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제249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동 규정은 “제2심재판소는 上訴 또는 抗議에 제시한 불복이유만을 심리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심리에 의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手續을 전부 審理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上訴審은 또한 사건을 破棄, 還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裁判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란 제256조의 규정으로서 동조는 “원심재판소에 있어서 죄로 되

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피소자에게 有罪判決을 한 때 또는 事件棄却의 理由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을 때에는 제2심재판소는 事件을 원심재판소에 반송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기각한다”라고 했다.

北韓에서 말하는 非常上訴란 동법 제264조가 “최고재판장 및 검사총장은 어떠한 사건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의 送付를 청구할 수 있다. 도검찰소 검사는 그 관할내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할 것이다.

非常上訴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제266조의 경우로서 “사건송부를 請求한 자가 본질적인 法令違反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재판소에 반송한다” 및 제267조 “시, 군검찰소, 도검찰소, 군사검찰소, 통운검찰소 검사장은 본질적인 법령위반을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을 붙여 최고 검찰소에 보낸다” 등이며 검사총장, 중앙재판소소장 등이 非常上訴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동법 제269조, 제 268조 동등의 경우로 되어 있다.

IV. 結 論

北韓은 變化할 것인가? U.N.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은 세계적인 자유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이는 곧 北韓의 人權狀況의 變化와도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論文에서는 북한의 刑法 및 刑事訴訟法을 分析, 檢討하였다. 물론 北韓의 人權에 대한 法的 視覺을 견지하면서 서술하려고 했다. 刑法과 刑事訴訟法에만 특유한 人權概念은 없다. 다른 법분야와 마찬가지로 刑法 및 刑事訴訟法上의 人權역시 人間본래의 高貴性, 尊貴性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人間尊嚴性の 側面에서 照明해본 北韓刑事法 非人權的 要素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刑法에 있어서 소련 등과 같은 社會主義 國家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채택하고 있는 罪刑法定主義의 否認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상 人權保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大原則이다.

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피소자에게 有罪判決을 한 때 또는 事件棄却의 理由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을 때에는 제2심재판소는 事件을 원심재판소에 반송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기각한다”라고 했다.

北韓에서 말하는 非常上訴란 동법 제264조가 “최고재판장 및 검사총장은 어떠한 사건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의 送付를 청구할 수 있다. 도검찰소 검사는 그 관할내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할 것이다.

非常上訴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제266조의 경우로서 “사건송부를 請求한 자가 본질적인 法令違反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재판소에 반송한다” 및 제267조 “시, 군검찰소, 도검찰소, 군사검찰소, 통운검찰소 검사장은 본질적인 법령위반을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을 붙여 최고 검찰소에 보낸다” 등이며 검사총장, 중앙재판소소장 등이 非常上訴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동법 제269조, 제 268조 동등의 경우로 되어 있다.

IV. 結 論

北韓은 變化할 것인가? U.N.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은 세계적인 자유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이는 곧 北韓의 人權狀況의 變化와도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論文에서는 북한의 刑法 및 刑事訴訟法을 分析, 檢討하였다. 물론 北韓의 人權에 대한 法的 視覺을 견지하면서 서술하려고 했다. 刑法과 刑事訴訟法에만 특유한 人權概念은 없다. 다른 법분야와 마찬가지로 刑法 및 刑事訴訟法上의 人權역시 人間본래의 高貴性, 尊貴性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人間尊嚴性の 側面에서 照明해본 北韓刑事法 非人權的 要素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刑法에 있어서 소련 등과 같은 社會主義 國家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채택하고 있는 罪刑法定主義의 否認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상 人權保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大原則이다.

· 둘째는 類推解釋의 인정이다. 유추해석은 형법상 類推解釋禁止上原則에 대한 중대한 違反으로 刑法解釋에 政治的, 獨斷的, 一方的, 意思가 介入될 여지가 있다.

셋째, 實質的 犯罪概念의 채택이다. 實質的 犯罪概念은 형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하며, 法 執行者의 자의에 의해서 犯罪가 決定될 위험성이 높다.

넷째, 범죄성립의 要素로서 社會的 危險性의 강조이다. 社會的 危險性이라는 극히 抽象的, 概念的, 可變的 概念은 刑法의 保護對象과 禁止對象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이때의 危險性에 대한 判斷基準이 明確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우려는 加重된다.

다섯째, 미수와 기수의 처분상 동일 취급이다. 이는 형법상 結果責任의 原則과 責任個別化의 原則에 위반된다.

여섯째, 共犯에 있어서 지나친 獨立性的 立場이다.

정범은 共犯에 비해 그 犯罪性이 우월하게 評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또는 독자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정범의 인정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일곱째, 反革命犯罪의 확대규정이다. 형법의 보호영역이 지나치게 국가적 법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적 법익의 보호영역이 경시될 수도 있다.

여덟째, 刑事訴訟에 있어서 職權主義的 경향이 강하며, 당사자 특히 被告人의 人權保護가 미흡해진다. 또한 刑事訴訟의 目的性의 강조는 절차적 측면, 즉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이 무시될 위험도 있다.

아홉째, 의견상 민주적 절차로 볼 수 있는 인민참심원제도의 인정은 자칫 재판이 감정과 煽動에 좌우될 수 있으며, in dubio pro reo의 原則에서 벗어날 위험도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북한 刑法 및 刑事訴訟法에서의 非人權的 要素를 살펴보았다.

전술한 것처럼 刑法이나 刑事訴訟法에 고유한 人權이란 없다. 결국은 刑法과 刑事訴訟法이 인간본래의 권리(Human Right)를 향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의 문제로 된다.

이제 남·북의 人權은 어느 한쪽만의 인권이 아니다. 우리 민족전체의 인권이며 관심사이다.

북한의 개정 刑法과 刑事訴訟法은 개정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全文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많은 비인권적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自認하는 反證이 된다.

또한 북한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권력승계작업의 마무리, 급격한 경제난 등에 따른 개방의 필요성 등에 의거한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형사법의 개정으로 이어 질 것으로 본다.

만약 다시 개정이 된다면 좀더 인권보호적인 형사법으로서 主體思想 일색화가 아닌 人間尊嚴에 기초하는 規範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이태재, 法哲學史와 自然法論, 法文社, 1990.
- 김철수, 新稿憲法學概論, 박영사, 1990.
- 東西의 法哲學과 社會哲學, 無碍徐燉珏博士古稀紀念論文集, 法文社, 1990.
- 北韓法研究(7), 法務部 法務資料, 제128조, 1990.
- 심현상, 조선형법해설, 평양, 국립출판사, 1957.
-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事法制, 日本 社會評論社, 1988.
- 오도기, 刑事法研究, 제3집, 韓國刑事法學會, 1990.
-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통일위느 1988.
- 북한 정치 체계연구,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2.
- 아시아의 사회주의법, 社會主義研究會編, 1989.
- 북한의 法과 法理論,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이제 남·북의人權은 어느 한쪽만의 인권이 아니다. 우리 민족전체의 인권이며 관심사이다.

북한의 개정 刑法과 刑事訴訟法은 개정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全文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많은 비인권적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自認하는 反證이 된다.

또한 북한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권력승계작업의 마무리, 급격한 경제난 등에 따른 개방의 필요성 등에 의거한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형사법의 개정으로 이어 질 것으로 본다.

만약 다시 개정이 된다면 좀더 인권보호적인 형사법으로서 主體思想 일색화가 아닌 人間尊嚴에 기초하는 規範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이태재, 法哲學史와 自然法論, 法文社, 1990.
- 김철수, 新稿憲法學概論, 박영사, 1990.
- 東西의 法哲學과 社會哲學, 無碍徐燉珏博士古稀紀念論文集, 法文社, 1990.
- 北韓法研究(7), 法務部 法務資料, 제128조, 1990.
- 심현상, 조선형법해설, 평양, 국립출판사, 1957.
-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事法制, 日本 社會評論社, 1988.
- 오도기, 刑事法研究, 제3집, 韓國刑事法學會, 1990.
-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통일위느 1988.
- 북한 정치 체계연구,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2.
- 아시아의 사회주의법, 社會主義研究會編, 1989.
- 북한의 法과 法理論,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Cal Clark, "Balkan Communist Foreign Policies", in Ronald H. and Linden, ed.,
The Foreign Policies of East Europe, Newyork, Praeger Publishers, 1980.

로동신문, 1982. 10. 18.

V. Chirkin, Yu. yudin, O. zhidkov,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Progress Publishers : Moscow, 1987).

現代刑法學原論, 東京, 三省堂, 1983.

Radbruch, Der Mensch im Recht—Ausgewahlte ortrage und Aufsätze uber
Grundfragendes Rechts—(Vandenhoech und Ruprecht ; Gottingen, 1957)

모택동선집, 제5권.

W. E. Butler, SOVIET LAW(London ; Butterworths, 1983

법률취집 1, 민족출판사, 북경, 1988.

金撤, 러시아—소비에트 法, 민음사, 1989.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西原春夫, 刑法總論, 東京, 成文堂, 1983.

法學 제26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大谷實, 刑法總論講義, 東京, 成文堂, 1986.

現代의 刑事法學, 朴貞根博士華甲記念論文集, 法元社, 1990.

Schonke—Schroder—Lenckner, Strafgesetzbuch, Kommentar, 23. AUFL., Mun-
chen, 1988.

Roxin, ZStW, BD. 74.

Jong—Dae—Bae,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ssigkeit im massregelrecht
des StGB(Frankfurk, Lang, 1985).

Mare Ancel, La Defence Sociale Nouvelle, 이수성. 이영란 譯,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한교, 北韓刑法에 있어서 犯罪論의 基本問題, 社會科學研究 제21집, 강원대
학교, 1985.

백형구,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세미나, 형사정책
연구원, 1990.

리재도, 공화국재판입법의 발전, 평양국립출판사, 1960.

한창욱, "재판실무 실천에서 군중속에 들어가자", 민주사법, 1959, 10.

◇ 집필자 소개(게재순)

- 안 재 욱
 - 경희대학교 조교수(경제학과)
 - (김 용 환) • 경희대강사 및 동북아연구원 연구원(박사과정수료)
 - 경희대, 미 오하이오주립대학원(경제학 박사)
 - 오하이오대 조교수,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임
 - 연구실적 : The Problem of Bond Portfolio Immunization
faresl on Durutions, 한국의 금융규제연구 및 화
폐금융경제학(진행) 등
- 박 승 준
 - 단국대학교 조교수(무역학과)
 - 서울대 경제학과, 뉴욕주립대 수학 및 경제학과(경제학 박
사, 수학박사과정 수료)
 - 미 시애나대, 서울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동태적 巨視모
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북방경제정책과 남
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박동운 공저), 북한의 무
역구조(박동운 공저) 등
- 서 찬 수
 - 영남대학교 강사
 - 영남대 및 동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 대구대 · 안동대 · 효성여대 강사 및 현 대구권 경제사회발
전연구원
 - 연구실적 : 한국의 인적자본축적과 경제성장, 日帝下 한국
의 식민지 재정에 관한 연구 등
- 김 연 명
 - 중앙대학교 강사(사회복지학과)
 - 중앙대 및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 서울신학대 강사 및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임연구원
 - 연구실적 : 한국인의 불평등의식(공저), 마르크스주의 사회정
책 발달론에 대한 고찰, 1980년대 한국 사회보장정
책의 성격(공저), 한국의료보험연구(공저) 등

- 황 인 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 연세대 및 동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과정 수료)
 - 연구실적 : 다산의 공동체론, 일본교과의 한국내용분석, 중
 병을 앓고 있는 마르크스 레닌의 후예들
- 성 재 호
 - 성균관대학교 강사(법학과)
 - 성균관대 및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경기대, 국제대, 광운대 강사 및 성대 법학연구소 연구조교
 - 연구실적 : 한미행정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조약의 국내적
 적용, 人道를 위한 간섭 등
- 권 오 결
 - 경북대학교 강사(법학과)
 - 경북대 및 동 대학원 법학과(박사과정 수료)
 - 법대 연구조교 및 경남대·대구대 강사